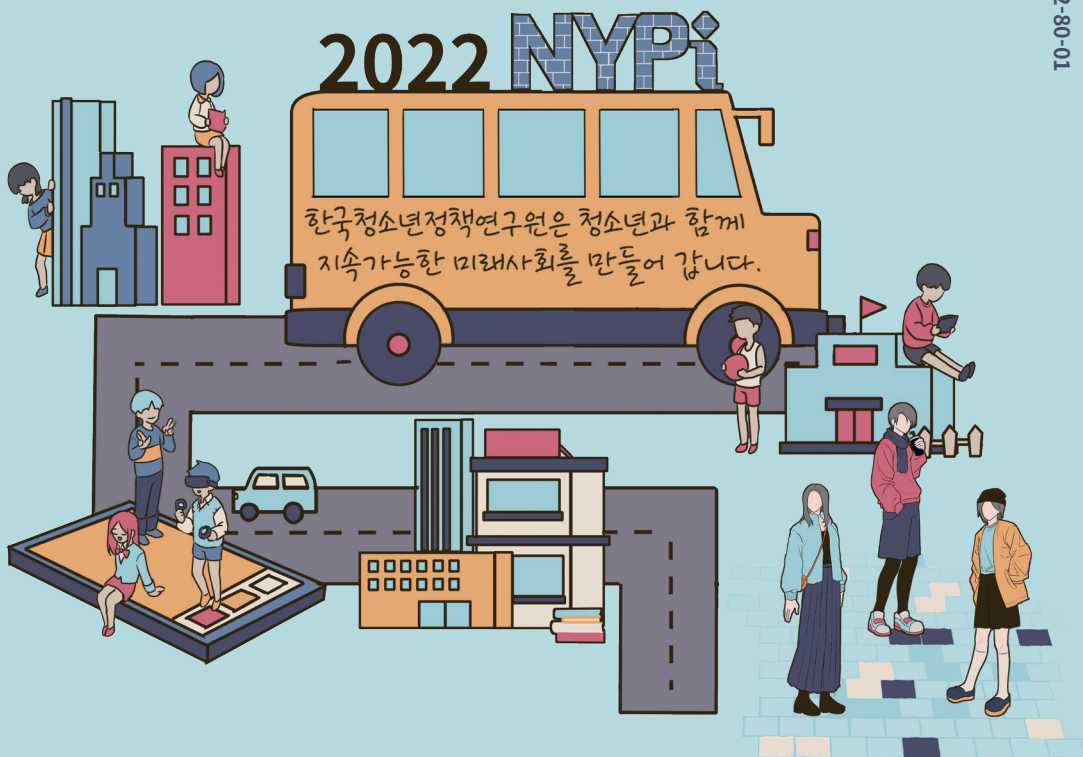


청년종합연구 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김지연 · 백혜정 · 김미향 · 김성아 · 정소연 · 이우태 · 이상정 · 박광옥



협동연구총서 22-80-01

연구보고22-일반08

청년종합연구 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저 자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김성아 정소연 이우태 이상정 박광욱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김미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_정소연(서울여자대학교 교수)
_이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_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_박광욱(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종합연구 Ⅰ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2-80-01	청년종합연구 Ⅰ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통일연구원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소연(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이우태 연구위원	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규빈(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장인숙(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위원) 박환보(충남대학교 교수) 최종학(통일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상정 부연구위원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하태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박광욱 교수	이기연(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이복실(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안예지(경일대학교 교수) 양해만(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임) 김상희(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송기호(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보고서를 펴내며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청년 담론에 포섭되지 않는 청년, 기존 사회정책에서 '취약청년'으로 식별조차 되지 않는 청년, '능력주의' 하에서 필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청년, 이 연구는 이를 '정책소외' 문제로 규정하고 그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청년 세대 간, 지원 대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외의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다면적, 역동적으로 파악하고자 3개년 협동연구로 기획되었다.

이에 1차년도 조사대상으로 아동·청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북한배경청년(통일연구원), 청소년부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계선지능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선정하고 이들의 실태와 일반 청년 대비 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청년기에 누적된 삶 영역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외를 예방하는 것이 사회정책, 그리고 청년정책의 목표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수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책소외청년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확인된 취약성을 근거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세대 내 불평등과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소외청년의 유형을 모두 발굴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소외청년의 유형별 삶 실태 분석을 시도한 것은 이들은 제도를 통한 권리 보장이 필요한 '새로운 취약청년'이라는 근거와 개입 지점을 제시하고 정책 개발을 건언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결과가 모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정책에서 ‘취약청년’에 포섭되지 않는 청년 문제를 ‘정책소외’로 규정하여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 청년과의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3개년(‘22~’24)에 걸쳐 추진함.
- 본 연구에서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①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 이행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② 공공정책(지원제도)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③ 당사자를 포함하여 미시환경 영역에서 자원, 정보, 기회가 제한(결핍)되어 있거나 거시환경 영역에서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④ 비자발적 사유로 배제되거나, 제도의 지원 대상에 효과적으로 편입되지 어려운 청년 또는 집단’으로 정의함.

■ 연구내용

- 연구목적에 따라 1차년에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북한배경 청년(통일연구원), 청소년부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계선지능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정책소외 실태를 분석하고 일반 청년 대비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함.
- 소외청년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으로 제도적 편입 방안과 맞춤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협동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며, 협동연구기관은 청년의 정책소외 현안 및 실태 분석과 추진과제의 정책화를 목적으로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실태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토크워크숍, 정책포럼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제1부 : 정책소외계층 청년과 지원 여건 분석
 - '취약청년'에 포섭되지 않는 청년 문제를 '정책소외'로 규정하고, 청년정책 내 소외청년 관련 추진과제 현황을 분석함.
 -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사회적 배제관점, 이행기관점, 다차원 빈곤 관점을 검토하고 정책소외청년의 유형과 보편적인 특성(요소)을 도출하여 소외청년의 취약성을 토대로 '새로운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안함.
- 제2부 :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제안 [협동연구 추진]
 - 시설퇴소청년 : 1차년도 시설퇴소청년(n=2,457) 표본을 구축하여 교육과 일 경험, 채무, 사회관계(고립), 부정적 생애사건, 자살시도 등 일반 청년 대비 격차와 취약성을 확인하고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간 연계 추진을 제안함.
 - 북한배경청년 : 북한출생 및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n=108)과 일반 청년과의 차이 분석 결과 「국적법」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법(약칭)」상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통계 생산 시 청년기 연령의 세분화 등을 제안함.
 - 청소년부모 : 청소년부모(n=101)와 일반 청년부모의 비교 결과 '청소년'부모 용어 개선, '자녀양육청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입법 포함), 주거·교육·취업·보육·돌봄지원 시 대상 특성 반영, 신청주의 방식 개선을 제안함.
 - 경계선지능청년 :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청년(n=203)의 주요 삶 영역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대상 경계선지능청년의 개념 정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고용·주거·권리구제·평생교육·정신건강·사회관계망 등 생애주기 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제안함.
- 제3부 : 정책제언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방향 및 지원과제를 제안함.
- 연구보고서 : 총괄보고서(1종), 세부보고서(4종)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외청년 지원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안함(그림 VIII-1).
 - 추진전략 : 생애전반기 정책대상의 누적된 삶 영역의 불평등 완화 및 소외 예방을 위해 소외청년의 유형 발굴과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우대(사회통합), 정책소외 유형에 따른 도약기회 집중제공(대상특화), 초기청년기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및 연계 강화(제도조정) 등 3대 추진전략 제안
 - 추진과제 : 청년기본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정 등 사회정책 제도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센터의 게이트웨이 기능 확대를 포함한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주요 청년정책 영역별 개선/신규과제 제안
- 실태분석을 통해 취약성이 확인된 소외청년은 취약청년으로 집중 지원하되, 각종 급여 확대에 앞서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선결과제임.

비전	모든 청년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개선		
목표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누적된 삶 영역의 불평등 완화 및 소외 예방		
전략	1. 사회통합 : 소외청년 발굴과 격차 완화를 위한 우대 [접근성 제고] 2. 대상특화 : 소외유형을 고려한 도약기회 집중지원 [효과성 제고] 3. 제도조정 : 초기청년기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연계 강화[효율성, 형평성 제고]		
추진과제	법률 제·개정(안) :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청년기본법 개정 • (가칭)청년권익지원법 제정 • (가칭)청년자신형성지원법 제정 • 경제교육지원법 개정 • 청년고용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 시설외소 자원준비청년 지원입법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 청소년(한)부모 근거법 일원화 • (가칭)경제선지능인 지원법 제정 • 평생교육법 개정 등 검토	제도개선 : 사각지대 개선 •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선 • 공공데이터 연계기반 소외청년 지원 강화 • 전담인력 확충 및 공공사례관리 강화 • 북한이탈주민 통계 생산 개선 등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경제선지능청년 권익옹호 강화	청년정책 추진과제 : 격차 완화 • 청년센터 기능 확대 및 추진체계 정비 • 교육분야 : 학비지원 개선 등 • 일자리분야 : 근로안정망 강화 등 • 주거분야 : 주거기반 통합지원 등 • 복지,문화분야 : 자산형성이 가능한 기본소득 보장 및 정신건강 지원 • 참여,권리분야 : 권익보장,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활동비 지원) 등 [영역별 개선/신규 사업 추진]

그림 VIII-1. 소외청년 지원방향과 추진과제

청년종합연구 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협동연구총서 22-80-01
연구보고22-일반08

1부. 정책소외계층 청년과 지원 여건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7
1) 주관연구기관	7
2) 협력연구기관	8
3. 연구방법	9
1) 협동연구	9
2)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10
3) 실태조사 : 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10
4) 심층면접조사	11
5) 전문가 의견조사(AHP)	12
6) 기타 연구방법 : 추진과제의 정책화 과정	13
4. 연구추진체계	15

II. 선행연구 검토

1. 정책소외계층에 대한 논의	19
1) 사회적 배제 관점 기반의 정책소외계층	19
2) 사회적 배제 특성과 정책소외계층	21
3) 정책소외계층의 개념과 대응 방향	23
2.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논의	23
1) 이행기 청년과 정책소외계층	23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분절에 따른 한계	26
3) 다차원 빈곤 접근과 정책소외계층 청년	27
4)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개념과 대응 방향	31
3.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여건	33
1)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도입과 발전 개괄	33
2)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경과	34
3) 정책대상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화 시도와 한계	35
4) 정책소외계층 청년 정책지원 여건 분석	40
4. 소결 및 시사점	58
1)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특성과 접근방식	58
2) 소외청년의 유형 발굴 및 실태 분석	59
3) 통합적 접근과 지원 유형	60
4)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 여건	60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과 기준

1. 전문가 조사 설계	65
2. 전문가 조사 결과	66
1) 청년의 정책소외 유형에 대한 의견	66
2) 청년의 이행기 과업과 정책소외	70
3. 정책소외계층 청년 판단 기준	73
4. 소결 및 시사점	75

2부.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Ⅳ.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79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79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83
2.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88
1) 조사개요	88
2) 조사결과	91
3.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 과제	114
1)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 방향	114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21

Ⅴ.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27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127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129
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33
1) 조사개요	133
2) 조사결과	135
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57
1) 북한배경청년 정책지원 방향	157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66

Ⅵ.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79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179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181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86
1) 조사개요	186
2) 조사결과	187
3. 청소년부모의 정책지원 과제	222
1) 청소년부모 정책지원 방향과 추진과제	222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228

Ⅶ.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235
 -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235
 -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238
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241
 - 1) 조사개요 241
 - 2) 조사결과 242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262
 -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및 추진과제 262
 -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과제 265
 - 3)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274

3부. 정책제언

Ⅷ.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방향

1. 제안배경 283
2. 추진방향 288
 - 1) 추진전략 1(사회통합) 288
 - 2) 추진전략 2(대상특화) 289
 - 3) 추진전략 3(제도조정) 290

Ⅸ.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과제

1.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법률 제·개정 295
 - 1) 청년 관련 법률 제·개정 295
 - 2) 소외청년 유형별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302
2. 사회보장 제도개선(안) : 소외청년 사회통합 강화 305
 - 1)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선 305
 - 2) 공공데이터 연계기반 소외청년 지원 강화 306
 - 3) 전담인력 확충 및 공공사례관리 연계 강화 308
 - 4) 북한이탈주민 통계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확대 309
 - 5) 저소득 '자녀양육청년' 지원 입법과 정책 재설계 309
 - 6) 새로운 취약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제도 신설 310

3.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과제(안) : 세대 내 격차 완화	311
1) 기반구축 : 청년센터 기능 확대와 추진체계 정비	311
2) 교육분야 추진과제	312
3) 일자리분야 추진과제	316
4) 주거분야 추진과제	320
5) 복지·문화분야 추진과제	322
6) 참여·권리분야 추진과제	329

참고문헌	335

부 록	353

1. 2022년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설문지(웹조사)	355

Abstract	377

표 목차

표 I-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조사 개요	11
표 I-2. 심층면접조사	12
표 I-3. 전문가 의견조사(AHP) 개요	13
표 I-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13
표 I-5. 콜로키움 및 정책포럼 개요	14
표 II-1. 김성아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정책 수요 및 공급 정합성 평가	37
표 II-2.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일자리 분야)	41
표 II-3.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주거 분야)	43
표 II-4.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교육 분야)	44
표 II-5.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복지·문화 분야)	46
표 II-6.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참여·권리 분야)	47
표 II-7.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과제 현황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정합성 검토	50
표 II-8.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일자리 분야)	51
표 II-9.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주거 분야)	52
표 II-10.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교육 분야)	52
표 II-11.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복지·문화 분야)	53
표 II-12. 정책소외계층 청년 사업 현황 : 청년특별대책	54
표 II-13. 17개 광역시도 청년 기본 조례 내 지원 내용	56
표 II-14. 17개 광역시도 청년 기본 조례 내 우선 지원 대상	57
표 III-1. 전문가 조사 개요	65
표 III-2. 전문가 조사 질문 리스트	66
표 III-3. 소외청년 유형별 소외 정도(전문가 의견조사)	69
표 III-4. 소외청년의 보편적 속성(전문가 의견조사)	70
표 III-5. 정책소외청년의 유형과 판단 기준	74
표 IV-1. 청소년쉼터 주요 퇴소 사유	81
표 IV-2. 최근 3년간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대상 청년의 가정환경	81
표 IV-3. 보호소년 현황	82

표 IV-4. 미성년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동종)	83
표 IV-5. 미성년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이종)	83
표 IV-6.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자립준비지원 내용	86
표 IV-7. 자립수준비교 : 사적 자본영역	87
표 IV-8. 자립수준비교 : 인적자본영역	87
표 IV-9. 자립수준비교 : 사회적 자본영역	87
표 IV-10. 자립준비청년 면접조사 대상자 현황	90
표 IV-11. 조사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1
표 IV-12. 대학진학 경험 및 향후 진학 의사	92
표 IV-13. 대학 졸업 유예 경험 및 이유	93
표 IV-14. 취업자의 근로시간 및 월소득	94
표 IV-15.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	95
표 IV-16.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교	96
표 IV-17. 부당노동행위 피해 및 위험 노출 경험	97
표 IV-18. 부채(채무) 여부 및 사유	99
표 IV-19. 생활비 지출 및 지원	101
표 IV-20. 사회활동의 정도	102
표 IV-21. 사회적 고립감	103
표 IV-22. NEET1) 상태 경험 여부 및 기간 : 시설퇴소청년	103
표 IV-23. 18세 이전의 부정적 생애 사건 경험 비교	104
표 IV-24. 시설 및 부적절한 주거 경험과 거주 기간	106
표 IV-25.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교1)	107
표 IV-26.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108
표 IV-27.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시설퇴소청년)	109
표 IV-28.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	110
표 IV-29. 자살 시도에 대한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111
표 IV-30. 취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제도 이용 경험	112
표 IV-31. 청년지원서비스 수요(욕구) 비교	113
표 V-1. 20대, 30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28
표 V-2. 정착지원협의회 유관부처 및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131
표 V-3.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33
표 V-4.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135
표 V-5.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138
표 V-6. 대학 교육 만족도_대학 전공 적합성	140
표 V-7. 취업 준비 경험_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받는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142

표 V-8.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143
표 V-9.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144
표 V-10. 선호하는 가치_ 일 중시 VS 여가 중시	147
표 V-1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148
표 V-12.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149
표 V-1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151
표 V-14. 대면교류 - 가족	152
표 V-15. 채무 발생 이유	154
표 V-16. 삶의 만족도 - 미래 안정성	156
표 V-17.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나의 인생	157
표 V-18. 북한이탈주민 연령('21.6월말 기준)	161
표 V-19. 북한이탈주민 성별 고용률(2021년)	161
표 V-20. 출생지별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내역 비교	163
표 VI-1. 청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추정치(2017~2020)	181
표 VI-2.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83
표 VI-3.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184
표 VI-4.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 모집 경로별 응답 인원	187
표 VI-5.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비교 가능한 문항	187
표 VI-6. 응답자(청소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189
표 VI-7. 응답자(일반 청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190
표 VI-8. 현재 거주지	190
표 VI-9. 현재 주거 형태	191
표 VI-10.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주거비용 지불 방식)	192
표 VI-11. 현재 거주지의 주거 비용을 마련한 사람	193
표 VI-12. 주거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의 거주지 점유 형태	193
표 VI-13. 향후 주거지 마련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194
표 VI-14. 신체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195
표 VI-15.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195
표 VI-16.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의 조치	196
표 VI-17.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196
표 VI-18. 응답자의 우울 정도	197
표 VI-19. 응답자의 아동·청소년기의 경험	198

표 VI-20.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	199
표 VI-21. 맞벌이 여부	200
표 VI-22.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	201
표 VI-23. 현재 일자리의 고용 형태	201
표 VI-24. 근로시간 유형	202
표 VI-25. 근로소득	202
표 VI-26. 지난 4주 내 구직 활동 여부	203
표 VI-27.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	203
표 VI-28. 채무 유무 및 평균 채무액	204
표 VI-29. 채무 발생 이유	204
표 VI-30. 물질적 박탈 수준	205
표 VI-31. 교육 수준	206
표 VI-32.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206
표 VI-3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208
표 VI-34.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 및 인지여부	209
표 VI-35.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210
표 VI-36. 임신·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 및 인지 여부 ..	211
표 VI-37.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211
표 VI-38.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212
표 VI-39. 학업 중단 이유	213
표 VI-40. 재학 중인 응답자가 생각하는 학업 지속에 가장 큰 어려움 (1순위)	214
표 VI-41. 자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학력	215
표 VI-42. 지금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받고 싶은 교육 유형	215
표 VI-43. 자녀 양육 시 힘든 점(1순위)	216
표 VI-44.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필요 및 인지 여부	217
표 VI-45.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218
표 VI-46. 첫 자녀 임신출산 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219
표 VI-47. 첫 자녀 양육 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219
표 VI-48. 자립 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220
표 VI-49.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1순위) ..	221
표 VI-50. 청소년부모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222
표 VI-51. 청소년부모 현황(2020년 출생자 기준)	229

표 VI-52. 청년정책기본계획(일부)	230
표 VII-1. 경계선지능인의 주요 어려움	236
표 VII-2. 국외 경계선지능인 진단기준 및 지원방법	239
표 VII-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개요 ...	242
표 VII-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	243
표 VII-5. 청년기 희망하는 지속학습 주제	244
표 VII-6. 일상생활의 우울감 수준	245
표 VII-7.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신적 건강 수준	245
표 VII-8. 일상생활 도움 필요 수준	246
표 VII-9. 일상생활 만족 수준	247
표 VII-10. 만족하지 않는 삶의 영역	248
표 VII-11. 현 취업 여부	248
표 VII-12. 고용형태	249
표 VII-13. 고용직종	249
표 VII-14. 플랫폼 종사자 여부	250
표 VII-15. 현 직장 이직 의향	250
표 VII-16. 직장생활 주된 어려움	251
표 VII-17. 평상 시 외출 수준	251
표 VII-18.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	252
표 VII-19. 타인의 괴롭힘 상황	253
표 VII-20. 타인의 괴롭힘 내용 및 대응	254
표 VII-21. 범죄 연루 여부	254
표 VII-22. 청년정책 인지 및 이용 현황	255
표 VII-23. 청년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시 주된 어려움	255
표 VII-24. 정부의 필요 지원 영역	256
표 VII-25. 필요 지원 서비스	257
표 VII-26. 심층면접 분석 결과	257
표 VII-27. 종사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260
표 VII-28. 부모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261
표 VII-29.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266
표 VII-30. 기존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예시)	267
표 VII-31. 경계선지능청년의 주요 지원 욕구	268
표 VII-32. 주요 지원 영역별 제도 재설계 및 신설	272
표 VII-33.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274
표 VII-34. 청년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275
표 VII-35. 청년센터 기능 재정립	276

표 VII-36.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재설계 및 신설	279
표 VIII-1. 정책소외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전문가 의견조사 2차 결과)	287
표 IX-1. 「청년기본법」 개정	297
표 IX-2. 「경제교육지원법」 개정	299
표 IX-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300
표 IX-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300
표 IX-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301
표 IX-6.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304
표 IX-7.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개정 ...	305
표 IX-8.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선(안)	306
표 IX-9. 국정과제에 따른 소외청년 추진과제(안)	332

그림 목차

그림 Ⅰ-1.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유형 및 연구범위	5
그림 Ⅰ-2. 1차년도 협동연구 추진체계	9
그림 Ⅰ-3. 1차년도 연구추진체계	15
그림 Ⅰ-4. 3개년 협동연구 추진 계획(안)	16
그림 Ⅱ-1. 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위험과 결과 예시	25
그림 Ⅱ-2. 김문길 외(2017)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	28
그림 Ⅱ-3. 2008~2018년 다차원 빈곤 현황과 추이	29
그림 Ⅱ-4. 2008년과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비교	31
그림 Ⅲ-1. 김성아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	67
그림 Ⅳ-1.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유형	79
그림 Ⅳ-2.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80
그림 Ⅳ-3.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자 특성	81
그림 Ⅳ-4. 연차별 조사 표본 규모와 설계(안)	89
그림 Ⅳ-5. 시설퇴소청년이 이용한 대출기관	100
그림 Ⅳ-6. 생활비 지출 항목별 비중	100
그림 Ⅳ-7. 부채(채무)의 항목별 비중	100
그림 Ⅳ-8. 시설퇴소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시설 이동 경로	115
그림 Ⅳ-9. 미국(上), 영국(下)의 아동·청소년·청년 자립지원 체계 ..	120
그림 V-1.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136
그림 V-2.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139
그림 V-3. 취업준비 여부	141
그림 V-4.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45
그림 V-5. 부모 동거 여부	146
그림 V-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150
그림 V-7. 평소 감정 -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153
그림 V-8. 갚아야 할 채무 여부	153
그림 V-9.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근속년수 ...	155

그림 VI-1. 청소년부모 연령	179
그림 VI-2. 청소년부모를 위한 통합 지원 경로	224
그림 VI-3. 일본의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연계 흐름	232
그림 VII-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265
그림 VII-2.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277
그림 VIII-1. 소외청년 유형별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285
그림 VIII-2. 정책소외청년 지원방향과 추진 과제	288
그림 VIII-3. 소외청년의 생애주기 지원 과정(안)	291
그림 IX-1. 소외청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307
그림 IX-2. 소외청년 사례관리체계 개선방안	308
그림 IX-3. 청년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추진과제	312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추진체계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후 지난해부터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1~'25)'을 토대로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 전 생애에서 특정 연령대의 대상을 지원하는 정책은 아동, 청소년, 노인에 국한되었지만 이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도 제도적 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가 오직 나이를 이유로 청년(youth as an age group)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성장과 불안정성이 모든 청년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그 정도가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위기의식,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 제정 당시부터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동질적인 정책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요국과 달리 청년정책(youth policy) 대상 연령이 높고 지원 기간이 길다는 문제, 개별 청년들이 사회적,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요인과 그로 인한 결과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이로 인해 모든 청년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류 집단에서 벗어난 소수자일수록 연령을 기준으로 운용되는 각종 제도와 서비스의 접근성과 수혜율도 낮아 정책 성과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청년 담론과 정책은 '특수한 욕구를 지닌 사회적 소수자 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대체로 미흡하였는데, 이들을 '소수의 청년' 보다 '사회적 약자'로만 규정할 경우 차별과 배제, 형평의

1)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반면 그간 청년정책이 수립,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취약·위기 청소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자 정책과 빈곤, 노동, 복지, 주거, 보건·의료 등 주요 사회정책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였다. 이에 취약계층으로 식별되지 않아 사회안전망에서 포착이 쉽지 않고 유형화도 어려운 이들 청년들은 사회정책 전반에서 사각지대에 잔존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정책은 이행기 관점에서 벗어나 ‘세대 내 격차 완화’라는 방향과 목표 속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이정봉, 2021).

한편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자 정책은 국제협약과 기본법을 토대로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반면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이 유일한 법적 근거인데, 하위법령과 지자체 조례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단을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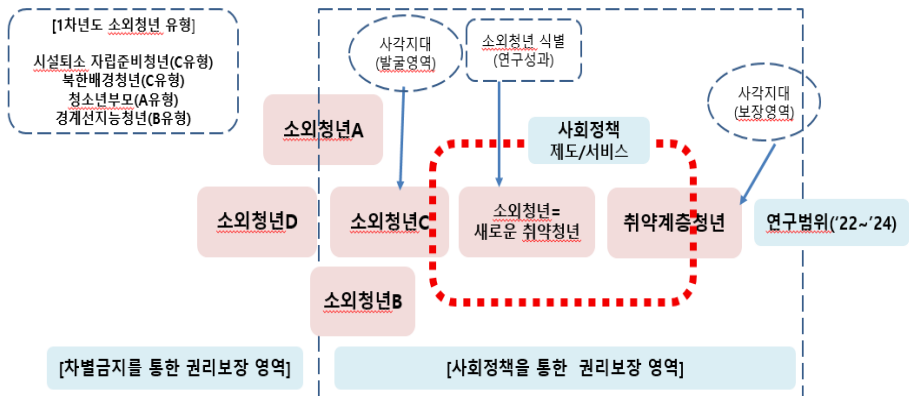
특히 현행 청년정책의 주요 기조 중 하나가 ‘능력중심 공정 출발 지원’인데 ‘공정’의 정책기조와 ‘능력주의(meritocracy)’ 하에서 필히 배제되는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권리는 능력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존엄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를 없앨 수는 없지만 서열화와 차별, 경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²⁾ 이에 청년정책은 평등의 원리를 토대로 공적 제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청년 세대 내 격차 완화에 기여할 때 정책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고립·은둔청년, 미취업 또는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들의 삶 영역 전반에서 일반 청년과의 격차를 다면적으로 진단하기보다, 여전히 이행기 과정에서 정체가 놓인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적응을 돕는 지원이 주를 이룬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일반적인 청년 담론에 포섭되지 않는 소외 청년, 청춘을 논할 때 슬그머니 제외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허태준 외, 2022). 이러한 청년의 문제나 위험(youth as a problem

2)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한가? 이에 대해 청소년운동 활동가 공현(2021)은 ‘능력주의는 분명 차별이지만 차별이 아닌 평등, 공정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능력주의 하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시정 조치나 우대 조치 역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능력주의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능력과 기여가 적은 청년은 자기 능력 정도의 대우만 받아야 하는가? 그런 사회가 과연 정의롭고 좋은 사회인가? 능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공동체의 자원은 전체 구성원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하는가?’ 등 정책소외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하는 정당성은 이들의 존엄을 토대로 해야 한다. 능력주의와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박권일 외(2021)를 참고할 수 있다.

or crisis)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청년정책이 확장될수록 세대 내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는데 이는 “선별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범주의 정책대상 내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이정봉, 2021). 즉, 기존 ‘취약청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면서 그간 취약청년으로 식별조차 되지 않았던 ‘소외된 청년’의 존재와 실태를 확인하고 취약성을 근거로 ‘새로운 취약청년’을 발굴하는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7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 대책이 발표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대책 마련 이전까지는 연장보호대상일 뿐 ‘청년’으로 인식되지 못한 대표적인 유형이다. 반면 「아동복지법」이 외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은 시설에서 생활한 기간과 취약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자립준비청년의 ‘지위’를 얻지 못한 채 관련 정책에서 소외된 상황이므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³⁾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청년정책에서 소외된 소수 집단(alienated class)의 존재와 실태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과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를 통해 권리보장이 가능한 영역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사회정책을 토대로 권리보장이 필요한 영역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그림 1-1).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1.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유형 및 연구범위

3) 허태준 외(2022)는 “세상의 모든 청년”에서 이러한 청년의 유형으로 자립준비청년, 학교밖청소년, 북한이탈청년, 장애청년,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청년, 제도 밖 청년예술가와 청년 노동자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성인이 이행 과정에서 정체가 있는 이들 뿐 아니라 청(소)년기 과업을 완수하기 전에 이미 성인이 과업을 수행하는 이들은 청년으로 정체화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존재이며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더 많이, 더 자주 호명되어야 하는 이들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시설퇴소청년)’⁴⁾의 정책 소외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최근 이들에 대한 국비 투입이 신설, 확대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대상의 범위 자체가 제한적이라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간에도 배제로 인한 박탈감 등 정책소외의 문제가 극명한 대상이기 때문이다(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류정희, 이상정, 김지연, 김지민, 2020; 김지연, 윤철경, 2021; 허태준 외, 2022). 또한 현행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제도가 주관부처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 연령이 초과된(aging out) 취약·위기청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 간 통합 논의와 별개로, 청년정책에서 이들 ‘새로운 취약청년’에 대한 접근을 병행할 경우 지원 효과 등 실익이 클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뿐 아니라 개별 법률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만 19세 이상 시설퇴소 청년’의 자립과정과 정책소외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간 연계 지점과 청년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극소수자로 살아가는 다양한 청년 집단의 유형을 발굴하고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통합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3개년에 걸쳐 조사하면서 각 연차별 정책소외 청년의 유형을 병렬로 배치하는 협동연구로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표준에서 벗어난 생애과정, 아동·청소년기부터 누적된 귀속지위가 자원과 기회의 결핍으로 이어져 청년의 정체성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들의 실태를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일련의 공통적인 속성과 현안을 발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차년에는 시설퇴소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북한배경청년(통일연구원), 청소년기에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청소년부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립생활 전반에 현저한 제약이 있음에도 장애인지원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대표적인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우산 개념(umbrella conceptualization)이며, 소외계층의 유형과 지원 여부는 사회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각 유형별로 정책연

4) 지난 해 7월 13일 대책 발표 이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 상 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자립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소년, 「소년법」 상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에서 자립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 청년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 규정하였고, 편의 상 ‘시설퇴소청년’, ‘00시설퇴소자’ 등을 혼용하였다.

구의 필요성에 대한 진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 포럼 등을 통해 2차년, 3차년에 다루어야 할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유형 발굴을 병행하였다.

이들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아동·청소년기부터 누적된 결핍과 박탈, 배제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개인, 관계, 활동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취약성에 노출되어 청년정책의 주류 대상에 포섭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 정책 성과에서도 소외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분절적인 추진 속에서 청년 내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존재와 유형, 공통의 욕구,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와 정책소외의 양상, 삶의 각 제반 영역에서 이들과 일반 청년과의 격차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및 분야별 사회정책 간의 접점을 확인하여 청년의 정책소외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접근 방향과 수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정책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취약청년'의 발굴과 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및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1) 주관연구기관 : 협동연구총괄 및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1차년)

(1) 정책소외계층 청년 및 지원 여건 분석

주관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협동연구를 총괄하고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소외청년의 유형별 취약성을 토대로 '새로운 취약청년'에의 편입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소외와 연장성에 있는 사회적 배제관점, 다차원 빈곤관점, 취약청년 유형화 시도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청년'에 포섭되지 않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기존 정책에서 식별되지 않는 정책소외청년의 새로운 유형과 특성(요소,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귀납적인 접근을 병행하여 2차년도 협동연구 주제인 소외청년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1차년도 소외청년 유형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내 이들에 대한 지원 여건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2022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1차년)

주관연구기관은 만 19세 이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과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2년에 1차년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준비청년(시설퇴소 보호종료아동만 해당하며 위탁보호 종료아동은 제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소년, 「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국가가 운영·지원하는 시설과 기관에서 자립지원을 받은 만 19세 이상 청년 등 세 집단이다. 이들은 개별 법률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법률과 정책의 분절에 따른 자립지원 내용이 상이하여 이들의 정책소외 실태와 자립 도달 과정, 지원효과 등은 3개년에 걸쳐 분석하고 정책 재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1차년에는 2,500명을 목표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1차년 코호트'를 구성하여 세 집단의 생활실태와 일반 청년 집단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차년, 3차년에도 표본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유실된 표본만큼 신규 표본을 충원하여 자립 연차에 따른 자립과정과 지원효과를 역동적으로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1차년도 조사 내용과 결과는 세부보고서에 기술하였다.

(3) 정책소외청년 지원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주관연구기관은 1차년도 정책소외청년 유형별 실태조사를 총괄하고, 각 유형별 청년 집단과 일반 청년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근거로 정책 지원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의 정책동향과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반영하였으며, 1차년도 소외청년 대상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이들의 삶 영역의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개선(안)과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과제(안)을 도출하였다.

2) 협력연구기관 : 정책소외청년 유형별 실태 분석 및 정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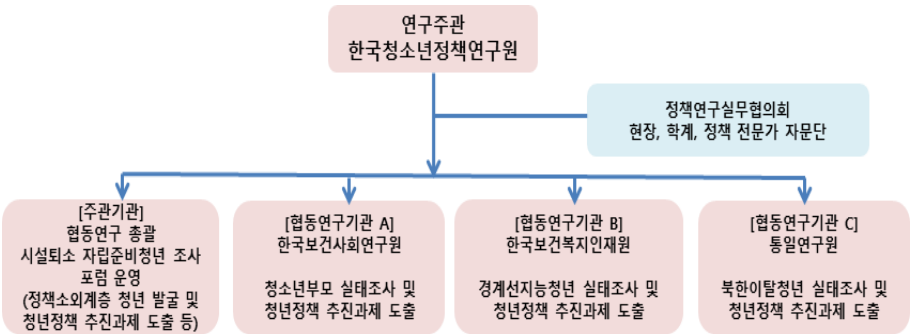
1차년도 협력연구기관은 통일연구원(북한배경청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청소년부모), 한국보건복지인재원(경제선지능청년)이며, 각 유형별 청년을 둘러싼 현안과 쟁점을 점검하고 각 유형별 청년의 정책소외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하여 각 협력연구기관이 담당하는 소외청년의

유형별 실태분석 시 일반 청년 대비 취약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원자료에 대한 분석을 각각 공통적으로 수행하였다.

3. 연구방법

1) 협동연구

- (1) 통일연구원 : 북한배경청년의 소외실태 및 정책개발
 - 만 19세 이상 북한배경청년(제3국 출생자 포함) 생활실태조사, 심층면접조사, 2차 자료 분석(일반 청년 비교) 등을 담당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청소년부모의 소외실태 및 정책개발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청년부모의 실태 및 욕구 비교), 면접조사 등을 담당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경계선지능청년의 소외실태 및 정책개발
 - 만 19세 이상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발달장애인, 일반 청년 비교), 당사자 및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등을 추진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2. 1차년도 협동연구 추진체계

2)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정책소외청년을 둘러싼 담론과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통계와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관련 선행연구 등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한 협력연구기관은 소외청년과 일반 청년과의 삶 영역에 대한 격차를 확인하고자 국가승인통계인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와 가족, 교육, 경제,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7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주요 영역별 대표 문항을 선정, 비교하는 방식으로 격차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21년 조사 문항에 포함되지 않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변화 정도 등을 비교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와의 공통 문항을 개발하고 그 결과값을 활용하였다. 이 외 시설퇴소청년과 동년배 일반 청년과의 정신건강 관련 특성과 차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2021년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동일 문항을 활용하고 그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3) 실태조사 : 2022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집단 내 소외 실태와 일반 청년 대비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①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아동,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자립준비청소년, ③ 「소년법」 상 소년원을 출원하여 전국 8개 자립생활관 등에서 사례관리를 받거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만 19세 이상 청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개 집단의 지원효과를 역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3개년에 걸쳐 코호트조사(cohort study)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1차년도 조사영역은 ① 성인의 의미, ② 교육 및 훈련, ③ 경제와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관계 및 참여, ⑦ 서비스 이용 및 요구 등 7개 영역이다(표 I-1). 2차년, 3차년도에는 각 연차별 비교를 위해 1차년도 조사영역과 문항을 일부 유지하되 일반 청년 집단과의 격차 확인 및 청년 관련 현안을 감안하여 결혼과 가족, 권리와 참여, 문화여가, 자립역량 등의 신규 영역을 포함할 계획이다.

표 I-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약 2,500명 ※ '21년 현재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500명 이상 포함 ※ 각 유형별로 표집률이 없거나 모집단 규모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사 규모 할당 - 「아동복지법」 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1,95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자립준비청소년 400명 - 「소년법」 상 소년원 출원 자립준비청년 150명	1차년 코호트 구축 완료
대상자 선정방법	-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담당자 추천 - 추천자 가운데 연령 등 확인을 거쳐 조사참여에 동의한 경우 선정	
1차년도 조사영역	- ① 성인의 의미, ② 교육 및 훈련, ③ 경제 및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관계 및 참여 ⑦ 서비스 이용 및 요구	
조사방법	웹조사	
조사시기	5~8월	
비 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완료 (승인번호 202206-HR-고유-012)	

1차년도 자료 분석의 초점은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와 일반 청년과의 비교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설퇴소청년의 교육과 훈련 경험, 경제 및 고용상태와 근로활동의 특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주거 관련 특성, 유의미한 타자와의 관계 특성, 청년 대상 주요 제도의 이용 경험 등 삶 경험 전반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들의 삶 영역 특성이 일반 청년 집단과 어떤 차이점 혹은 취약성을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4) 심층면접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삶 경험 속에서 정책소의 현안을 파악하고 지원 요구와 효과, 개선 과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자 당사자 청년에 대한 개별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표 I-2).

표 I-2. 심층면접조사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조사대상	- 「아동복지법」 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자립준비청소년 10명 - 「소년법」 상 소년원 출원 자립준비청년 10명 등 총 30명	
선정방법	-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담당자 추천 - 추천자 가운데 실태조사 참여자 선별 - 수도권, 비수도권 거주자를 각각 5명씩 할당 - 면접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최종 선정	
조사내용	- 아동·청소년기의 삶 경험과 주요 생애사건 - 시설입소 및 퇴소경로와 과정, 시설생활이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일경험, 주거 등 생활여건과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 전망 등	
조사방법	연구자가 1:1 개별면접 방식으로 실시	
조사시기	7~8월	
비 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완료 (승인번호 202206-HR-고유-012)	

5) 전문가 의견조사(AHP)

사회정책 전반에서 ‘취약청년’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거나 새로운 취약청년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소외 청년의 유형을 확인하고, 청년의 이행기 과업 속에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소외청년의 보편적인 속성을 확인하고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및 사회정책 분야의 현장, 학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소외청년과 관련된 현안을 유목화하고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자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였다(표 I-3).

표 I -3. 전문가 의견조사(AHP)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조사대상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및 사회정책 분야 현장, 학계 전문가 50명	
선정방법	- 해당 분야별 대표성 있는 전문가를 연구진이 임의 선정 - 정부 부처, 협동연구기관의 추천 병행	
조사내용	- 1차 : 정책소외청년의 유형과 속성, 소외청년 지원방향과 추진과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현안, 청년정책 개선과제 등(개방형 문항) - 2차 : 정책소외청년의 유형과 속성 평정,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평정	
조사방법	웹조사	
조사시기	5월(1차조사), 9월(2차조사)	
비 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완료 (승인번호 202206-HR-고유-012)	

6) 기타 연구방법 : 추진과제의 정책화 과정

(1)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연구의 설계 및 진행 단계별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정부부처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결과를 연구 전반에 반영하였다(표 I -4).

표 I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차수	안건	참석기관	일시
1차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자립생활실태 및 관계부처 협업 추진과제 도출	교육부(차관보, 사회정책조정지원팀장)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연구진	22.4.28
2차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 및 현안 점검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연구진	22.5.13
3차	취약청년 유형별 실태 분석 과제 협의회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22.6.3

(2) 콜로키움 및 정책포럼

정책소외청년 관련 정책 현안과 쟁점을 진단하고, 사회정책 추진 방향과 청년정책 내 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콜로키움과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협동연구기관 간의 연구 방향과 내용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상시적인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표 I-5).

표 I-5. 콜로키움 및 정책포럼 개요

차수	주제	참석범위	일시
1차	정책포럼 “협동연구기관 연구설계, 사회정책(청년정책) 과제”	청년정책조정위 위원장, 민간위원회 부위원장, 협동연구기관 연구진 전체 등	22.5.19
2차	콜로키움 금융소외청년과 정책과제 : 과도한 부채부담청년 자립지원 과제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례)	전국 청소년자립지원관 실무자 약 30명, 원내 참석 희망자 협동연구기관 연구진 등	22.6.2
3차	정책포럼 “소외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지원사례”	발제자(손지현교수(신라대), 김규식센터장(청주청년센터), 조용화팀장(청년재단)), 지정토론자 4인, 협동연구기관 연구진 등	22.9.29
4차	정책포럼 “협동연구기관 연구성과 보고”	현장 및 유튜브 참여	22.11.15

4.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협동연구로 추진한다. 1차년도 연구주제와 협동연구기관은 '21년 일반사업(협동연구) 기획과정에서 발굴, 확정되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별도 연구내용 이외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 북한배경청년, 청소년부모, 경계선지능청년 등 협력연구기관의 정책연구가 병렬적으로 추진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그림 I-3). 본 연구의 연차별 연구 목적과 내용, 주요 연구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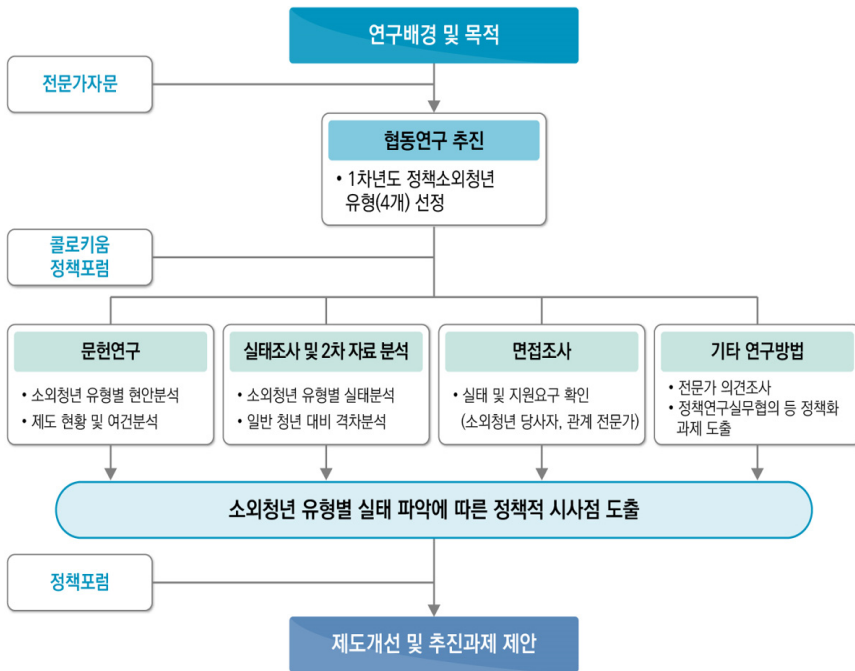


그림 I-3. 1차년도 연구추진체계



그림 1 -4. 3개년 협동연구 추진 계획(안)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1. 정책소외계층에 대한 논의
- 2.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논의
- 3.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여건
- 4. 소결 및 시사점

1. 정책소외계층에 대한 논의

1) 사회적 배제 관점 기반의 정책소외계층

이 절에서는 ‘정책소외계층’을 정의하고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연구에서 주목하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고유한 특성과 공적 지원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⁶⁾에서는 ‘정책’을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의한다. ‘소외’는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하는 상태, ‘계층’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으로 정의한다. 즉, ‘정책소외계층’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의 사전적인 정의를 종합하면 ‘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공정책에 의한 지원 범위에서 마땅히 포괄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배제된 상태라는 문제의식을 내포한다.

이러한 정책소외계층에 대한 관점과 공적 지원의 당위성은 1974년 프랑스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잘 맞지 않는 사람(social misfits)’을 지칭하는 행정용어로 사용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Bossert, Conchita, & Vito, 2007) 논의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르누아르(Lenoir, 1974; Van Regenmortel, De Donder, Dury, Smetcoren, De Witte, & Verté, 2016에서 재인용)는 ‘사회보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는 1997년에 사회적 배제 기구(Social Exclusion Unit)를 구성하여 사회적 배제 완화 관점에서 관련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였고⁷⁾, 유럽연합은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적극적

5) 이 장은 김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백혜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서 2022년 3월 29일 검색)

7) Independent, (1997.12.8.). Blair: Why we must help those excluded from society. Independent, 2022년

으로 대응하는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등⁸⁾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정책 실무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학계와 국제기구도 사회적 배제를 개념화하는 노력을 병행했는데, 영국 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와 경제사회연구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는 사회적배제분석센터(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CASE)⁹⁾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수행중이다. 특히 CASE가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를 모아 발간한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Hills, Le Grand, & Piachaud, 2002)은 논쟁적인 개념을 정리한 바 있는데, Burchardt 외(2002a)에 따르면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사회문제에 의해 주변화된 집단'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포용(inclusion)을 통해 배제를 해소하면 사회적 연대(solidarity)가 실현되기 때문에 소외(marginalization), 슬럼화(ghettoization), 하층 계급(underclass), 취약계층(the vulnerable)은 배제의 대표적인 유의어로 설명된다.

유엔(United Nations, UN)도 사회적 배제 해소를 전략적 목표로 하는데¹⁰⁾, 저개발국의 빈곤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관리해왔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다차원적인 정책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관리를 결의하였다. 특히 2016년에 발간한 「세계사회상황보고서(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에서 SDGs를 관리하는 정책전략으로서 사회적 배제 해소를 강조하였는데, 보고서는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인종과 민족, 출신 지역, 종교, 경제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모두 포용해야 한다”는 지향의 상반된 상황으로 사회적 배제를 설정하였다(UN, 2016). 또한 사회적 배제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와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는 과정으로 규정하였다(UN, 2016). 즉, 배제는 자원에의 불평등한 접근과 불평등

3월 29일 인출

<https://www.independent.co.uk/news/blair-why-we-must-help-those-excluded-from-society-1287576.html>

8) European Commission, (2001.1010.). Social exclusion : Commission takes first step towards EU poverty strategy. Press release. Retrieved March 29, 2022 from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01_1395

9) LSE 사회적배제분석센터 홈페이지 참조(<https://sticerd.lse.ac.uk/case/>)

10) 외교부 국제기구·지역협력체 유엔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www/wpge/m_3873/contents.do에서 2022년 3월 29일 검색)

한 참여, 그리고 불평등한 기회로 드러나고(UN, 2016),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UN, 2016).

2) 사회적 배제 특성과 정책소외계층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제된 사람 혹은 집단을 식별하고 배제된 차원과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배제의 특성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다차원성이다(Burchardt, Le Grand, & Piachaud, 2002b; Social Exclusion Unit, 2004; Van Regenmortel, et al., 2016; 문진영, 2004, 2010).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화를 시도하면서부터 소득과 같은 경제적 생활수준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활동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확장된 결핍에 주목하였다. Chakravarty & D'Ambrosio(2006)는 배제된 사람이나 집단과 배제 정도를 측정하는 다차원적 영역으로 재정적인 곤란, 기본 필수품, 주거 여건, 내구재, 건강, 사회적 관계, 일에 대한 불만족 등 14개 측정지표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배제 상태로 규정하였다. Burchardt, Le Grand, & Piachaud(2002a)는 배제가 발생하는 영역을 인적 자본, 물리적 자본, 재정적 자본으로 구분하였는데 인적 자본은 유전적 특성, 아동기 성장 환경, 교육 및 훈련 수준으로, 물리적 자본은 주거, 토지 등 소유 여부로, 재정적 자본은 자산과 부채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배제는 단일한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족이나 결핍 정도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기대되는 사회활동의 수행 여건에 주목한다.

둘째, 상대성에 의한 격차이다(문진영, 2004, 2010). 사회적 배제는 절대적인 결핍 뿐 아니라 타인이나 다른 집단이 누리는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상대적인 열위와 그로 인한 박탈과 거부에 주목한다. 교육이나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해 계층이 구분되고, 구분된 계층으로의 출입이 배타적일 경우 자원이 부족하여 상위집단에 소속되지 못할 경우 이들은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자원의 상대적인 수준이나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격차가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부터 제도와 이념 등 거시체계를 아우르는 주체의 다층성이다(Burchardt, Le Grand, & Piachaud, 2002a; Van Regenmortel, et al., 2016).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용인하는 삶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부터 지역사회 등

공적 영역에 이르는 다층적인 체계에서 개인과 집단이 적절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관건이다. Van Regenmortel과 그의 동료들(2016)이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환경적 관점(environmental perspectives)을 강조한 것, Burchardt와 그의 동료들(2002a)이 사회적 배제를 이해할 때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개인 단위에서 고려할 특성은 연령, 성별, 인종, 장애, 선호, 신념, 가치관 등이며, 가족은 파트너와의 관계, 자녀,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동체 수준에서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학교, 건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노동시장과 교통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 단위에서는 문화적 영향과 사회보장, 법률체계를, 전 지구적 단위에서는 국제교역과 이민, 기후 변화 등이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U.)의 생태체계모형과 유사한데, 그는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 메조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한 사람의 건강한 발달, 즉 양질의 삶이 결정된다고 보았다(김성아 외, 2021).

넷째, 시간에 따른 역동성이다(문진영, 2004, 2010; Van Regenmortel et al., 2016). 사회적 배제는 고정된 현상보다 배제된 상태와 정도의 변화에 주목하는데, 예를 들면 실업 상태의 사람은 현재 상황보다 향후 실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전망의 결핍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즉, 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상태의 지속, 또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의 박탈이 특정한 사람과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제된 상태는 역동적이며 어떤 계기로 인해 배제될 가능성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마지막은 비자발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Sen(2009)은 두 개의 굶는 상황을 통해 배제를 설명한 바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식단을 관리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먹거리를 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거나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는 경우다. 즉, 전자는 자발적 굶주림, 후자는 비자발적 굶주림이며 후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인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팬데믹으로 고독과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개인이 선택하고 때로는 향유하기도 하는 고독, 외로운 감정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지지체계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은 분명히 구분되며 이 역시 후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된 경우이다.

3) 정책소외계층의 개념과 대응 방향

이상에서 사전적 정의와 사회적 배제 관점을 종합하면 정책소외계층은 ‘생애 동안 취약한 경험으로 인해 공공정책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배제된 사람 혹은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은 다층적이며 다차원적인 상대적 결핍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완되거나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과 취약한 경험에 노출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누구나 복합적인 필요와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정책이 포괄하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외가 없도록 하고, 취약한 집단의 다차원적인 결핍에 지원을 집중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보충적인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논의

1) 이행기 청년과 정책소외계층

여기에서는 앞서 논의한 ‘정책소외계층’의 개념을 현세대 청년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의존적인 관계에서 아동, 청소년기를 보낸 후 청년이 이행기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독립적인 한 사람의 시민이자 사회구성원의 지위 획득을 지향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청년기 발달 과업의 내용과 실패는 “성인으로서의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이라는 오래된 논의에 뿌리를 둔다. Hogan & Astone(1986)은 “성인으로서의 이행”을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로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경로로 정의하였다. 즉, 하나의 과업이 아닌 경제활동, 주거, 관계 등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원가족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말하며, 원가족과의 의존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기부터 연령 연속적인 과정에 따라 다차원적인 이행이 이루어진다.

영미권과 유럽 등에서 논의된 전통적인 이행기 과업은 학교로부터 노동으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가족 형성(family formation), 독립 주거(independent residence)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Buchman & Kriesi, 2011). 부모를 중심으로 원가족의 자녀인 청년 당사자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행기 과업은 일련의 사건(transitional events)로 정형화된다. 즉, ① 학교 교육을 종료하고(completion of initiated schooling), ②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labor market entry), ③ 부모의

집을 벗어나(leaving the parental home), ④ 가족과 같은 최초의 고유한 관계를 형성하고(forming a first union), ⑤ 마침내 부모가 된다(entry into parenthood)(Billari & Liefbroer, 2010; Buchman & Kriesi, 2011).

한국의 맥락에서도 청년의 다차원적 이행기 과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의 청년 역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여 자신의 경제활동을 개시하고(변금선, 2018), 부모의 집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시작하며(정민우, 이나영, 2011; 노민지, 2022),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을 선택, 실현한다(김수정, 2020). 다만 이행기 과업의 순서와 배열, 상대적 중요도는 청년 당사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개인적 성취와 선호 등에 의해 지연되거나 상이할 수 있다(Hogan & Astone, 1986; 김규혜, 이승윤, 박성준, 2020; 채병주, 황선재, 2021). 여기에는 정답이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Buchman & Kriesi, 2011; 박나리, 김교성, 2021). 부모 세대를 통해 학습한 가족 기능에 대한 기대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이행기 과업이 다양해지고 ‘이상적인 경로’를 성취하기 위해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도 관찰된다(Billari & Liefbroer, 2010; Buchman & Kriesi, 2011).

특히 빈곤이나 장애, 원가족의 부재나 돌봄 부담 등 취약계층으로서의 배경을 가지는 청년이나 범죄 경력이 있는 청년은 충분한 정보와 지식, 자원이 부족하여 성인으로의 이행기 과업 달성을 성공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Osgood, Foster, Courtney, 2010; 김수정, 2020; 변금선, 2013; 변금선, 2018; 정세정, 최권호, 최보라, 2021). 더욱이 청년기 다차원적인 이행기 과업 달성의 실패는 개인의 삶에서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어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취약계층으로 남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UN, 2018; Van Regenmortel et al., 2016) 이에 배제되고 소외되어 있는 취약한 청년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들의 결핍을 보완하여 이행기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그림 II-1).



* 출처: 변금선(2022). 청년종합연구 포럼 토론문의 그림을 발췌함.

그림 II-1. 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위험과 결과 예시

이러한 배경에서 청년정책이 출범하였고, 특별히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할 것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3항). 다만 「사회적기업법(약칭)」¹¹⁾에서와 같이 법률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조문의 취지 상 공공부조를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별도의 사회적 지원 또는 우대가 필요한 청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제8조에서 청년 대상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소득·지출 등 경제생활, 주거·소비 등 생활환경,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 특성,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 건강·복지서비스 등’을 규정한 바,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낮은 경제 수준을 기반으로 주거, 일자리, 자립역량, 문화, 건강, 복지 등의 전반에서 열악한 특성과 낮은 제도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특성을 지닌다.

11) 동법 제2조에서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기업법」에서 취약계층은 빈곤층(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방지법(약칭)」상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결혼이민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피해자 및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분절에 따른 한계

현재 「아동복지법」 상 아동(18세 미만)과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9~24세 이하)은 9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연령이 일부 중복되는데,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을 담당하면서 연령 중복 문제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19~24세)으로 확대되고 생애주기에서 전반기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을 세 개의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별 입법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대상인 아동, 청소년,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법률과 조례에서 취지와 입법 목적에 따라 제각각 규정할 수는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¹²⁾ 특히 '90년대부터 2천년대 초반까지 청소년 관련 주요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해당 법률을 근거로 인프라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을 공히 정책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대상자 차별과 배제, 행정 상 낭비와 비효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의 발생(발굴)에 따른 초기진입(gate way), 조사사정, 보호조치, 자립지원, 보호종결, 예방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보호의 단계에서 보편성과 통합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류정희 외, 2021). 즉,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은 연령, 발생원인, 대상자 특성, 지원 요구에 있어 동질적인 정책대상임에도 법적 근거에 따라 서비스 지원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원 과정에서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다른 지원체제로 넘나들기도 어려워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련의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연장보호와 보호종료 후 법정 사후관리(5년)가 강화되면서 아동정책에서 20~30대 청년까지 지원(coverage)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고,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추진체계의 분절과 대상자 중첩에 따른 문제와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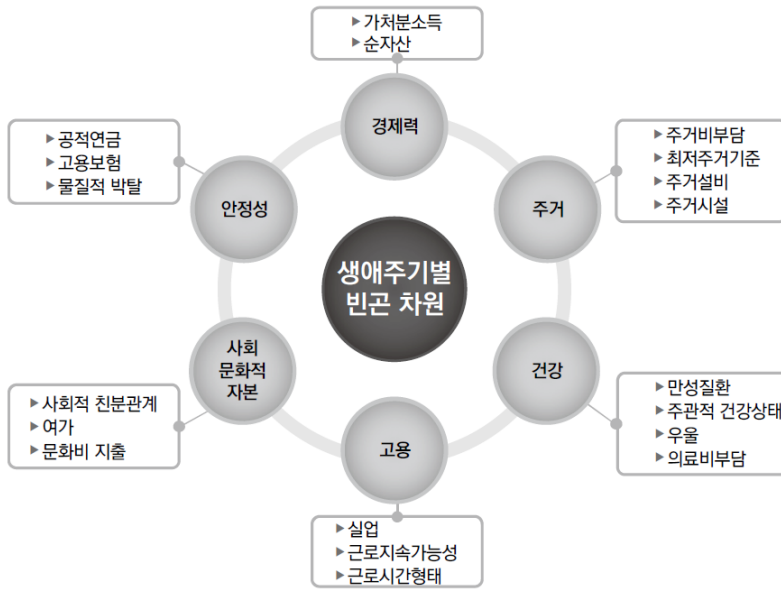
12) 개별 법률에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또는 19세 미만, 청년은 법률에서는 19세 이상 34세로 이하, 지자체 조례에서는 최하 15세부터 최장 49세 이하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심화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다면적인 불리(disadvantages)를 중첩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과 기회를 상실하고 탈 표준적인 생애과정을 이행하는 소외청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연령통합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간 분절로 인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중앙조정기구가 존재하지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제각각 가동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정기능은 그 자체로서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아동·청소년정책의 분절에 따른 초기청년의 정책 소외 문제를 완화하고 아동·청소년, 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접근을 기반으로 청년기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우대(affirmative action)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다차원 빈곤 접근과 정책소외계층 청년

앞에서 언급한 정책소외계층으로서 청년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행기의 다차원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공리적 원칙은 다차원성과 개인 수준의 상태를 집단과 국가 등의 집합 수준에서 합산하여 다룬다는 점에서 다차원 빈곤과 유사하다(Chakravarty, D' Ambrosio, 2006). 다차원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은 소득의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는 전통적 빈곤 측정 방식에서 삶의 많은(多)영역에서 발생하는 결핍으로 확장된 관점으로, 인도인 경제학자이자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센(Sen, 1999)의 이론에 기반을 둔다. 저개발국가에서도 개인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을 실현하는 능력을 강조한 센(1999, 2009)의 철학은 한국 청년에게도 역시 유효하다(김문길 외, 2017; 김문길, 김기태, 정세정, 김성아, 김기현, 2020; 변금선, 이해림, 2020). 특히 김문길 외(2017)는 현대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력과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등 6개 차원과 19개 지표로 구성된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을 개발한 바 있다(그림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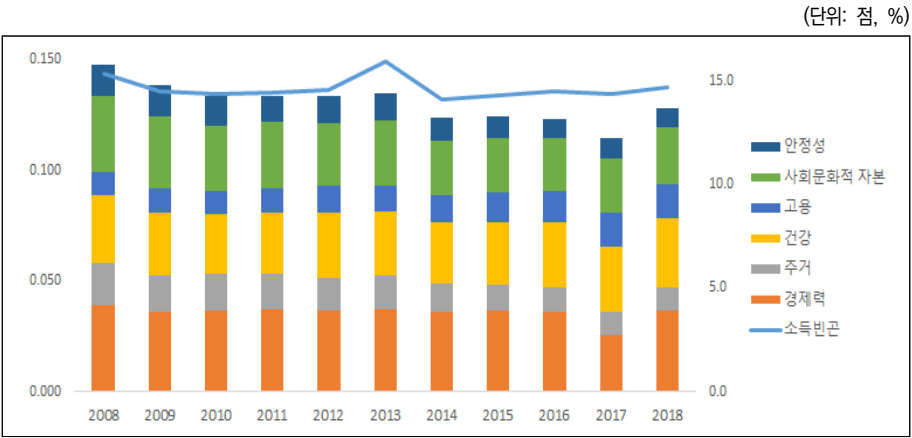
* 출처: 김문길 외, 2017, p.257의 그림 발췌

그림 II-2. 김문길 외(2017)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

먼저 경제력 차원은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으로, 주거 차원은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기준, 주거설비, 주거시설로, 건강 차원은 만성질환과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의료비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 차원의 측정지표는 실업, 근로지속가능성, 근로시간형태로, 사회문화적 자본은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문화비 지출로, 안정성은 공적연금, 고용보험, 물질적 박탈을 포함한다.¹³⁾ 변금선, 이혜림(2020)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 주목하여 그들의 빈곤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제, 교육 및 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등 7개 차원, 17개 지표를 구성,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김문길 외(2017)의 다차원 빈곤 접근을 중심으로 이행기 청년의 전반적인 특성과 취약성의 다차원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그림 II-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이후 약 10년 동안 소득 빈곤 수준은 2013년 일시적 증가 이외 15%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다차원 빈곤 수준은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6개 세부 차원을 보면 청년의 삶의

13)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의 빈곤선, 빈곤율, 활용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문길 외(2017)를 참고할 수 있다.

영역에서 일관성 있는 추세는 발견되지 않지만 경제력,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의 빈곤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3).



* 출처: 김문길 외 (2020)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그림 II-3. 2008~2018년 다차원 빈곤 현황과 추이

특히 청년의 다차원 빈곤에서 경제력 빈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자본, 고용과 건강, 주거 빈곤도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안정성 차원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아래 그림 II-6과 같이 청년의 연령대별 다차원 빈곤 수준을 살펴보면 20대 초반 청년은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을 완료하거나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두 가지 경로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역시 경제력 차원의 빈곤 수준이 높고, 그중에서도 일하는 20대 초반 청년은 고용 차원의 빈곤 수준이 높아, 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이행기 과업을 달성하는 시기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문화적 자본 차원의 빈곤도 다소 높아 사회활동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20대 후반은 고등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경제활동을 개시하거나 20대 초반에 이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고용 차원의 빈곤 수준은 다소 완화된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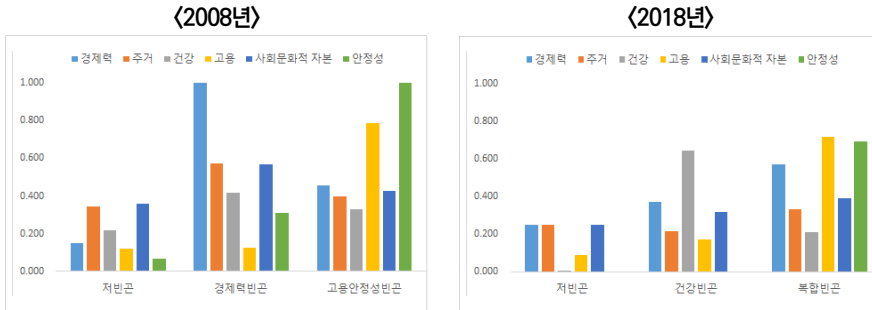
경제력 차원의 빈곤 수준은 여전히 높고, 주거 차원의 빈곤율이 20대 초반에 비해 약간 더 높아져 독립 주거의 과업 달성과 관련한 취약성을 보여준다. 또한 20대 초반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자본 차원의 빈곤 수준도 낮지 않아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행기 과업을 수행과 관련한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0대 초반은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주거 및 관계 독립의 이행기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경제력 차원의 빈곤 수준은 20대 초반 및 후반 청년에 비해 낮고, 고용과 주거 차원의 빈곤도 20대 후반 청년과 유사한 정도로 낮은 수준인 반면 사회문화적 자본과 건강 차원의 빈곤율이 도드라지게 높은 양상을 보인다. 즉, 30대 초반에는 일을 통한 경제적 독립의 이행기 과업을 차츰 완수하면서 경제활동에 집중하여 건강과 사회활동의 질 관리와 관련된 욕구와 지원 수요가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김문길 외(2017)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들은 결혼, 출산 등 전통적인 이행기 과업이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연령집단과의 비교 속에서 청년의 연령대별 빈곤 양상과 지원 요구를 조망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청년의 취약성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도 가변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림 II-4는 2008년과 2018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을 확인한 것인데 먼저 2008년 청년의 빈곤 유형은 모든 차원에서 빈곤할 확률이 낮은 저빈곤 집단과 달리 경제력 빈곤, 고용·안정성 빈곤 등 두 개 유형으로 확인된다. 즉, 이 시기 청년들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상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취약하거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은 경제적 빈곤에 취약하였고 이 경우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을 통해 청년의 취약성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2018년 청년 빈곤 집단 유형을 보면, 저빈곤 집단 외에 경제력, 고용, 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취약한 빈곤한 건강빈곤과 복합빈곤유형으로 분류된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은 고용상태의 질과 안정성이 모두 열악하고 동시에 소득 수준도 낮아 복합적인 욕구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경제력이 양호한 청년도 건강차원이 열악한 청년집단이 등장하여 삶의 질 차원에서 공적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중복빈곤 문제를 제기한 변금선, 이혜립(202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현세대 청년 대상 공공정책은 삶의 제반 영역을 면면히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실효적일 수 있음을 방증한다.

(단위: %)



* 출처: 김문길 외 (2020)의 [그림 4-4], [그림 4-6]

* 주: 기준년도 기준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시점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그림 11-4. 2008년과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비교

4)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개념과 대응 방향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①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행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② 공공정책(지원제도)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③ 당사자를 포함하여 미시환경 영역에서 자원, 정보, 기회가 제한(결핍)되어 있거나 거시환경 영역에서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④ 비자발적인 사유로 배제되거나, 제도의 지원 대상에 효과적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청년 또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에 대한 접근과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행기는 일종의 ‘발달적 위기(developmental crisis)’에 해당하므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이행기 취약성은 생애주기에서 일부의 청년만 경험하는 ‘상황적 위기(situational crisis)’와 달리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의 사회적 역할과 과업을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청년이 경험하는 위기이다.¹⁴⁾ 따라서 이 부분은 생애전환기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청년정책이 다루어야 할 고유한 영역임이 분명하다. 다만 모든 청년이 이행기 과업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14) 이행기 청년의 취약성은 초기성인기, 성인이행기, 발현성인기의 특성을 규명하고 정책적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과업들을 완수하기 전에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거나 발달과업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자체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불리(disadvantage)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기 취약성에 대한 대응은 청년의 시민적 권리 즉, 기본권, 사회권의 관점에서 논의가 요구되며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 청년의 존재와 실태를 규명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affirmative action)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간 조율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력 빈곤으로 인해 공공부조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빈곤 상태의 청년의 경우,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지원정책만으로 탈 빈곤, 탈 위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정(assessment)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김문길 등의 다차원 빈곤 논의에서 강조한 경제력 빈곤과 ‘복합빈곤’을 구분하는 것이 이후의 지원 내용과 과정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추진 전반에서 개별 청년의 귀속지위나 장기간 누적된 위기경험으로 인해 개인차원, 관계차원, 활동차원 전반에서 중복위기에 노출되거나 특수한 지원 요구가 있는 청년을 식별하는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들 대상 중 대다수는 아동·청소년기에 빈곤, 장애, 학대 등 범죄피해,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 이주배경 등 동년배들이 거의 경험하지 않은 위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경제력, (신체·정신)건강 문제와 장애 등 개인적 취약성, 원 가족과의 단절을 포함한 지엽적인 사회관계망, 불안정고용 등 열악한 일자리에 놓이게 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들은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정책의 핵심 지원대상이라는 점에서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생애주기에서 결핍의 상흔효과(scarring effect)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조기 개입 및 다차원적인 삶의 제반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대응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년을 인적자원으로 규정할 경우 교육과 훈련, 주거와 취업 등 문제에 초점을 둔다면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둘 수 있는데 미국, 뉴질랜드와 같이 교육, 훈련, 지원을 혼합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뉴질랜드의 ‘The youth service’ 등의 사례는 ① NEET 상태 등 위험군 청소년, ② 청소년 부모수당(Young parent payment)을 받는 16~19세 청소년, ③ 보호자와 동거할 수 없거나 청년수당(Youth payment)을 받는 16~17세 청소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학업 지원, 직업역량개발 훈련을 통한 고용 촉진, 금전관리(money management)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청년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되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은 지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과업 완수 시 추가 지원(incentive payments)을 제공한다(Humpage, 2018; Momsen, 2021). 특히 이 과정에서 청년 코치(youth coach)를 두어 개인별 욕구를 사정하고 개별 목표 수립과 달성 계획을 세우는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수당 중 주거비는 전액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바우처 카드(payment card)로 제공되며 이 단계의 지원이 종료되면 통합사례관리사(integrated service case manager)에게 연계되어 전환기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NZ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9).

3.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여건

1)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도입과 발전 개괄

국내에서 청년이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오래지 않다. 「청년기본법」이 2020년에 시행되고, 법률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은 같은 해 12월의 일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개 분야에서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관계부처 합동, 2020b)”로서 청년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정책을 종합했다(관계부처 합동, 2020b). 일자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면면에 주목한 것이다.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주거부담 경감, 교육 기회 보장, 생활수준 향상, 결정권 강화의 방향을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참여하여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b).

2021년 3월 3일에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에 의해 발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a).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청년 이행기 과업의 세 축 중 하나를 차지할 정도의 의미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고용 활성화 대책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대책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청년 일자리 확충, 능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구직청년 고용지원 강화, 제도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추진 과제를 개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로 통칭되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실업자 중에서도 장기간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구직단념청년으로

분류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한 일정험 프로그램 연계를 목표로 맞춤형 심리상담 및 구직준비를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고용 측면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2021년에는 4월에 10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였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5호), 2022년에는 22개 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09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제1차 기본계획의 틈을 메우기 위해 2022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d.). 여기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청년채용을 촉진하고, 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 지원하며, 청년창업활성화 패키지 지원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87개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청년세대 격차해소를 목표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월세 지원을 신설하며,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취약한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기본계획이나 고용 활성화 대책, 청년특별대책은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을 포괄하는 사업을 종합하고 있지만, 정책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관련 사업들을 나열하여 구조화하고 있어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청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재구조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저임금 청년의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같이 단위 정책의 대상으로서 일부 포괄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2)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경과

「청년기본법」에 의해 국가의 책임으로 청년정책이 확대되면서, 주요 취약계층 청년 유형에 따른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다. 2021년 7월에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c).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등 원가족의 돌봄체계가 결핍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만 18세 이후에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보호가 중단되어 자립을 시작하는 아동을 말한다. 오래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 하지만 원가족으로부터의 재정적 원조나 비화폐적 지지, 자립을 위한 정보와 지식이 부재한 등 여전히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년기까지 공적 지원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보호연장, 소득 및 주거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지원인력 및 기관 확충 등 당사자 입장에서 다양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으로 등장한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2022년 2월에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2). 이들은 청년기에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자신의 독립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이행기 과업을 이행에 지연을 경험하고 비자발적으로 미래 설계를 변경해야 하며 빈곤의 악순환 가능성에 노출되는 등 다각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집단이다. 가족돌봄청년은 법적 지위도 부재한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으로서 관련 지원체계에서도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공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정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지원 대책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과 돌봄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종합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3) 정책대상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화 시도와 한계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일반 청년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에 위한 특별한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구직단념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의 유형별 지원대책 이외에는 비어 있는 상황이다. 김성아 외(2021)는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특성에 의하여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를 시도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정책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째,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를 위해 인적 속성에 의한 대표적인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으로는 장애 청년과 이주배경 청년을, 관계 특성에 의해서는 특정한 유형의 관계 부담이 가중된 경제적 부양 청년, 청년돌봄자(가족돌봄청년), 한부모청년을, 관계가 결핍된 고립 청년을 검토했다. 일자리 특성에 의해 미취업한 청년 중에서는 니트 청년, 장기 실업 청년과 비자발적 실업 청년을, 취업한 청년 중에서는 저임금 근로 청년과 불안정 고용 청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을 검토했다. 경제력 특성에 의해서는 저소득 빈곤 청년과 과도한 부채 상황 부담을 지는 청년을 검토했으며, 각각의 유형은 배타적이지 않다.

둘째, 표 II-1과 같이 지원 정책과 취약계층 청년의 수요 간 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관련 정책의 대상자 포괄성 범위와 전달체계의 유무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했다. 취약계층 청년이 도움이 필요하고 공적 지원이 존재하며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보장’으로, 공적 지원이 있고 청년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용률이 낮은 영역은 ‘가려진 정책’으로 분류했다. 공적 지원이 있지만 정책 설계에 의해 청년이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포괄하는 영역은 ‘부분 사각지대’로, 취약계층 청년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관련 공적 지원이 비어 있는 영역은 ‘완전 사각지대’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연령 기준 등에 의해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청년 유형이 있었는데, 가족돌봄청년이 이에 해당하여 부분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실질적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은 가려져 있기도 하다. 은둔하고 있는 청년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적 지지체계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공적 지원이 부재하므로 완전 사각지대에 있다.

김성아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지원 방안을 종합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시도는 수요자 관점에서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표 II-1).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경험에 노출되어 소외된 청년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취약한 청년 당사자로서는 취약계층 청년 유형이 배타적일 수 없고 취약 경험의 다차원적인데, 수요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태다. 그런데 김성아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및 정책 공급과의 정합성 평가는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의 존재와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 관점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였다. 이를 통해 유형을 넘나드는 취약계층 청년이 취약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청년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종합서비스 패키지를 지원할 필요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의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므로, 실제 청년 삶의 현장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취약한 청년을 발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현세대 청년의 고유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현장(field) 중심의 귀납적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I-1. 김성이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정책 수요 및 공급 정합성 평가

취약계층 청년 유형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수요 대비 공급 정합성 평가
		추정 규모 (천명, %)	조직적 정의	자료원	지원제도	대상자 포괄성	접근성
장애 청년		156 (1.4)	등록장애 청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0.12.)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지원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181 (1.7)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	2015년 인구총조사 (표본)	-	일부 지원	
이주배경 청년		100 (0.9)	출생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재한동포 및 재외동포 제외)	2015년 인구총조사 (표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 지원, 「시월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에 의한 정착 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등	일부 지원	부분적 (재외동포재단, 하나센터 등)
			다문화 가족 자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여 24세까지 지원	일부 지원	제한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관계 특성 * 청년 부양자 경제적 부양 청년		285 (2.6)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닌데, 본인의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이 가구 총 경상소득의 75% 이상인 청년	제15차 한국복지패널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소득 공제	일부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취약계층 청년 유형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수요 대비 공급 통합성 평가
		추정 규모 (천명, %)	조직적 정의	자료원	지원제도	대상자 포괄성	접근성	
일자리 특성 *	한부모청년	158 (1.5)	한부모가정의 부모인 청년	2020년 인구총조사 (전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지원	있음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보장
	청년돌봄자		돌봄이 필요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구원을 돌보고 있는 청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한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가사·간병방문지원,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지원	제한적	부분 사각지대 & 기려진 정책
	고립 청년	339 (3.1)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	없음	없음	완전 사각지대
	미취업 청년	니트 청년 장기/ 비자발적 실업 청년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도 않은 청년 장기실업자 또는 비자발적 실업 청년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보장
	취업 청년	지임금 근로 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청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 일용 종사자와 1인 자영업 종사자 주 50시간 초과 근로청년과 불완전취업(단시간 근로) 청년					
							있음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등)	

취약계층 청년 유형	정책 수요			정책 공급		수요 대비 공급 공급 정합성 평가
	추정 규모 (천명, %)	조직적 정의	자료원	지원제도	대상자 포괄성	접근성
저소득 빈곤 청년 경제력 수준	842 (7.8)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50% 미만인 저소득 빈곤 가구의 청년 가구원	2020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 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	일부 지원	있음 (주민센터 등)
		경제력 대비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부담이 과도한 청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득 수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일부 지원	없음
						부분 사각지대 & 기려진 정책

* 출처: 김성아 외 (2021).

* 주: *표시한 인적 특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은 경제력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공적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음. 청년 인구 대비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비율은 (1) 자료원이 인구총조사 및 행정자료인 경우 인구총조사의 모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2) 자료원이 인구총조사가 아닌 경우 각 자료원에 의한 시점 기준 비율을 산출한 인구총조사에 의한 모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함. (2)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함. 정책 공급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함.

4) 정책소외계층 청년 정책지원 여건 분석

이 부분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소외계층 청년 대상 추진 과제 여부 정도를 확인하였다.¹⁵⁾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청년 세대 내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발표된 청년특별대책, 광역시·도의 청년 조례 및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 여건을 살펴보았다.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¹⁶⁾

「청년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은 청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별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5대 분야별로 1차년 연구 주제인 자립준비청년, 북한배경청년, 청소년부모, 경계선지능청년 등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부분 또는 간접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자는 직접 관련 과제로 ○, 후자는 간접 관련 과제로 △ 표기하였고 수요 대비 공급의 정합성 등 대상자의 제도 접근성과 수혜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① 일자리 분야

일자리 분야는 총 94개 과제로, 이 가운데 직접 관련 과제는 '탈북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통일부)'가 유일하였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유형Ⅱ¹⁷⁾ 참가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K-디지털 크레딧'의 경우 저소득 청년 등 경제적 취약성과 청년 구직자 등 이행기 취약성에 대응하는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있다(표 II-2).

15) 여기에서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22년도 연구주제인 자립준비청년, 북한배경청년, 청소년부모, 경계선지능청년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점검하였음을 밝혀둔다.

16) 이 절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25)(관계부처 합동, 2020a)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25) 세부과제 요약(관계부처 합동, 2020b)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다.

17) 취업성공패키지 Ⅱ(만 18세~69세 이하) 대상자에는 청년층 참여대상자가 포함되며 이들의 조건은 만 18~34세 이하인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다(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nfo.do>에서 2022년 1월 20일 인출).

표 II-2.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일자리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관련성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개요)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저소득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월50만 원×6개월) 지원	고용부	○
K-디지털 크레딧	청년 구직자(취성패 II 유형 참가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참여자)에게 디지털 기초훈련 추가 지원	고용부	○
탈북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탈북 대학생 및 졸업생 등 청년 구직자 대상 청년 취업 아카데미(자기 이해 및 진로설정, 취업 집중 캠프 프로그램 등) 운영	통일부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25).
관계부처 합동(2020b).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25) 세부과제 요약.

② 주거분야

주거분야 과제는 총 24개로, 정책소외계층 직접 관련 과제는 부재하나 저소득 무주택 청년 내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에 청소년부모 등이 포함되므로 해당 과제는 총 10개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청년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 역세권리모델링 및 기숙사형 청년특화주택 등 5개 과제), 전월세 비용 경감 및 부담 완화(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3개 과제), 주거취약계층 집중 지원 과제(고시원·쫄방·반지하 등 거주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고시원 등 거주자 이주 패키지 지원 등 2개 과제)가 포함된다(표 II-3).

③ 교육분야

교육분야 과제 총 83개 과제 중 정책소외계층의 유형을 명시한 직접 과제는 ‘학교 밖 청년 온라인 지원’ 등 1개 과제이다. 그러나 본 과제는 학교 밖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 관련 과제로 볼 수는 있지만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명확한 한계가 있다.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간접과제는 총 8개로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꿈사다리 장학사업 등 5개 과제),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3개 과제)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전문)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은 ‘국가장학금’과 ‘대학생 근로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이 외 학비(전액)와 생활비(학기당 200~250만 원) 일부를 지원하는 ‘인문 100년 장학금’(교육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과기부),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등이 있는데 모두 성적 기준(B+ 이상)을 두고 있고, '21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이 상향조정(B+→A0)(교육부, 2021,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32)되었다.¹⁸⁾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상당수가 학업 이 외 근로, 육아 등을 병행하거나 빈곤, 낮은 지능지수 등 귀속지위로 인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도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표 II-4).

18)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장학금은 성적기준을 두지 않는다.

표 11-3.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주거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관련성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 19~39세 미혼 무주택자, 신혼부부·한부모 가족(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자 중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8~'25년까지 만 19~39세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등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11만호 공급	국토부	△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 (매입·전세임대)	• 도심 내 기존 주택 임차, 공실상가 매입 후 개·보수, 대학교 주변 주택을 기숙사형으로 리모델링하고, 저렴하게(평균 1.5~1.6억 원 출·융자) 지원	국토부	△
청년특화주택 역세권 리모델링형	• 유희 오피스·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평균소득 100%이하 청년에게 청년주택으로 공급	국토부	△
청년특화주택 기숙사형	• 기존 주택을 활용,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직접 운영하여 평균소득 100%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공급	국토부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국토부	△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영	•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가구(연 8만 가구)에게 전월세자금 저리(1.0~2.1%) 대출 지원 - 보증금 1억 이하 전세에 대해 7천만 원 이내 대출 - 보증금 2억 이하 전세에 대해 1억 원 이내 대출 - 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에 대해 보증금 3.5천만 원, 월세 월 40만 원 이내 대출	국토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19~34세 중 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에게 금리우대(총 납입금액 5천만 원 내, 최대 10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 단 가입기간 2년 이상, 연 납입금액 6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국토부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청년 공공임 대주택 우선 공급	• 고시원·쪽방, 침수피해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청년이 주로 거주 중인 고시원의 월평균소득(180만 원)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공공임대 입주대상 소득기준 완화	국토부	△
고시원 등 거주자 이주패키지 지원	•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비용 (20만 원), 생필품비(20만 원), 보증금(50만 원) 지원	국토부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25).
관계부처 합동(2020b).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25) 세부과제 요약.

표 II-4.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교육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관련성
국가장학금	•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부	△
대학생 근로장학금	• 국내 대학의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학점 C0) 이상이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학생을 대학이 자체 선발하여 매월 근로시간당 교내 9,000원, 교외 11,150원 지원	교육부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 지원	교육부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군 복무자 이자지원, 일반상환 대출 특별상환 유예제도 운영,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도입 추진	교육부	△
꿈사다리 장학사업	• 저소득층 중·고생(중2~고3) 중 선발 장학생에게 대학 진학 시 별도 선발 없이 계속 장학금 지원, 1:1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멘토링 캠프·진로컨설팅) 제공 등	교육부	△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 대학에 진학한 고졸 재직자(2년 이상) 중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여 고졸 인재 성장경로 다변화	교육부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확대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에게 직업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연 35~70만 원) 제공	교육부	△
국민내일 배움카드	•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취업 희망자에게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월11.6만 원) 지원 • 저소득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	고용부	△
학교 밖 청년 온라인 지원 강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및 도서벽지 등 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비대면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	여가부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관계부처 합동(2020b).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세부과제 요약.

④ 복지·문화분야

복지·문화분야 과제는 총 37개로 기존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의 자산형성 등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표 II-5).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립준비청년 대상 정책은 7개로 희망계좌 통합 및 운영 개선(복지부), 청년·대학생 햇살론 확대(금융위), 채무조정특례(금융위), 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복지부), 보호종료청년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복지부),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여가부)이 해당된다. 두 번째로 청(소)년부모 대상 과제로 청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1개 과제가 해당되는데 이 과제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저소득 청년부모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이주배경 청년지원의 경우 북한배경청년 등의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년 등이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를 근거로 하여 지원대상이 만 24세 이하로 제한된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네 번째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등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 이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에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사업(발달장애인 문화 예술학교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정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 등록이 불가한 경계선지능청년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⑤ 참여·권리분야

참여·권리분야 과제는 총 32개개로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과제는 센터 운영을 통한 청년 참여와 권리 보장(오프라인 청년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등 3개), 금융교육 지원 1개 등 총 4개 과제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오프라인 청년센터의 경우 NEET, 학교 밖 청년을 대상에 포함하며, 근로권익센터와 근로보호센터는 근로청년을 특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 금융교육의 경우 금융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의 수혜율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표 II-6).

표 II-5.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복지·문화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관련성
희망계좌 통합 및 운영 개선	-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지원대상 확대 -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 원), 민간 매칭금 추가지원(월 2만 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적용	복지부	○
청년·대학생 햇살론 확대	신용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대학생에게 정부재정*으로 “햇살론youth” 공급	금융위	△
채무부담 완화	만 34세까지 대학생, 미취업청년 5년 상환 유예	금융위	△
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만 18세)에게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복지부	○
보호종료청년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만 18세)에게 임대료(15~20만 원) 실비 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복지부	○
위기청년 자립지원	후기청소년(19~24세) 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으로 주거 연계, 독립생활 코칭, 취업 연계 등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실시, 쉼터 퇴소 청년 대상 자립지원수당(최대 3년 간 월 30만 원)	여가부	○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까지 확대	여가부	○
이주배경 청년 지원	이주배경 청년(다문화, 중도입국, 탈북 등)에게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 및 자립지원, 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및 이중 언어 인재 DB를 구축·활용	여가부	○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초기 청년(24세 미만 또는 대학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 소득에서 40만 원 우선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 본인이나 가구원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등록금을 가구 근로소득에서 공제 처리하여 생계급여 수급비 증가	복지부	△
청년 사회 첫걸음 문화누리 카드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연 10만 원) 지급	문체부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관계부처 합동(2020b).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세부과제 요약.

표 II-6.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참여·권리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관련성
오프라인 청년센터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로서 오프라인 청년센터(전국 12개소)를 통해 학교밖청년, NEET족 등에게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 및 심리상담 병행 등으로 청년정책 안내 및 취·창업 등 역량 프로그램 지원	고용부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청(소)년 근로권익 향상을 위해 전국 통합 상담·교육, 보호 위원(노동법률 전문가) 진정사건 대리 무료 지원	고용부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청(소)년에 대한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등에 대한 중재·해결을 위해 권역별 근로보호센터 설치·운영, 상담·현장지원 등 종합 서비스 지원	여가부	△
청년 금융교육 지원	청년들의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개선, 콘텐츠 인증제 도입, 서민금융학자금 대출이용자 및 개인회생 신청자 등 금융소외 청년 소모임 프로그램 제공	금융위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25).
관계부처 합동(2020b).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25) 세부과제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계획 내 272개 추진과제 중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총 36개-일자리 분야 3과제, 주거 분야 10과제, 교육 분야 9과제, 복지·문화 분야 10과제, 참여·권리 분야 4과제-로 파악된다. 다만 정책소외계층의 유형과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직접 과제는 복지·문화 분야 6과제, 일자리 분야에서 탈북청년 대상 1개 과제 등 총 7과제에 불과하였다. 또한 간접 관련 29개 과제도 경제적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개인, 관계, 활동 관련 취약성, 이행기 취약성에 대한 다면적인 고려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혜율과 접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2)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¹⁹⁾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과제로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 고졸자 대책을 포함한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b). 정책소외의 유형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사각지대와 격차를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면적인 취약성과 불리함에 놓인 보호종료아동, 고졸자 청년은 그간 사회정책 전반에서도 소외된 대표적인 집단이므로 청년정책의 차별화된 영역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시행계획의 내용보다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탈북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꿈사다리 장학사업, 학교 밖 청년 온라인 지원 강화, 보호종료청년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오프라인 청년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청년 금융교육 지원 사업 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과제가 ‘21년도 시행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이들 사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각 부처별 사업안내와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다. 즉,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취약계층 대상 과제의 상당수가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을 최소한 연령 상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조차 생략한 채 그대로 표기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병무청)가 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배려 대상 청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게 모집 병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 순위 배정 등을 골자로 한다(병무청, 2021). 이와 함께 국토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도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지 않았지만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카드발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및 카드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로, ‘21년 현재 참여 지역은 전국

19) 이 절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관계부처 합동, 2021a)의 내용을 요약하고 각 부처별 시행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136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셋째, '21년에 사업 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먼저 '21년부터 청소년쉼터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다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지원수당(월 30만 원, 3년)이 지원된다. 그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아동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시설을 이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다만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법정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당 지급기간이 확대되었고, 쉼터 퇴소자의 경우 연속 거주 연한 기준을 두는 등 지원 내용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8세 이하에서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24세까지 확대되었다.²⁰⁾

넷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2유형(구(舊) 취업성공패키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청소년부모 등이 포함되었는데 '21년 3월부터 보호종료아동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다섯 째,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21년 예산 규모가 약 8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초기자본과 정보가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불안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기본 계획에는 교육 분야 과제로 포함된 데 반해 '21년도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분야 과제로 분류되어 있었다.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7451>)에서 2022년 1월 26일 인출)의 내용 참고

표 II-7.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과제 현황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정합성 검토

분야	과제명	기본계획	시행계획	부처별
일자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K-디지털 크레딧 • 탈북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 × ○ ○	○ ○ ○ ×	통일부
주거	• 행복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매입·전세임대 • 청년특화주택 역세권 리모델링형 • 청년특화주택 기숙사형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고시원 등 거주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이주 패키지 지원(주거상향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교육	• 국가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대출금리 인하, 상환 유예) • 꿈사다리 장학사업 •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 학교 밖 청년 온라인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교육부 여가부
복지·문화	• 희망계좌 통합 및 운영 개선 • 청년·대학생 햇살론 확대 • 채무 부담 완화 • 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 • 보호종료청년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 • 위기청년 자립지원 •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 이주배경 청년 지원 •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청년 사회 첫걸음 문화누리 카드 •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 청년대중교통비 지원(광역알뜰교통카드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부 여가부 병무청 국토부
참여·권리	• 오프라인 청년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 청년 금융교육 지원	○ ○ ○ ○	× × × ×	지자체 고용부 여가부 금융위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관계부처 합동(2020b).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세부과제 요약, 관계부처 합동(2021a).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병무청(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②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²¹⁾

다음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서 정책소외계층 청년 대상 사업 현황을 검토하였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대전, 부산, 강원 등 3개 지자체에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광주, 경남, 세종, 전북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북과 세종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제외하였다(표 II-8).

표 II-8.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일자리 분야)

지자체	과제명	주요내용	관련성
대전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 미취업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50만 원×6개월) 지원	△
부산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강원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 미취업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50만 원×6개월) 지원+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 연속 시 50만 원 지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 미취업청년에게 일경험 제공을 통해 고용시장 진입 및 자립 촉진	△
경남	청년 소셜마케터 양성지원	• 청년 소셜마케터 양성 교육 후 사회적 경제기업에 고용매칭(10명)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두 번째로,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주택 공급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주를 이룬다. 청년주택 공급은 경북, 경남, 충북, 세종 등에서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지역별 공급 규모가 20~70호 정도로 매우 극소한 수준이다. 청년 전월세 지원의 경우 최대 2년의 이내에서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주거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수요 대비 공급량, 공급 형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요구된다(표 II-9).

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합동, 2021b)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표 II-9.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주거 분야)

지자체	과제명	주요내용	관련성
경북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주거공간 조성	청년 친화적 세어하우스,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	△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충남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		△
세종	지역사회 청년 세어하우스 운영		
전북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지자체에 따라 월세를 5개월~최대 24개월까지 월 10~30만 원 정도 또는 반값, 실 주거비용 지원 또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20개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울, 서울 성동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군포,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옥천, 충남, 보령, 서산, 예산, 서천, 익산, 정읍, 남원, 진안, 전남, 곡성, 강진, 경북, 경남, 제주)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세 번째로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강원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며, 대전과 충남은 원금도 일부 지원하였다. 또한 8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제주)는 학자금 이자지원과 함께 신용회복지원을 병행하였다.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시한 곳은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정도이며, 고졸 미진학 청년 대상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은 전무하였다(표 II-10).

표 II-10.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교육 분야)

지자체	과제명	주요내용	관련성
강원 제외 16개 광역지자체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제주	-	신용회복 지원	△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생략	저소득(취약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네 번째로 복지·문화분야는 자산형성 사업이 주를 이룬다.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만 24세 청년 전수를 대상으로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원, 전북은 근로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36개월 등 각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과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 외 서울시는 신규 전입한 1인 가구 청년에게 웰컴박스

(welcome box)를 지원한다(표 II-11). 한편 17개 광역시·도 모두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최소 5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및 위탁보호가 종료된 경우만 지원하여 자립준비청년 간 형평성과 차별 문제가 존재한다.

표 II-11.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복지·문화 분야)

지자체	과제명	주요내용	관련성
경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 지원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가구 중위소득 120% 청년 500명에게 3년간 15만 원씩 1:1 매칭 적립	△
부산	청년 희망날개 통장	•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희망적금	• 가구 중위소득 120% 단기 일자리 저소득 청년 대상 6개월간 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 지원	△
전북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 근로 청년 1,000명에게 월 30만 원×최대 36개월 지원	△
서울	서울전입 청년 1인 가구 웰컴박스 지원	•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29세 이하 청년에게 관련 정책·정보 및 생활물품 지급	△
경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보호종료아동에게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	○
경남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종료 시 5백만 원 지급	○
경북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가정위탁 아동 보호종료 시 5백만 원 지급	○
광주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퇴소 아동에게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마지막으로 참여·권리분야의 경우 전체 청년 외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우대하는 등 관련 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청년센터 운영 시 학교 밖 청년, NEET 등을 주요 대상으로 포함한 반면, 지자체 시행계획에 해당 대상을 언급한 경우는 전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권리분야에서 지역 내 청년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3) 청년특별 대책

정부는 지난 해 8월, 청년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청년 세대 내 격차 해소, 미래를 위해 도약 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년특별 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에서 구직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업의 확대, 강화가 주요 골자이며 정책소외계층의 유형을 고려한 신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표 II-12).

표 II-12. 정책소외계층 청년 사업 현황 : 청년특별대책

대상	정책지원 내용
구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150만 원) 지급 • 청년도전지원 사업: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20만 원)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500만 원 교육비 지원
기초· 차상위· 저소득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초·차상위: 정부매칭 1:3 지원으로 3년 후 1440만 원 형성(본인 360만 원 부담)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정부매칭 1:1 지원으로 3년 후 720만 원 형성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무이자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 생활비 무이자에서 재학 중 학비·생활비 무이자로 확대 조정 • 문화누리카드: 기초·차상위 10만 원 문화생활 바우처 100% 지원 • 햇살론 유스 대출 - 기초·차상위: 연 1200만 원(금리 : 3.6%(보종료 포함))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연 1,200만 원(금리 3.6~4.5%(보종료 포함)) *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 * 사회초년생 4.5%,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취약 청년3.6%(보종료 포함) • 독립거주 20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초·차상위 급여 최대 5.5% 인상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월세 한시 지원(최대 월 20만 원×12개월) * 소득기준: 가구소득 기준중위 100% & 본인소득 기준중위 60% • 연소득 2200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 근로장려금 지원(최대 월 150만 원)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 연 6백만 원까지 최대 3.3% 우대금리(5천만 원 한도),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 원 한도) ②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최대 4%(1년 2%→2년 4%) 지급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d).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재구성함.

(4)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²²⁾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정책소외계층 청년과 관련이 있는 과제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과제의 주요 대상과 내용을 토대로 청년 또는 취약계층 관련 과제를 선별한 후 해당 과제와 정책소외계층 청년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관련성이 높은 과제는 ○, 관련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결여된 항목은 △, 관련성이 낮은 과제는 △로 표기하였다(표 II-2, 3, 4, 5, 6, 8, 9, 10).

110개의 국정과제 중 취약계층을 위한 과제 중에는 4개 항목-“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체계 강화”,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한부모가족,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지원 강화”가 정책소외계층 청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3개 과제(과제90~92)에는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세부항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정책소외계층 청년과 관련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총 12개 항목 중 3개(청년 아르바이트생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취약청년을 위한 청년도약준비금) 정도이고, 나머지는 현 단계에서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접근성과 수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병역의무 이행 시 지급되는 봉급인상(과제108)의 경우 군복무를 하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에게 도움이 되겠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군복무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수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요약하면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19개 과제 가운데 중복항목 2개를 제외하고 총 32개 항목 중 정책소외계층 청년과 관련성이 비교적 높은 과제는 7개 항목 정도이다. 다만 이 가운데 4개 항목은 구체적인 수단이 부재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발굴과 삶의 다면적인 영역을 아우르기 위해 섬세하게 설계된 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5) 지자체 청년 조례

마지막으로 17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청년 기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청년기본법」 상 청년의 연령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한 지자체는 6개(서울, 광주, 세종, 울산,

22) 이 절은 110대 국정과제.(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경기, 경남)이며, 나머지는 동법 제3조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연령 기준을 제각각 정하고 있다(표 II-13).

표 II-13. 17개 광역시도 청년 기본 조례 내 지원 내용

구분		지자체
대상연령	18세-34세	부산
	19세-34세	서울, 광주, 세종, 울산, 경기, 경남
	18세-39세	대전, 강원, 전북, 전남,
	19세-39세	대구, 인천, 충북, 충남, 경북, 제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ordin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9&query=%EC%B2%AD%EB%85%84%EA%B8%B0%EB%B3%B8%EC%A1%B0%EB%A1%80#cptOfiAll 에서 2022년 2월 4일 인출.		

광역시·도의 청년 조례 내에서 규정한 지원 내용은 크게 능력(역량) 개발 지원, 교육 지원, 고용 지원, 창업 지원, 금융(부채 해소) 및 자산형성 지원, 생활안정(복지) 지원, 주거 지원, 문화 지원, 건강 지원, 참여 지원, 권리보호(권익향상)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원 관련 조항은 특정 대상에 대한 언급없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취약계층 등 우선 고려 대상을 규정하거나 포함하는 형태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취약계층 청년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하에 있는 근로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이나 주택 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청년” 등을 포함한다. 특히 조례 내에서 “교육격차 해소”나 “생활 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언급한 경우도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우선 고려를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다만 창업지원이나 문화지원, 참여 및 권리보호 지원 시 특정 청년집단의 소외와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격차 해소를 위한 우대 등 장치를 고려한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표 II-14).

표 II-14. 17개 광역시도 청년 기본 조례 내 우선 지원 대상

지원 영역	우선 지원 대상	해당 지자체
능력(역량) 개발 지원	전 청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취업애로/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교육 지원	전 청년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교육격차 해소 ¹⁾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고용 지원	전 청년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하의 청년근로자	서울, 인천, 광주, 경남, 제주
창업 지원	전 청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금융(부채)/자산형성 지원	전 청년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부채 및 이자 상환이 어려운 청년	부산, 광주, 경남, 제주
생활안정(복지) 지원	전 청년	대구, 대전, 세종, 전남
	생활 불안정 요소 해소 ¹⁾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주거 지원	전 청년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주택 외 거주 거주 청년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제주 ²⁾
문화 지원	전 청년	17개 광역시도
건강 지원	전 청년	광주, 전북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서울, 부산, 울산, 제주 ²⁾
참여 지원	전 청년	광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권리보호(권익) 지원	전 청년	대구, 충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국제교류 지원	전 청년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 우선 고려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서술 문구 안에서 취약계층 우선 고려를 암시함.

2) 여성·장애인·다문화·1인가구 등 청년취약계층을 특정하고 이들의 우선적 고려를 언급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ordin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9&query=%EC%B2%AD%EB%85%84%EA%B8%B0%EB%B3%B8%EC%A1%B0%EB%A1%80#cptOfiAll>에서 2022년 2월 4일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

4. 소결 및 시사점

1)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특성과 접근방식

이 장에서는 정책소외계층 청년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제도적 지원 여건을 검토하였다. 먼저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①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행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② 공공정책(지원제도)을 통합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③ 당사자를 포함하여 미시환경 영역에서 자원, 정보, 기회가 제한(결핍)되어 있거나 거시 환경 영역에서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④ 비자발적인 사유로 배제되거나, 제도의 지원 대상에 효과적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청년 또는 집단'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이들의 취약성은 비자발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다층적인 상대적 결핍의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 관점과 다차원 빈곤 개념 및 대응 방향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정책소외'를 강조한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용어 자체에 낙인의 소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에서 저소득 빈곤층과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방과 보완이 가능한 '과정' 보다 취약한 상태인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접근 방식으로 하여 기존의 공공정책이 포괄하는 대상자의 범위(coverage)를 확대하거나 지원수단을 다각화하는 보충적인 개입을 통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는 주류집단에서 이탈한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사회 환경에 따라 개념과 유형이 가변적이며 취약성 뿐 아니라 낮은 제도 접근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세대 내 차별과 격차의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정책적 개입보다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소외 문제까지 포괄하는 한편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취약한 귀속지위로 인해 별도의 사회적 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자력으로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주거독립, 새로운 가족의 형성 등 이행기 청년에게 기대되는 과업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행기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는데 따른 결과는 중장년기와 노년기까지 장기화되어 탈 빈곤, 탈 위기를 위해서는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정책대상의 이행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정책 내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분절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사각지대와 소외의 문제를 규명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소외청년의 유형 발굴 및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 정책소외청년의 존재를 확인하고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접근은 이행기 청년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기에 따른 문제 중심 접근(youth as a problem)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낙인의 우려가 있는 반면, 사회적 배제와 같이 특정 집단의 취약성에 대하여 개인적 해결이 아닌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격차 해소,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이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같은 유형의 집단 내에 존재하는 격차의 문제를 놓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 청년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 조건과 환경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계가 있다(이정봉, 2021).

앞서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a)」, 「청년특별대책(2021d)」을 중심으로 소외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정책 영역 및 대상과 관련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021a)」,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021c)」,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2022)」을 돌아보았다.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은 현세대 청년의 특성과 다차원적인 삶 면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대상자별로 특화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조화를 시도하여 당사자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5대 분야별로 경제적 취약성에 대응하는 과제는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청년정책에서 취약성을 고려한 유형별 지원제도가 포괄하는 대상자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소외의 실태와 현황을 다면적으로 진단하고 동일 세대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접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일반 사회정책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고유 목표로 두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아 외(2021)는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특성에 의해 규범적으로 취약계층 청년을 유형화하면서 대상자 범위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다만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지원정책의 대상자 포괄 범위에 의한 배제뿐 아니라 접근성의 배제까지 고려되어야 하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외계층 청년의 유형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속성과 기준을 벗어난 새로운 대상과 유형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귀납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그 자체로서 시의성과 대상자 포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청년의 삶과 정책 수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제도와 의 정합성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며,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유형화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3) 통합적 접근과 지원 유형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는 시도는 공적 지원이 비어 있는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 관점에서 보면 취약성과 소외의 유형은 배타적이기 어렵고 중복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가족돌봄청년이 고립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장애가 있는 청년이 열악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어 빈곤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소외청년의 각 유형별 지원정책을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배제와 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상 유형별 지원이 아닌 통합지원을 전제로 유형별 지원 소외계층 유형에 따른 지원만 확장할 경우 또 다른 배제와 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 통합지원, 하고 는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은 삶의 면면에서 나타나는 결핍으로 인한 취약성이 이행기 과업을 완수함에 있어 장애로 작동하기 때문에 중년기와 노년기를 잇는 장기적인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청년기의 지원은 사회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형별 실태 분석과 정책 개발을 시도하는 방식은 취약 경험의 특수성과 청년 당사자의 다차원적인 필요에 대응한 공적 지원을 재구조화하고, 부족하거나 비어 있는 정책 영역을 발견하고 보완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소외청년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복합적인 욕구 사정과 통합적 지원을 위해 추진체계에 대한 고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4)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 여건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분절성 개선

청년정책 내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 여건을 검토한 결과 법률과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된다. 먼저,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대상 청년의 연령 범위가 최저 만 18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앞서 청년의 연령대별 다차원 빈곤 양상에서 이들이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위기와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정도에 차이가 있고 요구되는 과업과 취약성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행기 청년에 대한 정책지원(youth policy)을 10대 중반 아동·청소년기에 시작하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만 19세라는 시작 연령이 매우 낮다. 특히 성별, 장애여부 등 귀속지위, 사회·경제적 수준, 혼인과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 내 이질성을 고려하여 정책 수요와 공급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대상 연령 구분은 성인기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성과를 도출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정책대상의 연령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 청년정책에서 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과제는 복지·문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와 교육 분야 보다 참여·권리 분야 과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복지·문화 분야 내 추진과제도 기존의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청년기에 진입하면서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되기보다 보호체계에서 누락되는 실정이므로, 청년정책은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적기제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소의 청년의 유형화와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이들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일 유형 내에서도 지원의 편차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중앙부처 단위에서 아동, 청소년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데 다른 제도 간의 장벽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 확보와 다면적인 통합지원 방안을 위해 청년정책 지원체계와 기존의 대상자별 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연계, 나아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추진체계의 통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과 기준

- 1. 전문가 조사 설계
- 2. 전문가 조사 결과
- 3. 정책소외계층 청년 판단 기준
- 4. 소결 및 시사점

1. 전문가 조사 설계

제2장에서 정책소외계층 청년 개념화를 시도하고 현황을 검토하면서 정책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취약 청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맞춤형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이 정책소외계층에 머무르게 된 다양한 원인과 상황을 확인할 필요를 제안하였고, 제3장에서 청년정책 분야 학계 전문가와 지원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귀납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총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조사에서 1차 응답 완료자는 50명이며, 2차 응답 완료자는 49명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 12명, 지원기관 실무자 37명이다. 조사는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표 III-1).

표 III-1. 전문가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정책소외계층 청년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대상	구분	응답(명)	비율(%)
	대학 및 연구기관	12	24.5
	지원기관	37	75.5
	전체	49	100.0
조사기간	2022.5 ~ 2022.9 (총 2회)		

* 출처: 저자 작성

23) 이 장은 김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김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일부 포함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제2장에서 제안한 정책소외계층 청년 정의와 김성아 외(2021)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를 제시하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표 III-2. 전문가 조사 질문 리스트

- Q1.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어떤 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사유로 제도에서 소외되거나(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없는 경우 포함), 현재 제도가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운 청년의 유형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족돌봄청년, 은둔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등
- Q2. 정책소외계층 청년 혹은 유형을 발굴할 때 어떤 기준과 속성(요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Q1에서 말씀하신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의 경우 어떤 요소와 특성을 고려하셨는지요?

* 출처: 저자 작성

첫 번째 질문은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 두 번째 질문은 청년기 정책소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속성에 대한 것이다. 이 외 세 번째 질문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책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 네 번째 질문은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아젠다와 대안,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자립준비청년, 북한배경청년, 청소년부모, 경계선지능청년 등 주요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현시점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귀납적 유형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한 내용만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조사 결과

1) 청년의 정책소외 유형에 대한 의견

먼저 1차 조사에서는 김성아 외(2021)에서 제안한 취약계층 청년 유형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그림 III-1). 즉, 정책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청년 유형의 사례가 제안하도록 하였는데 취약성을 유발한 원인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첫째, 인적 속성에 따라서는 장애청년과 적확하게 매칭되지 않지만 경계선지능청년과 이주배경청년의 하위 유형으로 난민청년, 이주노동자 청년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관계 특성에 따라서는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다문화 가족 자녀 청년, 한부모 가족

자녀 청년, 비혼부모청년이 제안되었다. 이 중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전신으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하위 유형으로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이나 출소한 청년, 행정서류상 보호자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하지 못하는 청년 등 보호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이 제안되었다. 셋째, 일자리 특성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인 인생로드맵을 설계하기에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청년이 제안되었다. 넷째, 경제력 수준에 따라서는 노숙(홈리스) 청년, 신용불량자 청년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유형으로는 폭력 및 범죄피해청년 등이 있었다.



그림 III-1. 김성아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

특히 취약성을 유발하는 원인과는 별도로 현재 취약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청년의 유형도 제안되었다(표 III-3).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과 정책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청년이 두드러졌다.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유발된 취약성과 현재 호소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정 밖 청년과 가족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한 청년이 제안되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청년을 인식하는 관점의 적절성과 가족과의 관계를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기보다 가족과 함께 해야 하거나 분리되어야 하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형화하기 어렵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에 미진학한 저학력청년을 제한한 의견도 있었는데, 적절한 교육 수준에 대한 판단 또한 개인의 생애 설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취약성을 지적할 수 있지만 거주지역 또한 개인의 선택 범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단을 유예하였다.

다수 전문가의 응답에서 취약성과 필요한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고졸 이하 여성 중 돌봄 청년을 제안한 의견은, ‘고졸 이하’라는 저학력 상태와 ‘여성’이라는 인적 속성, 그리고 ‘돌봄 부담’이라는 관계 특성에 의한 취약성이 복합된 사례일 것이다.

소수의견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성이나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지지체계에 진입하지 않은 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의 접근성이 제약되어 있다. 취약성에 대한 지원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포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수자성에 의해 유발되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의 결핍을 보완하는 사회보장의 정책 기제보다는 차별을 직접 금지하는 규제가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방형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대상 1차 의견조사(n=50)에서 10명 이상의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소외청년의 유형 및 소외청년의 보편적인 속성(요소, 속성)을 연구자가 범주화한 후 2차 조사(n=49)에서는 각 유형과 속성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대한 평정 문항을 포함하였다. 즉, 소외청년의 유형별 소외 정도의 경우 ‘각 유형의 복합적, 다면적인 문제와 지원제도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소외의 심각성’을, 소외청년의 보편적 속성은 ‘소외청년의 발굴 및 지원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속성’을 각각 10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평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II-3, 표 III-4).

표 III-3. 소외청년 유형별 소외 정도(전문가 의견조사)

단위: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금융소외청년(신용불량/파산/부채부담)	6.59	2.557	2	10
2	경계선지능청년(노린학습자)	6.82	2.395	1	10
3	정신장애청년(심리·정서/정신보건 위험군)	7.00	2.415	2	10
4	이주배경청년(미등록체류/난민/이주노동자 포함)	6.86	2.327	1	10
5	소년원/교도소 출원 청년(보호처분/형 종료자)	6.86	2.363	1	10
6	노숙청년(가족관계 단절/시설입소 거부)	7.57	2.336	1	10
7	장애청년(재가/시설 발달장애청년 등)	6.29	2.363	1	10
8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미혼부모)	7.00	2.102	2	10
9	정보소외청년(디지털소외 포함)	5.82	2.306	1	10
10	사회보험 가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	6.20	2.141	2	10
11	근로빈곤청년(일-학습 병행, 플랫폼 노동 청년 등)	6.35	2.305	2	10
12	은둔/고립청년(무기력/자포자기/희망·행복빈곤)	8.08	1.778	3	10
13	고졸비진학청년(진학준비/취업준비 포함)	5.88	2.403	1	10
14	대학 진학 후 학업을 중단한 청년	5.63	2.270	1	10
15	가족돌봄청년/가족의 생계를 부담하는 청년	7.59	2.130	1	10
16	주거정책소외청년	6.35	1.964	2	10
17	범죄피해청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착취 등)	7.22	2.074	1	10
18	아동·청소년 시설퇴소청년(자립준비청년)	7.31	2.053	1	10
2차 조사 응답자		n=49			

표 III-4. 소외청년의 보편적 속성(전문가 의견조사)

단위: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아동·청소년기 위기경험과 정도 (빈곤,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 시설보호 등)	8.04	1.859	4	10
2	자립의 의지와 가능성	7.37	2.148	1	10
3	미진학/미취업 여부와 누적 기간	6.76	2.067	2	10
4	타 지원제도의 자격기준에 미달/탈락 여부	6.51	2.209	1	10
5	중복 위기(미취업+부채부담+장애 등)	8.61	1.552	3	10
6	본인의 신청을 통해 발굴이 어려운 대상 여부 (경제선지능/지적장애, 은둔/고립 등)	8.51	1.734	3	10
7	진로/진학/이직 고민(자기이해 부재 등)	6.22	2.023	2	10
8	주거 불안정 (불안정/부적절 주거환경, 주거비 과도 지출 등)	7.55	1.838	2	10
9	건강문제(질병/질환 여부,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7.51	1.839	2	10
10	상대적 취약성 문제(유사 문제 유형 내 소외의 정도 등) (예, 대학생 학업중단자 vs 고졸자)	6.63	2.079	2	10
11	빈약/단절된 사회 관계망(가족관계 포함)	8.29	1.568	4	10
12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반복적 가입/이탈 이력	6.63	1.944	2	10
13	학습된 무기력/자포자기/지원 수혜 거부/포기	7.76	1.465	3	10
2차 조사 응답자		n=49			

2) 청년의 이행기 과업과 정책소외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취약계층 혹은 정책소외계층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집단이다. 복지국가의 시발점이라고 일컫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회적 위험은 질병이나 실업, 노령, 가족 관계 해체 등이다(Beveridge, 1942). 생애주기에 따른 삶 속에서 소득 상실의 위험뿐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 자체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취약한 상태를 유발하는 것이다.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소득

과 같은 자원이 부족한 집단에 대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부가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보편적인 사회서비스의 사회보장이 작동하는 것이다. 청년기 정책소외를 주목하는 이 연구에서는 앞선 제2장에서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청년이라는 이행기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소외계층 청년의 다양한 유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애주기 중에서도 이행기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독립된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는 청년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를 기대하였다. 이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 전문가 조사의 두 번째 질문이다.

“청년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자립 능력이고, 그 기초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과 기본적인 생활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응답자 20번).”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취약한 현 상태 및 욕구뿐 아니라 관련 지원정책의 존재와 이용 여부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에 의한 지원을 통해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자발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순서대로 앞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취약한 현 상태 및 욕구는 이행기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의 취약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다시금 가족과 본인의 충분하지 않은 경제력,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자본의 부족,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말한다. 부모 등 원가족의 경제력으로 부터 독립하기 시작하여 본인의 소득활동을 개시하는 청년기 이후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애주기 동안 소득과 자산을 축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기본 생활이 유지될 때 자신의 삶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등의 취약한 경제력은 청년기 취약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사회적 자본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와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존재이다(김성아, 2022). 정해지지 않은 삶의 방식과 미래를 준비하여 불안정한 청년기에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구 등 사적 지지체계가 결핍되어 있다면 청년은 취약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안정된 정서는 삶을 살아가는 활력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하

면, 정신의학적인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수준의 불안이나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 또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기에 취약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관련 지원 정책의 존재와 이용 여부는 공적 지지체계 접근성으로 종합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보호 등 사적 지지체계가 결핍된 청년, 예를 들어 가정 밖 청소년이 성장하여 청년이 되는 경우나 학교나 직장 등의 소속이 없는 고립 청년 등의 사례와 함께 제안되었다. 이들은 비자발적인 비진학, 실업이나 구직 단념 등의 비경제활동 상태,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부유할 수 있다. 사적 지지체계의 공백이 있다면,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책에 의한 지원 등 공적 지지체계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책에 의한 지원을 바라지 않거나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물리적 접근성이 제한되어 공적 지지체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미 마련된 지원을 받지 않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부재합니다(응답자 1번).”

“청년의 경우 ... 경로를 다양화하고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응답자 41번).”

마지막으로 지원 정책을 통해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발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정책소외가 단순히 공급자 혹은 전문가 관점에서 대상자 포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일 것이다. 단순히 소득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등의 지원을 넘어 청년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여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 개인에 맞추어 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을 발굴할 때는... 정책소외(취약 정도)를 판단하고 청년의 자립 가능성, 자립 의지 등을 확인합니다(응답자 34번).”

“같은 장애청년이라도 정책지원에 대한 참여나 활용의지에 따라서 지원정책의 효과성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응답자 9번).”

3. 정책소외계층 청년 판단 기준

이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된 정책소외계층 청년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으로의 이행기 과업을 달성하기에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원과 정보가 결핍되어 공공정책에 의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배제된 청년 혹은 집단”으로 정의한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였다. 정의에서도 일부 요소를 다루고 있지만, 정책소외계층으로서의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기 이행기 과업을 완수하고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살기에 자원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도움이 필요한 취약성과 함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의 존재 및 접근 가능성, 그리고 청년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고려할 필요도 확인하였다.

표 III-5에서 정책에서 소외된 주요 취약 청년 유형과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종합하고 있다. 이행기 과업을 완수하여 현세대 청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한 취약 청년은 말그대로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된 취약성과 문제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의 개선 의지가 부재하더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소외계층 청년으로서는 이들이 취약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적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접근성의 문제를 겪고 있고, 심지어 곤란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없다면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II -5 정책소외청년의 유형과 판단 기준

취약청년 유형				정책소외청년 판단 기준		
김성아 외(2021)의 유형				취약성 정도	지지체계 접근성 정도	자발적 개선 의지 정도
기준	유형		소외청년 유형(예) (사각지대 취약청년)			
인적 속성	장애 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발달장애청년)	소외 청년 유형별 실태 분석 및 취약성 확인	경제적 취약성 이 외 사회적 지지체계 유무와 활용정도 확인	당사자의 문제해결 의지와 사회적 지원 수혜여부 확인
	이주배경 청년		다문화가족자녀청년			
			북한배경청년			
관계 특성	부양 부담 청년*	경제적 부양 청년	생계부양청년			
		한부모청년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자녀청년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			
		-	시설퇴소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활력청년				
일자리 특성	미취업 청년	니트 청년	니트 청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장기실업청년			
	취업 청년	저임금 근로 청년	근로빈곤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취업애로 위기청년(at-risk)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경제력 수준	저소득 빈곤 청년		과도채무부담청년			
	금융취약청년*		불법사금융 피해청년			
			파산청년			

* 출처: 김성아 외, (2021), 표의 일부와 이 조사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 * 표시는 김성아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 중 명칭을 수정한 것임.
- 표시는 고용 및 일자리정책 개선을 통한 접근 필요 영역임.

4.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정책소외계층 청년 개념화를 기반으로 정책소외계층 청년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청년 중에서도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취약한 현 상태 및 욕구, 공적 지지체계로의 접근성, 그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의 요소를 입체적으로 고려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이행기 청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당사자성을 고려하되, 욕구에 기반을 두는 영역별 유관 정책과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결핍된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고려해 차별 받지 않고 낙인감 없이 지지체계에 진입할 수 있는 입구(gateway)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소외된 청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 당사자성을 고려한 정책 거버넌스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만을 위한 청년정책만으로는 접근하기보다 돌봄 수혜자의 상황도 고려해서 돌봄정책과 청년정책을 함께 매니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응답자 39번).”

이 장에서 제안하는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은 전문가 관점에서 귀납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저학력 청년을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책소외계층 청년으로 유형화한다는 것은 학력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관념을 전제로 한다. 물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청년들이 바라는 삶의 양식이나 이에 따른 적정한 학력 수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지는 못한 것이다. 규범적 타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에 의해 취약계층 청년 유형을 제안한 김성아 외(2021)를 바탕으로 귀납적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나, 개별 유형에 대한 심층연구와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 당사자의 판단과 인식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세대 청년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식별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유형화하는 시도는 청년 개개인의 개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지원대상으로 분류하는데 따른 낙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제4장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1.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 2.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 3.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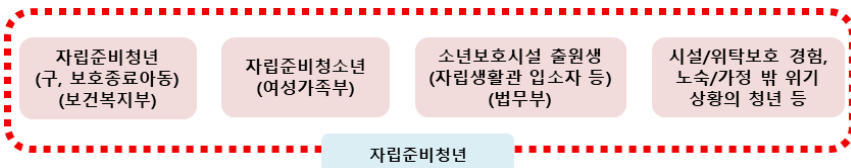
4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²⁴⁾

1.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본 연구에서 정책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소년, 「소년법」 상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시설 및 위탁보호의 경험 이 있거나 노숙 등 가정 밖 위기 상황에 있어 별도의 자립준비지원이 필요한 청년으로 정의하였다(그림 IV-1).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체제와 청소년보호체제가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법률에 근거한 대리양육의 경험이 있는 대상만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하여 지원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취약성’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때 형평성을 담보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김지연 외, 2015; 이상정 외, 2020, 김지연, 윤철경, 2021). 이에 이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규정한 ‘자립준비청년’ 집단 간 특성을 분석하고, 일반청년 대비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성을 확인하여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출처: 김지연, 윤철경, 2021.

그림 IV-1.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유형

24)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소연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집필하였으며, 해외사례는 김무현 박사(University of Washington)가 집필한 원고를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가정위탁을 제외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연간 약 1천명, 법정 사후관리(5년) 대상은 연간 약 5천 명 수준이다(그림 IV-2.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법정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표본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응답자의 과반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체납 경험은 10명 중 4명 이상에 달하였다. 한편, 본 표본에서 양육시설 퇴소자의 47.2%, 아동그룹홈 퇴소자의 58.1%가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부모와 ‘동거’ 비율은 각각 10.9%, 9.8% 수준이었고, 부모와 ‘만나지 않음’ 비율은 각각 23.9%, 22.8%, ‘1인 가구’ 비율은 각각 75.9%, 73.2%에 달하였다(이상정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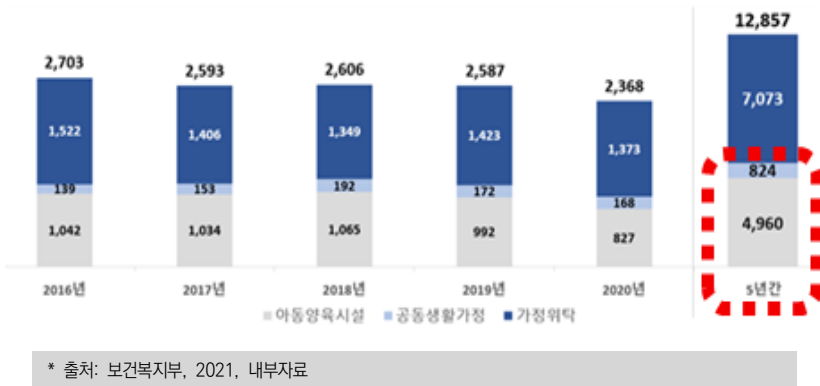


그림 IV-2.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다음으로, 2019년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일시쉼터 포함) 청소년쉼터 입소자 약 24,000명 중 15세 이상이 약 70%(17,000명)에 달하며 퇴소사유는 ‘가정복귀’가 가장 많았다(김지연, 윤철경, 2021).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가 확대되면서 '18년 70명에서 '20년에 324명으로 지원대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3년 간 사례관리 대상자의 가정환경을 보면 대다수가 가정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표 IV-2). 특히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보호자로부터 방임과 신체 폭력 등 학대피해를 경험하여 가족해체, 가족갈등, 가정폭력이 집을 나오게 된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며, 본 조사 표본에서 자살생각 및 시도의 주요 이유가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에 해당하는 비율이 학대피해아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다 4%p 더 높았다(그림 IV-3).

표 IV-1. 청소년쉼터 주요 퇴소 사유

(단위: 명, 건)

구분	남성	여성	계
1순위 : 가정복귀	5,358	5,616	10,974
2순위 : 자립생활 욕구로 합의 퇴소	4,407	2,013	6,420
합계	13,495	1,0381	23,876

* 출처: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내부자료; 김지연, 윤철경, 2021.

* 주: 2019.12.31. 기준이며, 합계에서 1순위, 2순위 사유만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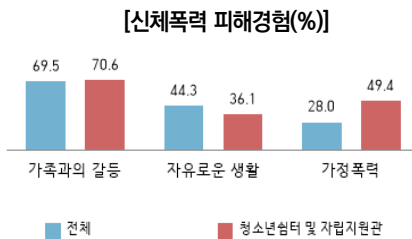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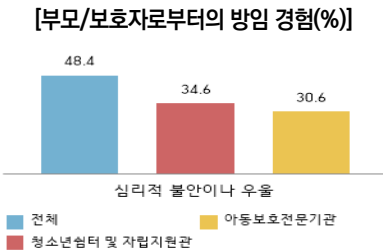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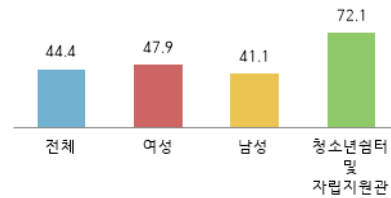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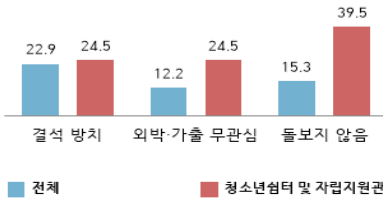
표 IV-2. 최근 3년간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대상 청년의 가정환경

(단위 : 건)

구분	총계	가정해체 -이혼	미혼모/ 미혼부	재혼가정 (재구성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가정	조손가정	중도입국 가정	일반가정	기타
2018	84	49	2	10	0	0	3	0	3	17
2019	169	81	13	17	0	2	0	0	9	47
2020	235	116	8	24	3	1	6	0	40	37

* 출처: 각 년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김지연, 윤철경, 2021.

* 주: 당해 연도 신규입소 인원 기준, 2개 이상 중복선택 가능.



[자살생각 및 시도 주요 이유(%)]

[집을 나온 이유(%)]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4.29.)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05400>정책브리핑에서 2022년 6월 29일 인출.

그림 IV-3.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자 특성

마지막으로 소년원의 보호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23세 이하)소년의 규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5,327명 수준이다(표 IV-3). 이들 소년보호기관(시설)은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교과교육과 직업훈련, 인성교육과 출원생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등을 병행하여 재비행 방지를 지원한다. 그러나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범죄자 중 과반 이상(51.3%)이 동일 죄종으로 재범하고 이들 중 42.5%가 1년 이내에 재범을 하며(표 IV-4), 1년 이내에 다른 범죄(이종범죄)로 재범한 경우도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표 IV-5).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서는 재범 원인을 파악하고 1년 이내에 집중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일부 시사한다.

한편, 소년보호시설은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기 전·후의 23세 이하 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 성인교도소 입소자와 달리 시설 입소 이력 등 범죄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다만, 형사재판 시 수사기록으로 확인 가능). 이는 소년보호시설의 보호가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나, 시설퇴소 후 재범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표 IV-3. 보호소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	2020	2019	2018	2017
신수용인원	계	5,327	5,934	7,032	7,902	8,359
	보호소년	1,361	1,637	2,077	2,199	2,450
	위탁소년	3,876	4,297	4,955	5,703	5,909
1일평균 수용인원	계	1,066	1,261	1,342	1,510	1,612
	보호소년	782	927	946	1,079	1,168
	위탁소년	284	334	396	431	444

* 출처: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 * 주: 1) 신수용인원 :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위탁된 인원과 새로 입소한 인원
 2) 1일 평균 수용인원 :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평균 수용인원
 3)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4)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행 원인과 자질 규명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표 IV-4. 미성년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동종)

(단위 : 명)

계	동종							
	소계	1개월 내	3개월 내	6개월 내	1년 내	2년 내	3년 내	3년 초과
26,896 (100.0)	13,787 (51.3)	2,660 (9.9)	2,769 (10.3)	2,103 (7.8)	3,902 (14.5)	1,369 (5.1)	741 (2.8)	243 (0.9)

* 출처: 경찰청 (2020).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표 IV-5. 미성년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이종)

(단위 : 명)

이종							
소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13,082 (48.7)	2,224 (8.3)	2,410 (9.0)	1,913 (7.1)	3,947 (14.7)	1,426 (5.3)	795 (3.0)	367 (1.4)

* 출처: 경찰청 (2020).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1) 자립준비청년 내 지원 격차 : 형평성, 사각지대 문제

현행 자립준비청년 내 지원 격차의 원인과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현행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원 가정에서 이탈하여 대리양육 체계로 진입하더라도 어떤 경로(gateway)를 이용했는지에 자립준비지원과 시설퇴소 및 위탁보호 종료 이후의 자립지원 내용이 상이한 점을 들 수 있다(표 IV-6). 예로, 청소년쉼터는 아동복지시설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보장시설이 아니며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과 같이 시설 배치와 퇴소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⁵⁾ 이러한 방식은 가정 밖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입소자의 배치와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쉼터의 경우 지자체가 입소자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개입 근거가 미흡하여 자립지원 시 차별, 대상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하는 근원적인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아동·청소년기에 시설 거주 이력이나 노숙 상황 등 취약성의 정도가 아니라 특정 법률에 근거한 시설과 위탁보호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사각지대가 넓을 수밖에 없다. 김지연, 윤철경 (2021)가 청소년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연구에서 쉼터 입소 전 양육시설, 친구집, 숙박시설, 노숙 등 부적절한 거처나 가정 밖 생활을 한 평균 기간이 약 35개월에 달하였다. 즉, 특정 유형 또는 한 개의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생활하고 퇴소한 경우만 자립준비청년으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시설을 넘나들며 생활하여 사실상 홈리스(homeless) 상태에 놓인 고위험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명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경우만 해당한다. 즉, 위의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통고제도’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 6호시설, 7호시설, 8~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입소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되어 그곳에서 보호종료된 경우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청년은 아무지원하지 않는 방식(All or Nothing)은 현행과 같은 방식은 형평성 문제와 사각지대를 유발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25)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를 분석한 이상정 외(2020)에 따르면 해당 표본에서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아동발달지원계좌(다담씨앗통장, CDA) 이용 경험은 87.1%, 공동생활가정 퇴소 자립준비청년은 81.9%,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은 49.5% 수준이었는데,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경우 19.7%에 불과하였다. CDA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가입이 가능하며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자 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는 고려할 때 상당수가 아동·청소년기 자산형성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시사한다.

(2) 청년 이행기 자립준비수준의 격차 : 시설퇴소청년 자립준비지원 제도화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자립지원 격차를 분석한 이상정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각 체계 내 대상자의 자립준비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상정 외(2020)는 청소년쉼터와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내 입소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년 이행기와 관련된 발달 산물에 있어 청소년쉼터 입소자는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등 사적자본(표 IV-7), 사회적 지지와 응급 상황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 등 사회적 자본(표 IV-9), 학업 유지 및 진로 계획 등 인적 자본(표 IV-8) 정도가 아동그룹홈 입소자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현재 자립지원제도는 청년 이행기 자립준비수준과 취약성의 정도가 아닌 특정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6.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자립준비지원 내용

구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소년원(소년원학교 포함)
보호 단계	보호기간 (지원기간)	개인 의사에 따라 24세 이하까지 입소 가능	- 일시쉼터 24시간~7일 - 단기쉼터 3개월 이내(최장 9개월) - 중장기쉼터 3년 이내(최장 4년)	19~24세 우선 지원 - 숙박형 3개월 이내 (3개월 1회 연장 가능) - 자립지원 6개월 (1년 이내)	(개인별 보호차분 기간)
	보호연장	「아동복지법」 제16조	- 가정폭력 또는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피해 청소년(17~) - 청소년자립지원관 미설치 지역	-	해당없음
	퇴소 및 보호조치 종료 조건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 지원기간 만료 - 가정폭력/착업 등 - 자진퇴소/무단퇴소 - 강제퇴소(운영위원회 결정)	-	보호처분 종료 시 퇴소
	자선형성 지원	아동발달지원계획(CDA) 이용 가능	아동발달지원계획(CDA) 이용 가능	-	해당없음
	의료지원	시설 입소 시 의료보호(1중)	시설 내 의료지원 (인당 연간 100만 원 이내 지원)	사업비 내 의료지원	해당없음
사후 관리 단계	자립계획수립	「아동복지법」에 따라 15세 이상 의무	- 단기 1주 내 개별계획 - 중장기 10일 이내 독립생활계획서 작성	지원종료 후 6개월 간 사후관리	해당없음
	자립정착금	퇴소 시 500만 원(자체별 상이)	-	-	해당없음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매월 35만 원)	2년 이상 입소(1년 동일시설 계속 거주 조건 부합 시 3년(매월 30만 원))	-	해당없음
기반	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12개 시·도, 각1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5개 시·도, 총 11개소)		청소년자립생활관(전국 8개소)

* 출처: 저자 작성

표 IV-7. 자립수준비교 : 사적 자본영역

(단위 : 명, %)

지표		청소년실험터		공동생활가정		$t(F)/\chi^2$
		N	평균(SD), %	N	평균(SD), %	
삶의 만족도		147	6.8(2.3)	214	8.5(2.1)	-7.303***
주관적 웰빙	행복	147	5.7(2.3)	215	7.1(2.1)	-6.251***
	걱정	147	5.2(2.6)	215	3.8(2.8)	4.928***
	우울	147	4.2(2.9)	215	2.5(2.6)	5.805***
	삶(생활) 만족도	147	5.8(2.4)	215	7.0(2.2)	-5.139***
	유대모니아	147	5.7(2.3)	215	6.8(2.4)	-4.262***
회복탄력성		147	91.5(15.6)	215	100.1(16.3)	-4.991***
자기효능감		147	10.1(2.7)	215	10.9(2.6)	-3.006**

* 출처: 이상정 외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 주: ***p < .001, **p < .01, *p < .05.

표 IV-8. 자립수준비교 : 인적자본영역

(단위 : 명, %)

지표		청소년실험터		공동생활가정		$t(F)/\chi^2$
		N	평균(SD), %	N	평균(SD), %	
재학 상태	재학중	94	63.9	204	94.9	58.209***
	휴학·중퇴	19	12.9	6	2.8	
	기타	34	23.1	5	2.3	
주관적 학업 성적		94	4.6(2.6)	203	4.8(2.4)	-0.894(0.372)
자격증 준비 경험	유	33	22.4	47	21.9	0.018(0.895)
	무	114	77.6	168	78.1	
	취업	35	48.6	49	29.7	
진로	2-4년제 대학	23	31.9	95	57.6	13.205**
	모름	14	19.4	21	12.7	

* 출처: 이상정 외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 주: ***p < .001, **p < .01, *p < .05.

표 IV-9. 자립수준비교 : 사회적 자본영역

(단위 : 명, %)

지표		청소년실험터		공동생활가정		$t(F)/\chi^2$
		N	평균(SD), %	N	평균(SD), %	
원가족 교류	유	114	85.7	162	87.1	0.127(0.721)
	무	19	14.3	24	12.9	
사회적 지지 총점		147	17.5(3.6)	215	19.0(2.6)	-4.224***
사회적 관계망 (수)	조언자	147	6.9(9.3)	214	8.8(16.5)	-1.268(0.206)
	도움 요청	147	6.2(8.4)	214	7.7(11.9)	-1.395(0.164)
	응급 시 금전 도움	147	3.2(6.7)	215	5.4(10.3)	-2.449*
	믿음, 용기	147	7.3(12.4)	213	8.3(14.8)	-0.668(0.505)

* 출처: 이상정 외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 주: ***p < .001, **p < .01, *p < .05.

2.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²⁶⁾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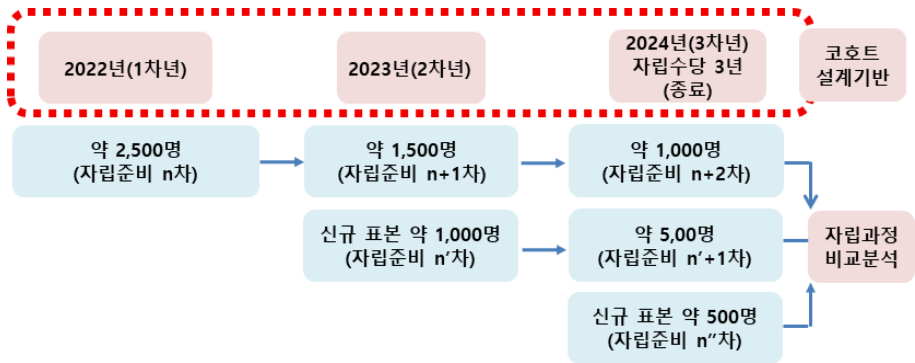
(1)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2022~2024)²⁷⁾

앞서 정의한 자립준비청년의 유형과 범주에서 ‘유사한 취약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아동·청소년기에 일정 기간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고 청년기 자립생활을 위해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크게 ①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퇴소 자립준비청년,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후 사후관리를 받고 있거나(자립지원수당 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례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 ③ 「소년법」 상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서 출원한 경험이 있거나 조사시점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 청년으로 구분하였다.

본 조사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1차년에는 조사 표본 목표 규모를 2,500명으로 설정하고 세 집단의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 수를 결정하였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1,866명,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467명,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 124명 등 총 2,4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최종 활용되었다. 2차년, 3차년의 신규 표본 충원 계획은 아래 그림과 같다. 예는 1년차 코호트를 대상으로 자립준비 2년차, 3년차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하되 각 년도의 전체 표본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유실된 만큼 신규 표본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립 연차에 따른 자립과정과 지원효과를 역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집단 내 격차 해소를 포함한 정책성과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각 년도 조사 규모와 신규 표본 충원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그림 IV-4).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쳤다(승인번호 202206-HR-고유-012).

27) 조사의 주요내용과 1차년도 조사 표본의 특성은 “2022년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결과표”를 참고할 수 있다.



* 주: 1) 각 년도 조사대상 시설폐소 자립준비청년은 약 2,500명(「아동복지법」 상 자립준비청년 1,950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자립준비청년 400명, 「소년법」 상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 150명)으로, 패널 유지율은 60% 이상을 목표로 하되 유실 규모만큼 신규 표본을 충원할 계획임.
2) 단, 각 년도 조사규모는 가변적일 수 있음.

그림 IV-4. 연차별 조사 표본 규모와 설계(안)

(2) 2차 자료 분석 :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집단 간 생활실태와 제도적 개입지점을 확인하고자 일반 청년 집단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인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표본의 평균 연령(24세)을 고려하여 일반 청년 표본에서 30세 이하 사례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3) 자립준비청년 대상 면접조사

양적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생애 경험과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시설과 기관의 사례관리(사후관리 포함)를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각 10명(총 30명)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청년의 거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각 집단별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주자를 각각 5명씩 안배하여 유의 표집하였다. 자립준비청년 면접조사 대상자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IV-10).

표 IV-10. 자립준비청년 면접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지역	성별	나이(만)	주요 현황
1	아동 복지 시설 퇴소	수 도 권	여	21	전문대학 재학(편입준비 중), 생계급여대상, LH전세임대
2			남	21	대학 재학, 생계급여대상, LH전세임대
3			여	22	대학 재학(휴학 중, 아르바이트), 생계급여대상, LH전세임대
4			여	23	대학 재학(휴학 중, 청년인턴 병행) LH전세임대
5			남	24	납품업체재직(이직준비), LH전세임대, 부채(금융사기), 경계선지능
6		비 수 도 권	남	24	고졸, 실직, LH전세임대(친형집 거주), 부채(차량구매)
7			남	22	태권도사범, 대학 재학, LH전세임대
8			여	29	간호사, LH영구임대, 가족생계책임
9			여	20	대학 재학(근로장학), 생계급여대상, 자립생활관 거주
10			여	21	전문대학 재학, 생계급여대상, 자립생활관 거주
11	청소년 복지 시설 퇴소	수 도 권	남	25	대학 재학(아르바이트 병행), LH전세임대, 부채(부모님 생활비)
12			남	26	대학 재학(근로장학 아르바이트 병행), LH전세임대, 심한 편두통 호소,
13			여	23	대학 재학(근로장학 아르바이트병행), LH전세임대, 부채(부모님생활비)
14			남	22	고졸(검정고시), 자립생활관 거주, 일자리 2개 이상, 부채(부동산사기)
15			여	23	대학 중퇴(인턴근무), 친구집 거주(월세), 신경정신과 약물 복용중
16		비 수 도 권	여	23	보육원-쉼터 경험, 대학재학(아르바이트), 생계급여대상, LH월세임대
17			여	22	사이버대학 재학(회사 정규직 취업), LH청년월세임대, 부채(생활비)
18			남	22	고등학교 중퇴, 월세주거, 희귀병 투병, 실직
19			여	21	대학 자퇴(편입준비 중), 월세거주, 아르바이트 2개 이상,
20			남	21	NEET상태, 대학 자퇴, LH전세임대, 생계급여대상
21	소년 보호 시설 퇴소	수 도 권	남	25	청소년부모, 사이버대학 재학, 월세주거, 예스센터 경험, 자영업
22			남	25	예스센터 경험, 월세주거, 자영업(배달업체), 부채(배달사고)
23			여	19	양육시설 경험, 통고제도로 소년원 입소, 월세주거
24			남	22	통고제도로 소년원 입소, 쉼터퇴소, LH임대(월세), 고교재학
25			남	20	통고제도로 소년원 입소, 방통대학 재학, 취업함, 부채(금융사기)
26		비 수 도 권	남	26	양육시설 경험, 전문대졸, 월세거주, 제조업 근무, 부채(금융사기)상환
27			남	27	전문대졸, 공익근무 중, 부모님집 거주, 취업고민, 고혈압
28			남	20	양육시설 경험, 대학 재학, 생계급여대상, 자립생활관 거주
29			남	20	통고제도로 소년원 입소, 전문대학 재학, 자립생활관 거주
30			남	25	예스센터 경험, 자립생활관 거주, 취업준비 중, 부채(금융사기), 고혈압

2) 조사결과 : 일반 청년과의 격차를 중심으로

(1) 조사표본 및 일반 청년 표본의 특성

1차년도 조사표본에서 만 19세 이상 시설퇴소청년은 총 2,457명으로(목표 표본 2,500명),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조사 규모를 할당한 결과 아동시설 퇴소청년 1,866명,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467명,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12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조사표본의 평균 연령은 22.2세(아동시설 퇴소청년 22.7세,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22.4세,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24.2세), 비교 대상인 일반 청년 표본(30세 이하)의 평균 연령은 24.3세이며 경제수준과 거주지역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IV-11).

표 IV-11. 조사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빈도)

구분	시설퇴소청년			일반 청년 ⁴⁾	통계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성별	남자	49.4 (922)	45.4 (212)	87.9 (109)	$\chi^2=76.221^{***}$ ($df=3$)
	여자	50.6 (944)	54.6 (255)	12.1 (15)	
연령 ²⁾	20세 이하	18.9 (352)	21.6 (101)	14.5 (18)	$\chi^2=558.712^{***}$ ($df=9$)
	21-24세	60.7 (1,133)	59.5 (278)	39.5 (49)	
	25-28세	19.2 (359)	18.8 (88)	34.7 (43)	
	29세 이상	1.2 (22)	0.0 (0)	11.3 (14)	
	평균(표준편차)	22.72(2.27)	22.35(2.13)	24.15(3.13)	$F=109.493^{***}$ ($df=3, 4015$)
경제 수준 ³⁾	상	8.9 (167)	7.1 (33)	16.1 (20)	$\chi^2=789.044^{***}$ ($df=6$)
	중	57.6 (1,074)	50.3 (235)	52.4 (65)	
	하	33.5 (625)	42.6 (199)	31.5 (39)	
거주 지역	수도권	29.9 (558)	49.9 (233)	54.8 (68)	$\chi^2=117.682^{***}$ ($df=3$)
	비수도권	70.1 (1,308)	50.1 (234)	45.2 (56)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조사시점 당시의 만 연령 기준이며(일반청년은 2021년 6월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2022년 6월 기준)

3) 10점 척도(1최하~10최상)로 측정, 가구소득수준 1-3은 '하', 4-6은 '중', 7-10은 '상'으로 분류

4)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에서 30세 이하만 분석(이하 동일)

(2) 대학 진학 및 졸업 유예 경험 비교

먼저 대학 진학 경험의 경우 일반 청년 표본의 10명 중 7명 이상(75.8%)인 반면 아동시설 퇴소청년은 69.3%,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은 38.1%, 보호시설 퇴소청년은 25.8%에 불과하였다. 반면, 대학 미진학자 가운데 향후 대학 진학 의사는 일반 청년(22.5%) 보다 시설퇴소청년 집단에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나(표 IV-12), 안정적인 직업생활 등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시설퇴소청년의 대학 진학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는 '취업 및 근로', '경제적 어려움', '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 등이었다.

표 IV-12. 대학진학 경험 및 향후 진학 의사

단위: % (빈도)

구분		시설퇴소청년			일반 청년	통계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대학 진학	경험 없음	30.7 (573)	61.9 (289)	74.2 (92)	24.2 (378)	$\chi^2 = 329.779^{***}$ (df=3)
	경험 있음	69.3 (1,293)	38.1 (178)	25.8 (32)	75.8 (1,184)	
향후 진학 의사	의사 없음	58.6 (336)	60.2 (174)	76.1 (70)	77.5 (293)	$\chi^2 = 44.247^{***}$ (df=3)
	의사 있음	41.4 (237)	39.8 (115)	23.9 (22)	22.5 (85)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대학 진학자 가운데 졸업 유예 경험자의 비율을 보면, 일반 청년(9.5%) 보다 시설퇴소청년이 각각 더 많았다(아동시설 퇴소청년 10.8%,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16.9%,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12.5%). 주목할 부분은 대학 졸업을 유예한 사유인데, 일반 청년은 취업준비(38.1%), 졸업 후 취업 걱정(14.2%)이 주된 이유인 반면, 시설퇴소청년의 경우 '학비·생활비 조달'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이 외 아동시설 퇴소청년은 진로 미결정, 청소년시설 퇴소자는 졸업 후 취업 걱정, 보호시설 퇴소청년은 졸업 후 지원 종결 사유로 인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IV-13).

표 IV-13. 대학 졸업 유예 경험 및 이유

단위: % (빈도)

	구분	시설·퇴소청년			일반 청년	통계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졸업 유예	경험 없음	89.2 (1,154)	83.1 (148)	87.5 (28)	90.5 (1,071)	$\chi^2=8.855^*$ ($df=3$)
	경험 있음	10.8 (139)	16.9 (30)	12.5 (4)	9.5 (113)	
졸업 유예 이유	취업준비	18.0 (25)	3.3 (1)	0.0 (0)	38.1 (43)	$\chi^2=101.254^{***}$ ($df=24$)
	진로 미결정	20.9 (29)	3.3 (1)	50.0 (2)	14.2 (16)	
	졸업 후 취업 걱정	3.6 (5)	20.0 (6)	0.0 (0)	27.4 (31)	
	학비·생활비 조달	27.3 (38)	46.7 (14)	25.0 (1)	15.0 (17)	
	여가·쉼 목적	7.2 (10)	3.3 (1)	0.0 (0)	3.5 (4)	
	학과공부의 어려움	7.2 (10)	3.3 (1)	0.0 (0)	0.0 (0)	
	졸업후지원종결	2.9 (4)	0.0 (0)	25.0 (1)	0.0 (0)	
	건강 문제	2.9 (4)	3.3 (1)	0.0 (0)	0.0 (0)	
	기타	10.1 (14)	16.7 (5)	0.0 (0)	1.8 (2)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여 휴학 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학과공부에 적응이 맞지 않아 전과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임(사례3)
- 진로 미결정과 취업을 위해 어학연수, 기업인턴 활동과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휴학을 결정하게 됨(사례4)
- 대학 진학 후 성폭력 사건을 겪고 학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휴학을 결정하게 됨, 대학교 내 성폭력상담센터가 없어 한국여성의전화에 지원을 받아 1년 정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임(사례15)
- 부모님의 이혼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 질 때 아버지와 연락이 됨, 아버지의 경제적인 지원 덕분에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 다시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사례19)
- 대학교 등록금은 기관에 후원금으로 해결함, 예체능에 재능과 소질을 보여서 관련학과로 진학하였으나, 전공학과 관련으로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등록금지원도 어려웠기 때문에 자퇴하게 됨(사례26)

(3) 취업자의 일 경험 및 위험 노출 경험 비교

취업자(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의 근로시간을 보면 일반 청년은 주당 약 40시간인 반면 시설퇴소청년의 경우 주당 약 30시간 미만으로 약 10시간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월 평균 소득액은 일반 청년과 보호시설 퇴소청년이 각각 2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아동 및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은 월 평균 약 160만 원 미만 수준이었다(표 IV-14).

한편 취업자의 일자리 개수를 보면 일반 청년 표본에서 10명 중 9명 이상이 평균 일자리 개수가 1개인 반면, 시설퇴소청년의 경우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러 개 일자리에 단시간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애기간 중 플랫폼 노동 경험을 보면 일반 청년은 3.8% 수준인 반면, 아동시설 퇴소청년은 9.6%,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은 15.2%,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34.7%에 달하였다(표 IV-15).

표 IV-14. 취업자의 근로시간 및 월소득

		A	B	C	D	유의도 ¹⁾	집단간 비교 (Bonferroni)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일반 청년		
근로시간(지난주) [평균(sd)]		28.52 (18.26)	29.95 (19.72)	29.49 (21.82)	40.24 (11.17)	$F=97.457^{***}$ ($df=3, 2715$)	A<D, B<D, C<D,
월소득(만 원)		155.81 (88.48)	141.60 (88.26)	234.06 (114.29)	215.88 (92.28)	$F=122.254^{***}$ ($df=3, 2724$)	A>B, A<C, A<D, B<C, B<D

단위: 백분율(%)

구분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일반 청년	유의도 ¹⁾	
근로활동 참여여부	비율	65.9	70.0	74.2	59.5	$\chi^2=29.524^{***}$ ($df=3$)	
	사례수	1,866	467	124	1555		
월소득	50만 원 이하	19.7	20.9	8.4	5.9	$\chi^2=318.856^{***}$ ($df=12$)	
	50-100만 원 이하	14.7	18.6	6.3	7.6		
	100-200만 원 이하	38.1	40.3	23.2	30.0		
	200-300만 원 이하	24.8	17.4	46.3	47.2		
	300만 원 초과	2.7	2.9	15.8	9.3		
	사례수	n=1,367	n=350	n=95	n=916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5.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

단위: % (빈도)

(지난주) 일자리 수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일반청년	유의도 ¹⁾
1	88.0 (1,209)	74.3 (260)	75.0 (75)	98.7 (920)	$\chi^2=203.095^{***}$ ($df=9$)
2	10.0 (137)	20.3 (71)	19.0 (19)	1.1 (10)	
3	1.0 (14)	4.0 (14)	3.0 (3)	0.1 (1)	
4개 이상	1.0 (14)	1.4 (5)	3.0 (3)	0.1 (1)	
(생애기간) 플랫폼 노동 경험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일반청년	유의도 ¹⁾
없음	90.4 (1,686)	84.8 (396)	65.3 (81)	96.2 (1,503)	$\chi^2=178.394^{***}$ ($df=3$)
있음	9.6 (180)	15.2 (71)	34.7 (43)	3.8 (59)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트는 주4회 3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2회 7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아 대략 95만정도의 수입 발생함, 최저시급을 지급해주는 곳을 구하기 위해 20군데 이상 면접을 봄(사례19)
- 3인식구가 한 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업으로 하는 자동차 디테일링 이외 배달대행, 영상편집 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사례21)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소를 당한 경험’은 일반 청년 보다 시설퇴소청년 집단에서 10%p 이상 많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경험률은 반대로 10%p 정도 낮았다. 주목할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인데, 일반 청년의 경우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인 반면, 시설퇴소청년의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일반 청년 표본 대비 약 40배에 달하였다(표 IV-16).

표 IV-16.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교

단위: 비율(%)

퇴직 경험	A	B	C	일반 청년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스스로 그만 둔 적 있음	43.2	48.4	47.8	28.4	$\chi^2=510.102^{***}$ (df=9)
해고를 당한 적 있음	8.2	11.2	11.3	2.0	
둘 다 경험	5.3	17.9	13.0	1.9	
둘다 경험한적 없음	43.3	22.4	27.8	67.8	
사례수	n=1699	n=446	n=115	n=1562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음	81.7	85.8	80.7	70.9	$\chi^2=30.391^{***}$ (df=3)
받은 적 있음	18.3	14.2	19.3	29.1	
사례수	n=964	n=345	n=83	n=405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름	36.3	41.1	49.3	1.0	$\chi^2=700.214^{***}$ (df=21)
신청했는데 받지못함	1.3	3.7	0.0	0.0	
절차가 복잡해서	5.2	6.1	9.0	2.4	
신청을 안해서	25.5	19.9	26.9	0.0	
다른 곳에 취업이 되서	16.4	13.5	7.5	7.0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13.5	14.8	6.0	86.8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²⁾	-	-	-	2.8	
기타	1.9	1.0	1.5	0.0	
사례수	n=788	n=297	n=67	n=287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이 응답 범주는 2022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에는 미포함

한편, 청년들이 지금까지 직장에서 괴롭힘과 산업안전과 관련한 위험에 노출된 경험을 비교한 결과 7개 비교 항목 모두에서 일반 청년 보다 시설퇴소청년의 피해 경험률이 매우 높았다. 반면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의 수혜 경험은 일반 청년(약 25%) 보다 시설퇴소청년 중 아동 및 청소년시설 퇴소자의 비율(14.3%, 8.0%)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표 IV-17).

표 IV-17. 부당노동행위 피해 및 위험 노출 경험

단위: %(빈도)

구분	A	B	C	일반 청년	유의도1)
	아동시설 퇴소자	청소년시설 퇴소자	보호시설 퇴소자		
욕설 및 폭력을 경험	11.2 (191)	26.7 (119)	21.7 (25)	4.2 (36)	$\chi^2=151.578^{***}$ (df=3)
권리와 요구를 무시당함	10.4 (176)	24.2 (108)	22.6 (26)	4.7 (40)	$\chi^2=127.719^{***}$ (df=3)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경험	5.0 (85)	15.7 (70)	6.1 (7)	1.8 (15)	$\chi^2=109.194^{***}$ (df=3)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나 안전에 관한 교육받음	38.6 (655)	39.9 (178)	43.5 (50)	14.8 (125)	$\chi^2=166.715^{***}$ (df=3)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근로환경에 노출됨	13.2 (224)	23.5 (105)	25.2 (29)	5.3 (45)	$\chi^2=103.203^{***}$ (df=3)
일하는 동안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친 적이 있음	20.2 (344)	39.0 (174)	33.9 (39)	3.3 (28)	$\chi^2=273.253^{***}$ (df=3)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음	14.3 (49)	8.0 (14)	38.4 (15)	25.0 (7)	$\chi^2=51.595^{***}$ (df=3)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처음 취업한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실직을 경험하게 되었음(사례5)
- 배달대행 일을 2년 6개월 이상 하면서 타박상과 골절을 입었으나, 산재처리를 받지 못함, 건설현장 안전관리직으로 1년 3개월 일함(사례6)
- 주업 수입이 낮아 간간히 배달대행 일을 하는데 음식 배달 서비스 특성상 빨리 제공해야 된다는 점때문에 항상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 위험 노출됨, 또 배달대행 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주업이랑 병행함(사례21)

(4) 부채 여부 비교 및 부채의 사유

청년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부채(채무)의 여부와 그 사유를 살펴본 결과, 부채가 있는 비율은 일반 청년(14.7%) 보다 시설퇴소청년(33.3%, 42.8%, 54.8%)이 각각 2배 이상 더 많았다. 시설퇴소청년의 부채 사유를 보면 ‘주거비 마련’ 사유가 가장 많았는데 이로 인한 부채 액수는 평균 약 480만 원이었고, 본 조사표본의 부채 액수는 평균 약 1,200만 원에 달하였다. 특히 주거비, 학자금(평균 약 110만 원), 생활비(약 145만 원) 이 외 기타(약 270만 원), 가족으로 인한 채무(약 92만 원), 범죄피해로 인한 채무(약 70만 원) 등 부채 사유가 다양하였다. 반면 본인 명의의 자산(재산)은 평균 약 77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예금, 적금 등 저축, 보증금, 차량 등의 환산 총액이 포함된다. 즉, 부채 규모에서 자산액을 감액한 실제 부채액 수준을 보면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919만 원,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696만 원, 아동시설 퇴소청년 250만 원 등의 수준이었다(표 IV-18)²⁸⁾.

시설퇴소청년이 주로 이용한 대출 기관은 제1금융권인 은행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제2금융권, 친구/지인, 기타, 대부업체 등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IV-5).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다양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되,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대출 시 저금리 안전 대출 상품 연계와 개인별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한 지원 및 법률지원 등 권익구제도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8) 자산이 1만 원 이하거나, 부채(빚, 대출 등)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자산액은 0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표 IV-18. 부채(채무) 여부 및 사유

단위: 비율(%), 만 원 [평균 (sd)]

부채(%)		시설퇴소청년			일반 청년	통계 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자	청소년시설 퇴소자	보호시설 퇴소자			
유무	없음	66.7	57.2	45.2	85.3	$\chi^2=259.866^{***}$ ($df=3$)	
	있음	33.3	42.8	54.8	14.7		
규모	없음	66.9	57.4	46.3	-	$\chi^2=43.023^{***}$ ($df=8$)	
	5백만 원 이하	20.2	23.9	24.0	-		
	1천만 원 이하	4.6	5.6	9.9	-		
	3천만 원 이하	5.2	8.4	13.2	-		
	3천만 원 초과	3.1	4.7	6.6	-		
채무 이유 & 채무액 (만 원)		A	B	C	전체평균	유의도 ¹⁾	집단간 비교 (Bonferroni)
		아동시설 퇴소자	청소년시설 퇴소자	보호시설 퇴소자			
학자금 마련		120.33 (sd=311.37)	90.10 (sd=349.80)	94.63 (sd=436.05)	111.56 (sd=331.02)	$F=0.725$ ($df=3, 4015$)	-
주거비 마련 ²⁾		461.68 (sd=1798.34)	457.23 (sd=1812.80)	714.13 (sd=2438.31)	479.99 (sd=1856.76)	$F=0.585$ ($df=2, 886$)	-
생활비 마련 ³⁾		134.69 (sd=325.30)	159.47 (sd=475.57)	197.06 (sd=387.81)	145.06 (sd=369.20)	$F=1.071$ ($df=2, 884$)	-
창업자금 마련		20.58 (sd=345.28)	5.96 (sd=71.10)	87.66 (sd=470.47)	22.42 (sd=318.53)	$F=1.706$ ($df=2, 886$)	-
가족으로 인한 채무		63.22 (sd=462.30)	185.27 (sd=849.19)	94.04 (sd=299.79)	92.82 (sd=565.22)	$F=3.520^*$ ($df=2, 883$)	A<B, B>C
범죄피해로 인한 채무 ⁴⁾		52.78 (sd=307.39)	92.65 (sd=354.56)	160.49 (sd=787.92)	69.99 (sd=376.74)	$F=2.985$ ($df=2, 886$)	-
기타		243.16 (sd=720.72)	321.62 (sd=841.60)	395.85 (sd=634.09)	272.35 (sd=744.44)	$F=1.841$ ($df=2, 885$)	-
채무 총액(평균)		1101.40 (sd=2086.58)	1313.82 (sd=2364.31)	1638.28 (sd=2582.36)	1188.85 (sd=2193.92)	$F=2.181$ ($df=2, 877$)	-
자산 (단위: 만 원)		A	B	C	전체평균	유의도 ¹⁾	집단간 비교 (Bonferroni)
		아동시설 퇴소자	청소년시설 퇴소자	보호시설 퇴소자			
본인명의로 자산 (환산액)		851.79 (sd=1496.13)	394.87 (sd=978.97)	942.10 (sd=2286.17)	769.50 (sd=1475.36)	$F=19.083^{***}$ ($df=2, 2454$)	A<C, B<A, B<C,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포함(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등 포함)

3)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포함(햇살론 유스 대출 등 포함)

4) 보이스 피싱, 명의 도용, 소액 결제 피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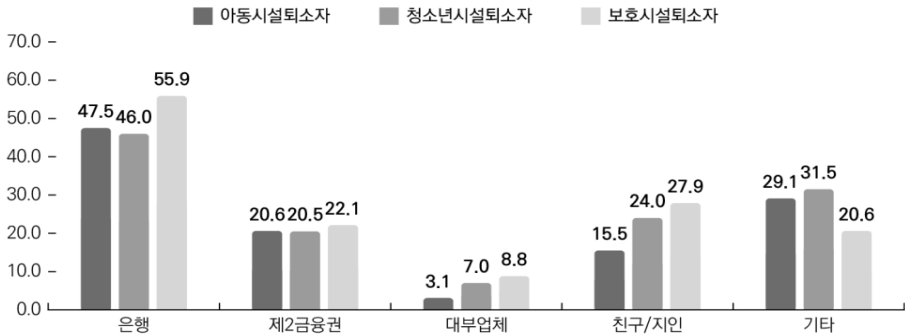


그림 IV-5. 시설퇴소청년이 이용한 대출기관

한편 본 조사표본에서 시설퇴소청년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15만 원 정도였는데(표 IV-19),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비, 주거비로 두 항목에 대한 지출이 전체 지출의 50%를 초과하였다. 한편 근로소득, 가족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수입 대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저축을 포함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문화생활 등 현재의 자신과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한 투자는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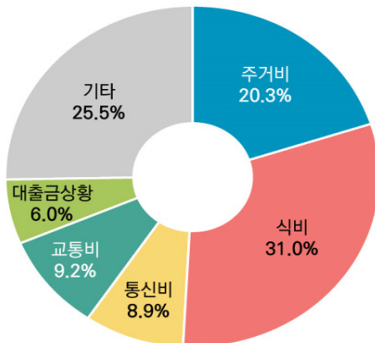


그림 IV-6. 생활비 지출 항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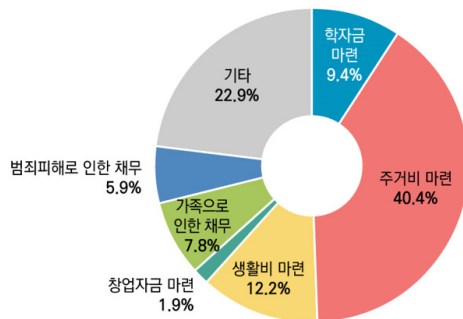


그림 IV-7. 부채(채무)의 항목별 비중

표 IV-19. 생활비 지출 및 지원

단위: 만 원 [평균 (sd)], 비율(%)

구분		A	B	C	전체 평균	통계 검증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유의도 ¹⁾	집단간 비교 (Bonferroni)
생활비 (지출)	주거비 ²⁾	21.67 (19.59)	25.09 (24.23)	43.31 (47.63)	23.41 (23.22)	$F=54.203^{***}$ ($df=2, 2453$)	A<B, A<C, B<C
	식비	35.14 (20.67)	31.16 (23.34)	62.98 (61.17)	35.79 (25.63)	$F=83.180^{***}$ ($df=2, 2454$)	A<C, B<A, B<C
	통신비	9.99 (7.99)	10.10 (10.49)	16.10 (19.39)	10.32 (9.48)	$F=24.767^{***}$ ($df=2, 2454$)	A<C, B<C
	교통비	9.71 (11.16)	8.29 (10.53)	32.90 (54.43)	10.61 (17.05)	$F=124.170^{***}$ ($df=2, 2454$)	A<C, B<C
	대출금상환	5.96 (19.10)	7.86 (20.57)	18.37 (43.06)	6.95 (21.39)	$F=20.398^{***}$ ($df=2, 2449$)	A<C, B<C
	기타생활비	28.89 (27.54)	26.02 (29.16)	50.82 (59.38)	29.44 (30.63)	$F=34.077^{***}$ ($df=2, 2453$)	A<C, B<C
	생활비총액	111.40 (60.23)	108.03 (71.95)	205.90 (155.08)	115.43 (73.13)	$F=106.222^{***}$ ($df=2, 2445$)	A<C, B<C
가족 지원 (수입)	지원 있음	5.3%	12.4%	8.1%	-	$\chi^2=30.173^{***}$ ($df=2$)	
	지원 액수 ⁴⁾	30.61 (31.64)	32.10 (30.12)	56.10 (64.01)	32.65 (34.06)	$F=2.605$ ($df=2, 164$)	-
사회 지원 ³⁾ (수입)	지원 있음	60.8%	35.1%	20.2%	-	$\chi^2=159.116^{***}$ ($df=2$)	
	지원 액수 ⁴⁾	53.38 (29.18)	41.78 (31.26)	51.40 (56.90)	51.90 (30.39)	$F=10.583^{***}$ ($df=2, 1318$)	A>B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3)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종교단체 등에서의 지원

4)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만을 분석한 평균값

- 부모님이 생계급여대상자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액에 절반은 부모님 생활비지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 생활비로 사용함(사례11)
- 현재 모아둔 돈이 거의 없으며 향후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생활비 마련으로 대출 신청함(사례12)
-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본인 명의 도용하여 8채의 부동산이 생겨나 재산세와 휴대폰 사기사건으로 천만 원 부채 발생하게 됨(사례14)
-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상황에서 주거비 마련, 생활비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생긴 부채 천삼백만 원을 모두 상환함(사례17)
- 친구에게 휴대폰 사기를 당하여 천오백만 원의 빚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휴대폰 사기 빚을 갚기 위해 햇살론 대출을 오백만 원을 다시 대출받은 상황임(사례30)

(5) 사회적 관계와 고립감의 정도 비교

청년들의 사회활동 정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 청년에 비해 시설퇴소청년은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기보다 제한적으로 참여하거나, 사회적인 고립상태에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물리적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비율을 보면 일반 청년은 0.3% 수준인 반면, 시설퇴소청년은 이를 약 10배 정도 초과하였다(표 IV-20).

표 IV-20. 사회활동의 정도

단위: 백분율(%)

구분	시설퇴소청년			일반 청년	통계 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활발한 사회활동 ²⁾	85.4	83.9	89.5	95.8	$\chi^2=130.042^{***}$ (df=6)
제한적 사회활동 ³⁾	11.5	10.9	5.6	3.9	
물리적 고립(은둔) ⁴⁾	3.2	5.1	4.8	0.3	
사례수	n=1,866	n=467	n=124	n=1,562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평소 직장, 학교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자주, 주 3회 이상, 혹은 매일 외출하는 경우

3) 평소 보통 집에 머무르나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인근 편의점 이용을 위해 제한적으로 외출하는 경우

4) 평소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

한편, 주관적인 고립감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일반 청년의 평균값이 7.55 수준인 반면 시설퇴소청년의 경우 세 집단 모두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표 IV-21). 이와 함께 본 조사표본에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된 NEET 상태를 경험한 비율은 세 집단 모두 과반 이상이였다. NEET 상태를 경험한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NEET 상태를 경험한 기간인 1년 이상인 경우도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31.3%,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26%,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17.2%에 달하여 NEET 청년 대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표 IV-22).

표 IV-21. 사회적 고립감

단위: 평균(sd)

구분	아동시설 퇴소자(A)	청소년시설 퇴소자(B)	보호시설 퇴소자(C)	일반청년 (D)	유의도 ¹⁾	집단간 비교 (Bonferroni)
고립감 ²⁾	7.92 (4.04)	10.28 (4.95)	8.06 (4.25)	7.55 (2.71)	$F=65.958^{***}$ (3, 4015)	A<B, A>D, B>C, B>D
사례수	n=1,866	n=467	n=124	n=1,562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등 5개 항목에 대해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여 합산한 값

표 IV-22. NEET¹⁾ 상태 경험 여부 및 기간 : 시설퇴소청년

구분		A	B	C	유의도 ²⁾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경험 유무	경험 없음	48.0	34.2	33.3	$\chi^2=8.597^*$ ($df=2$)
	경험 있음	52.0	65.8	66.7	
	사례수	n=492	n=117	n=24	
경험 기간	1개월 미만	33.2	23.4	18.8	$\chi^2=111.615^{***}$ ($df=9$)
	1개월~1년 미만	49.6	50.6	50.0	
	1년 이상~2년 미만	9.4	16.9	12.5	
	2년 이상	7.8	9.1	18.8	
	사례수	n=256	n=77	n=16	

* 주: 1)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로 조작적으로 정의됨

2) * $p < .05$, ** $p < .01$, *** $p < .001$

- 학귀병 투병 중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 및 생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임, 간혹 한 달에 1번 정도 편의점 대타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도 그날 몸 상태에 따라 다름, 취미생활 및 사람 만나기 위해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음(사례18)
- 무기력감을 느끼며 취업을 하던 월 배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또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로 다수의 집단에서는 사람과 대화하기 어렵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 대화는 특히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함(사례20)

(6) 부정적인 생애 사건 경험과 삶의 만족도 비교

아동·청소년기(18세 이전)에 부정적인 사건(8개 항목)의 경험 여부를 비교한 결과 전체 항목에서 일반 청년에 비해 시설퇴소청년의 경험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부모(보호자)의 학대와 방임 경험은 일반 청년 표본에서 8.6%인 반면 아동시설 퇴소청년은 33.8%,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은 76.7%,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51.6%에 달하였다. 또한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휴학 등)한 경험,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 경험,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의 위기를 경험한 비율도 일반 청년 보다 일관성 있게 높았다. 이 외 성폭력(성적 학대나 착취 등) 피해를 당한 경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 폭력 등 피해를 당한 경험 등 고위기 사건을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었다(표 IV-23).

표 IV-23. 18세 이전의 부정적 생애 사건 경험 비교

단위: 백분율(%)

구분	시설퇴소청년			일반 청년	통계 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짐	46.8	66.0	59.7	17.8	$\chi^2=510.540^{***}$ (df=3)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 (휴학 포함)	11.0	25.7	19.4	4.7	$\chi^2=180.379^{***}$ (df=3)
부모(보호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언어폭력 또는 방임을 당함	33.8	76.7	51.6	8.6	$\chi^2=873.413^{***}$ (df=3)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함	27.1	54.0	26.6	6.8	$\chi^2=513.152^{***}$ (df=3)
성폭력(성적 학대 등) 피해	10.1	23.6	8.9	-	$\chi^2=62.731^{***}$ (df=2)
가까운 사람의 죽음	38.0	48.0	53.2	15.0	$\chi^2=323.773^{***}$ (df=3)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함 (배신, 사기 등)	20.3	47.8	43.5	7.2	$\chi^2=439.565^{***}$ (df=3)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함 (사기, 폭력 등)	10.5	29.8	25.0	-	$\chi^2=120.786^{***}$ (df=2)
사례수	n=1,866	n=467	n=124	n=1,562	-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이와 함께 시설퇴소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주거지로서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한 경험과 그 기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표본에서 시설퇴소청년들은 아동·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생활시설을 중복적으로 경험하였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18.8%(약 65개월),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28.2%(약 120개월)가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아동그룹홈)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시설에서 보호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조사표본에서 청년들은 생애기간 중 고시원,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10.8%(평균 4.7개월), 청소년시설(평균 9.5개월)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평균 약 9개월)의 경우 약 40%에 달하였다. 즉, 소년보호시설을 제외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 청소년복지시설의 입·퇴소 방식에 대한 점검과 시설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대안 마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표 IV-24).

표 IV-24. 시설 및 부적절한 주거 경험과 거주 기간

유형	주거 경험(%)			통계 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아동양육시설	87.7	18.8	28.2	$\chi^2=990.842^{***}$ ($df=2$)	
청소년시설 (쉼터, 회복지원시설)	7.4	80.3	36.3	$\chi^2=1144.742^{***}$ ($df=2$)	
자립지원관·생활관	18.2	33.6	50.0	$\chi^2=106.211^{***}$ ($df=2$)	
미혼모·성폭력피해자· 노숙인 시설	0.8	4.1	1.6	$\chi^2=27.594^{***}$ ($df=2$)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교도소·구치소	1.2	7.5	78.2	$\chi^2=1176.335^{***}$ ($df=2$)	
숙박시설 (고시원, 모텔 등)	10.8	42.0	41.9	$\chi^2=290.878^{***}$ ($df=2$)	
기타	4.4	30.0	26.6	$\chi^2=297.537^{***}$ ($df=2$)	
표본크기	n=1866	n=467	n=124	-	
유형	거주 기간(개월 평균, sd)			통계 검증	
	아동시설 퇴소자(A)	청소년시설 퇴소자(B)	보호시설 퇴소자(C)	유의도 ¹⁾	집단간 비교 (Bonferroni)
아동양육시설	146.27 (71.17)	65.07 (68.99)	120.91 (80.65)	$F=55.738^{***}$ (2, 1755)	A>B, B<C
청소년시설 (쉼터, 회복지원시설)	13.01 (24.71)	26.65 (25.34)	14.07 (15.40)	$F=18.307^{***}$ (2, 555)	A<B, B>C
자립지원관·생활관	15.27 (28.65)	12.31 (12.29)	21.23 (22.78)	$F=2.978$ (2, 552)	-
미혼모·성폭력피해자· 노숙인 시설	6.47 (15.14)	4.47 (4.46)	3.50 (3.54)	$F=0.183$ (2, 33)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교도소·구치소	6.64 (6.72)	12.88 (15.08)	22.74 (20.55)	$F=9.041^{***}$ (2, 150)	A<C, B<C
숙박시설 (고시원, 모텔 등)	4.70 (7.87)	9.51 (11.71)	9.00 (12.42)	$F=11.736^{***}$ (2, 447)	A<B, A<C
기타	3.08 (5.00)	4.77 (9.76)	10.88 (21.35)	$F=6.154^{**}$ (2, 253)	A<C, B<C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여러 번 거주한 경우 총 기간을 기재, 거주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경우만 포함

다음으로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비교 대상 4개 항목에서 일반 청년 표본의 경우 평균 7점 수준(11점 척도)인 반면 시설퇴소청년은 평균 4~5점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가족관계의 경우 평균 3~5점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가족으로부터 경험한 폭력적인 사건의 결과이며 동시에 가족으로부터 자립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을 방증한다(표 IV-25).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청년의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상 취약성은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과 이로 인한 피해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지원 보다 트라우마의 회복과 개인별 대처 역량 개발을 위해 보다 체계적, 장기적, 전문적인 개입이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V-25.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교¹⁾

단위: 평균(sd)

구분	아동시설 퇴소청년 (A)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B)	보호시설 퇴소청년 (C)	일반청년 (D)	유의도 ²⁾	집단 간 비교
건강	5.40 (2.39)	4.47 (2.51)	5.44 (2.56)	7.25 (1.76)	$F=296.673^{***}$ ($df=3, 4015$)	A>B, A<D, B<C B<D, C<D
가족관계	4.62 (2.94)	3.29 (3.07)	5.11 (3.25)	7.32 (1.66)	$F=455.066^{***}$ ($df=3, 4015$)	A>B, A<D, B<C, B<D, C<D
다른 사람과의 관계	6.52 (2.16)	5.77 (2.59)	6.58 (2.39)	7.06 (1.42)	$F=56.544^{***}$ ($df=3, 4015$)	A>B, A<D, B<C, B<D,
나의 미래	5.32 (2.38)	4.63 (2.65)	5.23 (2.94)	-	$F=14.989^{***}$ ($df=2, 2454$)	A>B, B<C
전반적인 나의 인생	5.18 (2.47)	4.26 (2.73)	4.80 (2.85)	6.45 (1.59)	$F=159.376^{***}$ ($df=3, 4015$)	A>B, A<D, B<D, C<D
사례수	n=1,866	n=467	n=124	n=1,562	-	-

* 주: 1) 11점 척도(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⑪ 매우 만족함)로 측정됨

2)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6.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단위: 백분율(%)

구분	시설퇴소청년			일반 청년 (22년)	통계 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수입(소득) 감소	27.7	45.8	46.8	16.6	$\chi^2=69.121^{***}$ ($df=2$)
실직 또는 구직의 어려움	30.4	55.7	37.1	14.4	$\chi^2=104.421^{***}$ ($df=2$)
다른 사람과의 대면접촉 감소	56.8	69.4	51.6	56.4	$\chi^2=27.457^{***}$ ($df=2$)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	65.3	76.2	56.5	57.1	$\chi^2=26.710^{***}$ ($df=2$)
생활리듬이 깨짐 (수면 등)	45.4	61.0	46.8	31.2	$\chi^2=36.466^{***}$ ($df=2$)
게임 등 인터넷 사용 시간 증가	59.3	76.2	60.5	44.9	$\chi^2=45.848^{***}$ ($df=2$)
흡연, 음주의 증가	23.8	45.6	56.5	13.2	$\chi^2=129.901^{***}$ ($df=2$)
신체활동량 감소	55.0	68.3	56.5	44.1	$\chi^2=27.015^{***}$ ($df=2$)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42.3	51.0	26.6	63.7	$\chi^2=25.944^{***}$ ($df=2$)
코로나19 확진 판정	43.9	41.1	37.1	45.7	$\chi^2=3.044$ ($df=2$)
표본크기	n=1,866	n=467	n=124	n=2,059	-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원래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절반이상 줄어들어 배달대행일을 시작하게 됨, 그 당시 배달대행업무가 증가하여 한 달 사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함(사례6)
- 3살 때부터 고모집에서 생활하다가 아동학대로 단기보호 시설에서 7개월 동안 치료받은 후 초등학교 4학년때 그룹홈 입소하게됨,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거의 할 수 없어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 몸무게가 30kg이상 증감함(사례9)
-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조부모님의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생활하다 사업이 힘들어지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됨, 고학년때부터 희귀병 증상을 보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모님들께 아프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함, 그러다 고등학교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부모님과 동반하여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란 진단을 받게 됨(사례18)
- 6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할머니 댁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생활함,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로 신고 후 갈 곳이 청소년 쉼터밖에 없어서 6개월 정도 생활함(사례19)

(7)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 : 시설퇴소청년

시설퇴소청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서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표본에서 ‘지금까지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37.3%,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66.2%,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50.8%에 달하였다. 또한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15.9%,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42.6%,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33.1%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²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표 IV-27).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중복 응답)’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갈등 및 스트레스(아동시설퇴소청년의 23.1%,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48.8%, 보호시설 퇴소청년 32.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우울·불안 등 정신적 문제(아동시설 퇴소청년의 22.9%,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48.2%, 보호시설 퇴소청년의 30.6%), 경제적 문제(아동시설 퇴소청년의 14.4%,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32.8%, 보호시설 퇴소청년 24.2%), 신체·성적·폭력 등 학대 피해(아동시설 퇴소청년의 6.3%,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28.1%, 보호시설 퇴소청년의 9.7%) 등의 순이었다(표 IV-28).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자립준비지원에 앞서 즉각적인 위기개입과 사안에 따른 개별적 지원,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는 지지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7.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시설퇴소청년)

구분		시설퇴소청년			통계 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자살 생각	없음	62.7	33.8	49.2	$\chi^2=153.713^{***}$ (df=4)
	1회	19.9	25.9	27.4	
	2회 이상	17.4	40.3	23.4	
사례수		n=1,866	n=188	n=29	
자살 시도 ²⁾	없음	84.1	57.4	66.9	$\chi^2=166.388^{***}$ (df=2)
	있음	15.9	42.6	33.1	
	사례수	n=1,866	n=467	n=124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자살 생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표본의 응답값임. 단,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자살 시도 경험은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42.5%,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64.4%,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65.1%임.

29) 자살 시도 경험은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도를 포함함.

표 IV-28.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

단위: 백분율(%)

구분	시설퇴소청년			통계 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정신적 문제(우울, 불안 등)	22.9	48.2	30.6	$\chi^2=118.774^{***}$ ($df=2$)
대인관계 갈등 및 스트레스	23.1	48.8	32.3	$\chi^2=122.362^{***}$ ($df=2$)
학교, 직장 관련 문제(성적 등)	9.4	19.5	9.7	$\chi^2=37.876^{***}$ ($df=2$)
경제적 문제	14.4	32.8	24.2	$\chi^2=86.672^{***}$ ($df=2$)
신체적 질병	2.1	4.9	2.4	$\chi^2=11.682^{**}$ ($df=2$)
학대(신체, 성적, 폭력 등)	6.3	28.1	9.7	$\chi^2=187.392^{***}$ ($df=2$)
법적인 문제와 직면	1.7	6.2	12.1	$\chi^2=62.210^{***}$ ($df=2$)
급격한 정서적 흥분(싸움 등)	4.8	16.1	9.7	$\chi^2=71.746^{***}$ ($df=2$)
유명인 자살의 영향	0.3	0.9	0.0	$\chi^2=4.026$ ($df=2$)
기타	1.7	1.1	1.6	$\chi^2=0.860$ ($df=2$)
사례수	n=1,866	n=467	n=124	-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청소년기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으나 효과는 보지 못하였음, 현재는 한 달에 10일 이상은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채무를 갚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2-3회 정도 자살 생각을 하였음(사례17)

이와 함께 본 조사표본에서 자살시도에 대한 잠재적 보호요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모형(모형A)에서 성별, 연령을 포함하고 이를 통제 변수로 하여 모형B부터 모형R까지 17개 요인을 하나씩 추가하여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활동 정도가 많고, 사회적 지지가 있고, 자립성취와 관련하여 경제적 독립 및 생활비 해결을 위해 근로를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자살시도 위험이 낮았다. 또한 자립생활역량이 높고 정책(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경우 자살시도 위험이 낮았다. 이와 함께 8개의 교육·훈련 경험과 자살시도 위험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일상생활기술 교육, 지역사회 기관 이용 교육, 돈 관리 기술 교육, 사회생활기술 교육,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교육, 직장생활기술 교육, 독립생활기술 교육에 참여한 경우 자살시도 위험이 감소한 반면 건강 관리, 응급처치, 성·피임교육 등 자기보호기술 교육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표 IV-29)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청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위험에 대한 접근은 상담과 치료라는 접근보다 이들이 사회로부터 단절되거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9. 자살 시도에 대한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Exp(B)	표준오차	Wald값
모형A (기본모형)	성별 (남=0, 여=1)	.739	2.093	0.101	53.536***
	연령	-.010	0.635	0.022	0.225
모형B	외출(사회활동)	-.095	0.909	0.025	14.092***
모형C	사회적 지지	-.176	0.838	0.022	63.881***
모형D	자립성취: 경제적 독립	-.674	0.510	0.101	44.749***
모형E	자립성취: 생활비 해결을 위해 일함	-.273	0.761	0.109	6.310*
모형F	자립성취: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	-.626	0.535	0.120	0.535***
모형G	자립성취: 타인과 꾸준한 관계 유지	-.867	0.420	0.118	0.420***
모형H	자립생활역량	-.044	0.957	0.008	25.578***
모형I	제도: 디딤씨앗통장	-.854	0.426	0.102	70.129***
모형J	제도: 자립(지원)수당	-.906	0.404	0.104	75.682***
모형K	교육·훈련: 일상생활기술	-.215	0.086	0.101	4.571*
모형L	교육·훈련: 자기보호기술	-.032	0.968	0.120	0.073
모형M	교육·훈련: 지역사회기관 이용	-.172	0.842	0.103	2.805 [†]
모형N	교육·훈련: 재정·돈 관리	-.313	0.731	0.101	9.510**
모형O	교육·훈련: 사회생활기술(분노조절 등)	-.183	0.832	0.100	3.358 [†]
모형P	교육·훈련: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185	0.831	0.105	3.099 [†]
모형Q	교육·훈련: 직장생활기술	-.319	0.727	0.100	10.166**
모형R	교육·훈련: 독립생활기술	-.171	0.843	0.102	2.827 [†]

*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8) 청년지원제도 이용 경험과 요구 비교

청년 대상 취업 및 자산형성지원제도 이용 경험과 청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살펴 보았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디딤씨앗통장(CDA) 제외)의 경 우 일반 청년 보다 시설퇴소청년의 이용 경험이 집단별로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많았다. 반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일학습병행제도의 경우 본 조사표본에서 참여율이 저조 하였고, 디딤씨앗통장(CDA)은 시설 입소 여부나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수급자 가정의 아동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이용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표 IV -30).

표 IV-30. 취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제도 이용 경험

단위: % (빈도)

청년지원제도	시설퇴소청년			일반 청년	통계 검증 유의도1)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국민취업지원	17.6	36.8	23.4	7.2	$\chi^2=248.818^{***}(df=3)$
청년도전지원사업	3.5	5.6	6.5	-	$\chi^2=6.177^*(df=2)$
일학습병행제도	7.1	3.6	2.4	-	$\chi^2=11.022^{**}(df=2)$
디딤씨앗통장	80.2	14.1	18.5	-	$\chi^2=831.994^{***}(df=2)$
청년자산형성지원 (디딤씨앗통장 제외)	36.5	18.2	18.5	3.3	$\chi^2=572.199^{***}(df=3)$
사례수	1,866	467	124	1,562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이와 함께 청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욕구)를 비교한 결과, 9개 영역 모두 일반 청년 보다 본 조사표본 시설퇴소청년에서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다. 특히 복지, 생활, 주거, 직업훈련·교육 분야 서비스 뿐 아니라 청년공동체 교류지원서비스, 문화·취미지원 등의 경우에도 시설퇴소청년의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수요가 실제 서비스 이용으 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 시 다각적인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표 IV-31).

표 IV-31. 청년지원서비스 수요(욕구) 비교

단위: %

구분	시설·퇴소청년			일반 청년	통계 검증 유의도 ¹⁾
	아동시설 퇴소청년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보호시설 퇴소청년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47.4	66.4	48.4	41.2	$\chi^2=91.872^{***}$ ($df=3$)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86.2	93.1	74.2	50.3	$\chi^2=664.817^{***}$ ($df=3$)
대인관계, 사회적 증진 서비스	51.0	60.4	53.2	33.4	$\chi^2=160.154^{***}$ ($df=3$)
취업·진로 상담서비스	69.5	73.9	62.1	54.7	$\chi^2=102.239^{***}$ ($df=3$)
청년공동체 교류지원서비스	54.9	64.0	58.1	36.2	$\chi^2=173.858^{***}$ ($df=3$)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66.3	75.8	58.9	49.6	$\chi^2=151.115^{***}$ ($df=3$)
건강검진서비스	79.7	87.4	66.9	60.7	$\chi^2=213.413^{***}$ ($df=3$)
주거지원서비스	80.4	86.9	72.6	61.5	$\chi^2=204.987^{***}$ ($df=3$)
문화·취미 지원서비스	83.1	88.9	66.1	59.9	$\chi^2=301.080^{***}$ ($df=3$)
사례수	n=1,866	n=467	n=124	n=1,562	-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대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멘토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함(사례1)
- 자산형성 및 금융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함, 취업·진로 정보를 개인연락처로 알려주면 활용도가 더 높아 질것임(사례6)
- 자립에 성공한 사람과 매칭하여 멘토링 제도 지원이 필요함,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 정책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사례8)
- 1순위 직업훈련, 2순위 취업 후 발생하는 소득을 잘 활용하기 위해 금융관련 교육, 3순위 주거지원이 필요함(사례12)
- 청년지원정책에 관심이 많아 평소 복지로 사이트에 수시로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함,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꾸준히 넣고 있음,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 덕분에 생필품 및 반찬 생활에 필요한 것들부터 나를 도와주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느낌을 받아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사례13)
- 청년자산형성지원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예정, 직업교육·훈련지원 중 내일배움카드를 알아보았으나 창업 준비에 도움 되는 수강내용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고 향후에는 다양한 수강내용이 보완되길 요구함(사례17)
- 심리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어 청년마음건강지원(바우처)을 알아보았으나 본인 이 원하는 상담치료가 아니라 예술치료라 서비스를 받지 못함, 1:1 상담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정신·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음(사례19)

3.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 과제

1)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 방향

(1)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제도 재설계 : 지자체의 책무 강화

현재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법률에 근거한 시설의 보호종료 여부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으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형평성과 사각지대의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본 조사 표본에서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중 18.8%(평균 5년),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중 28.2%(평균 10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의 7.4%(13개월)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등 다종다양한 시설을 전전하면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 10명 중 1명, 청소년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고시원,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생활한 적이 있고, 거주기간이 각 집단별로 평균 4~9개월에 달하여 청년기 이전에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수년간 생활하다가 ‘통고제도’를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고 퇴소한 후 아동복지시설에 재입소할 수 없었다고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기에 원 가정을 이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시설에서 대리양육을 경험한 초기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제도를 강화하되, 현행과 같이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종료 여부와 동일 시설 거주기간 등 제약 요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일부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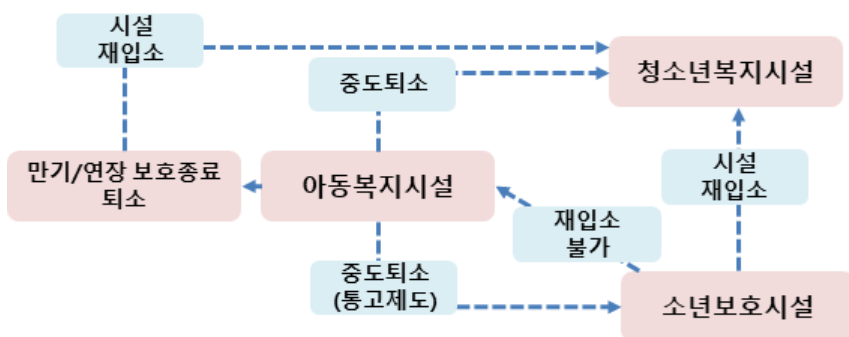


그림 IV-8. 시설퇴소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시설 이동 경로

한편, 우리나라는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사회복지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본 조사 표본에서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보호시설(22개월) 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평균 10년), 청소년복지시설(14개월), 자립지원관 및 자립생활관(21개월), 미혼모·성폭력피해자·노숙인시설(3.5개월), 숙박시설(9개월)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어 성인기 이후의 자립생활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워싱턴주는 주정부 아동청소년가족부 산하 소년재활국에서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지원과 재활을 담당하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호처분 종료 최대 18개월 전부터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시설 밖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기 전에 자립체험관 등에서 독립주거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아동·청소년기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포함)에서 일정기간(예, 2년 이상) 생활한 만 19세 이상 초기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자립지원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미성년자의 생활시설 입·퇴소 전반에 대한 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청년기 자립지원제도와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설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 사례 : 구금시설 출원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

• 교정시설 출원 청년 지원을 위해 법률을 토대로 연방정부가 예산 등 지원

- 미국은 인구 대비 구금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로, 특히 소외계층일수록 그 비율이 높고 만 26세 이하 청년 수감자 비율이 증가 추세로(Travis, Western, & Redburn, 2014; Smith, 2019), 소년사법체계 내 프로그램 운영은 주정부 소관이나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JJDP), Second Change Act(SCA)를 근거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법체계를 경험한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함**(Hanson & Finklea, 2020).

- 교정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청년은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지므로 주거안정을 기반으로 교육, 고용, 정신건강과 위험행동 감소,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형성, 자녀 양육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함(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2018)

• 미국 워싱턴 주 사례 : 통합치료기반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

- 특히 워싱턴주는 처벌보다 치료와 재화를 강조하여 미국 최초의 소년법원 근거기반 프로그램 관련법인 The Community Juvenile Accountability Act of 1997을 근거로 보호처분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청년에게 **주정부 아동청소년가족부 산하 소년재활국 주관**으로 역량중심치료(료(Competency-based Treatment)와 사례관리 모델(Case Management Model)을 결합한 통합치료 모델(Integrated Treatment Model)을 운용함(Fox & Veele, 2020).

- 통합치료 모델은 당사자의 감정 및 행동조절과 사회기술 향상, 가족치료(Functional Family Therapy) 등 적극적 가족 참여를 강조하며 자살 및 자해 예방, 정신건강치료 등 근거기반 치료법이 사용됨. **사회복귀 계획은 소년재활국 주관으로 사회복귀 팀회의(Reentry Team Meetings)에서 수립**하며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교육 및 자격취득과 취업지원, 독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훈련 등을 제공함. 특히 **2022년부터 지역사회 전환서비스(Community Transition Services)를 신설하여 처분이 종료되기 전 최대 18개월 이전부터 주거지원을 통해 시설 밖에서 생활하며 교육, 취업, 치료, 상담 등 출소 후 독립생활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법률(House Bill 1186)을 개정함(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 Families, 2022)

(2)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데이터 구축 : 근거기반 정책 추진

현재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보시스템은 주무부처에 따라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 청소년쉼터행정지원시스템(여성가족부)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중앙 및 지방정부 단위에서 정보망 간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의 경우 데이터를 토대로 근거기반의 청년기 자립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환기 청소년 데이터베이스(NYTD)’, 영국의 ‘전환기 보호소년 데이터(SSDA903 OC3, 정식명칭이 없는 행정데이터)’가 대표적이다(그림 IV-9).

이들 데이터는 대상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타 행정데이터와 연계가 가능하고, 시설보호 단계부터 퇴소 후 성인기에 걸쳐 자립지원의 효과를 분석하는 근거기반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와 할 수 있는 ‘체이퍼 프로

그럼'은 사회보장법을 근거로 연방데이터를 구축하며, 행정자료와 코호트별 종단조사를 결합하여 참여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축적함으로써 서비스 이력과 자립지원 성과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

미국 사례 : 위탁보호를 경험한 자립준비청년 연방데이터 구축

- **사회보장법(Title IV-E, Section 477 of the Social Security Act) 기반 자립지원 운영**
 - 미국의 가정 외 보호서비스는 위탁보호체계(Foster care system)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위탁보호를 경험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The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Chafee program, 이하 체이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정부에 예산을 지원함. 주정부는 주예산에 추가 투입하여 자립지원 실행,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방정부에 보고함 (Fernandes-Alcantara, 2021)
 - 체이피 프로그램은 위탁보호체계를 경험한 청년의 주거서비스와 생활비용(room or board) 지원, 멘토링, 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체이피 프로그램인 특별 교육 및 직업훈련(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 Program) 참여 시 만 26세까지 최장 5년 동안 매년 5천 달러의 교육바우처 등 지급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활용 목적의 연방데이터 구축(AFCARS- NYTD)**
 - 근거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전국 청소년 전환데이터베이스(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 이하 NYTD) 체계를 구축, 관리함**. 주정부는 체이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대상 설문조사 및 자료를 정리하여 NYTD에 보고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통합 관리함. **조사방법은 코호트별 종단조사**로 코호트는 3년 마다 신규 선정하고 조사 연령은 만 17세, 만 19세, 만 21세임. 수집 데이터는 인구학적 정보, 자립지원 서비스 정보, 경제적 자립, 교육 수준, 성인과의 긍정적 관계, 노숙경험, 고위험행동, 건강보험 접근성 등이 포함되며, **개인별 고유 식별번호를 통해 연방 위탁보호 행정데이터(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 AFCARS)와 연계 가능함**(Children's Bureau, 2017).

한편, 본 조사 표본에서 조사시점 현재 실직자 가운데 은둔, 고립 경험이 있는 경우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의 5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의 65.8%,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66.7%에 달하였다. 다만 동년배 일반 청년 가운데 은둔, 고립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상 장기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 본 조사 표본에서는 1년 미만인 경우가 과반 이상이었다. 또한 부채(채무)가 있는 경우는 일반 청년 표본에서 14.7%인데 반해 본 조사 표본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의 33.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의 42.8%,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54.8%에 달하는 등 현금지원에 앞서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관계기반(relationship-based)의 심리·정서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근거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자료와 공공데이터, 당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결합된 데이터 구축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주거지원 강화 : 시설퇴소청년의 주거권 보장 강화

본 조사 표본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의 10.8%(4.7개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의 42%(9.5개월),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41.9%(9개월)가 생애기간 중 고시원 등 숙박 시설에서 생활하였고, 아동·청소년기에 다종다양한 시설을 전전하며 사실상 ‘노숙인’에 준한 위기상황에 장기간 노출된 확인되었다. 이는 현행과 같은 원 가정을 이탈한 보호대상 아동과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시설 입소’를 전제로 보호와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동시에 시설 퇴소(미입소)가 가정 밖 위기 상황으로 내 물리거나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기에 대리양육을 경험한 경우 다양한 시설의 입·퇴소를 반복하면서 주거가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각종 범죄의 가·피해에 노출되는 등 주거지원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의 경우 위탁보호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homeless youth)에 대한 지원체계 간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은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관리, 제공하고 있다(그림 IV-9). 이는 위탁보호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이 동일한 정책대상인지 여부를 떠나 주거안정(housing first)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이행기 자립준비지원을 제공할 때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continuum of care program’, 영국의 ‘5단계 맞춤형 주거서비스’의 경우 주거지원 대상 청년의 자립수준과 욕구, 적응 정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이상정 외, 2020), 이는 우리나라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 즉, 시설퇴소청년을 ‘주거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시설보호단계부터 지자체가 이들의 주거권 보장의 주체로서 퇴소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지원 대안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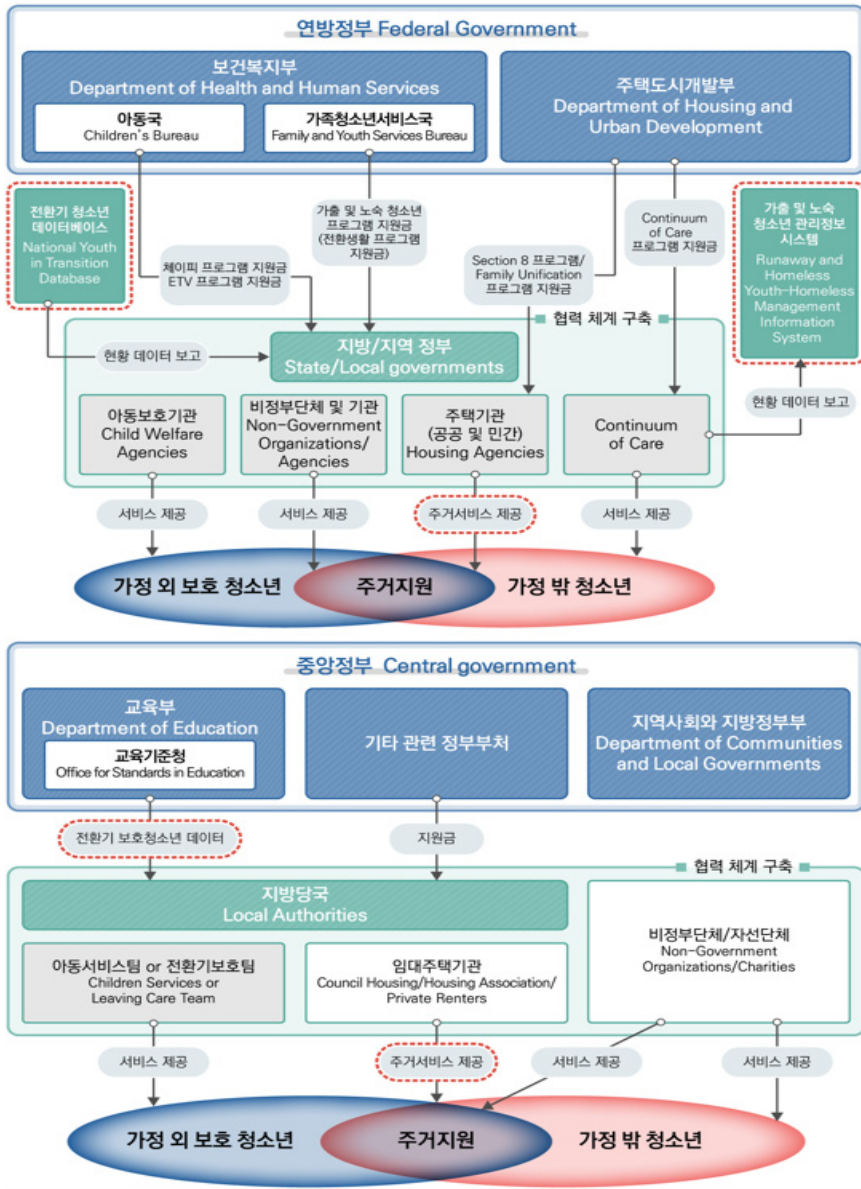
(5)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 전달체계 정비 : 적정 담당인력 확충 및 배치

본 조사 표본에서 시설퇴소청년은 주거, 일 경험, 정신건강 등 삶의 다면적인 영역에서 취약성에 장기간 노출된 상황이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의 42.5%,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의 64.4%,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65.1%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사회적 고립감은 현저히 높은 등 주요 영역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정이 아닌 생활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평균 10년에 달하였고 폭력·학대·괴롭힘 피해경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지인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는 등 부정적인 생활사의 경험 정도는 일반 청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즉, 본 조사 표본은 자립준비청년이 어떤 시설을 퇴소했는지 여부보다 각종 제도로부터의 소외 정도와 취약성을 근거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며, 개별 청년이 처한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원에 따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기반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 전달체계 정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경우 전담인력 1인당 약 10명 내외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복지시설(소년 보호시설 포함) 퇴소청년의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자립지원전담기관(보건복지부), 청소년자립지원관(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 간의 대상자 통합 관리 등 광역시·도 단위에서 추진체계 간 연계와 자원 공유 체계 마련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이상정 외 (2020). [그림 5-1].

그림 IV-9. 미국(上), 영국(下)의 아동·청소년·청년 자립지원 체계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 주요 청년사업의 신청주의 방식 보완

사회보장 급여는 수급권자가 법률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주거지원 등 주요 제도 역시 자격심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 등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설퇴소청년은 이 단계에서 신청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본 조사표본에서 시설퇴소청년들은 부채(채무), 은둔 생활, NEET 경험, 사회적 고립감 등 사회참여와 활동 정도가 일반 청년에 비해 매우 취약하지만 청년 대상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욕구는 더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소외청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홍보 이 외에 지역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지원관, 생활관 포함)에서 주거, 고용 등 타겟사업에 대한 신청을 돕는 별도의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이들의 사회권 보장 관점에서 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수혜율 제고를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대학 진학 지원 및 학비·생활비 지원 확대

본 조사표본에서 시설퇴소청년은 동년배 일반 청년에 비해 대학 진학 경험률은 낮은 반면 대학 미진학자 가운데 향후 대학 진학 희망 의사는 시설퇴소청년이 일반 청년 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와 함께 대학 진학자 가운데 졸업 유예 경험은 시설퇴소청년이 일반 청년보다 더 높았는데, 일반 청년이 주로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졸업을 유예한 반면 시설퇴소청년은 '학비·생활비 조달'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였다. 따라서 시설퇴소청년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등 성인기 이행 지원의 일환으로 대학 진학 희망자에 대한 진학지원을 강화하되, 진학 이후 국가장학금 이 외 학비의 자부담 부분과 생계비 지원 마련에 대한 세심한 우대가 필요하다.

(3) 부당노동행위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시설퇴소청년 중 취업자(약 3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은 일반 청년(약 40시간)에 비해 약 10시간 이상 적은 반면,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은 더 높았고, 플랫폼 노동 경험은 상대적으로 매우 많았다. 실업급여 수급 경험률도 일반 청년에 비해 10%p 정도 더 낮았고, 미수급의 주된 사유가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근로 중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 산업재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된 비율이 일반 청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피해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금융취약청년 대상 주거안정 기반의 자산형성 통합지원 강화

본 조사표본에서 부채(채무)가 있는 비율은 동년배 일반 청년 표본(14.7%)에 비해 아동시설 퇴소청년(33.3%), 청소년시설 퇴소청년(42.8%),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54.8%)이 각각 더 높았다. 시설퇴소청년의 부채 사유는 주거비 마련(평균 약 480만 원)이 가장 큰 이유였고, 이 외 학자금(평균 약 110만 원), 생활비 마련(평균 약 145만 원), 기타(평균 약 270만 원), 그리고 가족의 채무(약 92만 원), 범죄피해로 인한 채무(약 70만 원)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생활비에서 식비, 주거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출의 50%를 초과하고 근로소득과 외부 지원 등 전체 수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저축 등 미래 준비는커녕 교육·훈련·문화·여가 등 청년기 필수 지출도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퇴소청년 대상 현금, 현물성 지원은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금융교육, 자산형성, 피해구제,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전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5) 사회활동과 공동체 활동 참여 강화: 고립감, 자살생각, 자살시도 예방 강화

본 조사표본에서 시설퇴소청년 가운데 사회활동이 제한적이거나 물리적인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경우가 동년배 청년 보다 많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EET상태를 경험한 비율은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52%,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의 65.8%,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66.7%에 달하여 은둔, 고립 청년 발굴의 일환으로 이들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활동 및 참여 지원을 최우선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누적된 부정적인 생애 사건 경험과 삶 전반에 대한 낮은 만족도의 이면에는 가족과 지인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고, 자살시도에 있어 사회활동, 사회적지지, 자립생활역량과 교육·훈련 경험이 유의미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다양한 공동체활동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대상 서비스 가운데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청년공동체 교류지원서비스’의 참여 수요는 일반 청년 표본에서 각각 33.4%, 36.2%로 저조한 수준인 반면,

본 조사표본에서는 두 항목 모두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사회활동 및 참여를 도모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결국 소외청년의 은둔·고립을 예방하고 자살 생각 및 시도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의 보호요인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6)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기관과 청년센터 간 협업 강화

본 조사표본에서 시설퇴소청년은 일반 청년 대상 지원서비스 수요(욕구)가 일반 청년 표본 대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 증진 서비스, 청년공동체 교육지원서비스, 문화·취미 등 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청년센터가 갖추고 있는 공간과 사업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자립지원기관과 청년센터가 대상 및 사업 간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업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5장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 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 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정부의 정착지원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정부의 「청년기본법」상의 기준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점을 고려,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출생 청년 및 비(非)북한출생 청년을 이른다. 여기서 비북한출생 청년은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출생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한 청년과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처럼 북한출생, 제3국출생, 남한출생 등 세 부류가 큰 틀에서 북한배경을 가진 청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분류를 간소화하여 북한출생 청년(이하 북한출생청년)과 중국 등 제3국출생 청년(이하 제3국출생청년) 두 하위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출생으로 남한에서 태어난 북한배경청년은 분석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본 연구에서 북한배경청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법적 지위를 가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북한출생청년과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중국 등 제3국출생 청년을 의미한다.

2022년 3월 말 기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33,826명으로 이 중 20~30대는 57.1%(19,294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층 비중이 높다(남북하나재단, 2022).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누적 북한이탈주민 인원 비중도 20대는 2017

30) 이 장은 이우태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외가 집필하였고 협동연구총서(22-80-0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년 28.5%, 2018년 28.6%, 2019년 28.5%, 2020년 28.0%, 2021년 28.4%를 기록했다. 30대는 2017년 29.0%, 2018년 28.9%, 2019년 28.8%, 2020년 28.8%, 2021년 28.7%로 나타났다(통일부, 2022). 즉 최근 5년간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율이 56~57%대를 유지하는 등 전체 입국자에서 청년 계층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 참조).

표 V-1. 20대, 30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대	남	2,432	2,488	2,581	2,649	2,623
	여	6,187	6,463	6,893	6,771	6,967
	소계	8,619	8,951	9,474	9,420	9,590
	비율(①)	28.5%	28.6%	28.5%	28.0%	28.4%
30대	남	2,045	2,074	2,127	2,124	2,156
	여	6,747	6,995	7,458	7,591	7,548
	소계	8,792	9,069	9,585	9,715	9,704
	비율(②)	29.0%	28.9%	28.8%	28.8%	28.7%
합계(①+②)		57.5%	57.5%	57.3%	56.8%	57.1%

* 출처: 각 연도별 통일부 북한백서 및 북한이탈주민 통계표를 참조하여 재정리

* 주: 해당연도 입국일자 기준의 누적 인원으로 입국 후 보호시설에 있는 일부 인원이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날 수 있음

입국 총 인원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서도 20대, 30대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하나재단 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기준, 통일부에 등록되어있는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29,88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7,157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성은 22,723명으로 76%를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이 확인된다. 연령대로 보면, 10대는 2.4%, 20대는 12.3%, 30대는 24.5%, 40대는 28.5%, 50대 이상은 32.4%로,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율은 36.8%에 이른다(남북하나재단, 2022). 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젊은 계층이 많다는 점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의 제도적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짐을 의미한다.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북한배경청년 중에서 기존의 정착지원법상 수혜 자격 대상이 되는 청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청년 집단이 있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한 후에 중국 등의 제3국이나 남한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 지위 획득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별 지원 서비스 유무와 내용이 달라진다. 이러한 초기 조건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출생청년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자녀이기도 한 두 가지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두 가지 성격의 법적 지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과 기타 법령에 반영되어 있다. 북한배경청년은 북한이탈주민법 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 무연고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탈북남성과 탈북여성 평등 및 탈북여성 모성 보호 규정 등에 의해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내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 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응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규정, 병역법 내 북한출신 청년의 의지에 따른 병역 면제 조항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에 필요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배경청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법 지원 내용에 포함되는 정착,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보호 등의 사항들은 북한출생청년들에게는 해당되거나 제3국출생청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19~24세의 제3국출생청년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북한출생청년이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25~29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업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30~34세의 제3국출생청년 대상으로는 공유재산 대부·사용 특례를 제외하면 별도의 주거·자산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하면 24세 이하 제3국출생청년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 예비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특례입학,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제도의 일부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제3국출생청년은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 주거·자산 관련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제3국출생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이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착지원에서는 정착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배경

청년 집단의 사회적응과 자립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은 복지, 고용, 교육, 의료 및 보건 지원 등이 복합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 다양한 관할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누적 입국자 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에 필요성이 제기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며 ‘중앙-지방자치단체-민간’의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정착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한다.³¹⁾ 또한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하나센터가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다수의 중앙 부처와 기관이 관여하고 부처와 부처, 중앙과 지방,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상호작용을 하며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의결과 조정이 이루진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는 중앙정부차원의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보호 결정 및 중지·종료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아래 <표 V-2>의 정착지원협의회 유관부처 및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에 정리되어 있듯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총괄,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 각 부처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업무 및 탈북청소년 교육, 대안학교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북한이탈주민의 생계, 의료급여 지급 특례 적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다(표 V-2 참조).

31)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21.10.21. 시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V-2. 정착지원협의회 유관부처 및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부처명	내용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관련 총괄, 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영, 보호결정 하나원, 하나센터, 정착지원서비스망 운영 지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복합문화공간), 정착지원금 제도 운영, 취업관련 정착장려금
기획재정부	각 부처 예산 배정
교육부	학력인정, 한겨레중고등학교 시설, 인건비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대안학교 설립 인가
외교부	해외체류 탈북민 관련 총괄
법무부	해외체류 자녀입국 시 출입국
국방부	재북시 군인에 대한 특별임용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이북도민과 가족연결, 통일학교 지원)관리, 지자체(전국 245개소 거주지보호담당관 활동) 관리, 주민등록번호 정정 특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에의 취업 알선
농림부	영농정착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관련 자격인정
보건복지부	생계, 의료급여 지급 특례 적용, 연금특례 적용 보건복지분야 자격인정,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및 훈련 수당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운영(전국 70개소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여성 양성평등 인권보호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북한이탈주민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국토부	임대아파트 알선
국가정보원	해외공관 시 초기심문 수행, 자유누리센터 운영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업무협조
경찰청	신변보호담당관 지정 및 운영
국군기무사령부	자유누리센터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취업박람회 실시
법원	가족관계등록 창설, 이혼의 특례 적용
국공립대학	학비 면제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 및 운영, 지역협의회 운영, 거주지 보호대장 작성, 관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지역사회 편입지원,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 출처 :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및 남북하나재단 사업 참조 저자 재구성

그러나 <표 V-2>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와 기관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협력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지원의 유사한 업무와 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거버넌스 기능을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다 세밀한 협업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배경청소년(19세 이상 24세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 및 민간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되나, 북한배경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생애주기별, 출생별, 거주기간별 서비스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각 부처별로 대상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나 배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북한배경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심한 조정 및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배경청년 중 일부는 정체성 갈등, 교육공백, 사회적응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통일부는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북민 취약계층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총 5회 실시하여 총 1,849명의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한 바 있다(이승열, 2021). 북한출생 탈북민도 한국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제3국출생 자녀들이 사회 정착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학교 밖 중국출생 탈북청년의 경우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이 될 수 없고, 이들이 24세 이상라면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밖’ 청년과 구직 과정 혹은 취업 실패 상황에 있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취약·위기 가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1)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북한출생 또는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전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일반 설문조사와 다르게 북한배경청년이라는 표본의 특수성 때문에 표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북한배경청년 연락처를 연구자가 직접 구해 설문참여를 독려했고, 설문 참여자 소개 등을 통해 표본을 확보했다. 표본 확보의 난관이 있었던 관계로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출신지역별 고른 표본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북한출생이 아닌 제3국출생의 경우 정확한 집계 및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표본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표 V-3.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	체	108	100
성별	남 자	35	32.4
	여 자	73	67.6
연령	만 1 9 ~ 2 4 세	58	54.2
	만 2 5 ~ 2 9 세	26	24.3
	만 3 0 ~ 3 4 세	23	21.5
지역	수 도 권	98	91.6
	비 수 도 권	9	8.4
학력	대 졸 미 만	60	65.9
	대 졸 이 상	31	34.1
출신 지역	북 한	90	84.1
	중 국	17	16.9

이 조사에서 목표 표본규모는 130명으로 조사 완료가 된 최종 표본은 총 108명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32.4%(35명)으로 67.6%인 여성(73명)보다 적었다. 연령집단별로는 19세에서 24세가 54.2%(58명)로 가장 많았고 25세에서 29세가 24.3%(26명), 30세에서 34세가 21.5%(23명)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청년이 91.6%(98명)로 8.4%(9명)인 비수도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34.1%(31명)으로 대졸 미만 65.9%(60명)보다 적었다. 마지막으로 출신지역별로는 북한출생이 84.1%(90명)로 중국출생 16.9%(17명)보다 많았다.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는 설문지 작성, 예비조사, 본 조사로 이뤄졌다.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총 111개 문항 중 50개 문항을 삭제했으며, 수차례의 공동연구진 코워킹회의를 통해 북한배경청년에 초점을 맞춘 문항 17개를 신규로 추가해 '2022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문항은 총 7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본 조사에 앞서서 문항의 이해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2회의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와 2회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적합성 자문이 진행됐다. 일부 문항의 단어가 북한배경청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최대한 쉬운 단어로 변경해 설문지를 수정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 결과 중국출생의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은 언어적 한계로 유의미한 설문 응답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해 중국어로 설문지를 번역해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의 적극적인 설문지 응답을 유도했다. 본 조사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공동연구진이 북한배경청년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직접 유선을 통해 섭외를 진행했고,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 수발신이 이뤄졌다.

(2) 북한배경청년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및 심층면접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북한배경청년 대상 FGI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FGI는 2회 진행됐으며 1회당 3인의 북한배경청년과 3인의 공동연구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수의 피면접자와 연구진의 참여로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에서 담아내지 못한 정책수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은 16회 진행됐으며 피면접자, 연구진의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층면접은 건강, 가치관, 관계 및 참여 등의 FGI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보다 개별적으로 다양한 정책소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FGI와 심층면접 전체 과정은 피면접자 동의를 거친 후 녹음되었으며, 이를 녹취록으로 제작해 연구보고서에 활용했다. 피면접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녹취록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연령, 거주지, 탈북·입국연도 등의 정보는 모두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2) 조사결과 : 정책소외 실태 및 일반청년과의 격차를 중심으로

(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와 2022년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해 볼 때 결혼의 필요성과 적정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결혼 의향은 일반청년보다 북한배경청년의 차이가 더 컸다. 일반청년은 여자가 남자보다 근소하게 결혼 의향이 적었으나, 북한배경청년은 여자가 남자의 절반 수준으로 결혼 의향 이 없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혼에 부정적이었다.

표 V-4.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106	37.7	30.42	57.5	4.7
성 별	남	자	35	54.3	30.4	40.0	5.7
	여	자	71	29.6	30.4	66.2	4.2
연 령	만 1 9 ~ 2 4 세		57	38.6	29.58	54.4	7.0
	만 2 5 ~ 2 9 세		25	32.0	32.89	64.0	4.0
	만 3 0 ~ 3 4 세		23	43.5	30.23	56.5	0.0
지 역	수 도 권		96	36.5	30.51	58.3	5.2
	비 수 도 권		9	55.6	29.83	44.4	0.0
학 력	대 졸 미 만		59	39.0	30.6	57.6	3.4
	대 졸 이 상		30	23.3	32.63	73.3	3.3
출 신 지 역	북 한		88	39.8	30.91	58.0	2.3
	중 국		17	29.4	26.6	52.9	17.6

(2)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31.2%,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24.1%, ‘자녀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18.5%,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어서’ 9.7%, ‘맞벌이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7.2%,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6.9%,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 0.3%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사유는 2.1%였다.

2022년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24.3%,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어서’ 18.9%, ‘자녀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18.9%,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16.2%,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8.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는 13.5%나 되었지만, ‘맞벌이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과 ‘임신의 어려움’은 각각 0.0%로 양육과 임신이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18~24세의 30.0%가 ‘자유로운 삶’을 이유로 들었으나, 만 25~29세와 만 30~34세는 이미 계획한 자녀의 수가 있어서가 각각 40.0%와 41.7%로 높았다. 또한 만 25~29세의 40.0%는 ‘경력단절’로 인해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림 V-1.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와 2022년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일반청년이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지만, 북한배경청년은 '자유로운 삶의 추구' 비율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기타 사유가 일반청년은 2% 내외이지만, 북한배경청년은 13.5%나 되고 있어 자녀를 추가로 가질 수 없는 다양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남한과 북한배경청년 모두 만 18~24세는 '자유로운 삶' 추구를 이유로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다고 답한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에 만 25~29세와 만 30~34세의 일반청년은 '경제적 부담'을 첫 번째 이유였다면, 북한배경청년은 만 25~29세의 경우 '계획한 자녀의 수 충족'과 '경력단절'을, 만 30~34세는 '이미 계획한 자녀의 수가 충족'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3) 해외 이주 고려 경험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 13.2%, '없다' 86.8% 나왔다. 성별로 보면 여자(15.3%)가 남자(11.3%)보다 4%p 높았다. 연령대를 보면 만 25~29세(14.2%)가 만 18~24세(13.6%)보다 0.6%p, 만 30~34세(11.7%)보다 2.5%p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4.4%)이 비수도권(11.9%)보다 2.5%p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15.5%)이 대졸 미만(10.8%)보다 4.7%p 높았다. 전체적으로 여자, 만 25~29세, 수도권 거주, 대졸 이상에게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많았다.

2022년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 34.7%, '없다' 65.3% 나왔다. 성별로 보면 남자(40.6%)가 여자(28.0%)보다 높았고, 출신 지역별로는 중국 출신(68.8%)이 북한 출신(27.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와 2022년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해외 이주 경험을 고려한 비율은 북한배경청년이 일반청년보다 높게 나왔다. 북한배경청년 중에서도 특히 중국출생 청년들의 해외 이주 고려 비율(68.8%)이 북한출생 청년(27.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은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이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과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5.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01	34.7	65.3
성 별	남	자	32	40.6	59.4
	여	자	69	28.0	72.0
연 령	만 19 ~ 24 세		55	36.4	63.6
	만 25 ~ 29 세		25	28.0	72.0
	만 30 ~ 34 세		20	35.0	65.0
지 역	수도권		92	35.9	64.1
	비수도권		8	12.5	87.5
학 력	대졸미만		56	30.4	69.6
	대졸이상		29	34.5	65.5
출 신 지역	북한		84	27.4	72.6
	중국		16	68.8	31.2

2022년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이주를 고려한 이유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44.4%, ‘자기계발을 위해서’ 33.3%, ‘행복한 삶을 위해서’ 8.3%, ‘빈부격차가 커서’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각 5.6%,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2.8% 나왔다.

(4)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일반청년들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대부분 대학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마련한다(일반청년 25.3%, 북한배경청년 87.7%). 특히 대학등록금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북한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96.8%).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도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하는데(40.0%) 이는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56.1%) 대학등록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북한배경청년들이 대학등록금을 부모에게 지원받는 경우는 드물다(5.5%). 대학

등록금을 부모 등 가족에게 지원받는 경우는 모두 중국출생들이다. 중국출생 북한배경 청년들은 많은 경우(30%) 부모 등 가족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으며 민간장학금, 학자금대출,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스로 마련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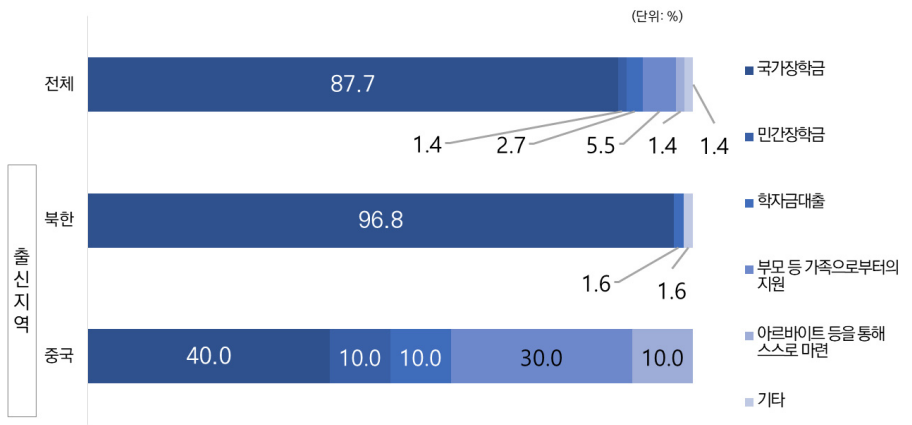


그림 V-2.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5) 대학 전공 적합성

대학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서 북한배경청년의 응답은 일반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다’에 응답한 이들이 1/3이라는 점, 과반수 정도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북한배경청년들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20.5%) 일반청년(8.8%)에 비해 많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표 V-6. 대학 교육 만족도_대학 전공 적합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78	3.8	7.7	33.3	34.6	20.5
성별	남 자	24	4.2	12.5	41.7	25.0	16.7
	여 자	54	3.7	5.6	29.6	38.9	22.2
연령	만 19 ~ 24 세	39	2.6	5.1	41.0	35.9	15.4
	만 25 ~ 29 세	23	4.3	17.4	13.0	34.8	30.4
	만 30 ~ 34 세	16	6.3	0.0	43.8	31.3	18.8
지역	수도권	73	4.1	8.2	32.9	34.2	20.5
	비수도권	5	0.0	0.0	40.0	40.0	20.0
학력	대졸미만	42	2.4	4.8	40.5	28.6	23.8
	대졸이상	28	7.1	14.3	17.9	46.4	14.3
출신 지역	북한	65	4.6	6.2	30.8	35.4	23.1
	중국	13	0.0	15.4	46.2	30.8	7.7

* 주: 1)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닌 사람만 응답

면담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우연히 선택한 대학 전공이 자신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때 대학 전공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했다.

(6) 취업 관련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취업준비 경험을 지닌 이들이 더 많다. 일반청년의 9.4%에 비해 북한배경청년의 32.4%가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만 25세~29세는 54.2%, 만 30세~34세는 54.5%가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취업준비를 위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일반청년은 10.2개월인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는 16개월이다. 만 30~34세 북한배경청년의 평균 25.1개월 취업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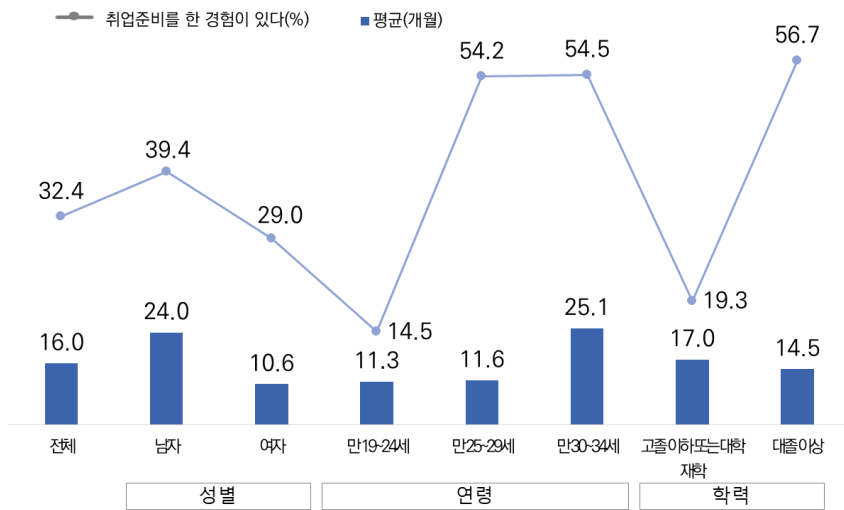


그림 V-3. 취업준비 여부

북한배경청년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난다. 여자(29.0%)에 비해 남자(39.4%)가 취업준비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아 남자가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을수록, 대졸자가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고졸이하 또는 대학재학생(19.3%)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의 대졸 이상(56.7%) 북한배경청년들이 취업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북한배경청년들은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을 가진 이들의 비율이 일반청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일반청년들의 29.1%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60.6%가 취업준비를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표 V-7. 취업 준비 경험_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받는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3	60.6	39.4
성 별	남 자	10	80.0	20.0
	여 자	23	52.2	47.8
연 령	만 1 9 ~ 2 4 세	11	54.5	45.5
	만 2 5 ~ 2 9 세	13	53.8	46.2
	만 3 0 ~ 3 4 세	9	77.8	22.2
지 역	수 도 권	29	58.6	41.4
	비 수 도 권	4	75.0	25.0
학 력	대 졸 미 만	14	50.0	50.0
	대 졸 이 상	15	60.0	40.0
출 신 지 역	북 한	30	60.0	40.0
	중 국	3	66.7	33.3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의 응답 경향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청년의 13.6%만이 그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64.2%가 이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 직업 훈련에 대한 북한배경청년의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V-8.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이미 받고 있다
전	체	106	64.2	29.2	6.6
	자				
성 별	남 자	34	58.8	41.2	0.0
	여 자	72	66.7	23.6	9.7
연 령	만 19 ~ 24 세	57	66.7	28.1	5.3
	만 25 ~ 29 세	25	52.0	36.0	12.0
	만 30 ~ 34 세	23	73.9	21.7	4.3
지 역	수 도 권	96	65.6	28.1	6.3
	비 수 도 권	9	55.6	33.3	11.1
학 력	대 졸 미 만	60	61.7	31.7	6.7
	대 졸 이 상	30	63.3	26.7	10.0
출 신 지역	북 한	88	64.8	27.3	8.0
	중 국	17	64.7	35.3	0.0

(7) 최우선 확대해야 하는 교육·훈련 대책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배경청년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이 대학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41.4%, 일반청년 13.9%)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출생청년들도 39.8%가 여기에 응답하고 있다. 이미 북한출생 청년들에게는 대학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필요한 교재비, 생활비 등의 필요에 의해 장학금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이 응답 결과가 시사해 주고 있다.

북한출생 북한배경청년에 비해 대학특례입학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이 그 상대적 불이익을 흔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특례입학보다 학비 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필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9.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학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 (국가장학금, 학비 지원 등)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	청년 진로관련 정책(진로 상담, 진로 교육 등)	청년 직업교육 정책(취업 지원센터, 일학습병행제 등)	청년 인재양성 정책(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산업 맞춤 연수 등)	대학 특례 입학
전	체	99	41.4	4.0	10.1	23.2	16.2	5.1
	남	34	50.0	0.0	11.8	23.5	11.8	2.9
	여	65	36.9	6.2	9.2	23.1	18.5	6.2
연령	만 19 ~ 24 세	53	47.2	3.8	13.2	15.1	17.0	3.8
	만 25 ~ 29 세	24	37.5	4.2	4.2	25.0	20.8	8.3
	만 30 ~ 34 세	21	28.6	4.8	9.5	42.9	9.5	4.8
지역	수도권	90	42.2	3.3	10.0	22.2	16.7	5.6
	비수도권	8	25.0	12.5	12.5	37.5	12.5	0.0
학력	대졸미만	53	43.4	5.7	13.2	17.0	15.1	5.7
	대졸이상	31	35.5	3.2	6.5	35.5	12.9	6.5
출신 지역	북한	83	39.8	2.4	9.6	25.3	16.9	6.0
	중국	15	46.7	13.3	13.3	13.3	13.3	0.0

(8) 본인 명의의 집 소유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 비율은 일반청년(68.8%)과 북한배경청년(62.5%)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차이가 존재했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에' 55.1%, '자가 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21.6%,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4%,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4.7%,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3.7%로 집계되었다. 높은 집값을 마련하느라 현재의 삶을 희생한다는 의견이 76.7%나 해당했다.

2022년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에' 30.0%,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5.0%, '자가 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25.0%,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5.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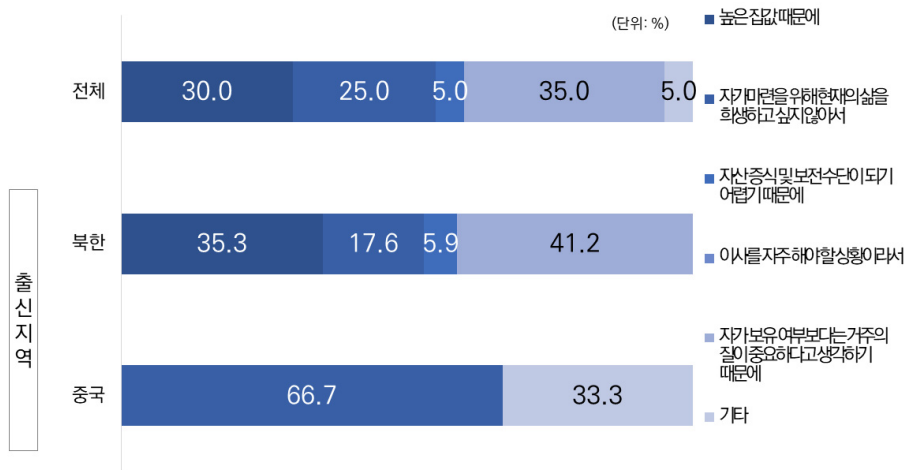


그림 V-4.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집값에 대한 부담감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청년(55.1%)이 북한배경청년(30.0%)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가 보유보다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북한배경청년(35.0%)이 일반청년(14.4%)보다 2배나 높았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일반청년(62.2%)이 북한배경청년(39.6%)보다 22.6% 높았다. 경제적 독립 없이 일시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는 비율은 북한배경청년(22.8%)이 일반청년(4.0%)보다 높았다. 북한배경청년이 일반청년보다 분가와 경제적 독립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단순히 함께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단독 입국한 경우는 경제적 자립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부모와 비동거 상태에 놓인다. 부모 없이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에도 부모와 비동거 상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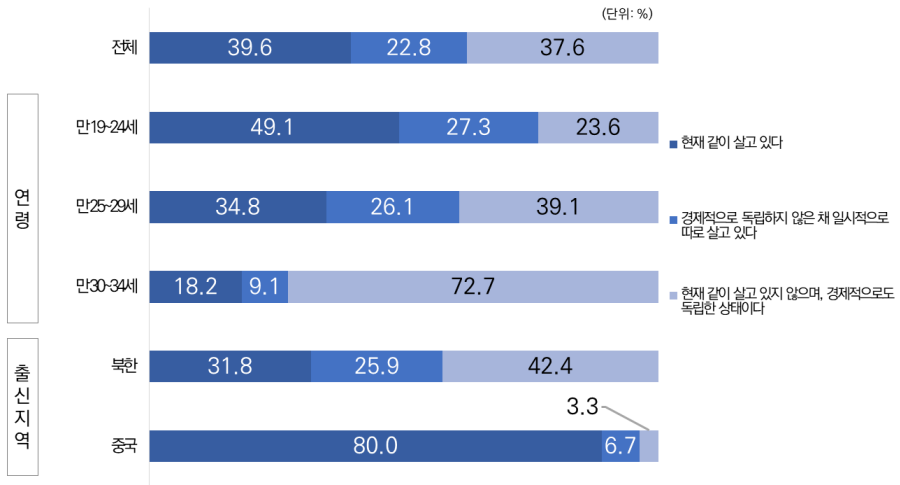


그림 V-5. 부모 동거 여부

(9) 선호하는 가치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일 중심 사고를 하는 경향과 여가 중심 사고 경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일반청년들은 두드러지게 여가 중심 사고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이 중요하다고 반응한 이들은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4.0%인데 비해 일반청년들의 24.5%만이 여기에 응답했다.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9.6%인데 비해 일반청년의 51.1%가 이에 응답했다.

표 V-10. 선호하는 가치_일 중시 VS 여가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106	6.6	15.1	12.3	26.4	21.7	11.3	6.6
성 별	남 자		34	5.9	17.6	14.7	23.5	17.6	11.8	8.8
	여 자		72	6.9	13.9	11.1	27.8	23.6	11.1	5.6
연 령	만 1 9 ~ 2 4 세		57	8.8	15.8	10.5	22.8	22.8	8.8	10.5
	만 2 5 ~ 2 9 세		26	3.8	11.5	15.4	38.5	15.4	15.4	0.0
	만 3 0 ~ 3 4 세		22	4.5	18.2	13.6	22.7	27.3	9.1	4.5
지 역	수 도 권		96	6.3	15.6	10.4	28.1	22.9	10.4	6.3
	비 수 도 권		9	11.1	11.1	33.3	11.1	11.1	11.1	11.1
학 력	대 졸 미 만		59	20.3	13.6	15.3	22.0	8.5	16.9	3.4
	대 졸 이 상		31	9.7	32.3	22.6	12.9	19.4	3.2	0.0
출 신 역	북 한		88	8.0	15.9	13.6	26.1	17.0	11.4	8.0
	중 국		17	0.0	11.8	5.9	29.4	47.1	5.9	0.0

(10) 행복한 삶의 요건 갖춘 정도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춘 정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청년들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일반청년들 중에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1%인데 비해 북한배경청년의 36.5%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 중 30.8%가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응답했음에 비해 일반청년의 49.2%가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응답했다.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특히 북한배경 남성들에게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는 주관적 인식 수준에서 북한배경청년들 중 남자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1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7	15.9	20.6	32.7	18.7	12.1
성 별	남	자	34	26.5	26.5	23.5	14.7	8.8
	여	자	73	11.0	17.8	37.0	20.5	13.7
연 령	만 19 ~ 24 세		58	17.2	22.4	31.0	15.5	13.8
	만 25 ~ 29 세		26	19.2	19.2	30.8	15.4	15.4
	만 30 ~ 34 세		22	9.1	13.6	40.9	31.8	4.5
지 역	수 도 권		97	16.5	17.5	34.0	19.6	12.4
	비 수 도 권		9	11.1	44.4	22.2	11.1	11.1
학 력	대 졸 미 만		60	15.0	23.3	33.3	15.0	13.3
	대 졸 이 상		31	16.1	19.4	22.6	25.8	16.1
출 신 지 역	북	한	89	13.5	20.2	34.8	19.1	12.4
	중	국	17	29.4	17.6	23.5	17.6	11.8

(11)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를 순서와 상관없이 3가지를 택하라는 질문에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에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청년들 중에는 ‘경제적 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 꼽는 이들(49.0%)이 가장 많았는데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존중’(46.2%)에 가장 많은 이가 응답하였다. 북한배경청년들도 ‘경제적 부’가 중요한 가치라 응답한 경우(43.3%)가 많았지만 이보다 ‘존중’에 응답한 이가 더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배경’을 드러낼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은 북한배경과 상관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모두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러한 응답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존중’, ‘경제적 부’ 외에도 ‘공정’, ‘다양성’, ‘자유’, ‘신뢰’ 등의 순서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꼽고 있다.

표 V-12.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부	공정	노력	다양성	신뢰	자립	자유	재미	정의	존중	지속가능성	평등
전체		104	43.3	33.7	21.2	33.7	25.0	7.7	26.9	4.8	16.3	46.2	10.6	28.8
성별	남자	33	54.5	30.3	15.2	27.3	18.2	9.1	33.3	12.1	18.2	45.5	6.1	24.2
	여자	71	38.0	35.2	23.9	36.6	28.2	7.0	23.9	1.4	15.5	46.5	12.7	31.0
연령	만19~24세	56	39.3	35.7	19.6	33.9	23.2	3.6	35.7	3.6	12.5	48.2	8.9	32.1
	만25~29세	26	46.2	26.9	15.4	34.6	26.9	7.7	23.1	11.5	15.4	50.0	15.4	26.9
	만30~34세	22	50.0	36.4	31.8	31.8	27.3	18.2	9.1	0.0	27.3	36.4	9.1	22.7
지역	수도권	95	43.2	31.6	22.1	34.7	26.3	6.3	27.4	5.3	17.9	45.3	10.5	27.4
	비수도권	9	44.4	55.6	11.1	22.2	11.1	22.2	22.2	0.0	0.0	55.6	11.1	44.4
학력	대졸미만	58	43.1	37.9	19.0	32.8	31.0	6.9	29.3	3.4	8.6	43.1	13.8	27.6
	대졸이상	30	43.3	26.7	20.0	50.0	13.3	10.0	23.3	10.0	20.0	53.3	3.3	26.7
출신지역	북한	87	43.7	31.0	21.8	36.8	28.7	9.2	26.4	4.6	17.2	43.7	11.5	25.3
	중국	17	41.2	47.1	17.6	17.6	5.9	0.0	29.4	5.9	11.8	58.8	5.9	47.1

(1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보유 정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일반청년들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긍정적인 응답이 적다. 일반청년의 90.1%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에는 75.9%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에게 함께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나타난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 19~24세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혼자 대응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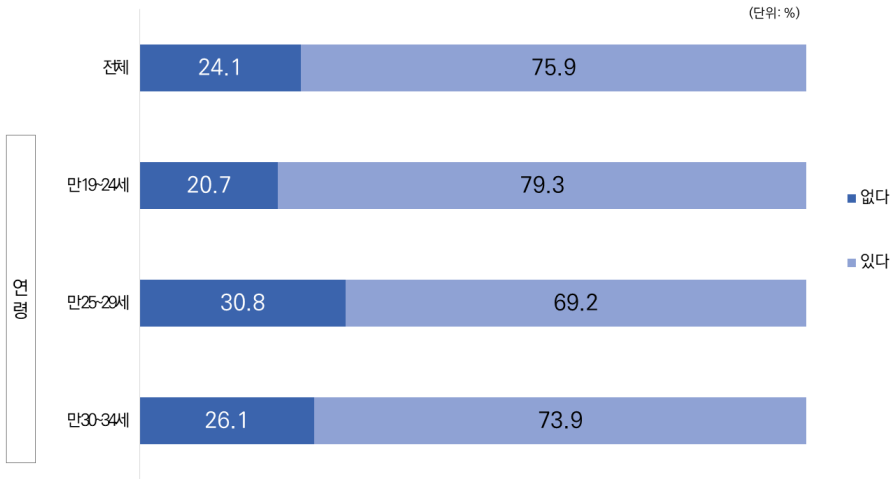


그림 V-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일반청년의 65.2%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52.8%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의 한국사회 내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1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6	47.2	52.8
성 별	남 자	34	44.1	55.9
	여 자	72	48.6	51.4
연 령	만 19 ~ 24 세	58	44.8	55.2
	만 25 ~ 29 세	25	48.0	52.0
	만 30 ~ 34 세	22	54.5	45.5
지 역	수 도 권	96	47.9	52.1
	비 수 도 권	9	44.4	55.6
학 력	대 졸 미 만	60	41.7	58.3
	대 졸 이 상	31	54.8	45.2
출 신 지 역	북 한	88	47.7	52.3
	중 국	17	47.1	52.9

(13) 대면, 비대면 사회적 교류 정도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를 평소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과 일반청년들의 응답 경향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가족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이고 거의 매일 교류한다는 응답이 36.1%인 반면, 일반청년들은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가 0.2%에 불과하고 거의 매일 교류한다는 응답이 73.2%에 달했다.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는 한국에 가족이 없는 경우일 수 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교류한다는 응답도 9.3%에 달한다. 이는 일반청년의 0.3%와 크게 비교되는 수치이다. 이로써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한국에 가족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교류의 빈도가 일반청년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4. 대면교류 - 가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8	17.6	9.3	6.5	12.0	18.5	36.1
성 별	남 자	35	11.4	17.1	5.7	5.7	20.0	40.0
	여 자	73	20.5	5.5	6.8	15.1	17.8	34.2
연 령	만 1 9 ~ 2 4 세	58	10.3	10.3	5.2	17.2	17.2	39.7
	만 2 5 ~ 2 9 세	26	23.1	7.7	7.7	3.8	19.2	38.5
	만 3 0 ~ 3 4 세	23	30.4	8.7	4.3	8.7	21.7	26.1
지 역	수 도 권	98	18.4	7.1	6.1	11.2	20.4	36.7
	비 수 도 권	9	11.1	33.3	0.0	22.2	0.0	33.3
학 력	대 졸 미 만	60	18.3	8.3	3.3	16.7	18.3	35.0
	대 졸 이 상	31	12.9	9.7	9.7	6.5	22.6	38.7
출 신 지 역	북 한	90	20.0	8.9	5.6	13.3	16.7	35.6
	중 국	17	5.9	11.8	5.9	5.9	29.4	41.2

(14) 소통·고립 정도에 대한 인식

‘나는 혼자라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청년의 반응과 북한배경청년의 그것에 차이가 드러난다. 일반청년의 경우 13.5%가 ‘가끔’(11.7%) 혹은 ‘항상 그렇다’(1.8%)고 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은 35.2%가 ‘가끔’(26.9%), ‘항상 그렇다’(8.3%)라고 응답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북한배경청년 중 남자가 여자보다 혼자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남자는 40.0%가 ‘가끔’(25.7%) 혹은 ‘항상’(14.3%) 혼자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32.9%가 ‘가끔’(27.4%), ‘항상’(5.5%) 그렇게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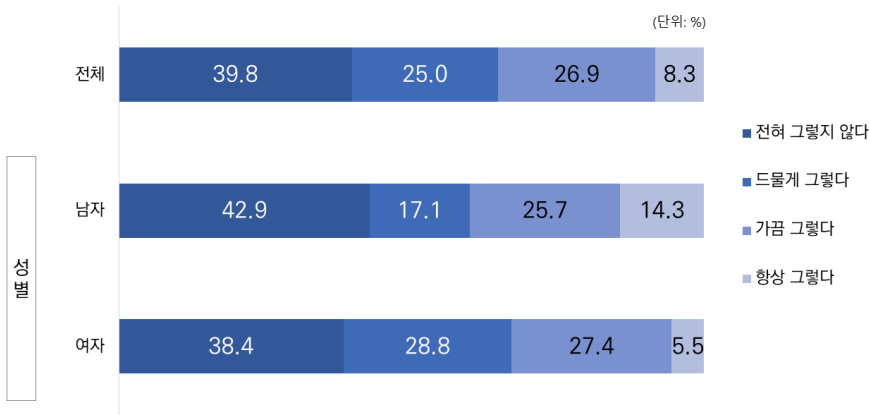


그림 V-7. 평소 감정 -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15) 채무 여부와 이유

북한배경청년 중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2%로 일반청년의 18.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채무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높아졌고, 만 25세 이상 연령 집단의 경우에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청년에 비해서도 채무가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비나 생활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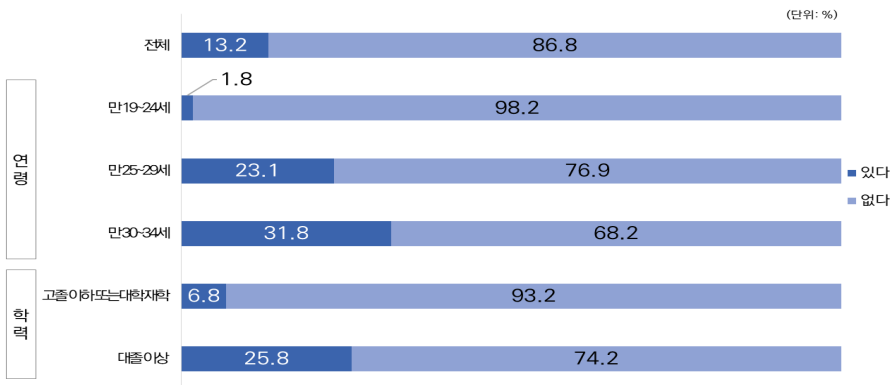


그림 V-8. 갚아야 할 채무 여부

북한배경청년들의 채무 발생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40.0%로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 주거비 마련(33.3%), 학자금 마련(6.7%), 창업자금 마련(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따르면, 청년들은 생활비와 주거비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가족이 먼저 입국해서 주택을 받은 경우 임대주택 수혜에서 배제됨에 따라 많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표 V-15. 채무 발생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자금 마련	주거비 마련 (전월세 자금 등)	생활비 마련 (식비, 의료비 등)	창업자금 마련	기타
전	체	15	6.7	33.3	40.0	6.7	13.3
성 별	남 자	6	16.7	33.3	50.0	0.0	0.0
	여 자	9	0.0	33.3	33.3	11.1	22.2
연 령	만 1 9 ~ 2 4 세	2	0.0	100.0	0.0	0.0	0.0
	만 2 5 ~ 2 9 세	6	0.0	33.3	33.3	0.0	33.3
	만 3 0 ~ 3 4 세	7	14.3	14.3	57.1	14.3	0.0
지 역	수 도 권	14	7.1	35.7	35.7	7.1	14.3
	비 수 도 권	1	0.0	0.0	100.0	0.0	0.0
학 력	대 졸 미 만	5	0.0	40.0	40.0	20.0	0.0
	대 졸 이 상	8	12.5	37.5	37.5	0.0	12.5
출 신 지 역	북 한	15	6.7	33.3	40.0	6.7	13.3
	중 국	0	0.0	0.0	0.0	0.0	0.0

* 주: 1)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16) 근속년수

지난주에 일을 하거나 휴가 또는 일시 휴직 상태였던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북한배경 청년들의 근속년수는 평균 16.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년들의 평균 근속년수인 35.7개월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배경청년들의 근속년수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근속년수는 평균 10.7개월로 남성의 28개월에 비해

서도 매우 짧았다. 근속년수는 해당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만족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여성청년들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이 일을 시작한 시기가 남한 입국 시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청년과의 차이나 성별 차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면담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도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취득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이러한 직종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라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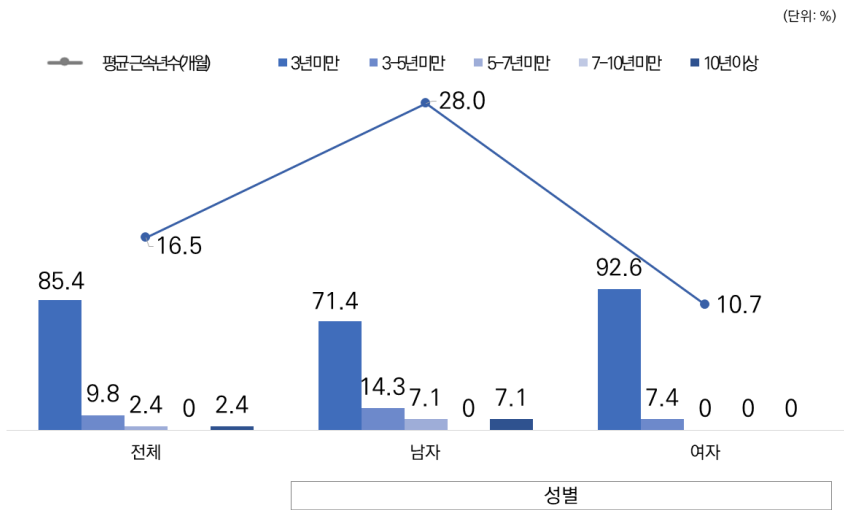


그림 V-9.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근속년수

(17)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중 삶 미래안정성과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46.4%는 미래안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36.2%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년의 67.8%가 미래안정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특히 북한출생청년들보다 제3국출생청년들의 불만족 정도가 높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표 V-16. 삶의 만족도 - 미래 안정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8	2.8	5.6	6.5	11.1	10.2	17.6	13.9	11.1	9.3	5.6	6.5
성 별	남	자	35	5.7	5.7	2.9	14.3	5.7	14.3	17.1	11.4	5.7	11.4	5.7	
	여	자	73	1.4	5.5	8.2	9.6	12.3	19.2	12.3	11.0	11.0	2.7	6.8	
연 령	만 19 ~ 24 세		58	3.4	10.3	8.6	12.1	6.9	10.3	15.5	12.1	12.1	3.4	5.2	
	만 25 ~ 29 세		26	3.8	0.0	3.8	7.7	15.4	15.4	19.2	3.8	11.5	11.5	7.7	
	만 30 ~ 34 세		23	0.0	0.0	4.3	8.7	13.0	39.1	4.3	17.4	0.0	4.3	8.7	
지 역	수 도 권		98	3.1	5.1	6.1	10.2	10.2	16.3	15.3	11.2	10.2	5.1	7.1	
	비 수 도 권		9	0.0	11.1	11.1	11.1	11.1	33.3	0.0	11.1	0.0	11.1	0.0	
학 력	대 졸	미 만	60	1.7	6.7	6.7	13.3	15.0	16.7	10.0	13.3	10.0	5.0	1.7	
	대 졸	이 상	31	6.5	3.2	3.2	3.2	6.5	22.6	19.4	9.7	9.7	9.7	6.5	
출 신 지역*	북	한	90	1.1	2.2	6.7	11.1	12.2	20.0	15.6	8.9	7.8	6.7	7.8	
	중	국	17	11.8	23.5	5.9	5.9	0.0	5.9	5.9	23.5	17.6	0.0	0.0	

삶의 만족도 중 전반적인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북한배경청년들의 59.3%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17.6%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년의 76.5%가 전반적인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만족하고, 8.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배경청년 중에서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응답도 많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북한배경의 남성 청년들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양극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V-17.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나의 인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8	3.7	1.9	3.7	3.7	4.6	23.1	9.3	13.0	15.7	10.2	11.1
성 별 *	남 자	35	11.4	2.9	2.9	0.0	2.9	17.1	5.7	20.0	11.4	8.6	17.1	
	여 자	73	0.0	1.4	4.1	5.5	5.5	26.0	11.0	9.6	17.8	11.0	8.2	
연 령	만 19~24세		58	6.9	3.4	5.2	6.9	3.4	17.2	10.3	13.8	15.5	6.9	10.3
	만 25~29세		26	0.0	0.0	0.0	0.0	3.8	30.8	3.8	15.4	15.4	19.2	11.5
	만 30~34세		23	0.0	0.0	4.3	0.0	8.7	26.1	13.0	8.7	17.4	8.7	13.0
지 역	수 도 권		98	4.1	1.0	4.1	4.1	3.1	23.5	6.1	14.3	17.3	11.2	11.2
	비 수 도 권		9	0.0	11.1	0.0	0.0	22.2	11.1	44.4	0.0	0.0	0.0	11.1
학 력	대 졸 미 만		60	5.0	1.7	5.0	3.3	8.3	21.7	11.7	13.3	13.3	8.3	8.3
	대 졸 이 상		31	3.2	0.0	3.2	3.2	0.0	19.4	9.7	16.1	16.1	16.1	12.9
출 신	북 한		90	2.2	0.0	3.3	2.2	4.4	25.6	11.1	14.4	14.4	10.0	12.2
지 역 *	중 국		17	11.8	11.8	5.9	11.8	5.9	5.9	0.0	5.9	23.5	11.8	5.9

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 북한배경청년 정책지원 방향

(1) 정책 지원 방향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의 분단과 이로 인해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북한주민이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남한 사회로 이주하면서 발생한다. 한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지위를 받는 북한 주민이 여타 이주민들과 구별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역사적 발생 원인과 관계 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초창기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동기는 정치·이념적 동기로 인한 망명과 탈출, 그리고 생활고와 굶주림으로 인한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북이었지만 이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한 비정치적 목적의 자발적 이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7월 증가하는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마련되어 법제도적인 정착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1997년 하나원, 2009년 지역응답센터,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년 제2하나원, 2020년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정착지원 시설 및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졌다(관계부처 합동, 2021). 2000년대 중반 연간 3,000여 명의 대량 입국 추세가 지속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내용도 세분화, 구체화되었고 의료, 취업, 교육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노력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과 적응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2020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은 일반국민 수준에 미달하고 있고 사회참여와 관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부적응, 생활고, 심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비록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는 촘촘해 지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처한 상황과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지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나와 동등한 시민이자 이웃으로 나아가 친구, 동료, 배우자로 인식하고 포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2010년대 초부터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감소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차단 및 봉쇄조치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온 여파를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 다른 사회적 집단과 마찬가지로 위축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대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착지원 법제도로 규정하지 못하는 영역이나 정착지원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진단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결정하는 법제 현황과 각종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정책 지원 방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주지하듯이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 그룹이다. 청년기본법의 연령에 맞추어 19세 이상 3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남북하나재단 정착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만 15세 이상인 29,880명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10,986명)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의 3분의 1 이상이다. 2022년 3월 말 기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누적 인원수 33,826명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57.1%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 비중이 높다(남북하나재단, 2022). 모든 연령이 중요하지만 청년 시기는 고등교육을 거쳐 구직, 취·창업, 결혼,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애 전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이다. 한국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통과하고 감내해야 할 일련의 과정은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한 것이지만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청년이 단독으로 입국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해야 하는 만큼 가정환경과 경제적 수준 등 출발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배경청년 중 일부는 정체성 갈등, 교육공백, 사회적응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청년 세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탈주민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실태 파악을 토대로 이들을 위한 자립 역량은 별도의 관찰이 필요하다.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이 연구가 ‘북한배경청년’이라는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다. 앞서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제3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소)년이 증가하는 점이다. 이러한 제3국 출생자들은 현재의 정착지원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부모로부터 태어난 남한 출생 청년들도 있으나 이들은 일반청년들과 상당 부분 동일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의 정책 제안은 북한배경청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법적 지위를 가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북한출생청년과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중국 등 제3국출생청년에게 집중한다.

제3국출생청년을 포함한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선은 우리 사회의 여타 정책소외계층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된 집단을 발굴하여 필요하고 적법한 지원제도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지원제도 ‘확대’만을 염두 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의 증가가 ‘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이다(김화순, 2022).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두고 볼 때 북한출생청년들을 위한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는 적어도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못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기존의 정착지원제도가 청년 계층에게 충분히 접근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중복이나 경쟁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지원체계는 제3국출생청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영역별로 필요한 정책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자립과 역량 강화 방향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다른 이주배경 집단과의 형평성으로 고려해 큰 틀의 사회복지체계 하에서 적절히 조율되고 배치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어떠한 정책이든 앞으로의 대내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치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사회복지체계나 다문화정책 전반은 강화될 필요가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도 증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큰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성정, 2022).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 전체 청년층 지원정책과 연계와 통합을 고려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김병로, 2022).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배경 청년의 정착실태를 일반청년 조사와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하였다. 일반청년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배경청년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확인하여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법과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는 제3국출생청년에 대한 지원 및 역량 강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은 사회통합형 정책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북한배경’이라는 낙인효과를 당사자들에게 주거나 복지의존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현재의 정착지원 제도, 서비스 전달 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 제안들은 한국의 청년 정책이나 사회복지체계 차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현황 통계 세분화

청년기본법의 대상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이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의 연령대를 19~24세, 25~29세, 30~34세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통계는 10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표 V-18 참조)

표 V-18. 북한이탈주민 연령 (‘21.6월말 기준)

구분	남(명)	여(명)	합계(명)	비율(%)
0~9세	608	601	1,209	2.6
10~19세	1,630	1,961	3,591	10.6
20~29세	2,654	6,780	9,434	27.9
30~39세	2,218	7,605	9,733	28.8
40~49세	1,460	4,788	6,248	18.5
50~59세	600	1,547	2,147	6.4
60세 이상	264	1,304	1,398	4.1
계	9,444	24,316	33,760	100

* 출처: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 주: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일부 인원 제외

위 통계에 따르면 10~19세 가운데 북한출생청년이 몇 명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 30~39세의 경우에도 북한출생청년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렇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섞여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착실태조사 역시 10년 단위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을 구분하고 있어 25~29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표 V-19 참조).

표 V-19. 북한이탈주민 성별 고용률(2021년)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2021년	70.7	52.3
2022년	70.6	49.3
15~19세	10.8	6.5
20대	59.3	44.7
30대	88.6	49.2
40대	87.9	60.4
50대	78.7	65.6
60대 이상	33.9	24.0

* 출처: 남북하나재단 (2022).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그나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통계라도 있지만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전체 입국자가 몇 명인지, 또한 19~24세, 25~29세, 30~34세에 해당하는 제3국출생청년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가 잡혀 있지 않다.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처럼 북한배경청년의 연령대를 출신지 별로 세분화해서 연령대별 교육, 취업, 결혼·독립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제3국출생청년 포함

북한이탈주민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이중국적 내지 복수국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국적법은 국적 문제에 있어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다가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이중국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1997년 12월 13일 개정 국적법(법률 제5431호) 제12조 제1항), 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1997년 12월 13일 개정 국적법(법률 제5431호)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이중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선택절차도 마련하였다(1997년 12월 13일 개정 국적법(법률 제5431호) 제13조). 이 같은 이중국적 제도는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인 제3국출생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국 국적을 갖게 된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제3국출생청년에게 정착지원을 하는 것은 외교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제3국출생청년에게 정착지원을 하는 것이 외교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제3국출생청년은 북한출생청년과 처한 상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북한이탈청소년과 제3국출생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이란 같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제18조). 그런데 제3국출생청년은 제3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출생청년이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청년 등 다른 정책소외청년계층에 비해서도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제3국출생청년들은 북한출생청년에 비해 언어문제,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출생청년보다 법적인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제3국출생청년을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같은 북한배경청년으로 범주화되고는 있지만 제3국출생청년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V-20. 출생지별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내역 비교

구분	북한출생 탈북민 자녀	제3국출생 탈북민 자녀	국내출생 탈북민 자녀
정착금 및 주거 지원금	- 자녀 동반 가족 대상 정착 기본금 및 주거 지원금 지급 - 부모 없이 단독 입국시에도 정착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만 20세 이후 신청에 의해 입국후 주택 및 주거지원금 등 지원	없음	
가산금 (1개 사유만 인정)	- 한부모아동양육 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세대당 36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00만 원 지급 (2인까지 지급)	없음
특례 입학	정원의 선발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1항 제5호)		없음
대학학비 지원	- 국공립대 면제 - 사립대 학비 50% 지원	- 대학 첫 학기 입학금·등록금 지원 - 남북한·재단 등과 연계하여 민간 기부금 활용	없음
교육 지원	- 하나원 입소 후 예비학교에서 학습 및 생활 지도, 탈북 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입학시 학비 무료 - 일반학교 재학시 통일전담교육사를 통한 학업 및 생활지도, 방과 후 공부방 시설 무료 이용 - 방문학습지, 화상영어교육 무료, 대안교육시설에 중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 강사 배치 및 맞춤형 한국어 교재 보급 등		- 일반학교 재학시 통일전담교육사를 통한 학업 및 생활지도, 대안교육 시설 및 방과 후 공부방시설 무료 이용 - 방문학습지, 화상영어 교육 무료 지원
병역	본인 선택에 따라 병역 의무 면제(병역법 64조 제1항 제2호)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병역 의무 대상(국적법 제12조 제2항)	일반 국민과 동일한 병역 의무 대상 (병역법 제8조)

* 출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전문위원 최용훈) (2020). 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37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서울: 국회외교통일위원회, p. 5 일부 수정.

그러나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남한출생청년보다는 북한출생청년과 처한 상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탈북청소년과 제3국출생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과 같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제18조). 그런데 제3국출생청년은 제3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출생청년이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청년 등 다른 정책소외청년계층에 비해서도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제3국출생청년들은 북한출생청년에 비해 언어문제,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출생청년보다 법적인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국적을 선택한 제3국출생청년들에 대한 정착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방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제3국출생청년의 법적인 지위 자체를 북한출생청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인 지위는 변경하지 않고 정착지원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제3국출생청년은 북한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자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3국출생청년의 정착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 두 가지의 입법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가칭「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출생 자녀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가칭「제3국출생 자녀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법과 국적법상의 이중국적제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국적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정착지원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북한출생청년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받는 정착지원을 모두 제3국출생청년에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사항을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지원체계 거버넌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수혜 대상자에서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이 과정에서의 중복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전달체계가 10여 년 넘게 경과하면서 일반적인 지원체계와 중복성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각 부처 간의 업무 분담이 불명확하며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이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협업이 아닌 경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반면에 필요한 지원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하나센터 등 각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전달체계의 각 수준별 업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같은 대상자들에게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지원서비스 중복과 ‘지원 쇼핑’ 문제 및 장기적인 지원일 필요한 분야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 도출이 쉬운 분야의 지원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은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영역의 역할 재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관련 총괄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총괄기능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직접지원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 일자리 창출, 각 부처 간 협업 기능을 강화할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의 사례관리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정착지원 현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부처,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의 허브로서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과 관련하여 정착초기부터 거주지 전입까지, 생활안정부터 교육 및 자립자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며,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센터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지역적 상황과 관련 정보들이 축적되는 만큼 남북하나재단의 유기적 허브 기능 강화는

중요하다.

넷째,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거주가 많은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간의 지원 체계와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각 지역의 하나센터가 인력 및 기관의 역량,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정도, 민간단체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착지원 서비스의 가장 일선에 있는 하나센터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거버넌스를 활성화를 위한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하나센터가 지역적 환경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사례관리, 상담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다변화

북한배경청년들은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까지 다양한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존을 위한 탈북과정을 본인이 직접 겪은 경우 정서적 불안이 존재할 수 있고, 성장기에 오랜 시간 부모와 분리를 겪었던 북한배경청년이 입국하여 합가하게 된 부모와의 서먹한 심리는 가족의 해체와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에 아버지를 두고 입국한 경우엔 심리적 외상(trauma)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충격이 내재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남한에 정착한 북한배경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고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북한배경청년의 심리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셈이다.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무연고 단독 입국한 경우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고독과 외로움이 일탈로 연결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배경청년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단기적, 병리적 관점에서 장기적, 성장지향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북한배경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외상 경험과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부적응의 관점

아래에서 단기적,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성장지향적 관점 하에서 이들의 심리적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여 자립 역량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임선영, 2020).

또한 심리케어 지원 부분은 특정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심리적 외상을 사회적으로 치유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북한배경청년 집단이 갖는 사회적 외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할 것이며, 심리케어 지원이 상호작용으로 양방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심리적 외상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상담기관 알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집단 상담, 집단 관찰, 동료(또래) 멘토링(peer mentoring), 상담캠프 등을 통해 ‘집합적 심리 치료(collective psychological treatment)’의 차원에서 심리적 외상을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입소하는 하나원 ‘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고, 사회 진출 후에는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있는 심리·취업·복지 분야 전문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산하의 심리상담센터인 ‘마음숲’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부부·가족·개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원의 심리 상담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진출 이전의 심리적 문제만 케어하게 되어 있고, 하나센터의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인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리적 제약이 존재한다.

결국 북한배경청년들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문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려 심리적 불안정 또는 위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심리지원 프로그램 뿐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는 온라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단위로 북한배경청년들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배경청년들 중 정서적, 심리적 고통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고 심리적 고립 문제도 보다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지리적 문제, 상담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하나센터가 지역 민간 심리상담소나 신경정신과와 연계하여

전문 상담 인력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배경을 이해하는 상담 인력 양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문 심리 상담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배경청년 개인이 갖는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배경청년이 속한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심리케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 대상자를 북한배경청년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북한배경청년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일반청년과 비교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지나는 일반적인 경향성이 있지만 그 경향성이 개별 북한배경청년의 특성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도 사회적 입지를 매우 단단하게 구축한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든 북한배경청년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본 실태조사에서도 심리·마음 건강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북한배경청년은 40%에 미치지 않는다. 이에 개별 청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시스템은 신변보호관, 하나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연계하되 북한배경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근거리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례관리시스템은, 개별 북한배경청년의 교육, 주거, 건강, 취업 등 삶 전반에서 요구되는 문제를 포착해 낼 수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자원들이 체계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청년 자립 및 맞춤형 고용지원 지원 정책 마련

경제와 고용 측면에서 북한배경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제 및 고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북한배경청년들은 다른 일반청년 세대와 같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 외에도 남한사회에서 살아온 기간이나 인적 네트워크, 가정

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진행된다. 또한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부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거비나 가족 생활비도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에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쓸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나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청년 자립 지원비 지원’과 ‘청년 대출 확대’를 제안 할 수 있다.

현재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취업이나 구직활동 지원은 주로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교육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청년 자립수당과 같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나 청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생활비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 대출 한도가 크지 않고 취업이나 재학 여부에 따른 제약도 존재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이나 월세 등의 주거비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이나 이자율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재단을 통한 대출 확대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년 자립 지원 정책과 함께 북한배경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북한배경청년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남한사회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북한배경청년들은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고용노동교육 확대’와 ‘북한배경청년 맞춤형 고용노동 정보 축적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대우를 자신이 참고 견뎌야 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했다. 또한 실업급여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배경청년에게 남한의 고용 및 노동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 등 기본적인 고용노동교육이 요구된다.

북한배경청년들은 고용 및 노동현장에서 유사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출신 배경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취업 이후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러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나 상시 문의 창구 개설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4)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 통합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같은 배경을 가진 이들과 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식적으로 같은 배경을 가진 이들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성취 욕구가 강한 이들일수록 같은 북한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 같은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도 자신 못지않게 열심히 사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깨닫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북한배경청년들과 일반청년들이 함께 하는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호 인식 개선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³²⁾ 이러한 프로그램은 북한배경청년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북한배경청년들 상호 간에도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키워나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대학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북한배경청년들은 대학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을 교육 분야 지원 1순위로 우선시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출생 청년들에게 대학장학금이나 교육비 지원은 중요한 문제이고, 교육 분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도 대학특례입학보다는 교육비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을 다니면서

32)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주한외에서 시행했던 '한화 자전거 평화여행, 다름의 동행, 함께 멀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이었다. (미지넷 모바일웹 http://m.mizy.net/program.html?html=program/program2_view.html&uid=507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이 연구의 연담에 참여했던 사례7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을 매우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될 필요를 강조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북한배경청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학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비나 생활비 지원 차원의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한 대학장학금 혹은 교육비 지원 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대학등록금 지원 기한 제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북한 출생 청년에게는 대학등록금 지원이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또는 의학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즉 졸업 전에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8학기 내에 졸업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제도다. 그러나 북한배경청년의 1/3 정도가 휴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휴학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휴학을 할 경우 대학등록금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전체 비율에서 여성이 많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 중 출산과 육아를 담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8학기까지 등록금 지원'을 하는 현 규정보다는 휴학기간을 4학기가 아닌 6학기 또는 8학기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7년 또는 8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등록금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6) 예비 대학 운영의 내실화

북한배경청년 중 예비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디딤돌대학 운영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 및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디딤돌(예비)대학 과정을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운영해 왔다. 그렇지만 탈북민이 다수 재학 중인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소수 기관에 한정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국 단위에서 볼 때 본인이 재학 예정이거나 희망하는 대학에 디딤돌대학이 없을 수 있으므로 디딤돌대학 과정에 대한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디딤돌대학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위탁 운영되었기에 현 정부정책 방향과 같이 비영리단체 활용, 지역단위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또한 다수의 예비탈북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는 “함께하는재단”을 중심으로 탈북청소년예비대학이 진행 중에 있으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개선된 형태의 디딤돌대학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디딤돌대학 과정을 함께 운영하여 핵심 과정이나 공개강좌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

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문계, 이공계, 기타 특수 분야 전공(간호 계열)로 구분하여 주요 교육 프로그램 및 과목 등을 북한배경청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디딤돌대학 확대 개선은 대학 진학을 앞둔 청년이나 그렇지 않은 청년 모두에게 유용한 교육 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도 진로나 전공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제약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는 중도 탈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고등 교육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던 경우에도 전혀 다른 영역에서 취업을 하는 등 제대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취업과 적응에 필요한 교육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허수경, 2022). 다만 기존의 디딤돌대학에서 진행한 상담 기능은 각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일임하고 디딤돌대학은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핵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러한 핵심 교육 과정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면 시간대나 거주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많은 북한배경 예비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경제 지식 교육의 강화

북한배경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들의 경제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경제 지식 교육을 통해 북한배경청년은 남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경제 태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지고 있는 자원(능력, 시간, 재정 상황 등) 하에서 자신의 효용(만족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미경, 2004; Hilgert, Hogarth & Beverly, 2003; Collins, Gorey, Schmeise, Baker & Ziegler, 2009; Gale & Levine, 2011).³³⁾

정부와 일부 민간 차원에서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경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북한배경청년의 구직활동과 이직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산업재해보험 등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경제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제 지식을

33)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소요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등 합리적 경제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교육은 민관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지식 교육 역시 정부 기관 차원에서 체계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민간, 중앙-지역 간의 협력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배경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 지식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15개 지역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북한배경청년 대상 경제 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시민강좌 형태로 정기 개설함으로써 북한배경청년의 경제 지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8) 주거 안정

북한배경청년이 겪는 주거 문제는 청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면서 경험하는 특성과 북한배경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복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은 학교 졸업과 취업, 거주독립, 결혼, 자녀 출산 등을 생애시간을 경과하며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부모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자원에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성인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배경청년들은 입국 유형에 따라 성인의 역할을 일찍부터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마련이다. 무연고 단독 입국자는 부모의 보호와 자원에서 이탈하여 강제적으로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제3국출생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에서 배제됨에 따라 정착과 적응에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임대아파트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합가한 가족에게서 주거 분리를 선택하며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이기도 한다. 또한 무연고 단독 입국한 경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룹홈에서 공동체 생활을 선택하기도 했다. 북한배경청년들의 다양한 주거형태는 곧 주거 불안정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에게 주거 안정 문제는 정착 이후 자립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북한배경청년의 주거 안정 방안으로써 첫째,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처럼, 단독 입국자가 아닌 북한배경청년 또한 1인 가구로 형성되는 수가 늘고 있다. 북한배경청년은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아 주거독

립을 이룰 수도 있지만, 학교와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반납하여 주요 생활환경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거불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자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배경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독립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부모 또는 가족과 자녀 관계가 균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 상태도 불안정한 북한배경청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면 제도적으로 1인 가구 주택공급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세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통해 북한배경청년들의 주거 유형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북한배경청년 가운데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좁은 평수의 집에서 공동거주하거나, 그룹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여럿이었다. 공동거주의 경우 사적인 공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고, 그룹홈의 경우 무연고 단독 입국자가 심리와 정서 지원을 받는 이점이 있지만, 사적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이용자들의 자율성이 일부 통제되기 마련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여러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세어하우스 공급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어하우스는 임대료 부담과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함으로써 1인 가구의 정서적,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한집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한다는 점에서 세어하우스와 공동거주의 형태가 유사하지만, 세어하우스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주거 환경이 공동거주 형태보다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청년 세어하우스의 공급 확대를 통해 북한배경청년이 공동거주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주거상담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 임대와 관련한 제도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편이다. 사회 초년생들은 부동산에서 무엇을 어떻게 문의하고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지, 집을 알아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배경청년은 지원받았던 임대아파트를 반납하여 그룹홈에서 생활하다 뒤늦게 주거독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청년들에게 주거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시행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9) 창업 및 취업 지원

취업과 관련해서는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교육지원 혜택이 제3국출생청년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의 자립에 있어 직업교육과 취업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 직업교육,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취업 수요가 있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직업교육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취업상담, 직업훈련교육, 구인구직연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 등 제3국출생청년은 직업훈련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장 미래행복통장이나 취업수당 등 상당한 재원 투입이 요구되는 정책은 시행하기 어렵더라도 자립자활과 직결된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지원은 제3국출생청년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신효숙, 2022).

창업과 관련으로 북한배경청년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창업 과정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창업지원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창업 지원 정책은 “탈북민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창업을 내실 있게 운영”이 중시 되고(관계부처 합동, 2019) 창업 지원 방향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통일부는 아산나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창업에 최대 1,500만 원 창업지원금을,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2,000만 원(3년분할지급)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통일부(하나재단)의 창업지원 예산은 2019년 11억 2천 9백만 원, 2020년 11억 2천 9백만 원, 2021년 8억 6천 7백만 원, 2022년 8억 6천 7백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존의 창업 지원 정책이 나름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배경청년의 도전적인 창업 유도와 다양한 창업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탈북대학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를 모티브로 하여 ‘북한배경청년 창업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청년취업아카데미의 경우 대학생 대상으로 북한출생청년은 지원 가능하나 제3국출생청년의 지원 할 수가 없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북한이탈주민 기업가육성 센터」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기업가 역량과 자격(법인 허가증 및 정관)이 있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다소 진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3국출생청년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북한배경청년 창업아카데미는 출신지역(북한 혹은 제3국)에 제한 없이

만 35세 미만의 국내 청년이면 대학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초기 사업의 성과에 따라 민간과 공동으로 북한배경청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년까지 확대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시장조사, 벨류 포지셔닝, 회계 업무, 창업 공간 활용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고 국내외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대학 창업 동아리 네트워킹, 기 창업자와의 창업과제 수행 등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한국의 예비창업자를 위해 운영 중인 ‘K-스타트업’ 사업에 북한배경청년 및 다문화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창업패키지)을 개발하여 공모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타겟형 패키지가 과연 기타 사회계층 집단과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배경청년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한국의 일반청년들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정책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외국인(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예비창업자를 별도로 한정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가 운영된 바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도 창업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점에서 북한배경청년과 다문화청년이 함께 창업 패키지를 적극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드는 것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적극적 조치 차원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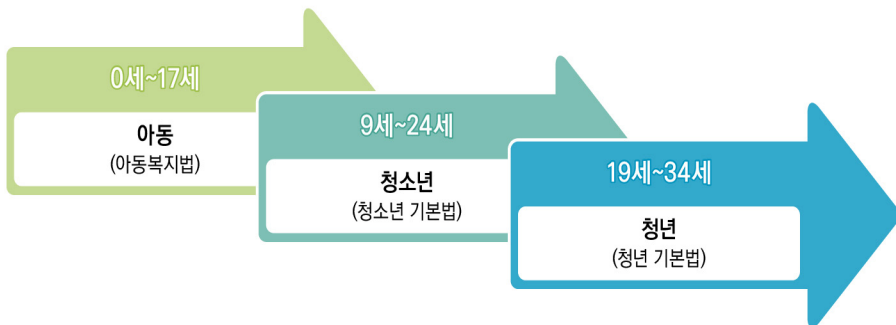
○ — 제6장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1.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 3. 청소년부모의 정책지원
과제

1.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이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따라서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부모의 연령 범주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연령과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과 중첩된다. 즉, 이들은 스스로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임과 동시에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과 같은 부모 역할과 자립이라는 발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이기도 하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VI-1. 청소년부모 연령

34) 이 장은 이상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가 집필하였고 협동연구총서(22-80-04)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아직까지 청소년부모에 관한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³⁵⁾ 자료 중 출생신고된 출생자와 그 부모의 연령 정보가 담긴 출생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부모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청소년부모가구는 7,876 가구, 15,75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신고에 기초한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통계청, 1997~2020)를 통해 추정한 청소년부모 가구의 규모는 현재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청소년부모는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청소년부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상 정의하는 청소년부모의 연령대는 ‘초기 청년기’에 속하는 연령으로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행위라 볼 수 있는 경제적 독립 자체도 쉽지 않다.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자체가 불안정한 초기 청년은 사회 진출 기간이 짧아 충분한 자산을 획득하기도 어려우며,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다른 경제활동 연령층에 비해 건강, 주거,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김태완 외, 2019; 이주미, 김태완, 2022). 실제 초기 청년은 고립감을 항상 느낀다는 비율이 후기 청년에 비해 높고, 최근 5년 동안의 십 만명당 자살률은 6%p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금선, 유민상, 한경훈, 2022). 초기 청년의 이러한 특성과 함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청년대상 연구에 기반하여 청소년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임신 및 출산과 양육, 학업, 생계와 근로, 주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영으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부모의 경우 일반 청년보다 더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서부터 스스로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업, 생계와 근로, 주거 문제, 자녀의 돌봄과 양육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원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경제적, 심라정서적인 지원이나 지지체계조차 부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해 볼 때,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정책대상임을 알 수 있다.

35) 인구동향조사는 신고인이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읍면동 또는 사구)에 제출한 자료와 4종의 신고 이외에 지자체에서 기아발견조사, 실종신고, 혼인취소신고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 자료임(통계청, 2020. 12.). 현재 인구동향조사 원자료는 통계청의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공용 데이터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1) 청소년부모 정책대상 사각지대

19세~34세의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정책대상으로서 2020년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교육, 참여와 권리 등의 영역에서 179개 사업, 16.9조원의 지원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사업과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270개 사업, 22조여원)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1). 사업에 따라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19세~34세의 청년은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대상으로서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5세~34세에 해당하는 개별 청년은 정책 대상이지만,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34세 속하는 청년·청소년부모는 청소년부모 사업이나 정책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청소년부모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청년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만 6천여 가구, 전체 청년부모(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중 4.7%로 나타났다. 청년·청소년 부모가구인 18,334가구(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의 3.3%)가 정책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즉,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의로 인해 1만 8천여 가구가 유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표 VI-1. 청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추정치(2017~2020)

(단위: 가구)

연 도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추정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 추정치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추정치
2020	7,876	26,210	551,827
2019	9,991	31,599	613,899
2018	12,167	37,619	690,588
2017	14,233	43,660	791,973

* 출처: 통계청 (1997~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2) 동일 대상, 지원의 격차

청소년부 또는 모, 청년 부 또는 모는 이른 시기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 돌봄을 수행함과 동시에,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학업, 취업과 같은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정책 대상이다(류정희 외, 2022).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아동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청년 또는 청소년 부모에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2.18.), 지원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연령, 아동의 연령을 구분하여 세분화되어 있다(류정희 외, 2022).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부모의 연령이 청년(만 25세~34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자녀가 만 5세 이하이면 월 10만 원을 추가하여 30만 원이 제공되고 자녀가 만 6세 이상일 경우에는 월 5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로 청소년에 해당하면, 가구 소득 기준은 60% 이하, 지급액도 35만 원으로 기준이 조정·적용되고, 학업·취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45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류정희 외, 2022). 저소득 청년과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청년·청소년 부모(부부)에게는 양육비 지원이 없었다.

표 VI-2.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구분		근거법	부모 연령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아동 연령	추가금액	총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청년 한부모	한부모 가족 지원법	만 25 ~34세	52% 이하	만 5세 이하	10만 원	3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5만 원	25만 원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60% 이하	만 18세 미만	15만 원	35만 원
						10만 원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시	45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 부모	청소년 복지 지원법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사실혼 인정	60% 이하	만 18세 미만	-	20만 원

* 출처: 류정희 외(202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에 근거하여, 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부모가구의 기준 소득이 60% 이하일 때,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추가금액이나 자립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 가구 수가 1명(배우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15만 원~25만 원의 지원 금액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원의 격차는 사실혼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청년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청소년부모가 비혼 동거 상태로 남게 하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배보은, 2022). 이에 더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아동양육비지원사업에서 청소년이 포함된 저소득 청소년·청년 부모가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원체계 부재

2022년 7월 도입된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청소년부모 특화사업은 가족역량강화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전국 9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가족역량강화사

업 또한 청소년부모대상 신규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들이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시간, 횟수, 기간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청소년부모 사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청소년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 청소년부모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청년 또는 일반 정책과 사업들은 <표 VI-3>과 같다. 그러나 대부분이 청소년부모가 신청가능한 사업들로서 청소년부모를 특정하여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지위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주거와 생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내용은 부재하며, 소득과 연관된 근로 지원에 있어서도 영유아 자녀 돌봄 문제를 전혀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청소년부모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부처별, 사업별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공공 또는 민간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주의 기반의 현재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류정희 외, 2022). 또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관련 현금성 지원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출산, 자녀 양육 과정의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및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가 부재하여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 스스로의 성장과 자립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배보은, 2022).

표 VI-3.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구분	정책·사업	주요 내용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만 19세 이하 120만 원(일반 임신부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시 200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수급, 차상위 가구 대상 • 본인부담금 有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2021.4.1. 기준, 30개 보건소 시행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수급, 차상위 가구 등
양육	아동수당	• 8세 미만 월 10만 원
	양육수당(영아수당)	• 10~30만 원 월령에 따른 차등 지급
	아동양육비	• 소득기준, 한부모 35만 원/청소년부모 20만 원 등
	아이돌봄서비스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有
주거	내임대지원,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 주택 지원	• 수급가정 우선 • 자부담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이 (청소년)한부모 중심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법정대리인동의/대리 필요

구분	정책·사업	주요 내용
생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 소득기준(Ⅱ 유형, 특정 대상 중 청소년부모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전국 159개소 운영
가족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청소년부모 대상 신규(2022)사업 • 소득기준, 시간/횟수/기간 제한 有 • 건강가정센터 93개소 제공
역량	법률지원	
강화	학습정서지원(자녀대상)	

* 출처: 이 표는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1)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c). 사업별소개-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2) 첫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b). 사업별소개-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9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c).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a). 사업별소개-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5)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d). 정책-인구아동-아동복지정책-아동수당지급.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6)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a). 정책-보육-보육사업기획-영아수당.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4&PAGE=4&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7)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2).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양육-양육지원-아동양육비.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1.d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8)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2022). 아이돌봄 사업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5&L_MENU_CD=020101&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9) 주거 아름다운재단, 킹메이커 (2022). 청소년부모 지원 사례관리 매뉴얼북. https://www.kingmaker.or.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55&me_code=6010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1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b). 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급여개요-급여상세설명-생계급여.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5&PAGE=5&topTitle=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2).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지원대상.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 12)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 (2022). 정보마당-직업능력개발사업 안내-개인-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O0100T.do>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 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2022). 새일센터소개-사업소개.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 14) 가족역량강화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Ⅱ). 서울: 여성가족부.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부모(부 또는 모가 1998년 이후 출생자인 경우)³⁶⁾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사는 연구 목적에 따라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까지 포괄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정책 소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하였으며(IRB 승인번호 제2022-037호),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웹 설문 방식으로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2) 표준 추출: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모집단 규모가 특정되지 않고 조사 대상자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조건에서 가능한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의추출(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표본을 확보하였다(〈표 VI-4〉 참조).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조사 참여 안내문과 설문 참여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조사 참여링크를 전송하였고, 이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설문 응답용 웹링크를 전달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출된 본 조사의 최종 유효 표본은 101명이며, 조사 대상자 모집 경로별 인원은 〈표 VI-4〉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의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24세 이하임. 그러나 법적 연령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특성상 충분한 표본 확보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조사연도(2022년)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 25세 이하(1998년 이후 출생자)인 자를 조사 대상으로 모집함. 분석 진행시에는 1998년 출생자는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만 24세 이하로 계산하였음을 밝힘.

표 VI-4.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 모집 경로별 응답 인원

(단위: 명)

모집 경로		응답 인원
1. 청소년부모 관련 민간지원단체 소개	청소년부모지원 킴메이커	37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4
2.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복지시설 소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2
	가족센터	1
3. 청소년부모 섭외담당자를 통한 모집		35
4. 오픈카톡방을 통한 모집		16
5. 가응답자 통한 눈덩이표집		6
계		101

2) 조사결과: 정책소의 실태 및 일반청년과의 격차를 중심으로

(1)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일반 청년부모와의 비교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는 총 1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일부 문항은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비교 가능한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총 25개 문항이다.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중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본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VI-5.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비교 가능한 문항

영역	조사 내용	비고
Screening Question	SQ3-2) 자녀 수	
A. 주거	A3-1) 현재 주거 형태	
	A3-2) 현재 거주지의 소유 형태	보기 일부 삭제
	A3-3) 현재 거주지의 주거비용을 마련한 사람	보기 추가
	A4) 주거 마련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영역	조사 내용	비고
B. 건강	B1) 신체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B2) 지난 1년 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B3)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취한 조치	
	B3-1)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B4) 우울 수준	
	B5) 아동·청소년기의 경험	보기 추가
	B7) 건강 관련 정책 중 정부가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사항	
D. 취업	D1) 맞벌이 여부	
	D2)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부	
	D3-1) 고용 형태	
	D3-2-1) 현재 일자리를 통해 받고 있는 월급(세후)	
	D3-3) 근로시간 유형	
	D5) 지난 4주 간 조직 활동 여부	
	D5-1) 지난 4주 내 직장(일자리)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D5-2)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E. 경제 상황	E2) 채무 유무	
	E2-1)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	보기 추가
	E3) 물질적 박탈 경험	
F. 학업	F2)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보기 추가
I. 가족 및 사회적 관계	I5) 사회적지지 체계 유무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① 응답자 특성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응답자는 총 101명이었으며,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전체의 71.3%, 부모 중 한 명만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28.7%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만 24세 이하였으며, 응답자 전체의 64.4%는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였다.

청소년부모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3.2%가 1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6.8%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양육 중인 첫째 자녀의 연령은 전체 응답자의 93.1%가 만 1세에서 3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의 배우자가 첫째 자녀의 친부인지 물었을 때 전체의 3%만이 친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표 VI-6. 응답자(청소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¹⁾		101	(100.0)
가구 유형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72	(71.3)
	부모 중 한 명만 만 24세 이하	29	(28.7)
모 연령 (응답자)	만 24세 이하	100	(99.0)
	만 25세 이상	1	(1.0)
교육 수준 ²⁾	고졸 이하	65	(64.4)
	대학 이상	36	(35.6)
자녀 수	1명	84	(83.2)
	2명 이상	17	(16.8)
부 연령 (배우자)	만 24세 이하	73	(72.3)
	만 25세 이상	28	(27.7)
첫째 자녀 연령	임신중	0	(0.0)
	만 1세 미만	0	(0.0)
	만 1세~3세 미만	94	(93.1)
	만 3세 이상	7	(6.9)
현 배우자가 첫째 자녀의 친부인지 여부	예	98	(97.0)
	아니오	3	(3.0)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조사대상 모집시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사연도(2022년)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 25세 이하(1998년 이후 출생자)인 자를 모집하였음. 이에 따라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1998년 출생자는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만 24세 이하로 계산하였음.

2) 교육 수준 중 대학 이상에는 대학 진학 후 중퇴/휴학인 경우도 포함됨.

다음으로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위하여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가 만 25세 이상이었으며, 응답자 중 69.3%는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는 1명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5.1%로 나타났으며, 2명 이상인 경우는 44.9%였다.

표 VI-7. 응답자(일반 청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54	(100.0)
모 연령	만 24세 이하	4	(2.0)
	만 25세 이상	150	(98.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7	(30.7)
	대학 이상	107	(69.3)
자녀 수	1명	84	(55.1)
	2명 이상	70	(44.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교육 수준 중 대학 이상에는 대학 진학 후 중퇴/휴학인 경우도 포함됨.

② 주거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는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에서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이한 점은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등 가족이나 친인척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전체 응답자 중 19.8%로 나타났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응답자 총 154명 중 14명만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VI-8. 현재 거주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나(또는 배우자)의 집 (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 집	친구 또는 지인 집	생활(복지)시설 (모·부자 관련 시설·쉼터)	기타
청소년부모	101 (100.0)	75 (74.3)	20 (19.8)	0 (0.0)	0 (0.0)	6 (5.9)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에서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가구의 주거 형태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부모 가구는 다세대나 빌라 형태의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 청년부모 가구의 경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응답자의 58.4%)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9. 현재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원룸 (1인)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하숙	기숙사	고시원	단독 주택	기타
청소년부모	75 (100.0)	7 (9.3)	27 (36.0)	29 (38.7)	5 (6.7)	0 (0.0)	0 (0.0)	0 (0.0)	6 (8.0)	1 (1.3)
일반 청년부모	140 (100.0)	1 (1.1)	81 (58.4)	41 (29.5)	1 (1.0)	0 (0.0)	0 (0.0)	0 (0.0)	15 (8.9)	1 (1.1)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교육 수준 중 대학 이상에는 대학 진학 후 중퇴/휴학인 경우도 포함됨.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표 VI-8>에서 '내(또는 배우자)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에 응답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독립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거주지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가 24.0%, 자가인 경우가 12.0% 순이었다. 그러나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자가가 33.5%, 보증금있는 월세가 16.4%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부모의 주거는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VI-10.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주거비용 지불 방식)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청소년부모	75 (100.0)	9 (12.0)	18 (24.0)	43 (57.3)	4 (5.3)		1 (1.3)
일반 청년부모	140 (100.0)	48 (33.5)	65 (47.4)	23 (16.4)	0 (0.0)	2 (1.4)	2 (1.2)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사글세, 연세, 일세 등'의 보기 항목을 제외하고 문항을 구성함.
3) <표 VI-8>에서 '나(또는 배우자)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에 응답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그렇다면 현재 거주지의 주거 비용은 누가 마련했을까? 청소년부모의 경우 전부 본인(또는 배우자) 스스로 마련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5.3%),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또는 배우자)가 일부 도운 경우(14.7%)가 뒤를 이었다. 일반 청년부모 역시 청소년부모처럼 전부 본인(또는 배우자)가 스스로 마련한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본인(또는 배우자)가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왔다고 한 경우(31.6%)가 많았다.

주거 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의 점유 형태를 보면,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58.1%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인 경우가 12.9%로 뒤를 이었다. 일반 청년부모는 전세가 응답자의 46.9%였고 자가 35.5%, 보증금이 있는 월세 18.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세나 자가 형태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월세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청년부모는 청소년부모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VI-11. 현재 거주지의 주거 비용을 마련한 사람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청소년부모	75 (100.0)	34 (45.3)	9 (12.0)	11 (14.7)	8 (10.7)	6 (8.0)	7 (9.3)
일반 청년부모	140 (100.0)	52 (35.5)	43 (31.6)	24 (16.9)	21 (16.0)		0 (0.0)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①전부 본인(또는 배우자) 스스로 마련, ②본인(또는 배우자)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③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또는 배우자)이 일부 도움, ④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⑤청소년부모 지원 기관 등에서 도와줌, ⑥기타
3) <표 VI-8>에서 '나(또는 배우자)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에 응답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표 VI-12. 주거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의 거주지 점유 형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청소년부모	43 (100.0)	4 (9.3)	12 (27.9)	25 (58.1)	2 (4.7)		0 (0.0)
일반 청년부모	95 (100.0)	34 (32.7)	43 (46.9)	17 (18.9)	0 (0.0)	1 (1.4)	0 (0.0)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사글세, 연세, 일세 등'의 보기 항목을 제외하고 문항을 구성함.
3) <표 VI-8>에서 '나(또는 배우자)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에 응답한 사례 중에서 분석한 결과임.

다음은 향후 주거지 마련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청소년부모 중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60.4%)이 주거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주택 환경(14.9%), 아파트, 다세대/빌라 등의 주택 유형(9.9%), 주택 노후도, 방의 개수 등을 의미하는 주택 상태(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년부모 역시 청소년부모와 마찬가지로 주거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38.3%). 그러나 일반 청년부모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향후 주택 가격의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응답자도 존재하는 반면,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 중 미래의 자산 가치로서 향후 주택 가격의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례는 전무했다.

표 VI-13. 향후 주거지 마련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주거 비용	주택 유형	주택 상태	주택 위치	주택 환경	향후 주택 가격 변화	기타
청소년부모	101 (100.0)	61 (60.4)	10 (9.9)	9 (8.9)	6 (5.9)	15 (14.9)	0 (0.0)	0 (0.0)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59 (38.3)	28 (18.7)	13 (8.1)	21 (13.3)	26 (17.0)	7 (4.5)	0 (0.0)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③ 건강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 응답자가 자신의 신체 건강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자신의 신체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그렇다, 매우 그렇다)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약 76%로 확인되었다. 반면,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2.4%만이 자신의 신체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약 20%로 나타났다.

표 VI-14. 신체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청소년부모	101 (100.0)	1 (1.0)	20 (19.8)	27 (26.7)	38 (37.6)	15 (14.9)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0 (0.0)	6 (3.0)	31 (20.6)	102 (67.2)	15 (9.3)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다음은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8.6%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78.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VI-15.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청소년부모	101 (100.0)	22 (21.8)	79 (78.2)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78 (48.6)	76 (51.4)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 모두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9.5%, 82.8%로 그 비율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6.5%에 불과한 반면,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약 47%가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서도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모두 모두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경제적 여유나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약 50%로 나타났고, 일반 청년부모는 약 17%만이 해당되었다.

표 VI-16.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의 조치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기타
청소년부모	101 (100.0)	50 (49.5)	33 (32.7)	15 (14.9)	3 (3.0)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30 (83.5)	18 (12.1)	6 (4.4)	0 (0.0)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표 VI-17.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증상이 가볍 다고 생각해서	기타
청소년부모	51 (100.0)	15 (29.4)	11 (21.6)	0 (0.0)	21 (41.2)	4 (7.8)
일반 청년부모	24 (100.0)	2 (7.2)	3 (10.3)	0 (0.0)	19 (82.6)	0 (0.0)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표 VI-16)에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다음은 응답자의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울 정도는 한국어판 우울척도(CESD-11)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변환 점수가 16점 이상일 경우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변환값 평균은 7.8점이었으나, 청소년부모는 평균 18.6점으로 나타났다. 우울 위험군(변환 점수 1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1.4%로 확인되었으며, 일반 청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13.7%로 나타났다.

표 VI-18. 응답자의 우울 정도

(단위: 명, 점, %)

구 분	사례수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우울 정도	
					우울 위험군 아님	우울 위험군
청소년부모	101	20.0	21.3	14.0	39	62
					(38.6)	(61.4)
일반 청년부모	154	5.5	7.8	8.6	132	22
					(86.3)	(13.7)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우울 정도는 CESD-11을 사용하였음. 표에서 제시한 결과는 CESD-11의 계산 방식에 따라 전체 문항(11개)의 합계에 20/11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16점 이상은 우울 위험군에 속함.

〈표 VI-19〉는 응답자의 아동·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구성된 조사 항목은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사건 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80~90% 가량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부모는 일반 청소년부모에 비해서는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부모 중 전체 응답자의 61.4%는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이 있었다. 또한 양육자의 체벌이나 정서적인 공격을 당한 경험도 32.7%로 확인되는데, 일반 청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5.0%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일반 청년부모는 5.4%만이 그런 경험

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나,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36.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이나,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도 청소년부모가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아동·청소년기의 가출 경험과 가정외 보호 경험은 연구진이 추가한 문항이다. 청소년부모 응답자의 46.5%는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동양육시설이나 쉼터, 위탁 가정 등 가정외 보호체계에서 머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0.8%로 나타났다.

표 VI-19. 응답자의 아동·청소년기의 경험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없다	있다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39 (38.6)	62 (61.4)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24 (82.9)	30 (17.1)
양육자의 체벌 및 정서적 공격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68 (67.3)	33 (32.7)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44 (95.0)	10 (5.0)
정서적/정신적 어려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64 (63.4)	37 (36.6)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42 (94.6)	12 (5.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53 (52.5)	48 (47.5)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26 (84.4)	28 (15.6)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70 (69.3)	31 (30.7)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29 (84.5)	25 (15.5)

구 분		사례수	없다	있다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53 (52.5)	48 (47.5)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45 (95.3)	9 (4.7)
가출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54 (53.5)	47 (46.5)
가정의 보호 경험 (양육시설, 쉼터, 위탁가정 등)	청소년부모	101 (100.0)	80 (79.2)	21 (20.8)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가출 경험과 가정 외 보호 경험 문항을 추가하였음.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에게 건강 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출산지원 정책이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청소년부모 63.4%, 일반 청년부모 47.8%). 특히 청소년부모는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서비스 정책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14.9%로 나타났다.

표 VI-20.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청소년 부모	101	9	15	1	9	64	3
	(100.0)	(8.9)	(14.9)	(1.0)	(8.9)	(63.4)	(3.0)
일반 청년부모	154	24	20	9	28	72	1
	(100.0)	(15.6)	(13.5)	(4.1)	(18.5)	(47.8)	(0.5)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①건강검진 지원 정책, ②심리지원 서비스 정책, ③생활 체육시설 확대 정책, ④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⑤출산 지원 정책, ⑥기타

④ 경제 상황

응답자 가구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맞벌이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특히 청소년 부모의 경우 연령 특성을 감안할 때, 부모 모두 돈을 벌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비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 모두 외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부모의 경우 응답자와 배우자 모두 돈을 벌고 있지 않는 사례는 전체 응답자의 12.9%로 확인되었다.

표 VI-21. 맞벌이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맞벌이	외벌이	비해당
청소년부모	101 (100.0)	9 (8.9)	79 (78.2)	13 (12.9)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54 (34.9)	100 (65.1)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연령 특성을 감안하여 보기 항목에 비해당(응답자와 배우자 모두 돈을 벌고 있지 않음)을 추가하였음.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취업상태)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표 VI-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 해당 가구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맞벌이라고 응답한 경우(34.9%)와 일을 했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인 경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맞벌이는 전체 응답자 중 8.9%이지만, 실제 취업 상태(일을 하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9.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청년부모 가구에 비해 청소년부모 가구는 어머니가 외벌이로 홀로 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22.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청소년부모	101 (100.0)	23 (22.8)	7 (6.9)	71 (70.3)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55 (35.1)	5 (3.1)	94 (61.8)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표 VI-22〉에서 지난 주에 일을 했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인 응답자의 고용 형태를 확인한 결과는 〈표 VI-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53.3%)인 반면, 일반 청년부모는 응답자의 69.2%가 정규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23. 현재 일자리의 고용 형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청소년부모	30 (100.0)	13 (43.3)	16 (53.3)	0 (0.0)	1 (3.3)	0 (0.0)
일반 청년부모	60 (100.0)	41 (69.2)	9 (13.8)	0 (0.0)	6 (8.2)	4 (8.9)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표 VI-22〉에서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근로시간 유형(표 VI-24)에서도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전일제 근로가 응답자의 80.8%를 차지하는 반면, 청소년부모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46.7%에 불과했다.

표 VI-24. 근로시간 유형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청소년부모	30	14	16
	(100.0)	(46.7)	(53.3)
일반 청년부모	60	50	10
	(100.0)	(80.8)	(19.2)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표 VI-22>에서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다음으로 응답자의 근로소득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부모는 지난 달 기준 월급을 포함한 기타 수입까지 포함해도 평균 161.3만 원으로, 일반 청년부모의 월평균 소득(198.6만 원)에 비해서는 적었다.

표 VI-25. 근로소득

(단위: 만 원)					
구 분	사례수	근로 소득(세후 월급)		지난 달 기준 총 소득(월급+기타수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부모	30	122.4	89.3	161.3	96.4
일반 청년부모	60	198.6	104.6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 이외에 지난 달 기준으로 월급과 기타 수입을 모두 포함한 총 소득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3) <표 VI-22>에서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표 VI-26〉은 지난 4주 내 구직 활동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 모두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직장이 구해졌어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는 〈표 VI-27〉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을 이유로 든 경우가 많았다.

표 VI-26. 지난 4주 내 구직 활동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직장을 구해보았다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직장이 구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이 구해졌어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청소년부모	71 (100.0)	9 (12.7)	9 (12.7)	53 (74.6)
일반 청년부모	94 (100.0)	4 (4.2)	4 (4.1)	86 (91.7)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표 VI-22〉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표 VI-27.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청소년부모	9 (100.0)	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반 청년부모	4 (100.0)	3 (72.6)	1 (27.4)	0 (0.0)	0 (0.0)	0 (0.0)	0 (0.0)	0 (0.0)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①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②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③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④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⑤진학 준비 중이어서, ⑥취업 준비 중이어서, ⑦기타
3) 〈표 VI-22〉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표 VI-28〉와 〈표 VI-29〉는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있는지와 채무 발생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 모두 채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채무 발생 이유 역시 주거비 마련(전·월세 자금 대출 등)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 청소년부모는 생활비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38.1%로 나타나, 일반 청년부모가 7.9%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VI-28. 채무 유무 및 평균 채무액

(단위: 명, %, 만 원)

구 분	사례수	채무 있음	채무 없음	평균 채무액 (표준편차)
청소년부모	101 (100.0)	42 (41.6)	59 (58.4)	2,756.8 (4,169.2)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47 (30.0)	107 (70.0)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채무가 있는 경우 평균 채무액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표 VI-29. 채무 발생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학자금 마련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	창업 자금 마련	임신 및 출산 비용 마련	기타
청소년부모	42 (100.0)	2 (4.8)	17 (40.5)	16 (38.1)	0 (0.0)	2 (4.8)	5 (11.9)
일반 청년부모	47 (100.0)	7 (11.0)	35 (79.7)	4 (7.9)	1 (1.4)		0 (0.0)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채무 발생 이유의 보기 항목에 ‘임신 및 출산 비용 마련’을 추가하였음.
3) 〈표 VI-28〉에서 ‘채무 있음’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다음은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물질적 박탈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물질적 박탈은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등의 총 9개의 문항으로 측정한다. 응답자가 물질적 박탈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 문항 중 3개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부터이고, 4개 이상일 경우 물질적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청년부모 중 물질적 박탈 상태라고 판단되는 사례는 응답자의 약 15%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약 40%가 물질적 박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반 청년부모는 심각한 물질적 박탈 상태인 경우가 응답자의 5.1% 정도인 반면, 청소년부모는 물질적 박탈이 심각한 상태가 응답자의 29.7%로 나타나 청소년부모가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물질적 박탈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30. 물질적 박탈 수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2개	3개	4개 이상
청소년부모	101 (100.0)	59 (58.4)	12 (11.9)	30 (29.7)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29 (83.2)	17 (11.7)	8 (5.1)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n=154)를 의미함.
2) 물질적 박탈은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음. 응답자가 물질적 박탈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3개부터이며, 4개 이상일 경우 물질적 박탈이 심각함을 의미함.

⑤ 학업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교육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VI-31>과 같다. 표에서 대학 이상은 대학 진학 후 중퇴/휴학 중인 경우 즉 대학을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분석 결과,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64.4%가 고졸 이하였으며, 일반 청년부모는 응답자의 25.0%만이 고졸 이하였다.

표 VI-31. 교육 수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청소년부모	101 (100.0)	65 (64.4)	36 (35.6)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37 (25.0)	117 (75.0)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대학 이상에는 대학 진학 후 중퇴/휴학인 경우도 포함됨.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 중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부모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6%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임신출산 또는 양육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0.3%,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가 1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 청년부모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43.7%)를 이유로 든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다(19.9%),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2.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청소년 부모	64 (100.0)	4 (6.3)	26 (40.6)	3 (4.7)	1 (1.6)	10 (15.6)	2 (3.1)	13 (20.3)	5 (7.8)
일반 청년부모	37 (100.0)	1 (0.5)	8 (19.9)	5 (12.5)	4 (9.7)	15 (43.7)	4 (13.7)		0 (0.0)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①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④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자녀의 임신출산 또는 양육 때문에, ⑧기타
3) 청소년부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례 1case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⑥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표 VI-33〉은 각 상황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응답자의 사회적 지지체계 유무를 확인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응답자의 도구적 지지 체계를 확인했을 때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청소년부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거나 거동하기 어려울 때 응답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각 문항에 대해 일반 청년부모의 약 90%는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청소년부모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55%~65% 수준에 그쳤다. 또한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일반 청년부모는 응답자의 64.4%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부모 응답자의 63.4%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지지체계 중 정서적 지지체계도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지지체계 측정 문항 중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63.4%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년부모는 응답자의 93.8%가 그렇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표 VI-3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정보적 지지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 볼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30 (29.7)	71 (70.3)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33 (21.3)	121 (78.7)
	나에게 필요한 주거/ 금융/법률 관련 정보 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47 (46.5)	54 (53.5)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57 (37.3)	97 (62.7)
도구적 지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46 (45.5)	55 (54.5)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13 (8.3)	141 (91.7)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35 (34.7)	66 (65.3)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9 (5.3)	145 (94.7)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64 (63.4)	37 (36.6)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52 (35.6)	102 (64.4)
정서적 지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37 (36.6)	64 (63.4)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11 (6.2)	143 (93.8)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 되었을 때, 나의 안부 (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14 (13.9)	87 (86.1)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6 (2.9)	148 (97.1)

*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청소년부모의 정책 인지, 이용 경험 및 욕구
이 절에서는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부모의 정책 인지 및 이용 경험을 비롯하여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구성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① 주거 지원

주거 관련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 및 인지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VI-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의 상당수가 주거 급여, 정부지원 전월세 자금 보증, 공공 분양 주택, 공공 임대 주택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공공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은 응답자의 약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거 관련 정책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주거급여나 정부 지원 전월세 자금 보증에 비해 공공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표 VI-34.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 및 인지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필요 여부		사례수	인지 여부	
		필요없음	필요함		모름	알고 있음
주거 급여	101 (100.0)	21 (20.8)	80 (79.2)	101 (100.0)	43 (42.6)	58 (57.4)
정부 지원 전월세 자금 보증	101 (100.0)	17 (16.8)	84 (83.2)	101 (100.0)	64 (63.4)	37 (36.6)
공공 분양 주택	101 (100.0)	9 (8.9)	92 (91.1)	101 (100.0)	25 (24.8)	76 (75.2)
공공 임대 주택	101 (100.0)	10 (9.9)	91 (90.1)	101 (100.0)	32 (31.7)	69 (68.3)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VI-35>는 연구진이 제시한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정책 이용 경험과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부모는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각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련 정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VI-35.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이용 경험		사례수	도움 정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주거 급여	58 (100.0)	33 (56.9)	25 (43.1)	25 (100.0)	0 (0.0)	1 (4.0)	3 (12.0)	4 (16.0)	17 (68.0)
정부 지원 전월세 자금 보증	37 (100.0)	33 (89.2)	4 (10.8)	4 (100.0)	0 (0.0)	1 (25.0)	0 (0.0)	0 (0.0)	3 (75.0)
공공 분양 주택	76 (100.0)	55 (72.4)	21 (27.6)	21 (100.0)	0 (0.0)	0 (0.0)	4 (19.0)	1 (4.8)	16 (76.2)
공공 임대 주택	69 (100.0)	48 (69.6)	21 (30.4)	21 (100.0)	0 (0.0)	1 (4.8)	3 (14.3)	3 (14.3)	14 (66.7)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해당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임.

② 임신 및 출산 지원

임산·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제외하고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정책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약 80~90% 수준으로 꽤 높은 편이었다(표 VI-36). 또한 <표 VI-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이나 소득 기준 등 별도의 대상자 선별 기준이 없는 보편적 임신·출산 지원 정책인 엽산 철분제 지원과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의 경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I-36. 임신·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 및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필요 여부		사례수	인지 여부	
		필요없음	필요함		모름	알고 있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1 (100.0)	8 (7.9)	93 (92.1)	101 (100.0)	11 (10.9)	90 (89.1)
엽산철분제 지원	101 (100.0)	10 (9.9)	91 (90.1)	101 (100.0)	6 (5.9)	95 (94.1)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101 (100.0)	2 (2.0)	99 (98.0)	101 (100.0)	11 (10.9)	90 (89.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01 (100.0)	7 (6.9)	94 (93.1)	101 (100.0)	15 (14.9)	86 (85.1)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101 (100.0)	23 (22.8)	78 (77.2)	101 (100.0)	64 (63.4)	37 (36.6)
기저귀 지원 사업	101 (100.0)	4 (4.0)	97 (96.0)	101 (100.0)	20 (19.8)	81 (80.2)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101 (100.0)	7 (6.9)	94 (93.1)	101 (100.0)	10 (9.9)	91 (90.1)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VI-37.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이용 경험		사례수	도움 정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90 (100.0)	22 (24.4)	68 (75.6)	68 (100.0)	0 (0.0)	0 (0.0)	2 (2.9)	6 (8.8)	60 (88.2)
엽산철분제 지원	95 (100.0)	17 (17.9)	78 (82.1)	78 (100.0)	0 (0.0)	2 (2.6)	13 (16.7)	17 (21.8)	46 (59.0)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90 (100.0)	18 (20.0)	72 (80.0)	72 (100.0)	0 (0.0)	0 (0.0)	1 (1.4)	11 (15.3)	60 (83.3)

구 분	사례수	이용 경험		사례수	도움 정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86 (100.0)	56 (65.1)	30 (34.9)	30 (100.0)	2 (6.7)	0 (0.0)	0 (0.0)	3 (10.0)	25 (83.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37 (100.0)	32 (86.5)	5 (13.5)	5 (10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기저귀 지원	81 (100.0)	54 (66.7)	27 (33.3)	27 (100.0)	0 (0.0)	0 (0.0)	0 (0.0)	2 (7.4)	25 (92.6)
첫만남 이용권 지원	91 (100.0)	52 (57.1)	39 (42.9)	39 (100.0)	0 (0.0)	0 (0.0)	0 (0.0)	1 (2.6)	38 (97.4)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소년부모에게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55.4%). 그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임신·출산 준비에 드는 비용과 물품 지원(13.9%)이었으며, 임신·출산 기간동안 지낼 수 있는 주거 지원(11.9%), 임신·출산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원(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8.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임산·출산 관련 긴급상담전화 (위기임산·출산 상황에 필요한 지원 및 상담)	2	(2.0)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56	(55.4)
임산·출산 준비에 드는 비용 및 물품 지원	14	(13.9)
임산·출산 기간 동안 생활비 (출산관련 비용 및 진료비를 제외한 비용) 지원	11	(10.9)
임산·출산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주거 지원	12	(11.9)

구 분	사례수	비율
출산 후 필요한 산후조리 서비스(도우미 지원 등)	5	(5.0)
임산출산 과정에서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0	(0.0)
아이를 낳자마자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먹일 때, 씻길 때, 울 때, 응급 시 등)	1	(1.0)
기타	0	(0.0)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③ 학업 및 자립을 위한 교육

다음은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자립과 관련된 정책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한 응답자의 학업 중단 이유(표 VI-39)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재학 중인 응답자에게 학업을 지속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표 VI-40)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 중 학업을 중단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01명 중 32명이었으며, 이들 중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 기타(43.8%)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이유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21.9%)는 것이었다.

표 VI-39. 학업 중단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32	(100.0)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7	(21.9)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4	(12.5)
주변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서	1	(3.1)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이나 가족의 권유 때문에	0	(0.0)
생활비(양육비)를 벌기 위해	4	(12.5)
학교의 징계와 강요 때문에	2	(6.3)
기타	14	(43.8)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 주: 1) 현재 중퇴/휴학 중인 응답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2) 기타 응답에는 과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부모님과 다투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등이 있었음.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부모는 8명이었는데, 이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학업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표 VI-40. 재학 중인 응답자가 생각하는 학업 지속에 가장 큰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8	(100.0)
학업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3	(37.5)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함	1	(12.5)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	1	(12.5)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움	0	(0.0)
스스로 느끼는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0	(0.0)
청소년부모의 학업 지속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차별적인 시선	1	(12.5)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0	(0.0)
기타	2	(25.0)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VI-41〉은 청소년부모에게 자립을 위해서 현재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50%는 자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이들에게 지금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유형의 교육을 받고 싶은지 물었을 때에는 응답자의 38.6%가 원격교육기관을 택했는데(표 VI-42 참고), 〈표 VI-39〉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했다는 응답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녀 돌봄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원격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41. 자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학력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청소년부모	44 (100.0)	1 (2.3)	10 (22.7)	22 (50.0)	11 (25.0)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자립을 위해 지금보다 더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고 물었을 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임.

표 VI-42. 지금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받고 싶은 교육 유형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44	(100.0)
정규 학교교육(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14	(31.8)
대안학교 교육 후 검정고시	3	(6.8)
독학이나 홈스쿨 후 검정고시	7	(15.9)
원격교육기관 진학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입학/편입,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17	(38.6)
기타	3	(6.8)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자립을 위해 지금보다 더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고 물었을 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임.

④ 자녀 양육

청소년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47%는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자녀의 양육비 또는 교육비 부담을 택했다. 이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17%, 아이나 생활태도를 지도하는 것이나 훈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은 9.0%로 나타났다.

표 VI-43. 자녀 양육 시 힘든 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아이 양육비나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47	(47.0)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12	(12.0)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17	(17.0)
아이 생활태도 지도나 훈육이 어렵다	9	(9.0)
어린 부모의 자녀라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별·따돌림 받거나 적응을 못해 어렵다	1	(1.0)
아이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	0	(0.0)
기타	2	(2.0)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12	(12.0)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청소년부모에게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필요 여부를 물었을 때, 공동육아나눔지원터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는 드림스타트를 제외한 모든 정책의 필요도는 90%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별 필요 여부에 이어 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 등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드림스타트 등과 같은 정책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I-44.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필요 및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필요 여부		사례수	인지 여부	
		필요없음	필요함		모름	알고 있음
아동수당	101 (100.0)	1 (1.0)	100 (99.0)	101 (100.0)	10 (9.9)	91 (90.1)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101 (100.0)	20 (19.8)	81 (80.2)	101 (100.0)	41 (40.6)	60 (59.4)
가정양육수당	101 (100.0)	3 (3.0)	98 (97.0)	101 (100.0)	29 (28.7)	72 (71.3)
영아수당	101 (100.0)	3 (3.0)	98 (97.0)	101 (100.0)	19 (18.8)	82 (81.2)
보육료 지원	101 (100.0)	4 (4.0)	97 (96.0)	101 (100.0)	29 (28.7)	72 (71.3)
유아학비 지원	101 (100.0)	8 (7.9)	93 (92.1)	101 (100.0)	52 (51.5)	49 (48.5)
아이돌봄서비스	101 (100.0)	9 (8.9)	92 (91.1)	101 (100.0)	46 (45.5)	55 (54.5)
공동육아나눔터	101 (100.0)	12 (11.9)	89 (88.1)	101 (100.0)	71 (70.3)	30 (29.7)
드림스타트	101 (100.0)	11 (10.9)	90 (89.1)	101 (100.0)	75 (74.3)	26 (25.7)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VI-45〉는 〈표 VI-44〉에서 개별 정책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정책 이용 경험과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정책 인지 여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용 경험에서도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 등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드림스타트 등과 같은 정책의 이용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VI-45.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이용 경험		사례수	도움 정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아동수당	91 (100.0)	17 (18.7)	74 (81.3)	74 (100.0)	0 (0.0)	3 (4.1)	8 (10.8)	7 (9.5)	56 (75.7)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60 (100.0)	45 (75.0)	15 (25.0)	15 (100.0)	0 (0.0)	0 (0.0)	2 (13.3)	2 (13.3)	11 (73.3)
가정양육수당	72 (100.0)	23 (31.9)	49 (68.1)	49 (100.0)	1 (2.0)	1 (2.0)	6 (12.2)	7 (14.3)	34 (69.4)
영아수당	82 (100.0)	38 (46.3)	44 (53.7)	44 (100.0)	0 (0.0)	0 (0.0)	5 (11.4)	3 (6.8)	36 (81.8)
보육료 지원	72 (100.0)	39 (54.2)	33 (45.8)	33 (100.0)	0 (0.0)	0 (0.0)	1 (3.0)	4 (12.1)	28 (84.8)
유아학비 지원	49 (100.0)	45 (91.8)	4 (8.2)	4 (10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아이돌봄서비스	55 (100.0)	52 (94.5)	3 (5.5)	3 (100.0)	0 (0.0)	0 (0.0)	0 (0.0)	1 (33.3)	2 (66.7)
공동육아나눔터	30 (100.0)	28 (93.3)	2 (6.7)	2 (100.0)	0 (0.0)	0 (0.0)	0 (0.0)	1 (50.0)	1 (50.0)
드림스타트	26 (100.0)	22 (84.6)	4 (15.4)	4 (100.0)	0 (0.0)	0 (0.0)	0 (0.0)	2 (50.0)	2 (50.0)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 해당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임.

⑤ 청소년부모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청소년부모에게 첫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과 더불어 응답자 개인이 자립을 하는 데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을 확인한 결과는 <표 VI-46>, <표 VI-47>, <표 VI-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가 첫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기관은 도움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부모 카페나 지역 맘카페 등의 인터넷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 다음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기관은 구청 및 주민센터, 모·부자 관련 시설 순이었다.

표 VI-46. 첫 자녀 임신출산 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구청/주민센터	15	(14.9)
지역복지시설	0	(0.0)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	(0.0)
모·부자 관련 시설 (미혼모자시설, 청소년부모지원기관 등 민간 지원 기관)	15	(14.9)
건강가정지원센터	1	(1.0)
드림스타트	0	(0.0)
보건소	5	(5.0)
학교	0	(0.0)
인터넷(청소년부모 카페, 맘카페 등)	29	(28.7)
기타	2	(2.0)
도움 받는 기관이 없다	34	(33.7)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VI-47. 첫 자녀 양육 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구청/주민센터	13	(12.9)
지역복지시설	1	(1.0)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	(0.0)
모·부자 관련 시설 (미혼모자시설, 청소년부모지원기관 등 민간 지원 기관)	12	(11.9)
건강가정지원센터	2	(2.0)

구 분	사례수	비율
드림스타트	0	(0.0)
보건소	5	(5.0)
학교	1	(1.0)
인터넷(청소년부모 카페, 맘카페 등)	26	(25.7)
기타	6	(5.9)
도움 받는 기관이 없다	35	(34.7)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하는 데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을 물었을 때에는 도움을 받는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0.4%를 차지했다. 이를 제외하면 인터넷과 모부자 관련 시설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0.9%로 나타났으며, 구청 및 주민센터는 9.9%로 나타났다.

표 VI-48. 자립 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구청/주민센터	10	(9.9)
지역복지시설	2	(2.0)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2	(2.0)
모부자 관련 시설 (미혼모자시설, 청소년부모지원기관 등 민간 지원 기관)	11	(10.9)
건강가정지원센터	0	(0.0)
드림스타트	1	(1.0)
보건소	1	(1.0)
학교	0	(0.0)
인터넷(청소년부모 카페, 맘카페 등)	11	(10.9)
기타	2	(2.0)
도움 받는 기관이 없다	61	(60.4)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⑥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청소년부모에게 청소년부모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질문한 결과,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전체 응답자의 31.7%). 또한 지원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26.7%,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은 19.8%,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1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49.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	19	(18.8)
지원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	27	(26.7)
지원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20	(19.8)
국가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	32	(31.7)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을 느낀다	2	(2.0)
기타	1	(1.0)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자립수당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각각 전체 응답자의 2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주택 또는 주거비 지원 등)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0.8%로 나타났다.

표 VI-50. 청소년부모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학력을 갓출 수 있도록 지원	5	(5.0)
다양한 직업 훈련 교육과정(프로그램) 제공	5	(5.0)
근무 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확대	23	(22.8)
교육, 훈련, 일자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2	(2.0)
학업이나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및 서비스	19	(18.8)
학업이나 취업과정, 일하는 곳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환경 조성	3	(3.0)
자립수당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의 확대	23	(22.8)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주택 또는 주거비 지원 등)	21	(20.8)
기타	0	(0.0)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청소년부모의 정책지원 과제

1) 청소년부모 정책지원 방향과 추진과제

(1) 청소년부모 발굴·지원체계 마련

청소년부모가 되는 과정에 가정 어려웠던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과정의 필요 지원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준비 비용 및 물품 지원, 임신·출산 기간동안 생활비를 약 80%가 1순위로 응답했다. 그러나 임신·출산과 이룬 결혼을 가족들이 반대함으로써 가족과의 불화 및 형편상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임신 27주 때 조산기가 있어 입원을 했는데 1번 맞는 데 50만 원짜리 약을 썼어야 됐어요. 애 낳기 전까지 입원을 계속했다 보니까 병원비가 400,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성년자라서(혼인신고 못함) 남편 밑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는데 중위 80% 이하 가구가 아니라서 고위험 산모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저희 힘으로 살겠다고 한 상태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게 제일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 저는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어찌지 하다가 방황하다가 만삭 때쯤에 갑자기 한 주 3주전부터 중독증 생겨서..... 애가 위험하다고 대학병원 가라 해가지고 대학병원 갔는데 응급 제왕하고 그다음 미혼모센터 들어가가지고 해결 다 하고 왔어요.
- 부모님들 반대가 엄청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설득하는 데도 좀 많이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집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사이 얘기를 지을 수 있는 그 기간 때 너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주 많이 싸우기도 하고.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고.

또한, 청소년부모의 30% 이상이 임신·출산 당시 도움을 받은 기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약 29%가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부모 지원할 수 있는 공식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부모는 이러한 어려움을 일부 민간기관을 통해, 혹은 결국 가족들의 지지와 경제적 도움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그 돈을 빌려주셨고.....제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 작년 6월까지의 일을 했었는데 제가 좀 임신 빨리 알아가지고, 입덧이 좀 빨리 찾아왔어요. 도저히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이제 주변 토박이라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올 테니까 시선이 조금 그럴잖아요. 남편은 군대 안에 있고 나는 밖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럼 어쩔 수 없겠다 하고 미혼모지원센터를 알아봤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이제 인연이 되어 계속 쪽 받고 있어요.

이러한 지원체계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주거지원, 심리지원, 자녀 돌봄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임신·출산 과정의 사회적 시선과 편견은 관계 단절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어려움의 요인으로 작용했고, 출산 후 우울증과 함께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교육,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영국의 공중보건국은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과 함께 조기 임신과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임신·출산, 산모·아동, 양육·자립, 통합적 서비스 제공

- 구체적 지원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족간호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가 방문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부모와 자녀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출처: 1) Public Health England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8). A Framework for Supporting Teenage Mothers and Young Fathers. <https://www.local.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identifying-and-supporting-931.pdf>에서 2022년 8월 20일 인출.
2) 배보은 (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청소년부모지원 캠페이너.

그림 VI-2. 청소년부모를 위한 통합 지원 경로

정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과 함께 전국 93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관계부처 합동, 2021.11.),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 상담, 부모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인력·예산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은 채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상황으로 청소년부모 발굴과 지원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부모를 임신·출산 기간 중 조기 발굴, 지원하여 청소년부모와 아동의 건강, 경제 등 위기 예방이 필요한데 민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서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영국과 유사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4월 기준 전국 30개 지역 보건소로 확대되었다. 본 사업을 활용하여 시군구의 취약 아동·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상담 기관에 매칭해주고 아니면 (양육 관련) 멘토 선생님이 오시고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영국에서는 주로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신청주의에 기반, 일반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부모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 국민행복카드 혹은 보건소 산모 등록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산모가 24세 이하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할 경우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즉각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를 특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발굴, 집중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사업의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하고, 자녀가 2세 이상이 되면 필요시 지역의 드림스타트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통해 아동과 부모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 체계 구축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부모 특성 반영, 지원제도 개선

① 주거, 경제지원 제도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주거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원가족의 지원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약 20% 정도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가구 소득으로 포함되어 LH와 같은 정부지원주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부지원주택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나타났다.

- 저희가 뭐 집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저는 친가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거든요.....
- 재산 확인한다 이렇게 가족 등본 같은 거 떼가면 아, 시부모님 앞으로 집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았어요.
- 신혼부부 1전형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부담금 5%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 둘 다 대출도 안 나와요. 지금 빚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500만 원이 없어서) 못 했어요. 기간 놓쳐서.

청소년부모는 특수 정책대상으로서 별도의 주거지원을 원했다. 최소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분리된 세대로 인정하여 자산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 독립된 가구로서의 자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목돈의 보증금 납부에 대한 대안, 소득 기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 (주거지원이) 따로 있었으면, 뭐 신혼부부에 통합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부모라고 명칭을 할 거면, 주거지원 정책을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소득 분위를 정확히 따져서 해주든가. 돈도 돈이지만 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주거가 제일 좀 크게 잡히는 것 같아요.

② 교육, 훈련, 취업지원 제도

청소년부모는 일반청년에 비해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력 수준도 고졸 이하 비율이 대학 이상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자립을 위해서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규학교와 원격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이유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자립을 위해 학업이나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관련하여 근무 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부모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 돌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린이집 다닐 때는 종일반 보내면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4교시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애기가 고학년 되면 학원으로 돌리면 된다 치면 그때는 이미 내 경력 단절이 10년이예요.

- 청소년부모가 애기를 키울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않아요, 나중에 혼자 뉘를 저처럼 뉘, 뉘 차린, 자영업을 한다든가 뉘 이러면 그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모가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아동돌봄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과 인력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보육, 돌봄 지원제도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자립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 등을 지속 또는 시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 돌봄 지원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맞벌이 가구,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3명이 상의 다자녀 가구,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며 소득(수급·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기준이 된다. 즉, 청소년부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저는 새벽 6시 반까지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어서, 어. 그런데 그것도 소득 분위더라고요. 아침에 아이 등원시켜주는 것도 소득 분위, 모두 다 소득 분위.
- 자격증 따고 애기 어린이집 보내면 이제 제대로 전문가한테 배우고 바로 삼 처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중단된 교육과 취업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연기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이마저도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필요한 시기에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교육과 취업훈련 등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년으로서 스스로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루어야 청소년부모가구가 빈곤·취약가구로 이행하는 것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부모가구를 어린이집 우선 대상자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 정의 및 지원

청소년부모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며 이미 ‘자립’을 이루어가고 있는 초기 청년이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특성 또한 대부분 일반 청년부모, 청소년·청년 부모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득, 직업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 자녀와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일반 가구의 산모들처럼 출산 후 심리정서적 불안과 우울, 자녀 돌봄과 양육에 대한 걱정 등을 나타냈으며, 스스로의 직업, 교육 등에 대한 욕구보다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필요로 했다. 즉,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청소년으로서의 특성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의 특징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관련 지원에 대한 욕구를 더욱 나타냈다. 청소년부모 스스로도 그들을 ‘청소년’부모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청소년’부모로 지칭하여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 어쨌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한 아이와 가정 꾸리고 있는데..... 청소년은 어린이랑 어른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 저도 청소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서..... 20살 넘어서 애기 엄마가 돼서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얼마 전에 지원금 받는 거 연락이 와서 그때 제가 청소년부모에 해당되는 것을 알았어요.
- 청소년부모라는 단어 자체는 어감이 조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왠지 그래서는(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는 것)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다.
- 청소년부모는 뭔가 아무 준비도 안 된 학생이 애 낳은 것 같은 말 같아서.....

실질적으로 2020년 기준, 청소년부모 2,298가구 중에서 부모 모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 부모가구(38 가구)는 2% 미만,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인 경우(212 가구)에도 전체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또는 모가 24 이하인 가구 중에서(10,526 가구)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인 가구(212 가구)는 2%에 불과했다(〈표 VI-51〉 참조). 즉, 초기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으로 명명함으로써 부정적 인식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이다.

표 VI-51. 청소년부모 현황(2020년 출생자 기준)

(단위: 가구)

부모 모두 19세 미만인 가구	부 또는 모 19세 미만인 가구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부 또는 모 24세 이하인 가구
38	174	2,298	10,526

* 출처: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허태정 (2020).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출처: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 청년정책대상에서 포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아닌 청년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청년연령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한부모, 청년한부모, 청년·청소년부모, 청년부모 가구 모두에게 사각지대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가운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또는 모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2) 취약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 우선 지원과 정보 접근성 제고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년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서비스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1인 가구 중심으로 청소년부모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주거지원으로 보증금, 전세 자금 등이 없어 부모 가구 편입하여 살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청소년부모가 정부지원 주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 내 청소년부모를 우선 특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득 기준 완화 및 부모가구와 자산 조사 분리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 밖에 고용·취업 컨설팅, 청년교육비 지원, 저금리 대출 서비스 등 청소년부모를 특별 지원 대상으로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표 VI-52. 청년정책기본계획(일부)

구 분	주요 내용
고용복지서비스망 구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형고용센터·출장소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컨설팅 강화	• 경력단절 예방지원 확대, 진로설계 진화
청년내일체움공제	• 통합, 내실 제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	-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공급 확대	• 청년특화주택 공급,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선정기준 확대, 기준임대로 현실화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 저소득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소득 기준 완화,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주택코디네이터 등 종합지원
국가장학금	• 기초·차상위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후학습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 저소득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 수급자, 차상위 대상
청년햇살론	• 미취업, 저신용 청년 저금리상품
채무조정특례	• 특례지원, 상환유예기간 확대
청년정신건강특화사업(바우처)	• 우울증검사, 정신 건강바우처(소득기준 없음, 6개월)
모든청년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	• 20·30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까지 확대('19~)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24세 미만 또는 대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근로인센티브 제공
문화누리카드	• 기초·차상위대상 연간 10만 원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lId=1090> 에서 2022년 8월 12일 인출.

한편, 신청주의 기반의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 공식적 지원체계가 없는 많은 청소년부모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 온라인 자조모임이나 민간 단체를 통해 일부 청소년부모들만이 제한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있는 어린 엄마들이 모인 카톡방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대략 한 30명 정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서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이번에 어떤 지원이 생겼더라는 정보를 얻어가고.....
- 민간 지원 단체도 있고 국가 지원 단체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미혼모지원센터에서도 정보를 많이 얻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제가 애란원의 자문단으로 활동을 해서 거기서도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고.....거기에서 애기 양육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 같은 거 있으면 정보 공유를 많이 해요.

청소년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과 교육, 청소년부모 당사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보건소,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협업이 용이하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하고, 일반 청년대상 지원 정보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청년대상 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청년정책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큰데, 지역 내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주체가 협의하여 연계하고, 거점 기관으로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정세정 외, 2020).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는 니트, 은둔형외톨이, 비행·범죄, 빈곤, 보육 등의 다양한 위기에 있는 모든 청년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정세정 외, 2020).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다른 창구로 연계되지 않도록 원스톱 상담 창구로서의 기능이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개별 청년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 소개와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정세정 외, 2020). 일본의 아동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의 청년센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마다 확대되고 있는 청년센터는 현재 주로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 속의 청년으로 그 대상을 넓혀 원스톱 종합상담

창구로서 청년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 기관 연계와 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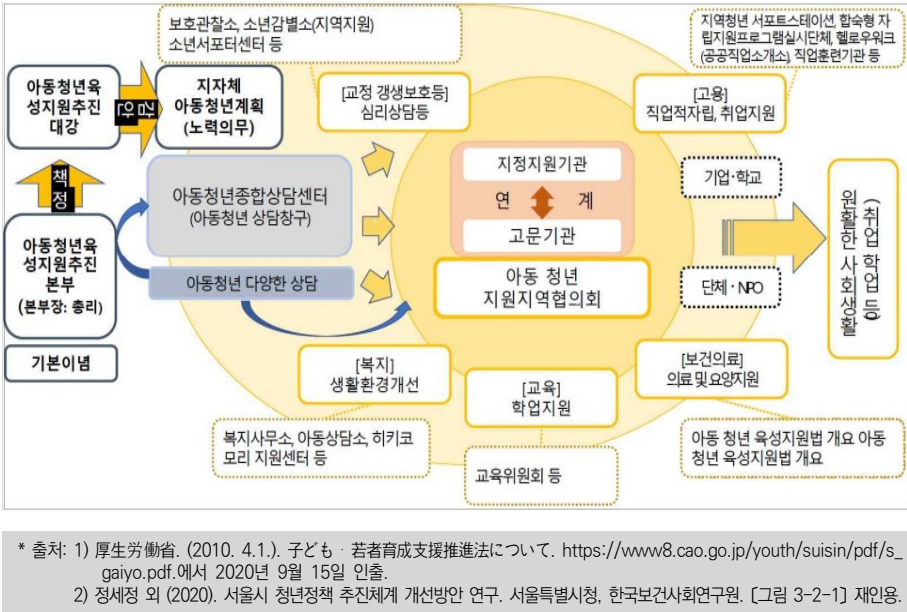


그림 VI-3. 일본의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연계 흐름



제7장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1.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 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경계선지능은 복잡한 임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 사이에 분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정책과 연구에서 ‘경계선급 지능’,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적기능’, ‘저성취아동’, ‘학습장애’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서해정, 박현숙, 이혜수, 2019). 가장 최근 제시된 공식적 정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2020.10.5. 공포)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의 인구학적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부재하며, 지능 정규분포를 고려하여 전체 인구의 13.6%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적장애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20). 관련 조사로 전국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지원 시설 총 254개소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진단 또는 의심 아동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기관 평균 8.5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시설보호 자립준비청년은 약 2,700여명 정도 넘는데, 정규분포에 따라 추정되는 경계선지능 수치(13.6%)를 적용하면 매년 약 280-380여명의 경계선지능아동이 퇴소하여 성인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상된다(서해정, 박현숙, 이혜수, 2019).

경계선지능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심화된다고 보고된다

37) 이 장은 박광옥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외가 집필하였고 협동연구총서(22-80-05)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Hassiotis et al., 2019; 황지은, 2022). 경계선지능청년은 청소년기에 충분한 학업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졸업 또는 대학 진학을 못하거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박찬선, 장세희, 2018). 취업진입 시 단순 작업이나 단기 근무 형태의 직종에 국한되고,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여 취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진현정, 2016). 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놓이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낮은 임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증가되었다(엄경남, 이재경, 문정희, 2019). 박찬선, 장세희(2018)는 이러한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2차 부적응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가까운 친구가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타인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이 표출되었다(엄경남, 이재경, 문정희, 2019). 김동일 외(2021)는 학령기에 나타나는 교우관계의 문제가 성인이 되면 조직 내 적응문제, 이성친구 문제로 확장되어 나타나며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생활을 하거나 충동적, 공격적 행동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불안이 동반된다고 하였다.

또한, 진현정(2016)은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과정에서 개별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에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보았다. 적절한 교육의 미비,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지원서비스 부족 등이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주은미, 최승숙, 2021). 경계선지능인이 주로 겪는 어려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II-1. 경계선지능인의 주요 어려움

구분	주요 내용
학습(교육)	- 학습축적이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하며 연결된 사고가 되지 않아서 단계별로 각각의 것을 알려줘야 함 - 학교 공부와 일상생활의 연결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가짐 (예: 수학 계산을 가능하나 식당의 메뉴 주문, 돈 계산은 어려움) - 학습이 사회화와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학습능력 개선이 어려움 - 교육정책 등이 학습부진에만 집중되어 있음 -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경계선지능인의 특징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함 - 청소년기에 학업과정을 충분히 성취하지 못하여 졸업, 대학진학을 못하거나 적절한 진로계획, 직업교육을 못 받고 성인기를 시작

구분	주요 내용
또래·타인과의 관계	- 타인과의 관계형성·유지에 있어 전체적인 상황이해능력 부족, 감정 읽는 능력 부족,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가짐 -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서 갈등, 따돌림, 소외, 괴롭힘의 경험으로 상처를 가지는 경우도 있음 -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친구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나타남 -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SNS 등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성 관계에 대한 관심을 순수하게 표현하다보니 사고 발생하기도 함 - 학창시절 친구와의 관계 문제가 직장 생활 및 동료와의 관계로 확장되어 나타남
사회적 인식 부족	- 경계선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가진 교사 부재로 오해와 편견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낙인효과까지 중첩 - 경계선지능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의 오인과 갈등 발생 - 장애인과 달리 사회적 인식에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낮은 인식과 도움 받기보다 잘못된 인식으로 오해 받거나 또 다른 갈등 유발하게 될까봐 두려워함
가족 간의 갈등	- 부부간의 경계선지능 자녀에 대한 이해, 가치관, 교육관의 차이, 어느 한 쪽의 양육 부담,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갈등 발생 - 경계선지능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자녀를 질책하거나 몰아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자녀를 고립시키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며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나타남 - 경계선지능자녀에게만 부모가 관심을 두다보니 다른 자녀가 방치되거나 소홀하게 되는 문제 발생, 자녀 사이에 경계선지능 형제·자매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어 형제·자매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남
부모의 어려움	- 경계선지능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반복적으로 좌절하는 경험 가짐. 상당한 육체적, 정서적 피로감을 느끼며 소진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함 - 경계선지능 자녀의 교육과 정보의 부족으로 답답함 느낌 - 경계선지능 자녀의 양육, 교육, 스트레스도 부모의 몫 - 경계선지능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울리는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한 속상함
경제적 어려움	- 경계선지능에 대한 공공부문의 체계적 지원 부족으로 자녀의 치료, 교육 비용은 가정에 부담이 됨 - 경계선지능 청년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에 어려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됨
성별에 따른 어려움	- 남성의 경우 군복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복무 부적응병사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성의 경우 성폭력, 성매매 등의 문제에 노출되기 쉬움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며, 선언적 조항으로 구속력이 없다.

경계선지능청년은 기본적으로 청년기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및 제도별 기준 자격이 충족된다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청년정책에서는 앞서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특화되거나 개별화된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경계선지능청년의 상황을 고려한 공식적인 정책과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합의된 개념과 공식적인 진단체계가 없고, 경계선지능인이 정책대상자로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연결된다. 최근 들어서야 지자체 조례에 기초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지원센터와 몇 곳의 지역사회 복지관 등에서 공동모금회 등의 예산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청년 자립을 위한 단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외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비하다. 이마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비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어떠한 지원 없이 학령기 때 겪은 어려움이 청년기 진입하면서 문제가 심화되거나 청년기 과업을 이행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시급하게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대상자로 공식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국가로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 5개국을 조사하였는데, 국가별로 경계선지능의 진단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I-2. 국외 경계선지능인 진단기준 및 지원방법

구분	진단기준	지원방법
네덜란드	DSM-5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지적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미국	DSM-5	경계선지능으로 인해 근로나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벨기에	AAIDD	자폐범주성장애 등의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의 어려움을 함께 보이는 경우에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직업 및 취업 훈련을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을 제공함
캐나다	AAIDD	자폐범주성장애 등의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의 어려움을 함께 보이는 경우에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스페인	DSM-5	구체적인 정책은 부재하나, 경계선지능 고유의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

경계선지능의 진단기준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 정의한 AAIDD,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능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들 수 있다. 각 정의의 세부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이하의 지적기능과 적응행동능력, 그리고 발달단계에 발생한다는 것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살펴본 국외 사례 또한 경계선지능 진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경계선지능인을 모든 사회적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경계선지능을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다양한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경계선지능인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요구를 탐색하여 그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Luckasson & Schalock, 2013; Nouwens, Lucas, Embregts, & van Nieuwenhuizen, 2017; Wieland, Haan, & Zitman, 2014).

미국은 최근까지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적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 사회보장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경계선지능인에게 근로 또는 기초생활지원관

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계선지능으로 사회보장서비스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인 개인이 정보이해 또는 사용능력, 자기관리능력, 집중 및 유지능력, 상호작용능력 중 하나의 영역에서 심각한 제한을 가지거나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현저한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Disability Secrets, 2022; Logsdon, 2021).

벨기에는 지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지적 장애로 진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이 아닌 지적장애 진단이나 다른 장애의 진단이 필요하기에 경계선지능으로 인한 직접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벨기에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직업과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Woittiez, Eggink, Putman, & Ras, 2018).

캐나다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경계선지능인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지원은 향후 이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취약성을 조기에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2015).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찾을 수 없었으나,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경계선지능 조기선별 및 진단 개선방안, 개별화 중재 계획, 사회통합 촉진: 고용가능성, 부서 간 또는 학제 간의 협력의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지원은 건강, 교육, 고용,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Catalunya, 2018).

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베이(경계선지능청년 생활실태조사),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서베이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가구형태 및 주거, 교육, 건강, 소득 및 고용, 인권 및 사법, 정책 및 지원 등 9개 영역의 실태 및 지원 욕구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총 218명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총 203명의 응답자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심층면접은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 거주현황, 시설보호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6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2022년 7월 중에 진행되었으며, 조사 내용에는 실태조사 9개 영역의 주요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초점집단면접은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 또는 양육하고 있는 종사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종사자의 경우 시설보호(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관 등), 지역사회 기관(복지관 등)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총 6명, 경계선지능인으로 진단받는 자녀가 있는 부모 6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2022년 7월 중에 진행되었으며, 심층면접과 동일하게 조사내용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VII-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개요

구분	조사개요	참여자 일반적 특성
서베이 (조사명: 경계선 지능청년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청년* (총 분석대상 203명) *지능지수가 71에서 84에 해당되는 자(이하 동일) - 방법: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양육)하고 있는 종사자(부모)가 직접 청년과 대면하여 온라인조사지를 활용하여 조사 - 내용: 전반적인 삶 영역*의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파악 *가구형태 및 주거, 교육 및 훈련, 건강, 일상생활 및 만족도, 소득 및 경제활동, 결혼 및 가족관계, 관계 및 참여, 인권 및 사법, 정책 및 지원 등 9개 영역	- 총 203명의 참여자 중 : 성별의 경우 남성 51.2%(104명), 여성 48.8%(99명), 연령대의 경우 24세 이하 62.6%(127명), 25-29세 29.5%(60명), 30세 이상 7.9%(16명), 보호가반의 경우 가정보호 69.5%(141명), 시설보호(종료) 30.5%(62명)
심층면접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청년 총 6명 - 방법: 담당 연구진이 1:1 대면 조사 수행 - 내용: 서베이 9개 영역의 주요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한 심층조사	- 총 6명의 참여자 중 : 성별의 경우 남성 3명, 여성 3명, 연령대의 경우 24세 이하 4명, 25-29세 2명, 가정보호청년 4명, 시설보호(종료)청년 2명
초점집단면접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6명) 및 부모(6명) - 방법: 대면, 비대면 혼합 조사 수행 - 내용: 서베이 9개 영역의 주요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한 심층조사	- 총 6명의 종사자 중 : 성별의 경우 남성 1명, 여성 4명, 기관 유형은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2명, 지역복지관 2명, 경계선지능인관련 민간단체 및 협동조합 2명 - 총 6명의 부모 중 : 모든 참여자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경계선지능청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 대상

2) 조사결과

(1) 경계선지능청년 생활실태 조사

서베이 결과는 경계선지능청년이 삶의 각 영역별로 겪는 주요 어려움을 제시하고, 비교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일반청년(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³⁸⁾)의 실태와

38)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통계청의 승인통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조사하였으며, 총 조사 사례 수는 2,041명이다. 조사지는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어느 정도 격차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지지기반과 환경 등에 따라 삶의 실태와 어려움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전체, 가정보호 청년, 시설보호(종료)청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① 가구 현황 및 주거: 열악한 주거 환경

경계선지능청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47.3%, 96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세대/빌라(17.7%, 36명), 원룸(12.3%, 25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호기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설보호(종료) 청년들의 주거 형태는 가정보호 청년보다 원룸(37.1%, 23명), 오피스텔(6.5%, 4명), 고시원(4.8%, 3명)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년(원룸: 15.7%, 131명/고시원: 0.1%, 1명 등)과 비교해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경계선지능청년 중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Ⅶ-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835	100.0
원룸(다가구)	25	12.3	2	1.4	23	37.1	131	15.7
아파트	96	47.3	91	64.5	5	8.1	362	43.4
단독주택	14	6.9	14	9.9	-	-	77	9.2
다세대/빌라	36	17.7	28	19.9	8	12.9	210	25.1
고시원	4	2.0	1	0.7	3	4.8	1	0.1
오피스텔	6	3.0	2	1.4	4	6.5	46	5.5
기숙사	1	0.4	-	-	1	1.6	2	0.3
시설	16	7.9	1	0.7	15	24.2	-	
기타	5	2.5	2	1.4	3	4.8	6	0.7

주거, 건강, 가치관, 관계와 참여의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본 장에서는 비교 가능한 중요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필요 시 변수 값을 조정하여 계산하거나 삭제한 표본수를 사용함).

② 교육: 자립 및 취업 준비에 대한 지속학습 욕구

서베이 결과, 모든 응답자가 성인기 지속 학습의 욕구를 나타냈다. 주요 학습주제로는 전체적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이 40.4%(82명)로 가장 높은 욕구는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자립생활훈련교육 24.1%(49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12.3%(25명)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호기반에 따른 응답 결과는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가정보호 청년은 직업능력향상교육(46.1%, 65명)을,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자립생활훈련교육(29.0%, 18명)에 대해 조금 더 높은 지속학습에 대한 욕구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은 청년기에 향후 진로 및 취업, 자립생활 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5. 청년기 희망하는 지속학습 주제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학력보완 교육	5	2.5	1	0.7	4	6.5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 교육	10	4.9	7	5.0	3	4.8
직업능력향상 교육	82	40.4	65	46.1	17	27.4
인문교양 교육	4	2.0	1	0.7	3	4.8
문화체육예술 교육	9	4.4	7	5.0	2	3.2
시민참여 교육	5	2.5	4	2.8	1	1.6
자립생활훈련 교육	49	24.1	31	22.0	18	29.0
정보화 교육	6	3.0	3	2.1	3	4.8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5	12.3	16	11.3	9	14.5
기타	8	3.9	6	4.3	2	3.2

③ 건강: 취약한 정신건강 상황

경계선지능청년의 우울감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일주일 기준 1일 이상 우울감을 느낀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54.7%(111명)로 일반청년의 비율(24.8%, 405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경계선지능청년 중 시설보호(종료) 청년(59.7%, 37명)은 가정보호 청년(52.5%, 74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반청년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보여 일상에서 심리·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6. 일상생활의 우울감 수준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1,636	100.0
매우 드물음 (일주일에 1일 미만)	92	45.3	67	47.5	25	40.3	1,231	75.2
가끔 그러함 (일주일에 1~2일간)	66	32.5	44	31.2	22	35.5	320	19.6
종종 그러함 (일주일에 3~4일간)	33	16.3	23	16.3	10	16.1	63	3.9
대부분 그러함 (일주일에 5일 이상)	12	5.9	7	5.0	5	8.1	22	1.3

경계선지능청년은 최근 1년 이내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가 진료 및 상담을 받은 전체 비율이 35.5%(72명)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31.5%(24명)가 현재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27.6%(56명)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1분기 국민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일반 국민의 자살생각 비율(전체: 16.3%, 20-30대: 22.5%)보다 높은 수치로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관련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7.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신적 건강 수준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관련 전문가 진료	있음	72	35.5	53	37.6	19	30.6
및 상담 유무	아니오	131	64.5	88	62.4	43	69.4
정신과 약물 복용 유무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복용함	64	31.5	50	35.5	14	22.6
	복용하지 않음	139	68.5	91	64.5	48	77.4
정신과 약물 복용 주된 이유	계	64	100.0	50	100.0	14	100.0
	우울증, 조울증	24	37.5	17	34.0	7	50.0
	조현병	3	4.7	1	2.0	2	14.3
	불안, 공포, 강박	6	9.4	6	12.0	-	-
	수면 문제	5	7.8	4	8.0	1	7.1
	행동문제	9	14.1	7	14.0	2	14.3
	뇌전증	3	4.7	3	6.0	-	-
	기타	14	21.9	12	24.0	2	14.3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최근 1년 동안 주고 싶다는 생각 유무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생각한 적 있음	56	27.6	37	26.2	19	30.6
	생각한 적 없음	147	72.4	104	73.9	43	69.4

④ 일상생활 및 만족: 일상 도움 필요 및 낮은 생활만족도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생활에서 일부 또는 모든 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77.4%, 157명/ 모든 부분 도움 필요: 7.4%, 15명, 일부 도움 필요: 70.0%, 142명). 도움 필요 수준은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가정보호 청년보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였다(80.6%, 50명/ 모든 부분 도움 필요: 14.5%, 9명).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종 계약 체결이 15.9%(9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금융거래 및 금전관리 15.0%(89명), 행정서류 발급 등 공공시설 이용 12.8%(76명),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12.5%(74명),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11.6%(69명), 안전 및 위험 시 도움 요청 9.9%(59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등 모든 청년에게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VII-8. 일상생활 도움 필요 수준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타인의 도움 필요 수준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15	7.4	6	4.3	9	14.5
	일정 부분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142	70.0	101	71.6	41	66.1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46	22.7	34	24.1	12	19.4
도움이 필요한 내용	계	593	100.0	428	100.0	165	100.0
	가사생활	56	9.4	44	10.3	12	7.3
	물건 구입	31	5.2	20	4.7	11	6.7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74	12.5	56	13.1	18	10.9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69	11.6	48	11.2	21	12.7
	필요 행정 서류 발급 등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이용	76	12.8	54	12.6	22	13.3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금융거래 및 금전 관리	89	15.0	65	15.2	24	14.5
	이동	29	4.9	22	5.1	7	4.2
	각종 계약 체결	94	15.9	68	15.9	26	15.8
	안전 및 위험 시 도움 요청	59	9.9	37	8.6	22	13.3
	지역 내 편의시설 이용	16	2.7	14	3.3	2	1.2

경계선지능청년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67.3%(136명)의 응답자가 현재의 삶에 만족(만족함, 매우 만족함)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청년은 응답자 중 75.9%(1,548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경계선지능청년과 다소 삶의 만족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생활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 비율(3.5%, 7명)이 일반청년(0.7%, 14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상황인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Ⅶ-9. 일상생활 만족 수준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202	100.0	140	100.0	62	100.0	2,041	100.0
전혀 만족하지 않음	7	3.5	7	5.0	-	-	14	0.7
만족하지 않음	59	29.2	43	30.7	16	25.8	479	23.5
만족함	102	50.5	71	50.7	31	50.0	1,528	74.9
매우 만족함	34	16.8	19	13.6	15	24.2	20	1.0

현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계선지능청년들은 전체적으로 현 경제수준에 가장 불만족하다고 응답(30.3%, 20명)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람관계 27.3%(18명), 가족관계 10.6%(7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경우에는 현 경제수준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43.8%, 7명)이, 가정보호 청년의 경우에는 사람관계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28.0%, 14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I-10. 만족하지 않는 삶의 영역

구분	경제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66	100.0	50	100.0	16	100.0
경제수준	20	30.3	13	26.0	7	43.8
건강	4	6.1	4	8.0	-	-
가족관계	7	10.6	7	14.0	-	-
사람관계	18	27.3	14	28.0	4	25.0
직장생활	8	12.1	7	14.0	1	6.3
주거	3	4.5	2	4.0	1	6.3
기타	6	9.1	3	6.0	3	18.8

⑤ 소득 및 경제활동: 좋은 일자리 진입과 유지 어려움

전체 경제선지능청년 응답자 중 53.3%(73명)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64.7%(33명)로 가정보호 청년(46.5%, 40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일반청년의 취업률(65.2%, 1,331명)에 비해 1.2배 정도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경제선지능청년이 취업 진입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11. 현 취업 여부

구분	경제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37	100.0	86	100.0	51	100.0	2,041	100.0
일하고 있음	73	53.3	40	46.5	33	64.7	1,331	65.2
일하고 있지 않음	64	46.7	46	53.5	18	35.3	710	34.8

취업한 경제선지능청년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청년의 고용형태와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경제선지능청년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36.9%(24명)로 일반청년의 정규직 비율(74.6%, 885명)보다 약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제선지능청년이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단시간 근로 등 취업 환경과 욕구 등이 일반청년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VII-12. 고용형태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65	100.0	33	100.0	32	100.0	1,186	100.0
정규직	24	36.9	13	39.4	11	34.4	885	74.6
비정규직	41	63.1	20	60.6	21	65.6	301	25.4

경계선지능청년의 고용직종은 대부분이 서비스 종사자 40.6%(26명), 단순 노무 종사자 21.9%(14명)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청년의 경우에는 사무종사자의 비율(35.5%, 446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특정 직종에 집중되기 보다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6%, 158명), 서비스 종사자(26.6%, 335명), 판매 종사자(17.5%, 220명)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년의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은 2.9%(36명)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경계선지능청년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전술한 결과와 같이 비정규직 등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자리에 취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13. 고용직종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64	100.0	32	100.0	32	100.0	1,258	100.0
관리자	1	1.6	1	3.1	-	-	20	1.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	9.4	5	15.6	1	3.1	158	12.6
사무종사자	2	3.1	1	3.1	1	3.1	446	35.5
서비스 종사자	26	40.6	10	31.3	16	50.0	335	26.6
판매 종사자	2	3.1	1	3.1	1	3.1	220	17.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	1.6	-	-	1	3.1	12	1.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	1.6	-	-	1	3.1	36	2.9
단순 노무 종사자	14	21.9	8	25.0	6	18.8	29	2.3
기타	11	17.2	6	18.8	5	15.6	2	0.2

경계선지능청년은 일반청년보다 플랫폼 종사자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청년의 경우 응답자 중 3.6%(73명)가, 경계선지능청년은 일반청년보다 약 1.5배 높은

응답자(5.5%, 4명)가 플랫폼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중 시설보호(종료) 경계선지능 청년은 응답자 중 6.1%(2명)의 인원이 플랫폼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Ⅶ-14. 플랫폼 종사자 여부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73	100.0	40	100.0	33	100.0	2,041	100.0
예	4	5.5	2	5.0	2	6.1	73	3.6
아니오	69	94.5	38	95.0	31	94.5	1,968	96.4

현 직장의 이직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계선지능청년(47.2%, 34명)이 일반청년(22.7%, 302명)보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경계선지능청년 중 시설보호(종료) 청년(51.5%, 17명)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술한 고용형태 및 직종에 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 근로상황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고, 초기 불안정한 취업 진입으로 인해 새로운 진로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Ⅶ-15. 현 직장 이직 의향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72	100.0	39	100.0	33	100.0	1,331	100.0
있음	34	47.2	17	43.6	17	51.5	302	22.7
없음	38	52.8	22	56.4	16	48.5	1,029	77.3

경계선지능청년은 직장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출퇴근 어려움과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등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비중(각각 22.2%, 12명)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어려움(18.5%, 10명),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14.8%, 8명)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보호 청년은 근로능력의 부족, 업무 성과 미흡(29.6%, 8명) 등의 어려움이,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출퇴근의 어려움(26.9%, 7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Ⅶ-16. 직장생활 주된 어려움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54	100.0	28	100.0	26	100.0
출퇴근의 어려움	12	22.2	5	17.9	7	26.9
근태관리의 어려움	3	5.6	2	7.1	1	3.8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8	14.8	5	17.9	3	11.5
근로능력의 부족, 업무 성과 미흡	12	22.2	8	28.6	4	15.4
근무환경의 열악함	5	9.3	2	7.1	3	11.5
대인관계의 어려움	10	18.5	6	21.4	4	15.4
기타	4	7.4	-	-	4	15.4

⑥ 사회참여: 고립 위기와 제한된 관계망

평상 시 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경계선지능청년 중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비율이 8.6%(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음: 5.6%,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3.0%)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년이 동일한 상황(집 밖으로 나오지 않음)에 나오지 않는 비율(0.2%)에 비해 약 8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심각한 고립 상황에 놓여있거나 예상되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사회참여와 정신건강 지원 등 필요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7. 평상 시 외출 수준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97	100.0	135	100.0	62	100.0	2,041	100.0
직장, 학교, 여가생활, 친목 등을 위해 매일 또는 주 3-4일 외출함	135	68.5	89	65.9	46	74.2	1,940	95.1
취미생활, 생활물품을 구입할 때만 인근지역 중심으로 외출함	45	22.8	34	25.2	11	17.7	95	4.7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음	11	5.6	8	5.9	3	4.8	6	0.2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6	3.0	4	3.0	2	3.2	-	-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과 관련해서는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계선지능청년(19.8%, 39명)이 일반청년(18.8%, 383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종료)청년의 경우 해당 비율이 37.1%(23명)로 나타나 소속감을 느낄 정도의 관계망 형성이 매우 원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의 경우 경계선지능청년의 60.8%(96명)가 ‘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청년은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35.2%, 824명), ‘소속 직장의 직업 모임’(25.0%, 586명)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경계선지능청년은 가족 외 사회 참여에 의한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가 있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18.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	39	19.8	16	11.9	23	37.1	383	18.8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일반청년(다중응답)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97	100.0	135	100.0	62	100.0	2,342	100.0
나의 가족 (부모, 형제자매 등)	96	60.8	83	69.7	13	33.3	-	-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13	8.2	5	4.2	8	20.5	824	35.2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12	7.6	7	5.9	5	12.8	238	10.2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환경, 구호 정치활동 모임 등)	13	8.2	8	6.7	5	12.8	275	11.7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직업 기반 협회 또는 조합 등)	14	8.9	8	6.7	6	15.4	586	25.0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등)	5	3.2	4	3.4	1	2.6	419	17.9
기타	5	3.2	4	3.4	1	2.6	-	-

⑦ 인권 및 사법 : 인권침해 및 범죄 상황 노출

경계선지능청년이 최근 2년 이내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전체 비율은 14.8%(29명)이며, 특히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가정보호 청년(11.9%, 13명)보다 괴롭힘을 당한 비율(21.0%, 13명)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반청년은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비율이 3.7%(42명)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한정된 결과이지만 약 5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볼 때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에서 인권침해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Ⅶ-19. 타인의 괴롭힘 상황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96	100.0	134	100.0	62	100.0	1,122	100.0
있음	29	14.8	13	11.9	13	21.0	42	3.7
없음	167	85.2	118	88.1	49	79.0	1,080	96.3

*일반청년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한정된 비율임

괴롭힘을 당한 경계선지능청년은 타인으로부터 욕, 따돌림 등의 정서적 괴롭힘을 가장 많은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68.6%, 24명),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14.3%, 5명), 성적 학대(11.4%, 4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의 비율(각각 16.7%, 3명)이 높았고, 가정보호 청년은 정서적 괴롭힘(82.4%, 14명)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괴롭힘에 대한 주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9%(1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43.8%, 7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30.8%, 4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많은 경계선지능청년들이 타인의 괴롭힘에 적절히 자기 보호와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0. 타인의 괴롭힘 내용 및 대응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괴롭힘 내용 (다중 응답)	계	35	100.0	17	100.0	18	100.0
	정서적 괴롭힘	24	68.6	14	82.4	10	55.6
	신체적 괴롭힘	2	5.7	-	-	2	11.1
	성적 괴롭힘	4	11.4	1	5.9	3	16.7
	경제적 착취	5	14.3	2	11.8	3	16.7
주 대응 방법	계	29	100.0	16	100.0	13	100.0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음	11	37.9	7	43.8	4	30.8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음	4	13.8	1	6.3	3	23.1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함	4	13.8	2	12.5	2	15.4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	6	20.7	5	31.3	1	7.7
	경찰, 관공서,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함	2	6.9	1	6.3	1	7.7
	욕을 하거나 저항함	2	6.9	-	-	2	15.4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1%(12명)이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9.7%, 6명)이 가정보호 청년(4.5%, 6명)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21. 범죄 연루 여부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96	100.0	134	100.0	62	100.0
연루된 적이 있음	12	6.1	6	4.5	6	9.7
연루된 적이 없음	184	93.9	128	95.5	56	90.3

⑧ 정책 및 지원: 청년정책 인지 부족 및 낮은 이용

청년정책 인지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0%(2,186명)가 관련 청년정책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관련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시설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인지하지 못하는 비율 58.4%, 572명)보다 가정보호 청년(인지 못하는 비율 76.9%, 1,614명)이 낮게 나타났다.

청년정책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용한 비율은 전체 32.5%(288명)로 조사되었으며, 이 비율도 가정보호 청년(27.1%, 130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38.8%, 158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II-22. 청년정책 인지 및 이용 현황

구분		경제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인지현황 (다중응답)	계	3,077	100.0	2,098	100.0	979	100.0
	인지하고 있음	891	29.0	484	23.1	407	41.6
	인지하고 있지 않음	2,186	71.0	1,614	76.9	572	58.4
이용현황 (다중응답)	계	887	100.0	480	100.0	407	100.0
	이용한 적이 있음	288	32.5	130	27.1	158	38.8
	이용한 적이 없음	599	67.5	350	72.9	249	61.2

경제선지능청년들이 청년정책 및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 '어떠한 정책과 서비스가 있는지 모름'이 42.9%(7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어떻게(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19.6%(33명),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름'이 12.5%(21명)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보호 청년은 '어떠한 정책과 서비스가 있는지 모름'(48.7%, 56명)이, 시설보호(종료)청년은 '신청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22.6%, 12명),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모름'(17.0%, 9명)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VII-23. 청년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시 주된 어려움

구분	경제선지능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68	100.0	115	100.0	53	100.0
어떠한 정책과 서비스가 있는지 모름	72	42.9	56	48.7	16	30.2
어떻게(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33	19.6	24	20.9	9	17.0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19	11.3	7	6.1	12	22.6
신청했으나 자격이 제한적이어서	12	7.1	8	7.0	4	7.5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모름	21	12.5	12	10.4	9	17.0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9	5.4	8	7.0	1	1.9
기타	2	1.2	-	-	2	3.8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진로 및 훈련 37.8%(71명), 소득 보장 16.5%(31명), 주거 11.2%(21명), 고용 10.6%(20명) 등의 순으로 높은 욕구를 나타냈다. 취업과 관련된 지원(진로 및 훈련, 고용)에 매우 높은 지원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8.4%, 91명). 이 결과는 일반청년의 취업 지원 욕구(40.6%, 628명/진로 및 훈련: 10.4%, 212명, 고용: 30.2%, 616명)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보호 청년은 진로 및 훈련(46.9%, 60명)이, 시설보호(종료)청년은 소득보장(26.7%, 16명)과 주거(25.0%, 15명)의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종료)청년(25.0%, 15명)이 일반청년(15.2%, 311명)보다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표 Ⅷ-24. 정부의 필요 지원 영역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88	100.0	128	100.0	60	100.0	2,041	100.0
교육	19	10.1	14	10.9	5	8.3	167	8.2
진로 및 훈련	71	37.8	60	46.9	11	18.3	212	10.4
고용	20	10.6	16	12.5	4	6.7	616	30.2
소득보장	31	16.5	15	11.7	16	26.7	232	11.4
주거	21	11.2	6	4.7	15	25.0	311	15.2
건강	7	3.7	5	3.9	2	3.3	147	7.2
관계 및 사회참여	8	4.3	6	4.7	2	3.3	123	6.0
출산 및 자녀 양육	3	1.6	1	0.8	2	3.3	233	11.4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7	3.7	4	3.1	3	5.0	-	-
인권 보장 및 사법 지원	1	0.5	1	0.8	-	-	-	-

세부 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경계선지능청년은 취업 관련 지원서비스(33.7%, 63명/취업진로상담서비스: 19.8%, 37명, 직업자립 등 훈련교육서비스: 13.9%, 26명)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소득·생계관련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욕구도 높은 비율(24.1%, 45명)을 보였으며,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설보호(종료)청년의 욕구(36.7%, 22명)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청년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나타냈는데, 건강검진서비스(13.9%, 1,246명), 문화·취미지원서비스(13.6%, 1,227명), 주거지원 서비스(13.6%, 1,233명)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II-25. 필요 지원 서비스

구분	경제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87	100.0	127	100.0	60	100.0	8,973	100.0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26	13.9	18	14.2	8	13.3	823	9.2
소득·생계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45	24.1	23	18.1	22	36.7	1,002	11.2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20	10.7	18	14.2	2	3.3	681	7.6
취업·진로 상담 서비스	37	19.8	31	24.4	6	10.0	1,066	11.9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2	1.1	2	1.6	-	-	725	8.1
직업·자립 등 훈련 교육 서비스	26	13.9	19	15.0	7	11.7	970	10.8
건강검진 서비스	3	1.6	2	1.6	1	1.7	1,246	13.9
주거지원 서비스	17	9.1	4	3.1	13	21.7	1,233	13.6
기혼 가족 서비스	3	1.6	2	1.6	1	1.7	-	-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	5	2.7	5	3.9	-	-	1,227	13.7
인권침해 권리구제 서비스	2	1.1	2	1.6	-	-	-	-
기타	1	0.5	1	0.8	-	-	-	-

(2) 심층면접

경계선 지능 청년의 생의 경험은 돌봄과 가족 경험, 경계선 지능의 확인과 실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삶의 사태로서의 학교와 학업, 그 안에서의 관계, 명확히 경계선 지능임을 인식하게 된 계기와 그와 관련한 경험, 일 경험, 살아오면서 받았던 도움의 경험과 미래설계 및 지원욕구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생애 경험의 범주는 돌봄 및 가족경험, 삶의 사태로서의 학교·학업·관계경험, 경계선 지능인식 경험, 일 경험, 필요한 도움 경험이라는 5개의 주제로 범주화 하였다. 각각의 하위범주와 의미단위를 표로 제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VII-26. 심층면접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돌봄 및 가족 경험 : 깊은 뿌리, 넓은 그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울타리	- 가정,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과 공간과 관계 - 소수의 할 수 있는 일, 대다수는 도움이 필요한 일에 대한 일상화된 도움 - 자녀의 한계를 알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부모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적절한 돌봄 체계가 되기 에는 역부족인 울타리	- 부모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임을 너무 늦게 파악함 -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응해주지 못함 - 가족 내 문제의 가중으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함 - 가족의 헌신으로 야기되는 자괴감
	시설, 자립지원의 테스트 베드	- 가족보다 든든한 '보호' 처분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 강력한 유대에 기반을 둔 울타리 - 다양한 경험의 제공처
삶의 사태로서의 학교· 학업·관계경험 : 악몽과 미몽 사이	유일하고 절대 공간으로 서의 학교라는 도그마	-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공간 - 모호한 기준으로 현실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함 - 불확실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대처와 미래설계에 혼란을 겪음 - 졸업, 고립과 은둔의 시작
	공부에는 실패했으나 '중 간은 가는 나'라는 자기 평가를 형성	- 기본이 안 되어 있으나 소수의 영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음 - 모든 것이 성적으로 환산되는 시간 - 코피를 쏟아도 좁혀지지 않는 격차 인식
	다수의 부정적 경험과 소 수의 긍정적 경험의 충돌	- 어쩔 수 없는 공부, 관리 가능한 외모와 관계에 집착 - 갑치거나 내대는 아이라는 평판 형성
	자기합리화 혹은 혼란, 애착형 관계 형성	- 능력 부족이 아닌 적성의 문제로 인식 -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을 '한창 싸움할 나이'로 합리화 - 축적된 부정적 평가, 단지 '생기부에 기록된 나'일 뿐
경계선 지능 인식 : 준장애인이라는 판정패	평가와 평판이 엇갈리는 혼란 경험	- 관심 있는 것은 우수, 관심 없는 것은 중간 이하, 나름의 성공 경험 - 과정평가나 성장 중심 평가로 인해 객관적인 능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열심히 하지 않았을 뿐, 적성에 맞지 않았을 뿐
	자기 한계 인식과 부정	- 언제나 제자리인 나, 멀어지다 고립되는 관계 - 공부 체질이 아닐 뿐,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일 뿐, 성적은 종이로 남은 결과지에 불과할 뿐 -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사람, 코칭이 부족한 사람일 뿐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피해갈 수 없는 길, 피할 수 있었어도 좋았을 길	- 막다른 길에서 만난 판정, 생소함과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사이 - 확인 사살당하는 심정 - 생애의 퍼즐 조각이 맞춰짐 - 몰라도 좋았을 일
일 경험 : 나도 밤나무, 나도 호모 라보르	'일머리'와 '눈치 없음'으로 점철된 평가	- 기대되는 능력 중 미미한 영역에서만 발휘되는 능력 - 한없이 무력해지는 복잡한 일 - 모든 순간, 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시달림
	내몰리는 '자립', 선의와 호의로 포장된 간섭과 권리 침해	- 기대할 수 없는 지원과 내몰린 자립 - 동료의 얼굴로 가해지는 간섭과 따돌림 - 가족 혹은 가족 같으며 패싱 당하는 권리 - 언제 어디서나 마주치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불편한 공간
	'불안완화제'로서의 경제 활동	- 경제적 압박과 불안이 주는 내몰린 동력 - 돈벌이의 즐거움 - 알바 아닌 월급제라는 소소한 자부심 경험
	새로운 경험과 관계 확장의 기회로서의 삶 자리	- 가슴에 품고 있는 좋아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 일을 통한 관계와 기회의 확장 - 꿈, 해방이자 구속
필요한 도움 : 유대와 연대를 통해 경계에 다리 놓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도움' 경험	- 부모의 도움, 커가는 자괴감 - 도움의 대가, 노출과 유출 - 둔감하고 말 뿐인 도움, 놓쳐버린 골든타임 - 정서적 유대에 기반을 둔 '도움' 아닌 보완의 경험과 지원의 원심력 경험
	미래설계, 단순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	- 멀고 큰 것에 대한 난감함, 무얼 원하는지 잘 모름 - 견디기 힘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삶 - 나의 강점과 자부심이 일이 되는 삶
	여전히 필요한 도움, 안전하게 시행착오 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내 안의 오타쿠를 찾아 주길 바래 - 천천히 반보 뒤에서의 도움을 바래 -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해주길 바래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지능 정의와 진단과 관련하여 유연한 판정이나 공식화된 판정결과를 강제하는 서비스 자격심사 등을 최소화, 경계선 지능은 정태가 아닌 동태적인

상태로 개념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던 개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식화된 경계선 지능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 등 일차안전망 단위에서의 경계선 지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행동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공통적 특성과 개별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범죄피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성)착취적 관계에 노출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범죄 피해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3) 초점집단면접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4개 대주제와 12개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4개의 대 주제는 종사자가 인식하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지원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대 주제에 대한 12개의 하위 주제 및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II-27. 종사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대 주제	하위주제	핵심 내용
경계선 지능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	- 어린시절부터 축적된 대인관계 트라우마 - 지속된 실패로 새로운 관계맺기 두려움
	암담한 미래준비	- 밑도 끝도 없는 미래 계획 - 당사자의 비주도성, 비자발성
	사각지대에 위치한 존재	-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 장애인도 아닌 비장애인도 아닌
지원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공식적 지원 부재	- 경계선지능에 대한 낮은 이해와 무관심 - 공식적 지원 체계 없음
	동기와 지속성 부족	- 경계선지능인들의 동기 부족 - 지속적인 지원 어려움
	환경에 따른 편차	- 심터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 가중 - 가족의 이해 및 지원에 따른 차이

대 주제	하위주제	핵심 내용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	심리·정서적 지지와 지원	- 학습된 무기력과 쉽게 꺾임 - 낮은 자존감, 회복되지 않은 상흔
	경계선 지능인 개념 정립	-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전제 요건
	가족 지원	-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도 필요
경계선지능 인 제도 개선 방안	별도의 지원체계	-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지원 제도 -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반영
	맞춤형 지원	- 장기적, 체계적, 연속선상의 지원
	자립 위한 고용 필수	- 자립 수준의 고용과 경제적 지원 - 경계선지능인의 적합한 직무개발

경계선지능인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4개 대주제와 15개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4개의 대 주제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의 어머니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자녀 차원 vs 가족 차원)이 경험하는 어려움, 사회적 지원 요구, 발달장애 제도 편입, 경계선지능인 제도 개선이다. 대 주제에 대한 15개의 하위 주제 및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Ⅶ-28. 부모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대 주제	하위주제	핵심 내용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자녀 차원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 - 벽을 치는 대인관계
		높은 긴장과 불안 - 트라우마로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된 생활
		미래를 꿈꾸기 어려움 - 암담하고 절망적인 취업과 미래준비
	가족 차원	이해와 소통의 제약 - 자녀와의 소통, 이해 모두 어려움
		자립에 대한 우려 -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대한 걱정과 염려
사회적 지원요구	상존하는 갈등	- 가족 간 거리감과 소원한 관계
	자립 목적의 고용 지원	- 자립에 필수적인 직업훈련 - 느린 학습자에 맞는 직업교육
	사회적 관계 지원	- 소통할 수 있는 지인 만들기
발달장애 제도 편입	심리 정서적 지원	- 소외되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경험들 - 위축되고 자신 없는 마음상태
	발달장애 등록 시도	- 마음은 절실하나 발달장애는 아님
	고용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기대	- 필요하고, 바라는 직업교육 - 발달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절실
경계선 지능인 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 경계선지능인을 이해하는 사회
	전담 지원기관	- 필요할 때 지원 가능한 기관
	부모 지원	- 부모들을 위한 지원도 병행
	취업 기반 마련	- 최고의 지원은 취업

경계선지능청년의 부모와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초점집단면접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지능청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경계선지능청년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성에 부합한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기 경계선지능인의 미래를 위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려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원이나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인식부족이 여전하다면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는 교육이나 훈련 등의 기회가 제공되고 제반 지원이 병행된다면 경계선지능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논할 수 있다. 다섯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도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가족구성원 간에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소원함과 갈등관계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을 위한 세부지원을 모색할 때에는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및 추진과제

연구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전반적으로 일반청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차별화된 삶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대상자로 공식화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은 특정 계기(예: 군 입대, 기관 권유 등)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조차 없는 경우에는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보니 당사자와 가족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어도 경계선지능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련 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어떠한 조치

가 따르지 않는 유명무실한 결과에 불과하였다. 현재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 71-84로 정의되고, 실전 현장 및 일부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고 있으나 합의된 법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지능지수로만 경계선지능을 개념화하고 있어 지능 외에 고려해야 할 심리정서, 대인관계, 사회성 등 청년의 복합적 양상을 고려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인 정책 지원에 앞서 경계선지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정책대상자로 공식화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으로 접근 용이한 서비스 진입 창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복지서비스 이용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이용할 서비스가 전무하다보니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는 장애인등록을 할 의사는 없지만 자신에게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있다면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를 나타냈다. 현 상황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접근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생애주기별 물리적, 심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와 보편적 서비스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지능청년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가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하고, 생활하는 주된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용에 있어 경계선지능청년의 심리적 장벽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청년 중에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서비스 진입과 이용의 장벽은 낮추되, 개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애주기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은 경계선지능 등으로 인해 생애주기 과업 수행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또는 학령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돌봄과 지원 상황에 있었는지에 따라 청년기 생활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별로 필요한 지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생애주기별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생애주기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연령별 지원이 상호 연계된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개별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경계선지능청년은 청년별로 청년기 생애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과 어려움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청년은 발달장애 청년들과 유사한 생활 방식과 정책 필요 수준을 보이거나 어떠한 청년은 일반청년과 매우 유사하게 별도의 특화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의 특성과 생활수준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삶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 각각의 삶의 어려움과 정책 필요 수준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청년과 발달장애인 정책 및 지원서비스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있다면 서비스 진입을 위해 해당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제도 재설계 및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고려한 촘촘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보호기반(가정, 시설보호)에 따라 어려움의 수준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청년기 주거, 소득 및 경제생활, 정신건강, 인권 침해 등 여러 방면에서 가정보호 청년보다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자립준비 이후 지지 기반이 부재하거나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었다. 정책 지원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청년 중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년의 생활 실태와 지원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또 다른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종료) 경계선지능청년의 보다 큰 취약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들이 지역 전환 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시설보호 또는 자립준비 시기 관련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자립준비 이후 연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파악되었다.

경계선지능개념 정립 및 정책대상자 공식화(이해 환경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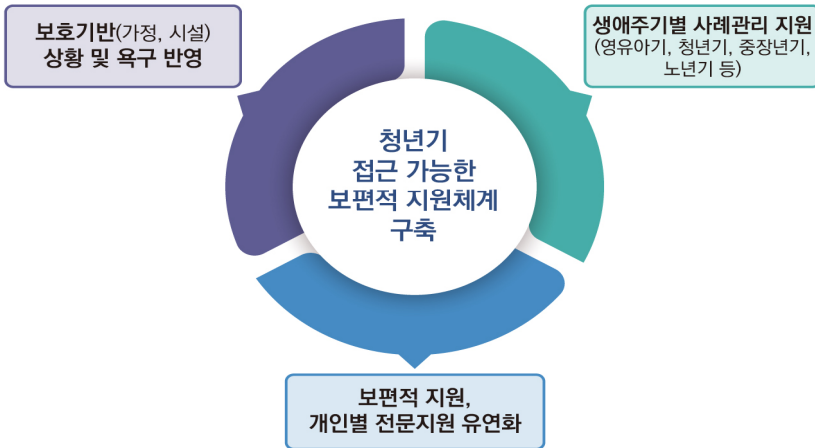


그림 VII-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과제

이러한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경계선지능청년 개념 정립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기존 지능 중심의 단편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 대인관계, 사회성, 정신건강 등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복합적 개념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정책지원에 앞서 또는 동시에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 확립을 위한 과업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경계선지능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논의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공식적인 진단체계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홍보 및 진단 검사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술하였듯이 경계선지능청년은 개별 청년에 따라 청년 시기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또는 조금 더 차별화된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개별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삶의 전 영역에서 개인별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 확립에 따라 정책지원에 따른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안은「청년기본법」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에서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는 반드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청년 지원에 대해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계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정책지원과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청년 개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생애주기별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에 따른 산발적인 법적 근거보다는 진단에서부터 생애주기별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표 VII-29.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구분	주요 내용
1안 청년기본법개정	- 「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명시,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 진행 필요 -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계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
2안 경계선지능인지원법(가칭) 제정	- 독립 법률 제정을 통한 정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경제선지능청년이 타 지원영역 및 제도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 및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부 정책 및 지원서비스를 마련할 때 경제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을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 관련 제도의 중립적 예산 내에서 기존 정책대상자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진입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선지능청년의 개별화되고 다각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장애인고용정책 및 제도를 경제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30. 기존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예시)

구분	관련 법률	개정 사항
고용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 동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관리규제 및 사법 지원 : 진술조력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수사과정 참여)

(3) 세부 정책 및 지원서비스 확충

기본적으로 경제선지능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은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되, 동시에 국가 주도의 삶의 영역별 필요한 정책 및 지원서비스를 개발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의 대상자 확대 및 재설계 방식과 경제선지능청년 대상 독립된 제도를 신설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먼저 지원 영역별로 정책대상자 확대 및 제도 재설계 방식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표 VII-31. 경계선지능청년의 주요 지원 욕구

필요자원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생애주기별 일상지원(사례관리)	일상생활 및 생애주기별 과업수행을 위한 개별 지원, 위기 청년 긴급 지원	
평생교육지원	진로 및 자립준비를 위한 성인기 지속학습 필요	
고용지원	직업 준비(체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및 유지를 위한 다각적 개별 지원	
주거지원	주택 확보 및 환경 개선, 주거 전환 등에 필요한 자원	
관계망지원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옹호 및 지지 관계망 형성 지원	
정신건강지원	은둔형(고립) 청년 발굴, 전문적 상담 및 정신과적 진료, 상시 모니터링 지원	
권리구제 및 사법지원	인권침해 예방 및 옹호, 진술조력인 및 법률지원, 전문 권리구제 지원	
자산관리지원	금전관리 교육,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청년)정책 접근성 지원	(청년)정책 정보 인지 및 이용 역량 강화, 서비스 접근성 지원	

① 고용지원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직업상담 및 교육, 취업알선, 직무지도 등 고용지원에 대한 정책 욕구가 발달장애 청년과 일반 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경계선지능 청년은 취업진입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개인별 다양한 고용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 대상 고용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도 지원 내용과 접근 수준 등에 있어 욕구에 맞지 않거나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계선 지능청년은 취업을 시도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때 정보 제공 및 단순 취업 알선 중심의 지원이 아닌 일반 청년과 다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개인별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업 및 사회기능에 따라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장애인 고용정책 및 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사 정책대상자로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지원과 기업지원으로 대별하여 세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지원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단계별 취업지원을 제공하며, 현장 배치 후 지원을 통해 취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사업주 지원으로는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근로환경과 편의 조성을 위해 시설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부 제도 및 지원서비스를 경계선지능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고용지원의 욕구를 ‘고용지원필요도 검사’를 통해 판정하는데,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경계선지능청년의 고용지원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는 청년 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기존 정책 및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취업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할 경우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수 있다. 또는 별도의 장려금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사업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 발굴 및 서비스 홍보 등 서비스 접근을 강화해야 하며, 개인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 청년의 기존 청년정책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 주거지원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고용에 대한 정책지원과 함께 주거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 욕구를 나타냈다. 특히 부모 또는 시설로부터 자립한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경계선지능청년이 청년 주거 정책을 인지한 비율(39.4%)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기존 청년 대상 주거 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공공지원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취약계층 청년대상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위해 주택 확보가 시급한 시설보

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청년주거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상품을 설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일부 경계선지능청년은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확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거지원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권리구제 및 사법 지원

연구 전반에서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협소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관계망 안에서 정서적 학대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14.8%) 사기, 성범죄 등에 연루(6.1%)되기도 하였다. 이에 경계선지능청년은 대부분 혼자서 침묵하거나 가족, 지인 등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권리구제가 부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권침해에 노출된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인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옹호하거나 전문적인 옹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계선지능청년의 권리구제는 전문적으로 접근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지원할 지원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영역 내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권리구제 서비스와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정책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④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에서 금전관리에 대한 지원과 미래준비 차원에서 노후 준비 및 자산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경계선지능청년들이 관계형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기회와 경험이 없다보니 온라인을 매개로 하여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기, 착취 등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경계선지능청년들의 자립생활에 있어 금전 및 자산관리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청년정책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관리 지원이 포함된 제도로 재설계할 수 있다.

⑤ 평생교육 지원

경제선지능청년은 일상 및 사회참여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제시되는 과업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청년 시기 본격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학습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는 경제선지능인 발굴, 학력보완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평생교육,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등의 자립지원, 경제선지능인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선지능청년은 집중적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청년이 보편적인 평생교육 차원의 생애주기별 학습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몇 개 지자체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확대가 예상되지만 온전히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우려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경제선지능청년의 평생교육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센터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⑥ 정신건강 지원

경제선지능청년은 일상에서 높은 우울 수준을 나타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한 비율(31.5%)과 최근 1년 내 자살을 생각한 비율(27.6%)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적어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 등에서 매우 낮은 자기 효능감(그렇지 않음+매우 그렇지 않음 90.0%)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은둔형 고립 경제선지능청년의 비율(8.6%)이 일반청년보다 8배 이상 높게 나타나 심각한 고립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왔거나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 또는 자신에 대해 수시 상담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선지능청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신적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과주치의제도’ 혹은 ‘전담 상담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청년센터 등에서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은둔형(고립) 경제선지능청년을 발굴하고, 주치의 혹은 상담사를 지정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진료 및 상담 개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⑦ 관계망 지원

연구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의 관계망은 매우 협소하였다.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19.8%)이 일반청년(18.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종료)청년의 경우 해당 비율이 37.1%로 나타나 신뢰에 기초한 관계망 형성이 매우 원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의 경우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가족’이라고 응답(60.8%)해 사회 참여에 의한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가 있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의 관계 형성 및 교류 특성을 고려한 관계망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또래 등 사람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다수 겪어오면서 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역할 기대를 향상시키고, 자신을 옹호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정책 등에서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동료지지자(가칭) 양성 및 동료상담(경계선지능청년 간의 동료지지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옹호자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 지원서비스를 신설할 수 있다.

표 VII-32. 주요 지원 영역별 제도 재설계 및 신설

지원영역		지원 내용
제도 재설계	고용지원	- 개인별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필요 - (장애인복지정책)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부 제도 및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청년정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취업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할 경우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재설계 또는 별도의 장려금 설계 - (청년정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사업 별도 신설
	주거지원	- (청년정책) 청년 대상 주거 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공공지원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취약계층 청년대상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물량 할당 고려 : 단기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위해 주택 확보가 시급한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도

지원영역	지원 내용
	- (청년정책) ‘청년주거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상품을 설계하여 지원 - (청년정책)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확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비스 마련(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거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주거지원 모델 마련)
권리구제 및 사법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의 권리구제는 전문적으로 접근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지원할 지원인력 배치 필요 -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권리구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정책대상자 확대 필요 - (장애인, 아동 권리구제정책)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정책대상자 확대 필요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대상자 확대 고려 - (청년정책)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청년희망기금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관리 지원이 포함된 제도로 재설계 필요
제도 신설	평생교육 지원 -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경계선지능청년의 평생교육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에 근거하여 전국 평생교육센터가 확대 필요
	정신건강 지원 - 은둔형(고립) 청년 발굴, 정신적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과주치의제도’ 혹은 ‘전담 상담사제도’ 신설
	관계망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 동료지지자(가칭) 양성 및 동료상담 -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서비스 지원

(4)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환경 조성

최근 학령기 대상의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정도가 시작되었을 뿐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공식적 진단체계 및 정책 지원이 부재하고, 당사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 학업, 취업, 결혼 등에서 차별을 경험(3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필요한 개인별 정책지원 외에도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지역 내 경계선지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경계선지능청년과 가족도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정책지원에 대한 옹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청년정책에서 경계선청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구체적으로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청년정책 리더러시 및 접근성 강화, 청년센터 기능 재정립, 경계선 지능청년을 위한 제도 재설계 및 신설 등이다.

(1) 법적 기반 강화

전술하였듯이 우선적으로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에서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계선 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는 반드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청년 지원에 대해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계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VII-33.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추진과제	주요 개정 내용
청년기본법 개정	- 「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명시,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계선 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 진행 필요 -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계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

(2) 청년정책 리더러시 및 접근성 강화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의 청년 정책의 인지 및 이용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지 비율: 29.0%, 이용 비율: 32.5%).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함’(42.9%),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름’(19.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 리더러시 강화를 위해 대상을 타겟화하여 전략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며,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정책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 또는 기존 플랫폼에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예: 청년센터 등)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정보제공 등을 조력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II-34. 청년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	주요 내용
청년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정기적인 정책 홍보 필요 -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정책 플랫폼’ 구축 - 청년관련 기관(예: 청년센터 등)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정보제공 등을 조력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

(3) 청년센터의 기능 재정립: 정책소외청년 지원 강화

경계선지능청년은 개인별로 지원 욕구와 자립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전술하였듯이 생애주기별 필요한 정보 및 학습 제공 등의 수준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접근이 필요한 청년까지 다양한 지원 욕구를 나타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곳이 필요하다.

지역 내 청년센터를 경계선지능청년의 사례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상호 교류,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각 지역별 청년에 대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 청년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국 18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 주거안정 지원, 문화 및 참여지원, 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이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는 심리적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청년센터의 개소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계선지능청년 등 정책 소외 및 위기 청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지원 및 연계 등에 주력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를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사례

관리 기관으로 고려할 경우 집중적인 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사회복지관 등)과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관이 경계선지능청년의 전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청년기 집중 지원을 위해 청년센터와 적극 협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센터에서는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지역 내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관 등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Ⅶ-35. 청년센터 기능 재정립

구분	주요 내용
청소년센터 기능 재정립 : 정책소외 청년 지원 강화	- 전국 185개소(2021년 기준) 설치 - 취업 및 창업 지원, 주거안정 지원, 문화 및 사회 참여 지원, 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청년기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확보 -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는 심리적 이용 접근성 강점 - 경계선지능청년 등 정책 소외 및 위기 청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지원 및 연계 등에 주력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인력 배치 필요 - 집중적인 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사회복지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필요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후 경계선지능청년의 서비스 진입 창구(gateway)를 청년센터로 하고, 전문 사례기관(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청년정책 외 타 정책 및 서비스 기관과 협업하는 구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청년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정책소외 청년 대상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 인프라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가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소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종사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은 청년센터를 통해 기본적으로 청년기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기본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조금 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청년의 경우 청년센터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모니터링 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청년센터는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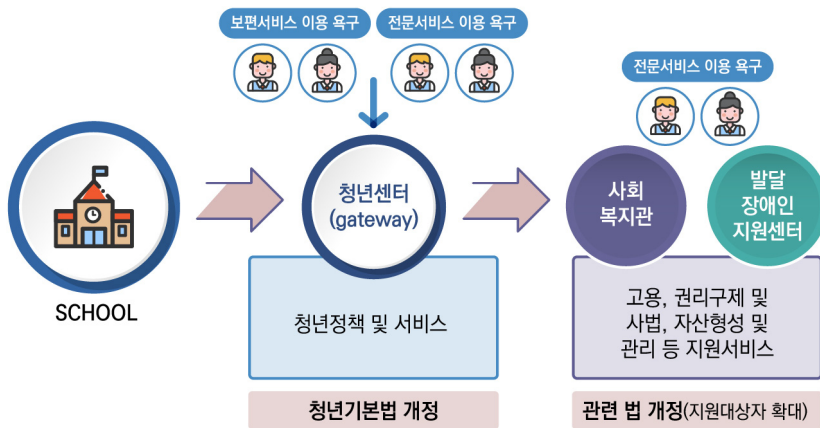


그림 VII-2.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4)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제도 재설계 및 신설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지원은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별 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필요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주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 주거, 권리구제, 금전 및 자산관리, 정신건강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중 청년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 지원을 위해 고용, 주거, 금전 및 자산관리, 정신건강 지원 영역에서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필요 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지원 영역과 관련해서는 경계선지능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기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체가 경계선지능청년을 고용했을 때 장려금을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것을 설계할 수 있다. 또는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사업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다.

주거지원 영역과 관련해서는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공공지원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취약계층 청년대상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도해볼 수 있다. ‘청년주거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저리 대출상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 경계선지능청년은 자립 생활을 위한 주택확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산 형성 및 관리 영역과 관련해서는 근로를 하고 있어도 과도한 채무, 사기, 경제적 편취 등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금전관리 교육 및 상담, 자산형성 등의 기능이 혼합된 패키지 서비스를 신설할 수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대부분 예금 및 대출 기능만을 포함하고 있어 금전 및 자산관리 욕구가 있는 청년의 경우 미래 준비 차원에서도 교육, 상담, 권리구제 등의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지원 영역과 관련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주치의 제도’ 또는 ‘전담상담사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 기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등의 바우처를 확대하되, 은둔형(고립)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정신과적 질환이나 심각한 심리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전담 의사 또는 상담사를 배치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계형성 지원 영역과 관련해서는 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두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의 관계 주도성과 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역할 기대와 자신을 옹호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정책 등에서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동료지지자(가칭) 양성 및 동료상담(경계선지능청년 간의 동료지지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옹호자를 연결 시켜주기 위해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 지원서비스를 신설할 수 있다.

표 VII-36.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재설계 및 신설

추진과제	주요 지원 요구	주요 내용
청년정책 재설계 및 신설	고용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 고용 시 지원 금액 차등화 또는 별도의 장려금 설계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사업 별도 신설
	주거지원	-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공공지원 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취약계층 청년대상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 또는 일정 물량 할당 고려 : 우선 자립생활을 위해 주택 확보가 시급한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 적용 - '청년주거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 저리 대출상품 설계 -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비스 마련(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거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주거지원 모델 마련)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관리 지원이 포함된 제도로 재설계 필요
	정신건강 지원	- 은둔형(고립) 청년 발굴 - 정신적 건강을 집중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과주치의제도' 혹은 '전담 상담사제도' 신설
	관계망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 동료지지자(가칭) 양성 및 동료상담(경계선지능청년 간의 동료 지지와 상담) -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서비스 지원



제8장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방향

- 1. 제안배경
- 2. 추진방향

1. 제언배경

이 연구는 정책소외계층 청년을 “①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 이행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② 공공정책(지원제도)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③ 당사자를 포함하여 미시환경 영역에서 자원, 정보, 기회가 제한(결핍)되어 있거나 거시환경 영역에서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④ 비자발적인 사유로 배제되거나 제도의 지원 대상에 효과적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청년 또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인 정책 용어로 ‘취약계층청년’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에서 취약청년으로 식별되지 않는 청년, 동일 문제와 욕구가 있어도 해당 제도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에 포섭되지 않는 청년, 일반적인 이행기 발달 과업의 표준에서 이탈하여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문제를 ‘정책소외’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정책소외청년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이들이 취약계층청년 정책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이 연구의 1차년도 협동연구 주제인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북한배경청년, 청소년부모, 경계선지능청년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각각의 소외청년 유형과 일반 청년 대비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과 정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후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수단을 모색하였다.

1차년도 연구결과, 소외청년은 청년기의 보편적 문제이자 발달과업인 이행(transition) 과정에서 모든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인 대처기제가 매우 취약하였다. 또한 이들은 아동·청소년기에 다양한 상황적 위기(situational risk)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귀속지위 자체의 취약성으로 인해 다양한 불리(disadvantage)와 기회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면서 탈표준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하면서 은둔, 고립상태로

39)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해외사례는 김무현 박사(University of Washington)가 집필한 원고를 요약한 것이다.

진전하거나 성인기에 만성적인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빈곤, 장애, 이주배경, 장기간의 시설생활 등 아동·청소년에 누적된 결핍과 기존 제도의 부실은 청년기의 저학력, 비숙련, 제한적 사회활동, 한시적이거나 위험직종 일자리 종사, 취약주거 등 다면적인 빈곤,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년기까지 이어진 취약성이 성인기 이후의 삶 전반에 고착되지 않도록 권리관점에서 집중 지원하되, 이행기 관점을 벗어나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세부사업까지 세심한 설계와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청년정책의 당위성임을 전제로 하였다.

한편, 1차년도 조사결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동년배 일반 청년과 비교할 때 교육, 고용, 정신건강 전반에서 취약성과 격차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대학 진학률이 낮고 대학 진학 이후 생계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졸업 유예 비율이 높으며 안전하지 않은 단기 일자리에 여러 개 동시 종사하거나 제한적 사회활동, 자살시도 등 다면적인 취약성과 함께 은둔, 고립 위기 비율도 높았다. 두 번째로 북한배경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더욱 소극적이고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훈련 경험 비율은 더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고, 주거불안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심리·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였다. 세 번째로 청소년부모는 일반적인 취약청년의 특성과 함께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교육, 고용, 주거, 의료서비스 이용 전반에서 박탈 및 결핍 정도가 매우 높았는데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한 경험이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으나 제반 여건이 부실하여 양육지원을 병행한 교육지원 등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은 일반 청년과 비교할 때 취업 직종이 제한적이고 비정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 이외 대인관계가 지엽적이며 고립 상태에 놓인 경우도 많았다. 반면 관계형성과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고 진로, 훈련 및 고용 관련 지원 욕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일반 청년과의 격차와 정도를 토대로 소외청년들의 보편적인 문제와 욕구는 청년정책 주요 영역별 추진과제로 제안하였고, 각각의 소외유형별 실태를 근거로 사회정책 개선과제로 제안하였다. 1차년도 소외청년 유형별 실태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그림 VIII-1이다.

소외청년 유형	소외 실태(일반 청년 대비 격차)	정책적 시사점
시설되소 자립준비 청년 (1차년)	• 낮은 대학 진학률, 대학 미진학자의 높은 진학 희망 비율 • 높은 대학 졸업 유예 경험(학비·생활비 조달 ※ 일반청년은 취업준비 사유) • 짧은 근로시간(다수 시간제 일자리 종사), 낮은 실업급여 수혜율, 낮은 제도인 지출, 높은 부당노동행위 피해 경험 • 부채(채무) 경험, 제한적 사회활동(고립감), 부정적 생애 사건 경험, 자살 시도, 높은 청년지원서비스 수요 등	• 시설되소청년 지원 제도화 • 시설되소청년 데이터 구축 : 지자체 역할 및 책무 강화 • 시설되소청년 자립전담인력 확충 • 청년사업의 신청주의 방식 보완 • 대학진학 및 학비·생활비 지원 우대 • 부당노동행위 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 • 주거안정 기반 자산형성 통합지원 • 사회활동 및 공동체 활동 참여 강화 • 자립전담기관과 청년센터 간 협업
북한배경 청년	• 일반 청년 대비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 • 직업훈련 경험은 높고 도움정도는 낮음 • 높은 비경제활동 비중, 취업자의 불안정 고용환경, 높은 플랫폼 노동 경험, 다수 일자리에 동시 종사 • 주거불안, 높은 물질적 박탈감 • 높은 수준의 심리·정서 고립감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대상에 제3국출생청년 포함 등 기존 정책 재설계 • 지원체계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임신·출산 관련 정보 소외 해소 • 교육비 지원 확대, 현장성 있는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주거지원 등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 직업훈련·교육 지원 확대
청소년 부모	• 주거불안, 경제적 빈곤 상태 •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치료 중단 경험이 높고, 높은 우울 정도,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사건 경험 •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등 낮은 고용 안정성, 부채 및 물질적 박탈 경험, •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학업 포기,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취득 희망	•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관련 제도개선 • 출산지원정책, 심리지원서비스정책의 확대 강화 • 현행 공적 지원제도(대상, 자격요건)제도 개선 • 학업과 양육 병행 가능한 지원 방안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아닌 청년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법적기반 재정비
경계선 지능 청년	• 열악한 주거 환경, 일반 청년 대비 심리·정서문제, 삶 만족도 매우 취약 • 취업자 중 낮은 정규직 비율(플랫폼 노동 종사 비율 높고, 취업 직종 제한) • 높은 고립 경험, 가족 외 대인관계 형성 제한적(높은 욕구, 인권침해(괴롭힘 등) 피해 경험 높음 • 진로, 훈련, 고용 관련 지원 욕구 매우 높음	•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적근거 마련 • '심하지 않은 장애인' 범위 포함: 장애인복지법 개정 • 생애주기별 지원, 사례관리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자산관리지원, 권익옹호 • 지역 내 유관기관(청년센터 포함) 네트워크 구축

그림 Ⅷ-1. 소외청년 유형별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책소외청년 지원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하였는데(n=50),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안 시 전문가들이 평정한 각 과제의 상대적인 중요도(당위성, 시급성)를 반영하였다.⁴⁰⁾ 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책 및 사업 간 연계 강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평정하였고(영역1), 각 영역별 정책과제 중에서는 ‘소외청년 아웃리치 및 지원 강화’ 즉, 집중지원 대상 청년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영역2-1). 여기에는 집중지원이 필요한 소외청년을 찾아내는 아웃리치 방식을 포함하여, 기존의 대상자 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 이들 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포함한다(영역2-2-1, 영역2-2-2).

이와 함께 정책과제별 세부과제(12개) 단위에서 전문가들은 ‘소외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영역1-1-1)’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정하였다. 이 부분은 중앙 및 지역, 민간 간 연계체계구축을 포함하여 소외청년의 식별 및 실태 분석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컨트롤타워(중앙지원기관) 기능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집중지원 대상 선정 및 발굴 강화(영역 2-2-1)’, ‘자립지원 제도 및 사업 연계 강화(영역 3-1-2)’인데 여기에는 기존의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에서 제각각 운영하던 (시설퇴소, 보호종료)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다다름사업 등 자립지원제도와 사업을 ‘초기청년’ 관점에서 연계성, 통합성을 강화하고 분절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 ‘개별정책기반 소외청년 (통합)지원 강화(영역 2-2-2)’, ‘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영역 3-1-1), 지역사회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영역 3-2-1)’ 등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로 확인되었다. 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에서는 아동·청소년기는 역량개발, 청년기는 독립시민과 같이 정책목표는 명확히 하되, 연령을 명확히 구분하기 보다 문제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 정보에 대한 공유와 협업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에서는 청년센터가 소외청년의 포착하는 공간으로서의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의 재정립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VIII-1).

40) AHP 분석 절차에 따라 1차 의견조사에서 개방형으로 질문한 후 이를 연구자가 여러 번 검독하고 유목화하여 2차 의견조사에서 각 과제의 중요도를 쌍대비교한 결과이다.

표 Ⅷ-1. 정책소외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전문가 의견조사 2차 결과)

영역		정책과제	L	G	세부과제(상대적 우선순위)	L	G	추진전략
1.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0.281	1-1. 소외청년 지원체계 구축	0.609	0.171	1-1-1. 소외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1)	0.791	0.135	제도 조정
					1-1-2. 청년 참여기구의 심의·의결기능 강화	0.209	0.036	사회 통합
		1-2. 게이트웨이 기능 구축	0.391	0.110	1-2-1.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0.419	0.046	제도 조정
					1-2-2. 청년센터의 게이트웨이 기능 마련	0.581	0.064	사회 통합
2. 소외청년 발굴 강화	0.354	2-1. 보편적 청년지원제도 확충	0.341	0.121	2-1-1. 보편적 지원제도기반 소외청년 발굴 강화	0.572	0.069	사회 통합
					2-1-2. 소외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사업 규정 정비	0.428	0.052	제도 조정
		2-2. 소외청년 아웃리치 및 지원 강화	0.659	0.233	2-2-1. 집중지원 대상 선정 및 발굴 강화(2)	0.543	0.126	대상 특화
					2-2-2. 개별정책기반 소외청년 지원 강화(4)	0.457	0.106	사회 통합
3. 정책 및 사업 간 연계 강화	0.366	3-1. 수요자 중심 사업 연계 기반 강화	0.604	0.221	3-1-1. 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5)	0.455	0.101	사회 통합
					3-1-2. 자립지원제도 및 사업 연계 강화(3)	0.545	0.120	제도 조정
		3-2. 지자체의 데이터 및 정보망 구축	0.396	0.145	3-2-1. 지역사회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6)	0.580	0.084	제도 조정
					3-2-2. 대상자 중심 데이터 구축	0.420	0.061	대상 특화

* 주: 1) 일부 응답자에게서 일관성이 낮은 응답이 있었으나, 각 항목에서 응답 신뢰성 정도를 의미하는 일치성지수(CI, Consistency Index)가 0.1미만이므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 판단함(n=49).
 2) L은 해당 항목 가중치, G는 상위계층 합의 중위와 하위계층의 값을 합한 가중치로, 상대적 우선순위는 L, G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도출한 것임.
 3) 상대적 우선순위는 중요도(당위성, 시급성)를 기준으로 평정하였고, 세부과제명은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함.

2. 추진방향

1차년도 소외청년 유형별 실태분석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소외청년 지원방향과 주요 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III-2이다. 우선 '모든 청년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정책 추진 비전으로 하여, 정책 추진 목표를 '아동·청소년·청년기에 누적된 삶 영역의 불평등 완화 및 소외 예방'으로 설정하였다(그림 VIII-2).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사회 통합, 대상 특화, 제도 조정 등 크게 세 가지이며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전	모든 청년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개선		
목표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누적된 삶 영역의 불평등 완화 및 소외 예방		
전략	1. 사회통합 : 소외청년 발굴과 격차 완화를 위한 우대 [접근성 제고] 2. 대상특화 : 소외유형을 고려한 도약기회 집중지원 [효과성 제고] 3. 제도조정 : 초기청년기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연계 강화[효율성,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제	법률 제·개정(안) :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청년기본법 개정 • (가칭)청년권익지원법 제정 • (가칭)청년자산형성지원법 제정 • 경제교육지원법 개정 • 청년고용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 시설특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입법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 청소년(한)부모 근거법 일원화 • (가칭)경제선지능인 지원법 제정 • 평생교육법 개정 등 검토	제도개선 : 사각지대 개선 •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선 • 공공데이터 연계기반 소외청년 지원 강화 • 전담인력 확충 및 공공사례관리 강화 • 북한이탈주민 통계 생산 개선 등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경제선지능청년 권익옹호 강화	청년정책 추진과제 : 격차 완화 • 청년센터 기능 확대 및 추진체계 정비 • 교육분야 : 학비지원 개선 등 • 일자리분야 : 근로안전망 강화 등 • 주거분야 : 주거기반 통합지원 등 • 복지,문화분야 : 자산형성이 가능한 기본소득 보장 및 정신건강 지원 • 참여,권리분야 : 권익보장,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활동비 지원) 등 [영역별 개선/신규 사업 추진]

그림 VIII-2. 정책소외청년 지원방향과 추진 과제

1) 추진전략 1(사회통합) : 소외청년 발굴과 격차 완화를 위한 우대

소외청년은 공공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다양한 사유로 자원, 정보,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소외 유형을 식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외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의 지원제도에서 적극적 우대(affirmative action)를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법률을 제·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청년정책을 넘어 사회정책 전반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고, 재분배 관점에서 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사회통합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 기조에서 이탈하거나 소외되는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다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주요 사업 중 소외청년이 진입하기 어려운 규정과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과감하게 개선(환류)하는 미시 조율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청년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전담기관을 포함한 추진체계 정비 및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여 소외청년이 독립된 시민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추진전략 2(대상특화) : 소외유형을 고려한 도약기회 집중지원

소외청년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은 근거기반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청년 세대 내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청년을 식별하고 이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는 공적 개입은 청년기의 취약성이 성인기 이후의 삶 전반에 고착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장래의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한 ‘소외청년(marginalized youth)’의 유형을 특화하여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안전망에 기 포착된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이 청년기에 이르러 공공의 영역에서 사라져 NEET, 고립·은둔 상태로 진전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 결과 취약성이 시설외소청년, 북한배경청년,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장선에서 집중지원 대상을 특화하되, 소외청년을 유형별로 제각각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과 사각지대를 유발하므로 통합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 사례]

- **집중지원 대상 정책소외청년(at-risk youth, opportunity youth, marginalized youth)**
 - 미국은 행정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일반 집단에 비해 열악한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을 강조함(vulnerable youth, at-risk youth, marginalized youth).
 - 경제적 자립지원이 필요한 disconnected youth, opportunity youth는 NEET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원 목표
 - 소외계층 청년 유형 : 사설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가정 밖 청소년과 노숙청년, 소년사법체계 내 청년 및 소년보호시설 출원생, 저소득 이주배경청년, 신체적·정신적 장애청년, 정신건강 문제(mental disorder)를 지닌 청년, 특수교육대상 청년, 빈곤청년, 학업중단청년,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청소년부모) 등

* 출처: White House Council for Community Solutions, 2012; Fernandes-Alcantara, 2020;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4

3) 추진전략 3(제도조정) : 초기청년기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연계 강화

앞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소외청년의 발굴과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⁴¹⁾ UN, WHO 등 공식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youth)의 연령 범위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기준을 사용한다. 다만 ‘African Youth Charter’는 만 35세, ‘Urban Youth Fund’는 만 32세 등 개발도상국(UNDP)의 청년을 지원하는 성격의 기구들은 연령 상한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대상의 특성과 욕구를 토대로 지원 범위(coverage)를 넓게 설정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문제해결과 탈위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법률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을 구분하고 있어 후기청소년기와 초기청년의 연령이 중복되는데, 소외청년은 아동·청소년기를 지난 별도의 인구집단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연령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로, 근로가 가능한 15세 이상 위기 청소년(at-risk youth)이 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18세 청소년부모는 후기청소년이 아닌 초기청년으로 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는 등 유연한 사업 운영과 수요자 관점에서 장기적인 발달 산물(outcomes)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초기청년기 정책사업과 추진체계의 정비를 통해 아동·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단절이 없는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년기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한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부조와 외부 지원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제도 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청년의 연령 하한과 상한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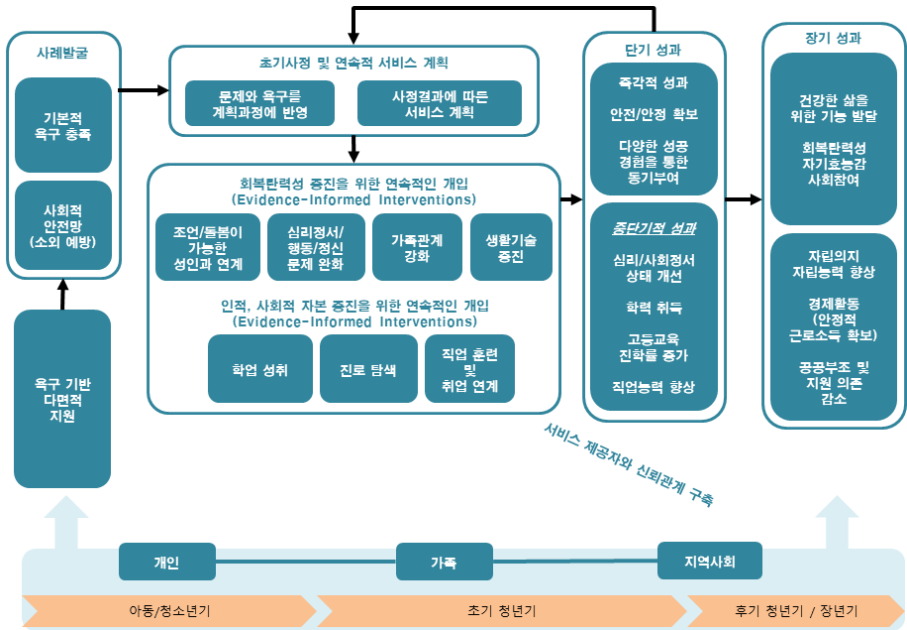


그림 VIII-3. 소외청년의 생애주기 지원 과정(안)



제9장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과제

- 1.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법률 제·개정
- 2. 사회보장 제도개선(안)
: 소외청년 사회통합 강화
- 3.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과제(안)
: 세대 내 격차 완화

1.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법률 제·개정

이 절에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외청년 지원정책의 추진 근거를 강화, 마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률 제·개정(안)과 소외청년 대상별 정책의 근거법과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1) 청년 관련 법률 제·개정

(1) 소외청년 발굴 및 통합지원 근거 마련

① 「청년기본법」 개정

먼저 청년정책의 근거법인 「청년기본법」 상 소외청년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외청년을 발굴하고 교육, 고용, 복지, 주거 등 삶의 핵심영역에서 사각지대와 청년 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과 정책에서 ‘취약청년’을 통용하고 있어 법 조항에서는 취약청년으로 정의하되, 하위법령에 「아동복지법」 제3조 제2항의 보호대상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항 위기청소년,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 완료된 소년, 그 밖에 다른 법률과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소외청년 등 유형과 지원절차를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⁴³⁾

두 번째로, 현행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18세 청소년은 각종 법률을 근거로 혼인, 운전면허 취득, 병역의 의무(대한민국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 편입)를 이행할 뿐 아니라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도 가지게

42)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백해정 선임연구위원, 김미향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43)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소외청년, 취약청년을 혼용하였다.

되어 법적으로 청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외청년들은 10대 중반부터 성인기 이행 과업의 표준에서 이탈한 삶의 궤적을 보임에 따라 법정 청년의 연령을 근로가 가능한 만 15세로 낮춰 청년 주체로서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이는 현행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우선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소외청년 지원정책의 대상 범위(coverage)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⁴⁾

세 번째로, 소외청년의 부채문제는 금융문제보다 빈곤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본자산(기본소득) 마련, 관계자본 등 사회적 자본 형성을 병행하여 금융생활을 특화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그 취지를 별도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청년정책에서 소외청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경우 일선 청년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의 기능 확장과 이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 등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일부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입법례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의무를 이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법률에 기관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단위 보편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취약청년 관련 자료와 정보 처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취약청년 대상 서비스 특성 상 지원 이력을 포함한 정보관리와 타 기관과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동일한 사유로 아동·청소년정책에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한 정보망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생애전반기 정책대상에 대한 단절 없는 연속적인 통합지원을 위해 청년기관(agency)의 취약청년 대상 지원 확대를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목적의 정보망이 가동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표 IX-1).

44) 18세 선거권 추진 이후 청년의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발의일: 2022.3.2.))도 발의된 상태이다.

표 IX-1. 「청년기본법」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 제5호 신설	제3조 제1항~4항 (현행과 동일) 5. “취약청년”이란 교육, 고용, 복지, 주거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제3항에 따른 청년지원 시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필요한 청년을 말한다. 취약청년의 선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제2항 신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의 기본자산 마련 및 채무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경제적 자립과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비용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 2.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에 필요한 비용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참여 확대 또는 지역 간 격차해소 등 청년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	(청년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무총리는 취약청년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운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청년기본법」 (인출일 : 2022년 10월 15일)

② 「(가칭)청년권익지원법」 제정 : 소외청년 발굴 및 권익보장 영역 규정

「청년기본법」 제17조부터 제24조에 걸쳐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자리와 창업, 능력개발, 주거, 복지증진, 금융생활, 문화활동, 국제협력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영역에서 소외청년의 권익까지 통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으나, 소외청년의 경우 ‘발굴’을 전제로 한 적극적 우대와 권리보장이 요구되는바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여기에는 소외청년의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공유의 협조 및 처리, 소외청년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실태점검, 청년정책 주요 영역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외청

년을 위한 별도의 시책 개발과 추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생활에서 일반 청년과 달리 채무(부채)가 많은 금융취약청년의 경우 종자돈 마련을 위한 기본자산 자체가 부채하므로 이를 지원하면서 파산 등 채무와 채무관리를 병행하고 자산형성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제정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 소외청년 통합지원

「청년기본법」 개정 및 소외청년을 포함한 모든 청년의 권익보장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이외에 성인이 이행에 있어 필수 과업인 자산형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소외청년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하여야 한다.

① 「(가칭)청년자산형성지원법」 제정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하는 과정은 청년기 금융생활의 핵심 과업 중 하나 이기에 이미 여러 법률을 근거로 청년기 자산형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청년기본법」과 하위법령에서 소외청년을 고려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거나, 「(가칭)청년권익지원법」 제정 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청년기 금융생활과 관련한 별도 법률의 제정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채무 부담을 가진 소외청년의 상당수가 부채 뿐 아니라 사회관계 자체가 단절되어 있거나 위기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은둔, 고립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자산형성 사업에 어렵게 진입을 하더라도 중도 이탈하는 등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즉, 소외청년의 부채 문제는 금융이 아닌 다면적인 빈곤의 문제로 접근할 때 문제의 원인 해결과 재발 방지 및 주체적인 삶 유지가 가능하므로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관계기반 금융지원’과 같은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이 정부 매칭을 근거로 하는 특정 목적의 자산형성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수요자인 청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 자산형성사업의 운영 근거를 단일 법률에서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제도 간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경제교육지원법」 개정

대국민 경제교육 활성화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경제교육지원법」이 2009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을 근거로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주관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에서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계층과 주민의 범위에 ‘소외청년을 포함한 청년’을 지역사회 내 경제교육 핵심 대상으로 규정하여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X-2. 「경제교육지원법」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제9조(좌동) 4. 소외계층 및 청년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경제교육지원법」 (인출일 : 2022년 10월 15일)

③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취업애로 청년’ 범위 확대 규정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이며, 본 연구의 대상인 소외청년은 동년배 일반 청년에 비해 고용 전반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취업애로 청년’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이에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외청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참여 유도과 취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이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표 IX-3). 특히 실태조사 등을 통해 ‘취업애로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에 그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표 IX-4).

표 IX-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4(좌동) ① 좌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략)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청년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야 한다.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2022년 10월 15일 인출.

표 IX-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으로 청년)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으로 청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학 중인 사람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의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취업으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것 나.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제7조(좌동) ① 좌동 1. 좌동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로아동 4.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퇴원 청년 5.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청년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년 7. 좌동 8. 좌동 9. 좌동 가~다. 좌동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인출일 : 2022년 10월 15일)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개정

동 법률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시행령에서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취약성이 확인된 소외청년의 유형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상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 북한배경청년(제3국 출생청년 포함), 경제선지능청년, 청년부모를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표 IX-5).

표 IX-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현행(요약)	개정(안)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상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상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갱생보호 대상자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다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작동 1~2. 작동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상 장애인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4~5. 작동 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상 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년 7. 작동 8.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상 보호대상자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 부모 9. 작동 10.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상 갱생보호 대상자 및 「소년법」 상 소년원 퇴원 청년 11. 「 아동복지법 」 상 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가정 밖 청소년 11~12. 작동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인출일 : 2022년 10월 15일)

2) 소외청년 유형별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입법 검토

현재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을 근거로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기에 원 가정을 이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생활시설에서 상당기간 생활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일반 청년 대비 삶의 주요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다면적인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본 조사 표본의 청년들은 아동·청소년기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한 ‘중도퇴소아동’에 해당하였고, 노숙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특정 시설 퇴소 여부에 따라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자립지원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심의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취약성에 따라 맞춤형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의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근거로 사회정착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법은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 내 처우를 다루고 있어 출원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출원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소년보호시설 출원자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도 되지 않음에도 ‘출소자’와 동등하게 처우한다는 점에서 낙인의 우려가 매우 크다. 다만 「소년법」 상 보호처분이 소년원 입소와 같은 시설처분 뿐 아니라 수감명령, 보호관찰 등 지역사회 내 처분을 포함하므로 시설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비행의 경계에 있는 소년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별도 법률 제정도 검토할 수 있으나 법률의 소관부처가 법무부라는 점에서 여전히 낙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근거로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실익이 클 것이다. 요약하면 시설퇴소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 뿐 아니라 지원내용의 최소기준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개별 법률을 제각각 개정하거나, 「(가칭)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국적법」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국적법」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반면, 「북한이탈주민법」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되지 않은 채 이중국적 내지 복수국적자를 법정 지원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상황이다. 이에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 북한출생청년에 비해 언어, 정체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국적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한)부모 근거법 일원화 및 후기청년기 지원 강화

본 연구에서 청소년부모는 일반 청년부모 가구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였다. 특히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가 상이한 정책대상이라 볼 근거가 없음에도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무엇보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 소외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이들은 후기청소년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청년'으로 규정하여 청년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적극적인 우대가 필요한 대상이므로 다양한 입법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정책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다소 미흡하므로,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의 대상에 영아보육(만 3세 미만), 장애아 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연장형 보육 이 외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토대로 성인기의 삶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경계선지능인 지원 입법 및 권익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현재 경계선지능청년 뿐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관련법이 부재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지원법(약칭)」과 하위법령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 범주에 포함하여 생계, 주거,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모든 국민과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계선지능인을 규정하거나 현행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 '경계선지능학생'을 포함하므로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 졸업한 경우 그리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청년기의 교육 뿐 아니라 이후 삶 영역의 전반에서 권익보호와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라는 점에서 「(가칭)경계선지능인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표 IX-6).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서 다양한 양상과 욕구를 보였는데 각종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한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대한 규칙’과 대검찰청 예규인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상 ‘정신적 장애’의 범주에 발달장애와 함께 경계선지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표 IX-7). 이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이 범죄의 가·피해 경계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사회적 지원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표 IX-6.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현행(요약)	개정(안)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사람	제17조(좌동) 좌동 1. 좌동 2.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선지능인 또는 제1호에 해당하 니 아니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좌동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인출일 : 2022년 10월 15일)

표 IX-7.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에 처리 지침」 개정

현행(요약)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7조(좌동) ①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 및 경계선지능 또는 그 밖에 경계선지능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에 처리 지침」 (인출일: 2022년 10월 15일)

2. 사회보장 제도개선(안) : 소외청년 사회통합 강화

1)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선 : 소외청년의 새로운 취약계층 편입

앞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취약성이 확인된 소외청년의 유형을 반영하여야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 법률과 하위법령에 따른 ‘취약계층 판단기준’에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취약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소외청년을 지원대상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 범주에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경계선지능인, 북한이탈주민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료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중국적 허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기타에 소년원 출원생으로서 출원 시기와 관계없이 만 34세 이하인 청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근로가 가능한 15세 이상인 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중 만 34세 이하인 청년(만기 및 연장퇴소자, 1년 이상 입소 후 중도퇴소자 포함),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기관의 자립지원 또는 사후관리(사후관리)를 받고 있거나 종료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각각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표 IX-8.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선(안)

취약계층 유형	취약계층 유형 내 추가(안)
저소득자, 고령자 등	변경 없음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등록 장애인이 아니지만,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경계선지능인)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단서(전문의), 확인서(전문의) 등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국적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청소년한부모 포함)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강생보호 대상자	-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강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보호처분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 확인방법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의 지원 확인서
기타 (변경 또는 추가)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및 6개월 이상 장기 실직 청년 - 소년보호시설 출원생(출원 시기와 관계없이 만 34세 이하의 자) - 노숙인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만 15세 이상의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청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중 만 34세 이하의 자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1년 이상 입소 후 중도퇴소자) ※ 확인방법 : 지자체, 자원기관, 시설의 확인서 등 - 아동·청소년복지시설(기관)에서 자립지원, 사후관리(사례관리)를 받고 있거나 지원이 종료된 만 34세 이하의 자 ※ 확인방법 : 지자체, 자원기관, 시설의 확인서 등

* 출처: 저자 작성

2) 공공데이터 연계기반 소외청년 지원 강화 : 신청주의 한계 보완

현재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보 관리와 기관 간 연계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정보시스템이 각각 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의 경우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이 있는 가구를 예측하는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별도 운영중이다. 향후 청년정책에서 19세 이상 청년기에 접어든 이들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취약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병행할 경우 개별 청년의 정보와 서비스 이력,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의 복지자원의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그림 IX-1). 이는 취약청년의 경우 일회성의 단편적 지원보다 사례관리리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적인 지원을 장기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생계, 돌봄, 법률 등 다면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가 가동되고 청년센터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경우 다기관 협력 과정에서 정보망의 활용과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조부모가 위탁보호하는 아동(가정 위탁)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경우 이들이 곧 가족돌봄청년이며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알콜 등 문제가 있는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청년은 19세부터가 아닌, 아동·청소년기에 조기 발굴하여 사회안전망 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립·은둔청년의 경우에도 발굴, 탈고립 지원(관계형성 등 사회기술 습득, 의지 회복 등),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맞춤형 통합 지원과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 연계 등 서비스 이력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이들 사업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외청년의 발굴과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전반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청년센터의 기능 확장 여부를 포함하여 청년정책의 범위와 추진체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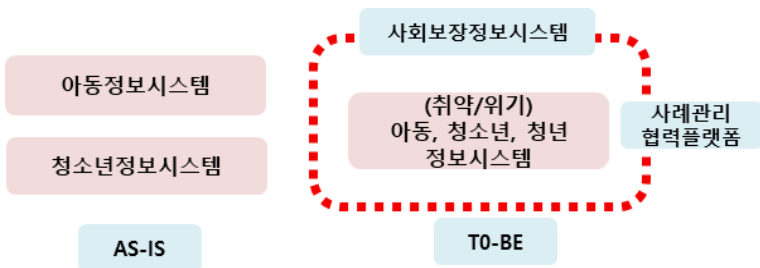


그림 IX-1. 소외청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45)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시설퇴소청년 등에 대한 지원 시 이들의 심리·정서·행동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년정책 추진체계 내 인력의 직무와 역할 범위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별도의 전담인력을 충원하거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전담인력 확충 및 공공사례관리 연계 강화

본 조사 표본의 시설퇴소청년, 청소년부모, 경계선지능청년, 북한배경청년은 일반 청년이 비해 삶의 각 영역에서 격차와 다면적인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단편적인 급여와 서비스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관계기반(relationship-based)의 서비스’가 전제될 때 정책적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현금, 현물급여의 확대에 지역 내 전담인력의 확충이 선결과제라 판단된다.

시설퇴소청년의 경우 주관부처에 따라 광역시·도 또는 지역단위에 지원기관이 제도적 연계 없이 사후관리(사례관리 포함)를 제각각 담당하고 있고,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체계(사업)와의 공식적인 사례의뢰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시설퇴소청년을 포함한 소외청년 가운데 고립·은둔청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지원기관에 전담인력 충원을 확대할 경우 공공-민간, 민간기관 간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소외청년 유형별 전담인력 확충, 광역단위 지원기관 간의 연계,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지원기관과 읍·면·동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체계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정보망을 기반으로 한 협업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외청년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그림 I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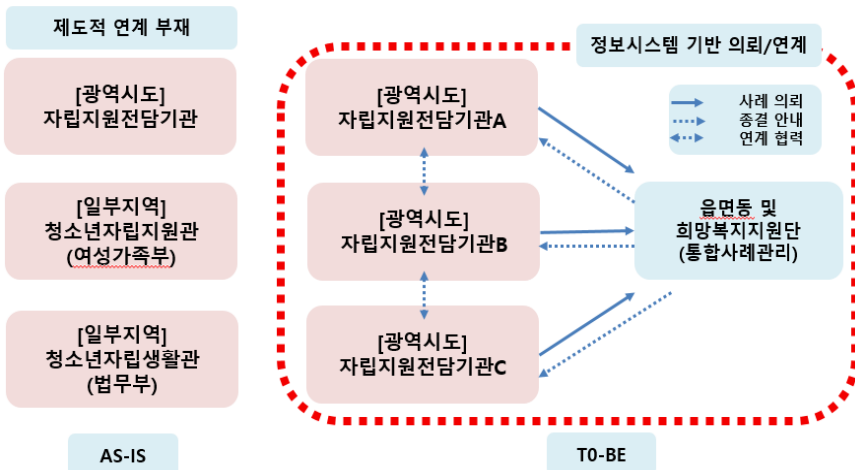


그림 IX-2. 소외청년 사례관리체계 개선방안

4) 북한이탈주민 통계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확대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 생산 시 연령 구분을 10세 단위(10~19세, 20~29세, 30~39세 등)로 하고 있어 청년기의 교육, 취업, 결혼·독립 등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실태 파악을 위한 관련 통계도 부실한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취약청년의 발굴이 가능하도록 북한이탈주민 통계 생산 시 청년기 연령을 세분화하도록 하고(예: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통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통일·북한 관련 예비 청년 창업가, 청년 창업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산하에 ‘Uni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동 센터는 북한배경청년 지원이 아닌 일반 청년의 통일·북한 관련 창업 지원을 중점 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반대로,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기관이나 지역 내 청년센터 공간을 소통, 참여, 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목적의 세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 확대도 검토할 만하다.

[통일·북한 분야 창업지원기관 사례]

- Uni청년창업지원센터(2022.02.15.개소)
 - 통일·북한 관련 예비 창업가, 청년 창업 기업 지원
 - 국내·외 창업지원기관, 민간투자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
 - 통일·북한 분야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 통일·북한 관련 창업 우수사례 발굴 및 청년창업문화 확산
 -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청년 창업지원 사업 중점 추진 등

* 출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 <https://sonosa.or.kr/index.html?menu=13/> 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5) 저소득 ‘자녀양육청년’ 지원 입법과 정책 재설계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 이 외 전제 근로자 대상 경력단절 방지·보호 또는 일·가정 양립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어 자녀양육청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조사 표본에서 저학력, 비숙련 상황의 청소년부모의 약 20%는 주거독립을 희망하지만 주거비를 마련하

지 못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거독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부모와 본인의 소득합산으로 생계나 주거급여에서 탈락되거나 부채 등으로 대출도 불가하여 LH 등 정부 지원 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정부차원의 주거비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자녀가 있어 공유주택이나 공유기숙사 등 청년 친화형 주택 보급사업의 혜택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전반에서 자산조사 시 자녀양육청년의 경우 세대 분리를 인정하고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에서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실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간 ‘청소년부모’는 청소년정책, ‘청소년한부모’는 가족정책 지원대상으로 접근하였는데 지원 연령의 상한(24세) 문제, 명칭의 낙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19세 이상 ‘자녀양육청년’은 청년정책을 기반으로 청년기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운 취약청년의 발굴·지원을 강화하되, 18세 이하의 부모는 국제기준 상 당사자 역시 아동이라는 점에서 아동인권 관점에서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논의를 토대로 정책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새로운 취약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제도 신설

경계선지능청년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삶 영역 전반에서 복합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학력취득, 경제활동, 독립주거 등 성인기의 핵심과업 수행 시 비장애청년에 비해 분명하고 명확한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경계선지능의 문제는 청년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한 권리보장이 가능하도록 ‘경계선지능인’ 지원 입법을 토대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향후 초·중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경계선지능인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등학교 졸업 이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으로서 관련 제도를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와 연계 방안도 병행 모색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발달장애인 대상 재산관리지원(신탁제도), 무료법률 구조제도 등 권리구제 목적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새로운 취약청년으로 명명하여 개념 정립,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지원제도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대상 확대]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신탁제도) 지원 대상 확대**
 -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및 삶의 질 보장 등을 위한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 실시
 -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재산을 관리·지급(수탁자, 공공기관)
 - 욕구·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신탁자금을 계획대로 사용하도록 지원(지원기관, 장애인 단체 등)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22년 현재 발달장애인 120명 대상)
 - **등록 장애인 대상 무료법률 구조제도 지원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대상 변호사 비용 지원
-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후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3.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과제(안) : 세대 내 격차 완화

이 부분에서는 1차년도 협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소외청년의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센터의 게이트웨이 기능 확대 및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성과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분야 등 청년정책 주요 영역별 세부사업 단위에서 소외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1) 기반구축 : 청년센터 기능 확대와 추진체계 정비

지자체의 조례 등을 근거로 기초단위에 청년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법률 상 근거가 미흡하고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연결망도 부실한 상황이다. 청년센터가 청년정책의 일선 추진기구로서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살려 지역 내 소외청년 발굴의 게이트웨이(gate way) 기능을 강화할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센터의 기능과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전국단위의 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외청년들은 문제나 서비스 욕구가 복합적이므로 여러 기관(agency)이 동시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 관련 인프라의 유무와 유관 기관간의 연계망 여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청년센터가 공간이 가지는 장점을 살려 지역 내 소외청년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능을 확장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기관 연계 플랫폼으로서 정보망의 구축과 활용, 필수사무의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배치,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IX-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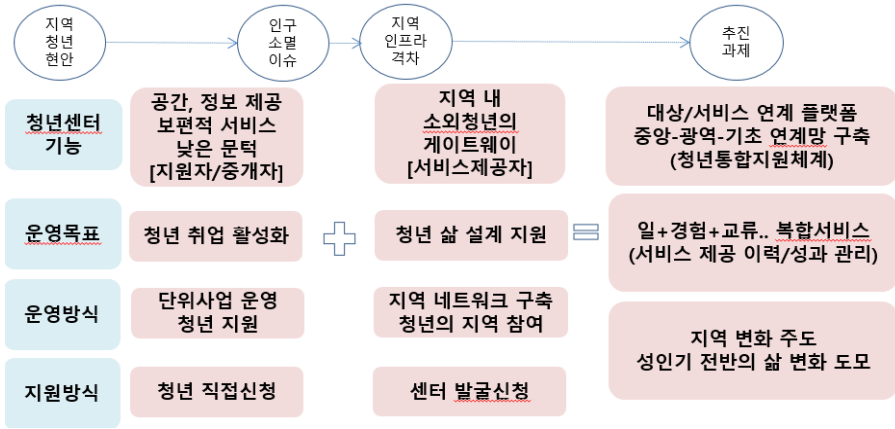


그림 IX-3. 청년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추진과제

2) 교육분야 추진과제 : 대학 학비지원 및 평생교육 강화

(1) 학비 지원제도 개선

① 추진근거

현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는 학점의 경우 최저 하한을 두고 있고, 등록금 지원액은 상한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전공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 장학금 주요 내용]

• 국가 장학금 I 유형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나 저소득(1~3구간)층에 한 해 C학점 경고제(C학점 2회 하용) 운영,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700만 원(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 국가 근로 장학금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최대 근로시간 학기당 520시간
- 지원 금액: 시간당 9,160원~11,150원

*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04_01&ttab1=0에서 2022년 9월 16일 인출.

본 조사 표본에서 소외청년들은 등록금(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이 외 교재비, 임대료,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일-학습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학점관리에 실패해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년배 일반 청년의 경우 취업준비가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주된 사유인 반면, 시설퇴소청년, 북한배경청년 등은 생활비 마련

등 주로 경제적인 사유로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46)에 따르면 ‘북한이탈청년’에게는 대학등록금 지원이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의학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졸업 전 4학기까지만 휴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한 학기만 명시하고 있다.

☞ [연구 결과]

- 시설외소청년 대학 졸업 유예 경험 11.5%, 그 이유 중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30.6%
 - 해당 문항에 대한 '21년 일반 청년 응답률은 각각 9.5%, 15%
- 북한배경청년 교육 대책 중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학비 지원(41.4%)

② 추진내용

본 연구의 조사 표본에서 소외청년들은 대체로 대학 진학 희망 정도는 높은 반면 동년배 일반 청년에 비해 대학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학 진학자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졸업을 유예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진학 지원과 원하지 않는 졸업 유예를 하지 않도록 국가 장학금 및 국가 근로장학금 제도에서 학점 및 지원액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국가장학제도 관련 개선 사항 제언]

- 국가 장학금 I 유형 제도 보완
 - 소외청년들의 학점 기준 완화((현행) 80점, C학점 경고제 → (개선안) 70점, C학점 경고제 폐지)
 - 시설외소청년 대상 등록금 전액 지원 및 국공립 대학 등록금 면제
 - ※ 현행 기준: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의 서열 둘째: 전액 지원
북한출생 탈북민 자녀: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 국가근로장학금 제도 보완
 - 우선선발 대상 확대: (현행)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 (개선안)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 쉼터 및 자립지원관 등) 퇴소 청년 포함.
 - 시설외소청년들은 지원을 위한 소득심사에서 원가정(부모) 소득·재산 산정 제한

또한 북한배경청년의 대학등록금 지원 기간 및 횟수 기준에서 국가장학금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 기간을 삭제하도록 하고, 총 지원 학기(횟수)만을 명시하는 등 대상 특화 전략의 일환으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 [북한배경청년 대학등록금 지원 개선 사항 제언]

- 대학등록금 지원기간 삭제
 - (현행)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의학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까지) → (개선안) 8학기까지(의학계통은 12학기까지)

46)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22&lsiSeq=243291#0000>에서 2022년 10월 6일 인출.

(2)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확대

① 추진근거

현재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기준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의 자산(부모 소득)조회를 전제로 하여,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소외청년의 상당수가 부모 등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가구원의 정보제공 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② 추진내용

현행 교육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 이수 여부는 이후의 삶 전반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 취약성이 확인된 소외청년의 유형을 새로운 취약청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지원을 위한 소득심사에서 원 가정 자산(부모 소득) 조사를 제외하거나 특별 승인 횟수를 높이는 등 학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학자금 대출지원 제도 관련 개선 사항 제언]

- 소외청년(시설외소청년, 청소년부모 등) 지원을 위한 소득심사에서 원 가정(부모) 소득·재산 산정 제외
 - ※ 현행 기준: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반드시 필요
 - ※ 확인 방법: 시설외소청년, 청소년부모 등 소외청년의 경우 지원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증대
 - (현행) 성적 기준 2회, 성적 외 기준 1회 → (개선안) 성적 기준 3회, 성적 외 기준 2회
 - ※ 특별승인: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3) 탈북청년 디딤돌대학 운영 방식의 개선

① 추진근거

현재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 및 학습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디딤돌(예비)대학 과정은 수도권⁴⁷⁾을 중심으로 소수 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47) 남북하나재단 담당자와 전화면담(‘22.10.6)에 따르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탈북 대학생들이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 및 단체인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재 탈북대학생 5명 미만 기관은 선정이 불가능(출처: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home/kor/board.do?act=detail&idx=16581&searchKeyvord=%EB%94%94%EB%94%A4%EB%8F%8C%EB%8C%80%ED%95%99&menuPos=47&searchValue1=0>에서 2022년 10월 6일 인출)하므로 탈북대학생이 적은 비수도권 대학 및 단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디딤돌(예비)대학 현황]

- 대상: 탈북대학생
 - 참여 대학 및 인원
 - '21년 6개 대학 240명.
 - '22년 10월 현재 6개 단체(5개 대학, 1개 비영리민간단체) 140명 지원*
- * 출처: 남북하나재단 담당자와 전화면담 결과('22.10.6)

② 추진내용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서비스 확대, 거주 지역에 구애받지 않도록 온라인 운영방식 도입, 대상자 중심 프로그램 제공 등 운영 방식을 다변화하여 접근성,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디딤돌(예비)대학 관련 개선 사항 제언]

- 접근성 제고
 -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온라인 및 오프라인 디딤돌대학 과정을 함께 운영
 - (소규모 집단의 신청 기회 확대) 2개 이상 대학(비영리민간단체) 연합 신청 가능
 - (질적 수준 강화) 핵심 과정 및 공개강좌 콘텐츠 확대
 - (지원대상 확대) 온라인 과정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예비 대학생)도 포함
- 효율성 제고:
 - 필수과정과 전공별(인문계, 이공계, 기타 특수계열(예: 간호계열) 등) 특성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
 - 상담기능은 각 대학에 일임,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핵심 및 교육 프로그램 집중

(4) 평생교육기반 자립 및 실생활 교육 강화

① 추진근거

본 연구의 조사 표본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소외청년의 경우 독립주거 등 실생활 영역에서 학습과 지원 욕구가 매우 높았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경계선지능인 발굴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사례]

- 근거: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
- 주요 업무: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533133&chrClsCd=010202&gubun=KLAW&nwYn=Y&conDatGubunCd=0>에서 2022년 10월 6일 인출.

② 추진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계선지능인 관련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평생교육법」제 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경계선지능인과 소외청년의 자립 및 실생활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보장법」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소외청년의 맞춤형 청년기 자립 및 실생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3) 일자리분야 추진과제 : 취업애로청년 대상 범위 확대

(1) 부당노동행위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① 추진근거

본 조사 표본에서 소외청년들은 플랫폼 노동 경험률과 근로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일반 청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 [연구 결과]

- **시설외소청년 부당노동행위경험**
 - 욕설·폭력 경험 14%, 권리·요구 무시 13.7%, 성적 수치심 7.2%
 - 근로 중 건강·부상 문제 발생 24.7%, 위험한 근로환경 노출 15.9%, 산업재해보험 급여 5.3% 등
- **시설외소청년 플랫폼 노동 경험률 12%**
 - 해당 문항에 대한 '21년 일반 청년 응답률 3.8%

② 추진내용

소외청년들이 종사하는 주요 직종(예: 플랫폼 노동, 서비스·판매직 등)을 중심으로 근로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피해구제를 위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지원 대상에 소외청년을 포함하고, 소외청년 대상 근로실태 조사 시 근로권익 침해사례 확인, 정기·수시 근로감독 강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지원대상 확대]

- 소외청년 근로 실태조사 실시
- 소외청년 주요 근로 직종에서의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 강화
- 악의적·반복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노동행위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 소외청년근로권익 강화
 - (현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지원대상 확대: 만 15~24세 및 대학생 근로자 → (개선) 34세 이하 소외청년 포함 (시설외소청년, 청년부모, 북한배경청년, 경계선지능청년 포함)

(2) ‘취업애로 청년’ 대상 범위 확대

① 추진근거

현재 청년고용 지원 확대를 위해 ‘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취업애로 청년에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이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취업 관련 취약성을 명확하게 확인된 경계선지능청년 등 다른 소외청년의 유형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다. 특히 경계선지능청년은 노동시장 진입 뿐 아니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순 취업정보 제공이나 알선과 같은 지원보다 장애인에 준하여 개인별 고용 및 유지지원이 함께 제공될 때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창출장려금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현행 취업취약계층 기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기업에 장려금 지급

※ 현행 취업애로청년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또는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도 가능.

* 출처: 고용노동부(2022). 고용장려금지원제도.

또한 원 가정의 지원이 없는 청소년부모는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저학력, 경력 단절, 노동시장 재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 부담으로 고용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였다. 그러나 현행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에 청소년부모가 제외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 청소년부모의 일 경험

- 외벌이 78.2%, 그 중 비정규직 비율 53.3%, 시간제 근로 비율 53.3%

- 전일 근로가 어려운 이유: 육아나 자녀 교육 때문 62.5%

② 추진내용

소외청년 고용 시 고용 장려금 지원, 지원 금액 차등화 등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지원필요도 검사’를 통해

고용지원대상 여부를 판정⁴⁸⁾하고 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애 미등록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본인 희망 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고용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

☞ [취업애로 청년 대상 확대 및 고용지원필요도 검사 기회 제공]

- **취업애로청년 대상 확대**
 - (현행) 보호종료아동 → (개선안) 소외청년(시설퇴소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부모, 북한배경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등)
-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
 - (현행) 중증 장애인 → (개선안) 고용지원대상자(고용지원필요도 검사에 의해 판별)
 - (개선안)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확인서 제출 시 고용지원필요도 검사 제공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부모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개선]

-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개선**
 - (현행) 취업·한부모·맞벌이·다자녀·장애인 가정 → (개선안) 청소년부모(19세 이상 자녀양육청년) 포함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기준 개선**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맞벌이(취업준비)·다가구 가정 자녀, 임산부 자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등 → (개선안) 청소년부모(19세 이상 자녀양육청년) 포함

(3) 취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제도 보완

① 추진근거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근로하는 소외청년들의 경우 직업 교육과 훈련지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근로가 어렵고, 참여수당만으로는 생계를 꾸려가기에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부실한 청소년부모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의 교육 지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원 뿐 아니라 자녀 돌봄 지원이 패키지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 [연구 결과]

- **직업교육/훈련지원 참가 희망 또는 계획 여부**
 - 시설퇴소청년 17.8%(고졸 이하에서는 21.9%)
 - 북한배경청년 64.2%
- **청소년부모의 경우 교육 및 훈련 참여는 자녀돌봄지원이 있어야 가능**

4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ead1/222394105782>에서 2022년 10월 6일 인출.

[주요 훈련수당 지원 현황]

- **국민취업지원제도**
 -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I 유형), 또는 취업활동비용 월 28.4만 원(II 유형) 지급 등
 - 구직촉진수당은 해당기간 중 참여자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300~500만 원 외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 원 지급 가능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훈련참여수당 12개월 간 월 최대 28.4만 원, 이후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월30만 원 지급 가능

* 출처: HRD-Net 홈페이지. <https://www.hrd.go.kr/hrdp/gi/pgiao/PGIAO0300D.do>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특히 본 조사 표본에서 소외청년들 중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부족하거나 강사의 자질 부족, 지원 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어, 사업 추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원 절차의 복잡성은 그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소외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담인력 배치 및 활용, ‘쉬운말 버전’ 등 타겟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

② 추진내용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취업훈련 프로그램 개선 사항 제언]

- **훈련 프로그램 참가수당 현실화**
 - 최소 생계급여 수준(1인 583,444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성실한 참여자의 경우 추가 장려금 지급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
 - (현행) 저소득층 장애인 → (개선안) 저소득층 장애인 및 **유사 대상(경계선지능인 등)**
- **정보 안내 및 신청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을 ‘쉬운 말 버전’, ‘동영상 버전’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정보 안내 및 참여 신청 시 지원서비스 제공(신청주의 한계 보완)
- **자녀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 자녀 돌봄 우선 지원 대상에 **청소년부모(자녀양육청년)** 포함

4) 주거분야 추진과제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도화 및 지원주택 확충

(1) 청년 주거지원 시 소외청년 우대

① 추진근거

본 조사 표본에서 학교나 직장 문제 등으로 독립이 필요하지만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으로 부득이하게 부모와 동거하거나 취약주거 상태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소외청년들은 주택 선정과 계약 뿐 아니라 이사비용,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초기 비용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다.

☞ [연구 결과]

• 소외청년 면접조사 결과

- 독립 주거지가 절실하나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초기 주거환경 조성비 등 주거비용 마련은 큰 부담
-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입주한 거주지 상황은 열악한 경우가 많음.
(예) 비가 새거나 곰팡이 발생, 좁은 면적, 낮은 지역 인프라, 장거리 통학(통근) 등

② 추진내용

소외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는 일환으로 소득기준 완화 및 자산 조사 시 부모가구와 세대 분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담기관의 사후관리(사례관리)를 받으면서 주거독립을 시작하는 초기에 한 해 주거환경 조성 비용과 이사비용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 [주거지원대상 확대 제언]

•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확대

- (현행) 저소득층·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출청소년·저소득 장애인·북한이탈주민·저소득(미혼)한부모 등 → (개선안) 청소년부모(자녀양육청년) 포함

• 청년주택 입주대상자 중 소외청년 우대

- (신설) 소외청년(시설퇴소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북한배경청년, 청소년부모(자녀양육청년))에게 가점 부여 또는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주거(임차)급여 대상 확대

- (현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조손·한부모가정은 52%) 이하 → (개선안) 소외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52% 이하
- (신설) 청소년부모(초기청년부모) 주거급여 분리지급: 원가정에서 생활(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2%이하 20대 청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별도 주거급여 지급

☞ [자립주거환경 조성물품 지원 제언]

• 소외청년 자립에 필요한 주거환경 조성물품 지원

- (신설) 자립을 시작하는 소외청년에게 1회에 한 해 주거환경 조성물품(식기, 가전, 가구, 침구 등) 구입비 지원

(2) 비수도권의 다양한 주거모델 확충

① 추진근거

정부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거는 청년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요구되며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 소외청년들 중 일자리를 찾아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읍면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고 그때마다 주거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반면 청년 거주 인구가 적어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일자리 문제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읍면지역에서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등 주거지 변동이 잦은 청년의 삶 형태를 고려할 때 다양한 공유주거 보급 확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 개인 성향에 따라 독립거주지와 공동거주지를 원하는 경우가 혼재
 - 독립거주지 장점: 사적 공간 보장
 - 공동거주지의 장점: 주거비용 및 고립감 감소
- 읍면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부족으로 인한 자부담 주거비용 상승

② 추진내용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소외청년의 일과 주거를 고려한 사회적 주택이나 공유주거(쉐어하우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LH 사회적 주택이나 지자체 차원의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사례를 참고하되 수요자 청년과의 매칭을 돕는 지원 수단의 다각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청년 사회적 주택 및 쉐어하우스 사례]

- LH 사회적 주택 사업
 -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며 커뮤니티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예) ㈜녹색친구들 사회적 주택
- * 출처: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NoticeDetailView.do?bbsId=BBST01&ntId=115>에서 2022년10월 7일 인출.
- 완주군 쉐어하우스 사업
 - 군에서 임대한 주택에 2~4명이 한집에 살면서 방은 개별사용하고 거실, 화장실을 공유하는 저렴한 비용의 주거형태
- * 출처: 완주청년정책홈페이지.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3002000000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3)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등 지원주택 확충

① 추진근거

본 조사 표본에서 소외청년은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지원 뿐 아니라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 복합적인 지원 요구를 보였다. 특히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아 주거안정(housing first)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서비스가 결합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② 추진내용

기존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사례관리를 결합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소외청년 주거지원의 기본 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열악할 주거문제를 동반한 소외청년의 경우 주거지원을 전제로 일정기간 지역 내 사례관리 전담기관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 뿐 아니라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되는 지원주택 물량 확보 등 지자체가 소외청년 전반에 대한 주거지원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사례]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지원서비스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129.go.kr/faq/faq03_view.jsp?n=8392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

-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정신장애를 가진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 등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주거 생활이 가능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제공과 더불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 출처: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https://www.seoulhousing.kr/html/0101020.do>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5) 복지·문화분야 추진과제 : 관계기반 금융 모델 제도화 등

(1)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제도 정비

① 추진근거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시설퇴소청년들은 공적 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시설퇴소청년 대상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은 시설 거주기간이나 취약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설 유형(종류)에 따라 액수의 편차가 있는데다,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설퇴소 후 자립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경우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중도퇴소하여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경우 자립수당과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시설중도퇴소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시설퇴소청년 대상 자립수당 현황]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현재 자립 후 5년간 매월 35만 원 지급, '23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예정)
- **청소년쉼터 퇴소자**
 -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에 한 해 3년 간 매월 30만 원 지급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134>에서 2022년 9월 16일 인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768>에서 2022년 9월 16일 인출.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91556&pkgId=49500733>에서 2022년 9월 16일 인출.

② 추진내용

시설퇴소청년 대상 자립수당제도의 자립지원제도를 정비 소외청년이 어느 시설에서 주로 생활하며 퇴소했는가에 상관없이 현재 자립준비 중이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라면 그 지원에서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설퇴소청년 자립지원제도 개선사항 제언]

-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방식 개선**
 - (현행)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아동) 월 35만 원 지급(5년간)
 - (개선안)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아동) 월 35만 원 지급(5년간)
 - ※ 중도퇴소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지자체(아동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액수 및 지원 기간 결정 가능
 - ※ 자립정착금도 지자체 심의 후 액수, 기간 등을 결정하여 지원
- **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 (현행) 지원대상자: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개선안)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2) 맞춤형 경제 교육 및 채무부담에 대한 지원

① 추진근거

소외청년들 중에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 범죄피해나 가족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거나 경제·금융 및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연구결과]

- **시설퇴소청년 채무 경험 및 액수**
 - 채무 경험률 3.6%, 평균 채무액 약 1,200만 원
- **북한배경청년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률 21.2%**
 - 일반 청년의 모른다는 응답률 1.2%
 - 그 외 산업재해보험 등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② 추진내용

경제·금융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과도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소외청년의 경우 종자돈이 없어 기존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낮다. 이에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부채 해결, 자산형성의 목표가 결합된 ‘관계기반 금융 모델 사례’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및 지자체가 해당 조직과 단체에게 일정 기간(최소 3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 [금융소외청년 관계기반 금융 모델 사례]

• 청년연대은행 토닥

- 2013년부터 조합원들의 십시일반 출자금으로 자조기금을 조성해 소득증빙과 신용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무보증 무담보 소액대출사업을 운영
- 소득과 신용으로 상환가능성을 평가하는 금융문법 대신 1:1 재무 상담을 통해 기금이 대출을 신청한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만을 심사
- 대출 수혜자가 대출 공여자가 되는 토닥의 시스템 안에서 청년들 간의 관계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안전망의 역할을 수행
- 대출 조건: 신입조합원 교육(토닥학개론 이수)
- 지원 금액: 최대 150만 원

* 출처: 청년연대은행토닥 홈페이지. <http://www.todakbank.org/>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 취약노동자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이 이익대변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종형, 지역형 구분하여 3개 사업지원
 - ※ 지원 세부사업: 업종형(이동노동자 쉼터 등 소모임 결성, 직무교육·정보 및 애로상할 소통 활성화 지역형(취약노동자 조직 소모임 결성 및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
- 사업대상: 플랫폼 노동 종사자, 경비노동자 등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

* 출처: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ldx=38472616&menuid=1547>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마니또'

- 안산·시흥지역 특성화고 졸업 청년 노동자들의 자조모임 '마니또'
- 안산시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제안함.
- 청년노동자지원으로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강화 목적
 - ※ 지원 항목: 소액대출(간접생활자금대출), 무료생활·노동법률상담(임금·산재·고용 등 노동법률 상담 및 지원, 개인회생, 파산 등 무료 생활법률 상담 지원), 공동구매(먹거리 및 생활재 공동구매)등의 지원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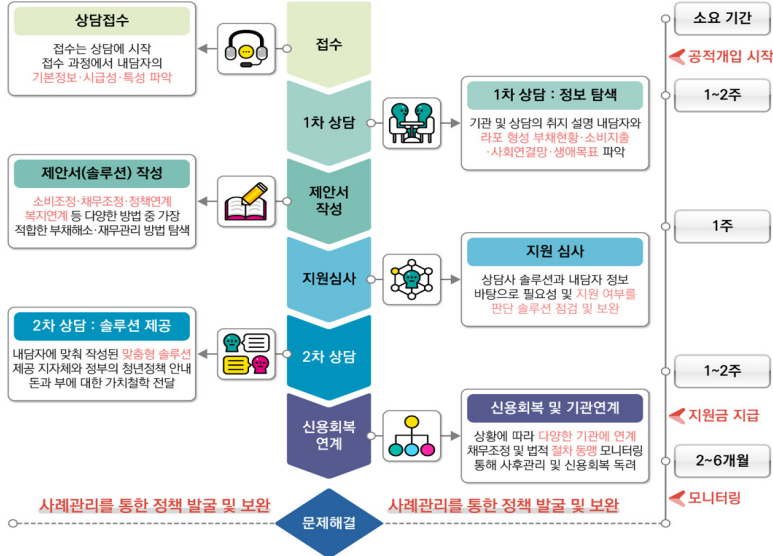
* 출처: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홈페이지, <http://www.neighbors.or.kr/xs/>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한편 부채(채무), 파산 등의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는 일대일 맞춤형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부채 해결과 자산 관리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과정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 부채 해결의 마중물로서 지원금(50~100만 원)을 함께 제공하여 사업 참여의 유인으로 활용하는 특화 사례(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청년 맞춤형 채무 상담 사례]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례

- 청년맞춤형 채무·채무상담 절차



- 채무·채무 상담 내용과 소요시간



출처: 박수민(2022). 청년종합연구 정책 포럼 발제문의 그림을 보완함.

(3) 자산형성지원제도 효율성 제고

① 추진근거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소외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지원 절차의 복잡성, 장기 납입 기간 및 높은 납입 금액 등이 단점이 언급되기도 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 **시설외소청년 대상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 참여자의 63.8%가 도움 됨으로 응답**
 -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은 주요 이유: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지원받기까지 오래 걸려서
 - 현재 미참여자 중 향후 참여 의향: 52.7%가 있음.

② 추진내용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며 저축할 여유가 없는 소외청년들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하도록 그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액의 복수계좌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각 계좌의 만기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소극적 개선안과 함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 기본소득보장]

- **청년내일저축계좌**
 - (현행)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3년간 적립 → (개선안) 한 계좌당 매월 3만 원 이상 납입, 최대 50만 원까지 복수계좌 가입 가능, 만기는 계좌당 6개월~3년으로 설정 가능,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 유지
 - * 출처: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청년도약계좌 ('23년 시설 계획 중)**
 - (현 계획) 매달 40~70만 원 납입, 5년 만기 → (개선안) 한 계좌당 매월 3만 원 이상 납입, 최대 70만 원까지 복수계좌 가입 가능, 만기는 계좌당 6개월~3년으로 설정 가능.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905792&pkglId=49500782>에서 2022년 9월 16일 인출.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대상)**
 - (현행) 본인 소득(세전)의 30% 범위 내 월 10~50만 원까지 1:1 매칭적립(최대 4년간) → (개선안) 청년의 경우는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로 통합 운영
- **청년기본소득 보장제도 병행 [신설]**
 - 자산형성지원제도는 기본자산이 있는 청년에게만 유효하므로 청년의 기본소득 보장을 지원하여 취약청년의 경우 자산형성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자립준비와 도약의 기회 제공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① 추진근거

본 조사 표본에서 소외청년은 일반 청년 대비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고위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삶 전반이 더욱 나빠지는 등 정신건강 상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이 확인되었다.

☞ [연구 결과]

- **시설외소청년의 자살 관련 응답률**
 - 자살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 43.4%
 -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50.2%
- **시설외소청년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고립감 경험**
 - 고립감을 느낀 지 3년 이상인 경우는 30.2%
- **청소년부모의 우울감사 결과**
 - 우울 위험군 61.4%
- **경계선지능청년의 자살 관련 응답률**
 - 최근 1년 내 자살을 생각한 비율 27.6%
- **북한이탈배경 청년의 정신건강**
 - 남한 입국 이전부터 심리·정서적 고통의 경험이 많고 심리적 고립 문제 심각

② 추진내용

소외청년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 [정신건강지원 관련 개선사항 제안]

- **‘정신과주치의제도’ 혹은 ‘전담 상담사제도’의 신설**
 - 대상: 시설외소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북한배경청년, 청소년부모 등 소외청년
 - 내용: 지역 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청년을 발굴하고, 주치의 혹은 상담사를 지정 배치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한 진료·상담 개입
- **정신건강검사의 주기 축소**
 - (현행) 10년 주기 → (개선안) 위험군(위험가능성군)에 한해 매년 검사
- **장기적이고 성장지향적 관점에서의 심리지원**
 - 비수도권 거주 소외청년을 위한 전문적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 단기적, 병리적 증상에 대한 개입에서 장기적, 예방적 개입(집단 상담, 상담캠프, 토레 상담 등)으로 확대

(5) 문화생활 지원 강화

① 추진근거

소외청년들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담보다 여가,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요구가 더 높았다.

[연구 결과]

- 시설퇴소청년 대상 자살 생각 시 가장 필요한 도움 1순위
 - 운동,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 지원(49.6%)
- 시설퇴소청년 대상 서비스 지원 요구
 -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독서, 영화, 취미 지원) 3.67점(5점 만점)

② 추진내용

현재 운영 중인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기존 제도에서 지원대상 범위에 소외청년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누리카드 관련 개선사항 제안]

- 문화누리카드
 - 대상: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개선안) 시설퇴소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북한배경 청년, 청소년부모 등 소외계층 포함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5463>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6) 참여·권리분야 추진과제 : 청년권익보장제도 신설

(1) 권익보장 제고

① 추진근거

본 연구의 조사 표본에서 상당수의 청년들이 권리 침해를 경험했더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연구사례]

- 소외청년들의 권리 침해 발행
 - 북한배경청년, 시설퇴소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등 소외 청년들은 근로환경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등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경계선지능청년의 권리구제제도 부재
 - 경계선지능청년들이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은 가족·지인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도움 요청이 주를 이루며 공식적인 권리구제가 부재함.

② 추진내용

소외청년의 근로권익, 자녀양육권, 권익보호 등을 포함한 (소외)청년권익보장제도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외청년 권익보장 제도 관련 제안 사항]

- **소외청년 근로권의 보장 강화**
 - 소외청년의 부당근로,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권익옹호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온오프라인의 상담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지원인력 배치 필요
- **장애인 권리구제 서비스의 대상자 확대**
 - (장애인복지정책)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권리구제 서비스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대상자 확대 필요
 - (장애인, 아동 권리구제정책)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자 확대 필요

(2) 정보접근성 강화

① 추진근거

공공부조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외청년의 상당수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연구결과]

- **신청주의기반 지원제도 한계**
 - 대부분의 지원 서비스는 신청주의 기반으로 공식적인 지원경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외청년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임.
 - 일부 정보획득에 매우 적극적인 경우만 제한된 정보를 획득하고 신청함.
 -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문해력이 낮은 경우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음.

② 추진내용

소외청년들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촘촘한 정보그물망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협업,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 문해력 증진 관련 사업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외청년의 정보접근성 제고 관련 제안]

- **촘촘한 정보그물망 구축 및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
 - 소외청년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보호·지원 기관과 시군구 단위의 청년센터·주민지원센터 등과의 연계·협업 필요
 - 지역 사회 내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 **문해력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강화**
 - 지원 서비스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말 정보 안내 실시('이해하기 쉬운 정책 플랫폼' 구축)
 - 청년센터나 주민센터 등에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담조력자 배치

(3) 다각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① 추진근거

소외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신과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이나 주류 집단과의 교류에서 편견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소외청년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 경제선지능청년의 차별 경험 37.2%
- 소외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 대두

② 추진내용

당사자성을 지닌 또래 또는 선후배와의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 자조모임이나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청년과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돕는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동년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소외청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주요 참여 기구에 의사를 적극 계진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례]

- **2018 한화 자전거 평화여행, 다름의 동행, 함께 멀리**

- 주요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과 비이주배경 청소년 24명(각 12명)이 제주도 자전거길 종주, 한라산 등반, 농촌 봉사활동 등을 함께 함.

- 주최: (주)한화,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

- * 출처: 미지넷 모바일웹. http://m.mizy.net/program.html?html=program/program2_view.html&uid=507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 **바람개비 서포터즈**

-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들로 구성된 자립멘토단

-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ncrc2019/222070610479>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 **브라더스 키퍼**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시설퇴소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정서지원 등을 제공

- * 출처: 브라더스키퍼 홈페이지. <http://brotherskeeper.co.kr/42>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 **사회적 활동에 따른 참여수당(활동비) 지급**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동비 지급

표 IX-9. 국정과제에 따른 소외청년 추진과제(안)

[국정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소외 청년 유형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48. 소외되지 않는 가족, 함께하는 사회구현(여가부 등)						
90.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관계부처합동)						
91. 청년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관계부처 합동)						
92. 청년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조실, 법제처)						
1. 법률 제·개 정을 통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1-1. 「청년기본법」 개정		○	개선	국무조정실	전체
	1-2. 「(가칭)청년권익지원법」 제정		○	신규	국무조정실	전체
	1-3. 「(가칭)청년자산형성지원법」 제정		○	신규	기획재정부	전체
	1-4. 「경제교육지원법」 개정		○	개선	기획재정부	전체
	1-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	개선	고용노동부	전체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	개선	고용노동부	전체
	1-7.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 검토		○	신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시설퇴소청년
	1-8.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국적법」 반영		○	개선	통일부	북한배경청년
	1-9. 청소년(한)부모 근거법 일원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청소년한부모		○	개선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1-10. 경계선지능인 지원 입법 및 권익보장		○	개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경계선지능 청년
	1-10-1. 「(가칭)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		○	신규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 청년
	1-10-2. 「장애인복지법」 개정		○	개선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 청년
	1-10-3. 「평생교육법」 제5조 개정		○	개선	교육부	경계선지능 청년
	1-10-4.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개선	법무부	경계선지능 청년
	1-10-5. 「정신건강 상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개정		○	개선	법무부	경계선지능 청년

[국정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소외 청년 유형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48. 소외되지 않는 가족, 함께하는 사회구현(여가부 등)						
90.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관계부처합동)						
91. 청년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관계부처 합동)						
92. 청년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조실, 법제처)						
2. 사회보장 제도개선: 사회통합 강화	2-1.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선	○	○	신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전체
	2-2. 공공데이터 연계기반 소외청년 지원 강화	○	○	신규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체
	2-3. 전담인력 확충 및 공공사례관리 연계 강화	○		개선	지자체	전체
	2-4. 북한이탈주민 통계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확대			개선	통일부	북한배경청년
	2-5. 저소득 자녀양육청년 지원 입법과 정책 재설계	○		개선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2-6. 새로운 취약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제도 정비 및 신설	○		개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계선지능 청년
3.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과제: 세대 내 격차 완화	3-1. 기반구축: 청년센터의 기능 확대와 추진 체계 정비	○		개선	관계부처 지자체	전체
	3-2. 교육분야 추진과제: 대학 학비지원 및 평생교육 강화	○		개선	관계부처 지자체	전체
	3-3. 일자리분야 추진과제: 취업애로 청년 대상 범위 확대	○		개선	관계부처 지자체	전체
	3-4. 주거분야 추진과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도화 및 지원주택 확충	○		개선	관계부처 지자체	전체
	3-5. 복지·문화분야 추진과제: 관계기반 금융 모델 제도화 등	○		개선	관계부처 지자체	전체
	3-6. 참여·권리분야 추진과제 : (소외)청년권익 보장제도 신설	○		개선	관계부처 지자체	전체

* 출처: 저자 작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0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_____ (2020b).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25) 세부과제 요약.
- _____ (2021a).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_____ (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_____ (2021c).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 _____ (2021d).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 _____ (2022).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5호 (2021.4.30.).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 선정 공고.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09호 (2022.2.28.). '22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 선정 공고. 세종: 고용노동부.
- 국회 정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2022).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850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서울: 국회정부위원회.
- 김규혜, 이승윤, 박성준 (2020). '취업'과 '실업'의 사이에서: 청년이직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7(4), 49-85.
- 김문길, 김기태, 정세정, 김성아, 김기현 (2020).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곽윤경, 임덕영, 신영규, 함선유,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이태진, 채수미, 유한별, 정소희, 남재현, 심수진 (2021). 국가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삶의 질 지수 개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성아 (2022).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 주요국과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38(3), 115-152.
- 김수정 (2020).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한국인구학**, 43(2), 77-101.
- 김지연, 윤철경 (2021).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민지 (2022).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주택시장 환경이 청년 독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연구**, 30, 103-130.
- 류정희, 이상정, 김지연, 김지민 (2021).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이상정, 김지연, 정익준, 정소희, 주하나 (202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 문진영 (2010).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2), 87-107.
- 박권일, 홍세화, 채효정, 정용주, 이유럽, 이경숙, 문종완, 김혜진, 김혜경, 공현 공저 (2021). **‘교육에 필요한 것은 탈능력주의’**. 능력주의와 불평등, 교육공동체 벗.
- 박나리, 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45-74.
- 박수민 (2022). **금융소외계층 청년과 정책과제**. 청년종합연구 포럼 발제문(2022.06.02.).
- 변금선 (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345-373.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80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궤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 변금선 (2022). **청년종합연구 I 정책포럼**. 미발간 토론 자료.
- 변금선, 이혜림 (2020).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서울: 서울연구원.
- 병무청 (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2021).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자활사업안내(II)**. 세종: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4.29.).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05400>정책브리핑에서 2022년 6월 29일 인출.

외교부 국제기구·지역협력체 유엔 웹페이지. https://www.mofa.go.kr/www/wpge/m_3873/contents.do에서 2022년 3월 29일 인출.

이상정, 김지민, 류희정,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김지연, 황정하, 김무현 (2020).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실태와 자립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봉 (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슈페이퍼 제149호(2021. 08호, 2021.5.26.)**.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민우, 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130-175.

정세정, 최권호, 최보라 (2021). 불리(disadvantage)의 경험과 취약 청년의 삶. **비판사회정책**(70), 293-33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실.

채병주, 황선재 (2021). 청년 1 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보건사회연구**, 41(3), 248-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원자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2022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허태준 외 (2022). **세상의 모든 청년**. 부산: 호밀밭.

- Beveridge, W.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London. HMSO.
- Billari, F. C., & Liefbroer, A. C. (2010).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2-3), 59-75.
- Bossert, W., Conchita, D. A., & Vito, P. (2007). Deprivation and Social Exclusion. *Economica*, 74(296), 777-803.
- Buchmann, M. C., & Kriesi, I. (2011).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81-503.
- Burchardt, T., Le Grand, J., & Piachaud, D. (2002a). Introduction. In J. Hills, J. Le Grand, D. Piachaud (Ed.),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pp. 1-1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rchardt, T., Le Grand, J., & Piachaud, D. (2002b). Degrees of Exclusion: Developing a Dynamic, Multidimensional Measure. In J. Hills, J. Le Grand, D. Piachaud (Ed.),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pp. 30-4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akravarty, S. R., & D'Ambrosio, C. (2006). The Measurement of social exclusi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2(3), 377-398.
- Children's Bureau (2017). Guide to the NYTD review ver. 1.1.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nytd_review_guide.pdf에서 2022년 8월 16일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01.1010.). *Social Exclusion : Commission Takes First Step towards EU Poverty Strateg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01_1395에서 2022년 3월 29일 인출.
- Fox, A. M., Veele, S. (2020). *Juvenile Rehabilitation Integrated Treatment Model. Legislative Report*.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Fernandes-Alcantara, A. L. (2020). *Homelessness: Targeted Federal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Fernandes-Alcantara, A. L. (2021). *Pandemic-Related Provisions Expiring in the 117th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Hanson, E. J. & Finklea, K. (2020). *Juvenile Justice Funding Trends*.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4879/12>에서 2022년 8월 13일 인출.
- J. Hills, J. Le Grand, D. Piachaud (Ed.).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gan, D. P., & Astone, N. M. (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1), 109-130.
- Independent (1997.12.8.). Blair: Why we must help those excluded from society.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news/blair-why-we-must-help-those-excluded-from-society-1287576.html>에서 2022년 3월 29일 인출.
- Osgood, D. W., Foster, E. M., & Courtney, M. E. (2010). 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9-229.
- Momsen, K. (2021). Experiences of Money Management in the Youth Service. <https://www.msd.govt.nz/documents/about-msd-and-our-work/publications-resources/research/experiences-of-money-management/experiences-of-money-management.pdf>에서 2022년 8월 8일 인출.
-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2018). The Second Chance Act (Fact Sheet). <https://csgjusticecenter.org/publications/fact-sheet-the-second-chance-act/>에서 2022년 8월 13일 인출.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4). *The Growth of Incarceration in the United States: Exploring Causes and Consequences*.
- New Zealand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9). Youth Service Pathways Report. (REP/19/8/813). <https://www.msd.govt.nz/documents/about-msd-and-our-work/publications-resources/information-releases/youth-service-review-1819/youth-service-pathways.pdf>에서 2022년 8월 13일 인출.
- Sen, A. (1999). *Freedom as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 (2009). *The Idea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Smith, J. P. (2019). The long-term economic impact of criminalization in American childhoods. *Crime & Delinquency*, 65(3), 422-444. doi: 10.1177/0011128718787514.

Social Exclusion Unit (2004). *The Drivers of Social Exclus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for the Social Exclusion Unit in the Breaking the Cycle series*.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Travis, J., Western, B., & Redburn, S. (Eds.). (2014). *The Growth of Incarceration in the United States: Exploring Causes and Consequences*. National Academies Press.

United Nations (2016). *Leaving No One Behind: The Imperative of Inclusive Development.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6*.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2018). *Promoting Inclusion through Social Protection: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8*. New York: United Nations.

Van Regenmortel, S., De Donder, L., Dury, S., Smetcoren, A.-S., De Witte, N., & Verté, D. (2016). Social exclusion in later life: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9(4), 315-344.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 Families (2022). Community Transition Services: Fact Sheet. DCYF PUBLICATION JR_0038. https://www.dcyf.wa.gov/sites/default/files/pubs/JR_0038.pdf에서 2022년 8월 15일 인출.

White House Council for Community Solutions (2012). Final report: Community solutions for opportunity youth. <https://aspencommunitysolutions.org/report/community-solutions-for-opportunity-youth-final-report/>에서 2022년 8월 8일 인출.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HRD-Net 홈페이지. <https://www.hrd.go.kr/hrdp/gi/pgiao/PGIAO0300D.do>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38472616&menuId=1547>에서 2022년 10월 07일 인출.

경찰청 (2020).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ordin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9&query=%EC%B2%AD%EB%85%84%EA%B8%B0%EB%B3%B8%EC%A1%B0%EB%A1%80#cptOfiAll> 「청년 기본조례」에서 2022년 2월 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22&lsiSeq=243291#00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2022년 10월 6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533133&chrClsCd=010202&gubun=KLAW&nwYn=Y&conDatGubunCd=0>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서 2022년 10월 6일 인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서 2022년 3월 29일 인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 <https://sonosa.or.kr/index.html?menuno=13>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home/kor/board.do?act=detail&idx=16581&searchKeyword=%EB%94%94%EB%94%A4%EB%8F%8C%EB%8C%80%ED%95%99&menuPos=47&searchValue1=0>에서 2022년 10월 6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134>에서 2022년 9월 16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768>에서 2022년 9월 16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5463>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7451>에서 2022년 1월 26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91556&pkgId=49500733>에서 2022년 9월 16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905792&pkgId=49500782>에서 2022년 9월 16일 인출.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NoticeDetailView.do?bbsId=BBST01&nttId=115>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미지넷 모바일웹. http://m.mizy.net/program.html?html=program/program2_view.html&uid=507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경제교육지원법」에서 2022년 10월 15일 인출.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에서 2022년 10월 15일 인출.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2022년 10월 15일 인출.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2022년 10월 15일 인출.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청년기본법」에서 2022년 10월 15일 인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129.go.kr/faq/faq03_view.jsp?n=8392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브라더스키퍼 홈페이지. <http://brotherskeeper.co.kr/42>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https://www.seoulhousing.kr/html/0101020.do>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ncrc2019/222070610479>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완주청년정책홈페이지.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103002000000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홈페이지. <http://www.neighbors.or.kr/xs/>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청년연대은행토닥 홈페이지. <http://www.todakbank.org/>에서 2022년 10월 7일 인출.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에서 2022년 1월 20일 인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ead1/222394105782>에서 2022년 10월 6일 인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04_01&ttab1=0에서 2022년 9월 16일 인출.

[5장 북한배경청년 참고문헌]

1997년 12월 13일 개정 국적법(법률 제5431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에서 2022년 10월 24일 인출.

관계부처 합동 (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1).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021-2013.

관계부처 합동 (2022).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2020). 태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37 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서울: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김병로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 방향 자문회의 발표자료. 서울: 통일연구원.

김성경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 방향 자문회의 발표자료. 서울: 통일연구원.

김희순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 방향 자문회의 발표자료. 서울: 통일연구원.

남북하나재단 (2022).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미지넷 모바일웹. http://m.mizy.net/program.html?html=program/program2_view.html&uid=507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신효숙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 방향 자문회의 발표자료**. 서울: 통일연구원.

이미경 (2004). 경제교육의 가치. **경제연구**, 22(4), 1-24.

이승열 (2021).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NRS입법정책 제100호.

임선영 (2020).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위한 연구 고찰: 외상 후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1032-1035.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 서울: 통일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도현황. 각 년도. <https://www.data.go.kr/data/15106185/fileData.do>에서 2022년 10월 24일 인출.

통일부 홈페이지(통일백서). <https://unibook.unikorea.go.kr/board/list?boardId=7>에서 2022년 10월 24일 인출.

허수경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 방향 자문회의 발표자료**. 서울: 통일연구원.

Collins, J. M., Gorey, R. N., Schmeiser, M. D., Baker, C. A., & Ziegler, D. (2009). *Building Indicators Measure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Baltimore: Anne E. Casey Foundation.

Gale, W., Levine, R. (2011). Financial Literacy: What Works? How Could it be More Effectiv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Boston College Working Paper*.

Hilgert, M. A., Hogarth, J. M., & Beverly, S. G. (2003).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behavior. *Federal Reserve Bulletin*, 89(7), 309-322.

[6장 청소년부모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Id=1090>에서 2022년 8월 15일 인출.

관계부처 합동 (2021.11.).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방안.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217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1.8.31.). 기재부 등 4개 주요부처에 ‘청년’
전담부서 생긴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559>에서 2022년 8월 15일 인출.

김태완, 김기태, 정세정, 이주미, 최준영, 강예은, 김보미, 정재훈, 안주영, 송치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이상정, 김지연, 정익준, 정소희, 주하나 (202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보은 (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변금선, 유민상, 한경훈 (2022).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초기 청년의 삶의 질.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코로나 시기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변화와 대응’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a). 정책-보육-보육사업기획-영아수당.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4&PAGE=4&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b). 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급여개요-급여상세
설명-생계급여.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5&PAGE=5&topTitle=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c). 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d). 정책-인구아동-아동복지정책-아동수당지급.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a). 사업별소개-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b). 사업별소개-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9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c). 사업별소개-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8호 (20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아름다운재단, 킹메이커 (2022). 청소년부모 지원 사례관리 매뉴얼북. https://www.kingmaker.or.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55&me_code=6010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2022). 아이돌봄 사업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5&L_MENU_CD=020101&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2.18.). 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정책4가지.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09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에서 2022년 7월 27일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2).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양육-양육지원-아동양육비.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1.d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2022). 새일센터소개-사업소개.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95호 (20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에서 2022년 8월 22일 인출.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 (2022).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미, 김태완 (2022.03.).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50, 8-20.

정세정, 임덕영, 김문길, 임완섭, 이상림, 류진아, 강예은, 김보미, 기현주, 박이대승, 신영규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 (2022). 정보마당-직업능력개발사업 안내-개인-국민 내일배움카드 <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O0100T.do>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청년기본법, 법률 제18443호 (20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2년 5월 10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550호 (2021). <https://law.go.kr/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liBgcolor1>에서 2022년 4월 15일 인출.

취업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2).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지원대상.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에서 2022년 9월 22일 인출.

통계청 (1997~2020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대전: 통계청.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2020). <https://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에서 2022년 8월 20일 인출.

Public Health England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8). A Framework for Supporting Teenage Mothers and Young Fathers. <https://www.local.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identifying-and-supportin-931.pdf>에서 2022년 8월 20일 인출.

厚生労働省. (2010. 4.1.).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에서 2020년 9월 15일 인출.

[7장 경계선지능청년 참고문헌]

- 김동일, 안예지, 이연재, 최서현, 박지현, 한은혜, 황지은, 최가람 (2021). **서울시 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서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20). **경계선지능청년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 박찬선, 장세희 (2018). **경계선지능을가진아이들**. 이담북스.
- 서해정, 박현숙, 이혜수 (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엄경남, 이재경, 문정희 (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학습권 보호 및 자립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 주은미, 최승숙 (2021). 경계선 지적 기능 청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 경험에 대한 당사자와 관련인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6(1), 1-30.
- 진현정 (2016). **경계선 지적 기능 성인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지은 (2022). **부모인식에 따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 Catalunya, G. (2018). *Recommendations for caring for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 Disability Secrets (2022). SSDI and SSI Basics. <https://www.disabilitysecrets.com/topics/social-security-disability-basics.htm>에서 2022년 10월 22일 인출.
- Hassiotis, A., Brown, E., Harris, J., Helm, D., Munir, K., Salvador-Carulla, L., Bertelli, M., Baghdadli, A., Wieland, J., Novell-Alsina, R., Cid, J., Vergés, L., Martínez-Leal, R., Mutluer, T., Ismayilov, F., & Emerson, E. (2019). Association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with adult psychiatric morbidity. Findings from a British birth cohort. *BMC Psychiatry*, 19(1), 1-9.
- Logsdon, A. (2021).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Overview. <https://www.verywellmind.com/what-is-borderline-intellectual-functioning-2161698>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Luckasson, R. & Schalock, R. L. (2013). Defining and applying a functionality approach to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7(7), 657-668.
- Nouwens, P. J., Lucas, R., Embregts, P. J., & van Nieuwenhuizen, C. (2017). In plain sight but still invisible: A structured case analysis of people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42(1), 36-44.
- 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2015). About social assistance in Ontario. <https://www.ontario.ca/page/policy-guidelines-adult-protective-service-worker-program>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Wieland, J., Haan, S. K. D., & Zitman, F. G. (2014). Psychiatric disorders in outpati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omparison with both outpatients from regular mental health care and outpati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9(4), 213-219.
- Woittiez, I., Eggink, E., Putman, L., & Ras, M. (2018).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ar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https://www.scp.nl/publicaties/publicaties/2018/07/06/an-international-comparison-of-care-for-people-with-intellectual-disabilities>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 부 록

- 1. 2022년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설문지(웹조사)

1. 2022년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설문지(웹조사)

본 설문지는 자립준비청년(이하 '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본인은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준비청년으로서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준비청년으로서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인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정례 수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2년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 제33호(제33호)의 보호자에 따라 동의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 제33호(제33호)의 보호자에 따라 동의하신 내용이 정례 수업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수락하시겠습니까?

■ 연구 수행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154

044-415-2115

■ 조사 수행 : 6인구리사회

박종영 소장

02-5014-0988

조사 기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수행/자	Hankook Research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를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원하면 내 용의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 비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관련 의견 수집 및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역,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동의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비동의

신원1. 귀하가 백인인 인도의 원은 일제인가?

1. ()인
2. ()인
/ 1985년 ~ 2005년 외의 출생과 입국종류 /

I. '성인'의 여부

문1. 귀하의 '성인'으로서 '성인'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학교를 졸업하는 것
2.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3. 부모와 독립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4. 부모(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
5. 결혼하는 것
6. 자식을 출산하는 것
7. 주제를 구입하는 것
8.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선거권, 운전면허, 사형 피소 등)
9. 기타()

II. '교육' 및 '직업'

문2. 귀하의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III. '교육' 및 '직업'의 세부 사항
※ 대학교(전남대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전남대학교) 재학 중
※ 대학교(전남대학교) 재학 중

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 재학 중(이전/이후에 재학) (보통)
3. 고등학교 졸업/후학 중
4. 고등학교 졸업(고등) 재학(고등) 재학 (보통)
5. 전문대학(2~3년제) 재학 중
6. 전문대학(2~3년제) 졸업/후학 중
7. 전문대학(2~3년제) 졸업
8. 대학(4~6년제) 재학 중
9. 대학(4~6년제) 졸업/후학 중
10. 대학(4~6년제) 졸업 이상

문3. 귀하는 고등 학력을 어떻게 취득하였나요? 혹은 어떻게 취득한 예정인가요?	
1. 평균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 예정	
2. 평등고/사립 학파 또는 학부 예정	
3. 고등 학력을 취득할 계획이 있음 → B2	
문3-1. 다녔던 학교는 다녔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무엇인가요?	
1. 일반고(종합고, 보통)	
2. 특성화고(공고, 상고, 실업고, 전문학교 등)	
3. 직업단위교육진흥고(아이스티고)	
4. 학용고(과학고/사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	
5. 방송통신고	
6. 소년원학교(교복, 정신, 전구)	
7. 대안학교	
8. 교육	
9. 다녔던 학교는 다녔고 있는 고등학교가 없다	
문4. 귀하의 전공계열은 무엇인가요?	
비고: * 전공이 여러 개인 경우 주계열 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도 대학 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인문계열 → B5	
2.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 B5	
3. 경상계열 → B5	
4. 교육계열 → B5	
5. 자연계열 → B5	
6. 공학계열 → B5	
7. 의약계열 → B5	
8. 예체능계열 → B5	
9. 사관학교, 경찰대 → B5	
10. 기타(일 모로직업) → B4-1	
문4-1. 학과명을 적어주세요.	
비고: * 학과명은 줄임말이 아닌, 정식 명칭으로 적어주세요. 예시) 정치학과(X) → 정치외교학과(X), 무역학과(X) → 무역학학과(X)	
1. 학과명: ()	

문5. 귀하는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계획하는 것을 **B5**로 선택해 주세요. **문5-1**

1.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 근로장학금
2. 학교장학금
3. 민간 장학금(인간 기업이나 단체, 재단 등에서 제공 또는 후원하는 장학금)
4. 학자금을 대출
5. 부모, 친척 등 가족의 지원
6.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
7. 정부 지원(디딤돌장학금(CDL), 자립장학금 등)
8. 기타()

문6. 귀하는 대학 시절, 정부를 통한 **졸업생 혜택(유형)** 경험이 있나요?

1. 없다 → B9
2. 있다 → B6-1

문6-1. 대학 시절, 졸업생 혜택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취업준비를 위해
2.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응답이나 적성에 안 맞아서)
3.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4.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5. 여가생활을 하거나 휴식고 싶어서
6. 학과 공부 따라가기가 어려워서(대입이 어려워서)
7. 졸업하면 부딪힌 지원이 골짜기(시절에서 계속 생활하려고 등)
8. 용이 아파서(또는 다쳐서)
9. 기타()

대학 군 문제 응답 후 B5로 이동

[모자: 문2-1~4 정답만 정리]

- 문1. 귀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조건이 안 돼서(고등학교 재단 중, 형제(고사) 및 수능 준비 중)
 2.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려고
 3. 진리학과 싶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서(학비, 생활비 마련 등)
 4.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또는 공부가 어려워서)
 5. 공부에 적성과 흥미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
 6.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7.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때문에
 8.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9. 기타()

[모자: 문2-1~4 정답만 정리]

- 문2. 귀하는 향후에 대학에 진학을 생각하십니까?
 1. 있다
 2. 없다

[모자: 문2-1~4 정답만 정리]

- 문3. 귀하는 지금까지 “**직업훈련 및 자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제고라: 직업훈련 및 자격] 취업이나 장업을 위한 상담,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훈련,
 (유급연训, 회합회 연설 등)

1. 있다 -> **문2-2**
 2. 없다 -> **문2-2**

[모자: 문2-1~4 정답만 정리]

- 문4.1. 귀하는 만약에 “**직업훈련 및 자격**”을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제고라: 직업훈련 및 자격] 취업이나 장업을 위한 상담,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훈련,
 (유급연训, 회합회 연설 등)

전혀 도움 안 되었다	도움 안 되었다	보통	도움 있었다	매우 도움 있었다
1	2	3	4	5

[모자: 본 문항 응답 후 문10으로 이동]

[문2-2. 귀하는 앞으로 “직업훈련 및 자격”을 받고 싶습니까? 혹은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 [이제고라: 직업훈련 및 자격]** 취업이나 장업을 위한 상담,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훈련,
 (유급연训, 회합회 연설 등)

1. 아니요
 2. 예

[문10. 귀하는 지난 양귀일 동안 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까?

- [이제고라:]** 취업 준비에는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정보 검색, 인사 사항이나 자격시험 준비도 포함합니다.

1. 아니요 -> **문10-1**
 2. 예 -> **문10-2**

[문10-1. 지금까지 한 바에나도 취업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요 -> **문12**
 2. 예 -> **문10-2**

[문10-2. 취업 준비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이제고라:]** 취업 준비를 여러 번 했다면 총 기간을 적어주세요.

- [이제고라:]** 취업 준비한 경우 **0년 6개월**로 적어주세요.
[이제고라:] 취업 준비한 총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0년 1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1. 총 ()년
 2. ()개월

[문11. 귀하는 취업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법 또는 **사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래에서 도움을 받은 기법 또는 사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 [이제고라: 취업 준비 기법]** : 열거된 소제/주제, 취업에 필요한 돈이나 물품 지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 방법 안내 등]

1. 학교(교사, 교수 등)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 사설기관(학원, 인바레 취업사이트 등)
 4. 자립지원시설 및 기관(직업지원관, 직업생활관, 자립지원관(가정 등)
 5. 가족, 친인척
 6. 친구, 선배
 7. 기타()

문18. 귀하는 「국립현대미술관법(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기대효과] 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원세 참여하고 있다**

※ 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원세 참여하고 있다**

로 응답해 주세요!

1.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 → 문18-3
2. 참여한 적이 있으나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 → 문18-1
3. 현재 참여하고 있다 → 문18-1
4. 잘 모르겠다(기타)지 않을 등) → 문18-3

문18-1. 국립현대미술관법(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1.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문18-2
2.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문18-2
3. 보통이다 → 문19
4. 조금 도움이 되었다 → 문19
5.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19

문18-2. 국립현대미술관법(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안 돼서
2. 지원 비용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어서
3. 원하는 교육과정이 없어서
4. 지원한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5. 지원 취소 제한 때문에
6. 지원받기까지 오래 걸려서
7. 기타()

[문자 응답 후 문19로 이동]

문18-3.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법(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하고 싶지만 자격이 안 된다
3. 참여하고 싶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문19. 귀하는 「국립현대미술관법(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기대효과] 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원세 참여하고 있다**

※ 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원세 참여하고 있다**

로 응답해 주세요!

1.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 → 문19-3
2. 참여한 적이 있으나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 → 문19-1
3. 현재 참여하고 있다 → 문19-1
4. 잘 모르겠다(기타)지 않을 등) → 문19-3

문19-1. 국립현대미술관법(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1.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문19-2
2.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문19-2
3. 보통이다 → 문20
4. 조금 도움이 되었다 → 문20
5.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20

문19-2. 국립현대미술관법(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안 돼서
2. 지원 비용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어서
3. 원하는 교육과정이 없어서
4. 지원한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5. 지원 취소 제한 때문에
6. 지원받기까지 오래 걸려서
7. 기타()

[문자 응답 후 문20으로 이동]

문19-3.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법(국립현대미술관법 제12조)에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하고 싶지만 자격이 안 된다
3. 참여하고 싶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문20. 귀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지원센터**, **CDM**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가입하여 있었나요?

1.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다
2. 가입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현재 가입되어 있다
4. 잘 모르겠다(기타나지 않음 등)

문20-1. 귀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지원센터**, **CDM**을 **제외**한 **‘청소년복지지원사업’, ‘직업, 고용 등’**에 참여할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었나요?

[비고] **청소년복지지원사업** : 청년이 자족하면 정부가 참여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예) 청년일자리제공제(내일희망공제), 청년희망직급(희망직보공제), 청년희망소통교육(장기근로, 장내배움센터비거금, 희망노들, 청년동맹, 청년 노동자 중심연하는 청년동맹), 청년희망남자세움, 장 청년비거금대출, 청년희망학금, 청년희망학금, 청년 희망더민들, 통상 등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학, 직급, 통상]

1.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 → **문20-4**
2. 참여한 적이 있으나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 → **문20-2**
3. 현재 참여하고 있다 → **문20-2**
4. 잘 모르겠다(기타나지 않음 등) → **문20-4**

문20-2. **청소년복지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었나요?

1.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문20-3**
2.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문20-3**
3. 보통이다 → **문21**
4. 조금 도움이 되었다 → **문21**
5.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21**

문20-3. **청소년복지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직접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
2. 희망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3. 지원받은 금액이 적어보고 복잡해서
4. 지원받기까지 오래 걸려서
5. 기타에 가입한 것만 때문에 재가입이 안 돼서
6. 기타()

[오답: 응답 후 문21로 이동]

문20-4. 앞으로 **청소년복지지원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었나요?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하고 싶지만 신청 자격이 안 된다

- 13 -

3. 참여하고 싶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문21. 귀하는 **‘일학습병행제도’**를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었나요?

[비고] **일학습병행제도**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학습 훈련을 시키고, 학교의 훈련생과 이동을 교육하는 교육 훈련 제도

일학습병행제도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학습 훈련을 시키고, 학교의 훈련생과 이동을 교육하는 교육 훈련 제도

일학습병행제도의 유형

- **신비밀채널 도제형** : 노동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이론 및 기초응용의 기업(비밀채널)을 오가며 교육훈련 이수
-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제** : 전문대 4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회사체제와 연계하여 훈련
- **IPP일학습병행제** : (신비 채널) 3~4학년은 대상으로 장기(원장)을 해설 후 훈련 등 기업의 학습 훈련을 지원
- **고숙련일학습병행제(TTCO)** : 신기술체제 도제형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훈련, 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급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기타형 : 기업이 도제식 현장 학습 교육훈련과 사업상의 교육훈련을 독자적으로 수행 등]

1.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 → **문21-3**
2. 참여한 적이 있으나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 → **문21-1**
3. 현재 참여하고 있다 → **문21-1**
4. 잘 모르겠다(기타나지 않음 등) → **문21-3**

문21-1. **일학습병행제도**가 도움이 되었나요?

1.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문21-2**
2.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문21-2**
3. 보통이다 → **문22**
4. 조금 도움이 되었다 → **문22**
5.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22**

문21-2. **일학습병행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2. 교육훈련기간 때문에(불가나 길어서)
3. 교육훈련 내용 때문에(내용이 부족하거나 많아서, 배우는 기술의 수준이 낮거나 높아서)
4. 교육훈련 시간 때문에(시간이 부족이나 노아서)
5. 교육훈련 시간, 장려 때문에(학습 관련 불만, 장려 부족, 안전 문제 등)
6. 교육지원금(실용직도자)이 잘 가드해주지 않아서
7. 기타()

[오답: 응답 후 문22로 이동]

- 14 -

문21. 3. 양으로 **연립(連立)형식**에 속하는 경우가 있나?

1. 참이라고 한다
2. 참이라고 하지만 신청 자료가 안 된다
3. 참이라고 해서 없다
4. 잘 모르겠다

문22. 귀하는 취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어려웠음) 점**은 무엇인가?

1. 취업, 입사처 정보가 부족해서
2. 내 직장을 잘 몰라서
3. 직종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이 부족해서
4.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잘지 않아서
5. 보수가 낮아서
6. 학력 때문에
7. 외모 또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8.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9. 기타()
10. 해당 사항 없음(해) 입사처를 구해본 적 없음

문23. 귀하는 **자급자족 한 분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앱/서비스)을 대안으로써 프랜차이즈였을 **점**도 있었을 **점**도 있었을 **점**을 통해 입사처를 찾고 이들이 제공하는 수당을 받는 일을 해본 적이 있나?

[비고]:
(예)

- 음식배달업체를 통한 배달업체 라이더
- 대리운전업체를 통한 대리운전
- 채용공고에 등 플랫폼을 통한 디자인, 콘텐츠 제작 의뢰
- 유튜브 채널자 등 1

1. 없다 → **문24**

2. 있다 → **문25-1**

문24-1. 그 외에 귀하의 **주요 역량**이 있나?

1. 아니요

2. 예

문24.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나?

[비고]: ※ 일상시간(아파트)을 한 경우도 **있음 하겠다**에 응답해 주세요 1

1. 일을 하지 않았다 → **문24-1**
2. 일을 하였다 → **문24-3**

문24-1.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장 또는 일터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나?

1. 일한 적 없다 → **문24-2**
2. 일한 적 있다 → **문24-3**

문24-2.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입사처(직장)를 가지고 있었나?

1. 입사처(직장)가 있었다 → **문25**
2. 입사처(직장)를 갖고 있었다 → **문24-3**

문24-3.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총 몇 개의 입사처를 가지고 있었나?

[비고]:

※ 통상, 소리를 등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 근무했던 입사처 계수를 모두 더해주세요.

※ 휴가 및 임시 휴직상해인 입사처도 포함하여 더해주세요.

예시) 그 전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잠시 중단하고, 편의점 일을 한 경우 : 2개

예시) 필름골 - 식당, 외출보 - 편의점에서 일을 한 경우 : 2개 1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이상

문25. 귀하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주된 일을 한 입사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비고]:

※ 두 개 이상의 일을 한 경우, 본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사처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 직장명은 **정식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예시) 사단(X) → 학단 재건청 문화재단(O)

예시) 자동차 회사(X) →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O)

※ 내가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예시) 이스트공장에서 세를 접수 일을 하였음 1

1. 직장명 : ()

2. 내가 그 직장에서 주로 하는 일 : ()

【네모코리】문25-1~문27가: 다음은 귀하가 지난주에 근무 중이었던 【네사: 문25 1. 직장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5-1. 【네사: 문25 1. 직장법】은 어디에 있나요?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문25-2. 【네사: 문25 1. 직장법】에서 일을 시작한 나이는 몇 세부터 인가요?

1. ()세 부터

문25-3. 【네사: 문25 1. 직장법】에서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인가요?

- 1. 상용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1년 이상)
- 2.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 3.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일당위로 고용되어 임금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는 사람)
- 4. 자영업자(영업, 개업, 프리랜서 등)
- 5. 무급가족종사자(가족원격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문25-4. 귀하는 현재 일하시던 【네사: 문25 1. 직장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싫다
- 2. 싫다
- 3. 약간 싫다
- 4. 보통이다
- 5. 약간 좋다
- 6. 좋다
- 7. 매우 좋다

문26. 【네사: 문25 1. 직장법】을 공부하고 이해하신 일하러 구하기는 할 생각이 있나요?
【네사: 문26 1. 직장법】은 어디에 있나요?

- 1. 있다 → 문28
- 2. 있다

문26-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더 높은 급여/복지를 위해
- 2. 개인발전/승진
- 3.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출퇴근 시간/거리, 근무시간 등)
- 4.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5. 더 나은 일생상을 위해
- 6.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7. 개인 사정을 위해(이직할 필요)
- 8. 건강상의 이유로
- 9. 직장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 10. 기타()

문27. 귀하는 【네사: 문25 1. 직장법】을 찾기 위해 어떤 구직 활동을 했나요?

【네사: 문27 1. 직장법】: 일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직접 사도에 보는 모든 활동

분류	누, 몇, 이상		
	있었다	있지 않았다	없다
1. 직업을 지니려는 기업에 연락하기 위해	1	2	3
2. 친구, 친척, 친목 등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			
3. 학교 또는 학교 내 취업팀 기업에 연락하기 위해			
4. 이력서 또는 자필서를 제출하기 위해			
5. 기업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기 위해			
6. 구인 공시(구직포스트, 구직) 등을 살펴보기 위해			
7. 직업을 전문적으로 찾기 위해			

문20. 귀하의 **원 금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입 및 부입 모두 포함)**
[시제표]: 극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금액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원 달에 평균 연을 해서 받는 돈 : 약 ()만원 (실제 받는 금액 기준)

문20-1. 귀하의 **장주월 평균 연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입 및 부입 모두 포함)**
[시제표]:
입력 시작:
예시1) 하루 8시간, 1주일에 5일 일하면 $5 \times 8 = 40$ 시간
예시2 일주일 중 2일간 일하고, 하루는 3시간 일하면 $3 \times 5 = 8$ 시간
 1.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 : 약 ()시간
[오차 응답 후 문32로 이동]

[오차 응답 후 문32-1인 장주월 월입]
 문20. 귀하는 **직업상대리를 가져 본 적이** 있나요?
[시제표]: # 직업상대리를 가져 본 경험은 계약직, 일한, 계약직, 아르바이트, 창업 등 모두 포함합니다!
 1. 직장상대리를 가져본지 않았다
 2. 직장상대리를 가져보았다

문20-1. 귀하는 **채난 한 달 동안 직장상대리를 구해 본 적이** 있나요?
[시제표]: # 임대보증금도 포함합니다!
 1. 직장을 구해본지 않았다 → **문30**
 2. 직장을 구해보았다 → **문31**

문30. 다음 중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 30	문 30	구직활동	
		1	2
1. 알바가 없을 것 같아서			
2.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일할 의욕이 없어서 등)			
3. 일을 하면 수급비(생계유지)가 끊겨서			
4. 학업, 돌봄, 가사 활동을 해야 해서			
5. 활동 장애 등으로 일이 어려서			
6. 학과에 다니고 있어서			
7. 전업을 준비 중이어서(임시직원에 다녀서 등)			
8. 직업을 바꿔 봐야한다는 직업준거관에 따라서			
9.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10.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11.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2. 전도를 청하지 못해서			

문30-1. 다음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알바자가 없을 것 같아서
 2.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일할 의욕이 없어서 등)
 3. 일을 하면 수급비(생계유지)가 끊겨서
 4. 학업, 돌봄, 가사 활동을 해야 해서
 5. 활동 장애 등으로 일이 어려서
 6. 학과에 다니고 있어서
 7. 전업을 준비 중이어서(임시직원에 다녀서 등)
 8. 직업을 위해 뛰어나는 직업준거관에 따라서
 9.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10.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11.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2. 전도를 청하지 못해서

문31. 귀하는 15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과도 다니고 일도 하고 일으려서 전바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어디까지도 하지 않고 자택 생활**을 하던 적이 있나요?
 1. 없다 → **문32**
 2. 있다
[오차: 문31-1. 어떤시 문20-1인 경우 문35로 이동]

문31-1. 귀하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고 하지 않으면서 진화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 거든. 얼마나 위냐요?

선생님	학생
1. 1개월 이상	(1개월 동안 지내 되었다. (해 15%)
2. 1개월 미만	(1개월 동안 지내 되었다. (해 37%)
3. 1년 - 2년 미만	1년 (1개월 동안 지내 되었다. (해 1년 6개월)
4. 2년 이상	(1년 (1개월 동안 지내 되었다. (해 2년 6개월)

[문자 문29-1의 경우 문35도 이동]

[비제과(단독) : 문 다름(문32-문34)은 자기주도의 자정(자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자 문26-3 응답자 차례 또는 문29-2로 응답한 경우만 문30 이동]

문32. 귀하는 지금까지 다니던 자정(자기)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요?

[비제과자 :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99%, '위험한 근로환경' : 기체 등의 산동, 심한 소음, 열기, 먼지, 화학제품/세기를 등을 경험하거나 피부 질환, 난방/냉방을 제대로 지나치게 춥고/더운 실내 등]

문항	응답			2번 이상 있다
	1	2	3	
1. 실용이나 특별한 경험이다				
2. 생활 2 나 학업 10년을 회상(회상)했거나, 회기 등				
3. 상하의 수치를 느끼기 하는 일이나 일을 경험(2개월, 10시간)을 포함				
4. 물은 물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5. 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적 있다				
6. 물은 물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쳐 적이 있다				
7. 산업현장을 경험(2개월, 10시간) 중 회상(회상) 10시간 이상을 받은 적이 있다				

문33.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느냐요?

[비제과자 : 제각각이 끝나서 회사만 경우는 '해고'를 당한 적이 있느냐에 응답해 주세요.]

1.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2.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3.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4.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문35

문33-1. 지금까지 자정(자기)을 그만 둔 경험이 몇 번이나 되느냐요?

[비제과자 : 자정(자기)을 그만 둔 경험 : 해이 끝난, 해고, 실업 등 스스로 회사 등 모두 포함]

1. 한 번
2. 두 번
3. 세 번 이상

문34. 귀하는 자정(자기)를 받은 적이 있느냐요?

1. 없다 → 문34-1

2. 있다 → 문35

문34-1. 자정(자기)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실용(자기)에 대해 잘 몰라서
2. 강요했는데 받지 못해서
3. 절차가 복잡해서
4. 신청을 안해서
5. 다른 곳에 취업이 돼서
6. 기타()

8. 국기

문35. 국기가 처음 국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에 생각하는 순서대로 **채워 쓰아라**지 정확히 주세요. [채우]

1. 주권(주권)의 가치, 보통국, 원세, 권리(비 등)
2. 주권의 상태(비)의 가치, 인테리, 원세(비)의 가치, 오리지널 등)
3. 주권의 상태(비)의 가치, 인테리, 원세(비)의 가치, 오리지널 등)
4. 주권의 상태(비)의 가치, 인테리, 원세(비)의 가치, 오리지널 등)
5. 주권(주권)의 가치, 보통국, 원세, 권리(비 등)
6. 주권(주권)의 가치, 보통국, 원세, 권리(비 등)
7. 주권(주권)의 가치, 보통국, 원세, 권리(비 등)
8. 기타()

문36. 국기는 다음의 장소에서 생활한 적이 있나? 아래의 장소 중 생활한 경험이 있는 곳을 모두 선택

해 주세요. [채우]

1. 아동양육시설(보육원)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2. 청소년수련 / 청소년수련(보육원) / 청소년수련(보육원)
3. 청소년수련 / 청소년수련(보육원) / 청소년수련(보육원)
4. 미혼모 / 미혼모(보육원) / 미혼모(보육원)
5. 소년원 / 소년원(보육원) / 소년원(보육원)
6. 고사원이나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
7. 노숙(노숙, 노숙) 등 용이 아닌 곳에서 생활

문36-1. 국기는 다음의 장소에서 생활한 적이 있나? 아래의 장소 중 생활한 경험을 있는 곳을 모두 선택

국기의 장소에서 생활한 **총 기간**을 응답해 주세요.

[채우]고라 **총** 여러 번 생활했다면 총 기간을 적어주세요.

※ 생활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연 6개월**로 적어주세요.

※ 생활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연 1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구분	생활한 기간
1. 아동양육시설(보육원)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연 ()개월
2. 청소년수련(보육원) / 청소년수련(보육원)	연 ()개월
3. 청소년수련(보육원) / 청소년수련(보육원)	연 ()개월
4. 미혼모(보육원) / 미혼모(보육원)	연 ()개월
5. 소년원(보육원) / 소년원(보육원)	연 ()개월
6. 고사원이나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	연 ()개월
7. 노숙(노숙, 노숙) 등 용이 아닌 곳에서 생활	연 ()개월

문37. 국기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나?

[채우]고라 **총** 지금, 한때 등을 이유로 주중(주중)으로 살고 있거나, 잠깐 따로 사는 경우는 **같이 살고 있다**에 응답

해 주세요. 1

1.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
2. 같이 살고 있다

문37-1.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나?

[채우]고라 **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예**로 응답해 주세요. 1

1. 아니요
2. 예

문37-2. 현재 자녀가 있나? 있다면 자녀가 몇 명인지 응답해 주세요.

1. 아니요
2. **예** // **자녀의 총 수** // 자녀 : ()명

문37-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자가(주택)나 가족의 소유인가?

1. 아니요
2. **예** → **분류**

문37-4. 귀하의 현재 주거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비고]:

- **세대주세대주택**: 1인 등이 지만하는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세대주택**: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빌라하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공동주택 등)

1. 내 등 공동주택(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해당 전세임대 등)
2. 전세, 월세 등 민간임대(월세 제외)
3. 지원주택(공공주택 등)
4. 자립지원관/자립생활관
5. 학교, 회사 등 기숙사
6. 고시원/숙사실
7. 원룸
8. 원구나 자립 집
9. 기타()

문37-5.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모든임대료** 또는 **월세보증금**이 있나요?

1. 있다 **[모든의 임대료/ 보증금전세 또는 월세보증금]** : 약 () 만원
2. 없다 **→ 문37-7**
3. 모름 **→ 문37-7**

문37-6.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보증금, 월세 전세)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든** 선택해 주세요 **[비고]**

1. 내 등의 자립주거지원용서비스(등)
2. 자립생활관
3. 아동발달지원센터(민간아동관, CDA)
4.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
5. 주거급여
6. 자립지원관/자립생활관에서 지원
7. 금융기관에서 대출
8. 부모/가족/친척에게 빌라시
9. 민간단체에서 지원
10. 저축 또는 근로소득
11. 기타()

문37-7. 지금 사는 곳에서 거주한 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비고]: ※ 생활한 기간이 6개월만 경우 **0년 6개월**도 적어주세요.

※ 생활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0년 1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

1. 약 (년)
2. ()개월

- 25 -

문37-8. **최근 2년 동안** 이사를 한 적이 있나요?

[비고]: ※ 이사를 한 적이 없는 경우 **0년**으로 입력해 주세요 **[]**

1. (년)

문38. 귀하는 전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이용하고 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든** 선택해 주세요 **[비고]**

1. 장년 주거비 지원(전월세의 지원 등)

2. 주거급여

3. 청년 전용 기금의 주택금융상품(청년전세, 청년 행복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 장기임대 등)

4. 청년 임대료 할부대출

5. 이용한 적 없음

[모자 보기 5년 선택 시 문39-1로 이동]
[모자 보기 1-4년 선택 시 문39로 이동]

문39-1.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별로 필요가 없어서
2. 내 조건에 맞지 않아서
3. 돈이 없어서
4. 내용을 잘 몰라서(정보가 없어서)
5. 기타()

문39. 귀하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은 무엇인가요? **최대 20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1. 오래 살 수 있는 친환경 행복주택, 청년 주택-전세임대, 청년 공공지원주택, 장기임대 등
2. 직장, 학교 배후에 장한 공간 생활할 수 있는 집(기숙사, 학사 등)
3. 살 집을 구하는 비용 지원(전세의 대출, 월세 지원 등)
4. 주거 관련 상담 지원(세탁 방문, 법률지원 등)
5. 가구 등 생활물이 구입비, 이사비용 지원
6. 없음

- 26 -

V. 건강 및 생활습관

문40. 귀하의 건강보험 종하는 무엇인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건강보험(직장)
2. 건강보험(지역)
3. 의료급여 1종
4. 민간 의료보험(보수형, 상해보험 등)
5. 모루
6.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모자: 보기 5.0에 선택시 문4으로 이동]

문40-1. 지난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나요?

1. 없다 → **문41**
2. 있다
3. 잘 모르겠노 → **문41**

문40-2.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돈이 없어서
2.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보험료 내는 방법을 몰라서 등)
3.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4. 귀찮아서
5. 기타()

문41. 귀하는 **최근 2년 동안** 건강경진(종합건강경진 혹은 일반건강경진 모두 해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1. 없다
2. 있다

문4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건강강화사업을 확인하기 위해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나요?

1. 없다
2. 있다

문43. 귀하가 **최근 1년 동안** 받았던 질병/질환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1. 질병의과 질환(공황, 우울 부상 등)
2. 이비인후과 질환(코나비나 비염, 중이염 등 코, 귀, 목 부위 염증 등)
3. 내과 질환(간기, 장염, 알레르기 등)
4. 치과 질환(충치, 치아교정, 잇몸염 등)
5. 안과 질환(눈병 등)
6. 흉부외과 질환(상감, 폐질환 등)
7. 피부과 질환(아토피, 습진 등)
8. 신경과 질환(경련, 간질 등)
9. 정신과 질환(불안, 우울, 양방장애, 주의력결핍장애(ADHD),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10. 없다

[모자: 보기 10에 선택시 문4으로 이동]

문43-1.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나요?

1. 병원 진찰 후 치료 받고 있다(또는 받았음) → **문44**
2. 병원 진료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르고 있다
3.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문43-2. 병원에 가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병원비가 없어서(경제적 문제)
2. 시간이 없어서
3. 병원이 멀어서
4. 많이 아프지 않아서
5. 건강보험이 없어서(보험료 부담 등)
6.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7. 돈이 불편해서(이동 문제)
8. 귀찮아서
9. 기타()

문44. 귀하는 장애표를 가지고 있나요?

1. 장애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문45**
2. 장애표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 **문45**
3. 장애표가 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문44.1. 장래인 동북을 아직 않은 이것은 무엇인가?

- 1. 장래인 동북 신척을 잃는데 부터해서
- 2. 장래인으로 동북하고 삼지 않아서
- 3. 장래인 동북 철자를 잘 몰라서
- 4. 장래인 동북을 잘 만큼 생각하지 않아서
- 5. 기타()

문45. 귀리의 길이와 무게는 어떻게 되나? **가장 확실한 줄 길이 무게를** 적어 주세요.

- 1. 본인의 길(단위) : 약 ()cm
- 2. 본인의 무게 : 약 ()kg

문46. 귀리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

- 1. 매우 나쁘다
- 2. 나쁘다
- 3. 보통이다
- 4. 좋다
- 5. 매우 좋다

문47. 귀리는 **자연 고추** 동안 다음과 같은 경향을 한 적이 있나?

연령	전혀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6
1. 마에 씨앗이 흩날리는 적이 있다						
2. 귀리 재배지 주변에서 벌이 있다						
3. 겉껍지 애벌레 자주 죽은 것을 나무 밑에 있다						
4. 피라냐고 노려보는 것이 가끔 있다						
5. 사슴이 죽은 채로 나무 밑에 있다						
6. 나 자신이 생쥐로 여겨지거나 귀리 재배 생쥐라고 노려						
7. 신들께 잡혀 7년 된 것이 같은 생쥐인 몸에 실려있어 애다						
8. 다른 사람들이 노지 할 정도로 흉년도 흉년도 흉년도 노려						
9. 사슴의 죽은 것이 노려지고 생쥐가 귀리 재배를 하려고 노려						
10. 초목이나 풀이 귀리 재배지에 노려						
11. 귀리는 것을 잡는다는 조롱을 수 있다						
12. 여러 가지 생쥐에 대해 조롱을 나무 밑에 있다						
13. 귀리가 노려 애다						
14. 나무 아래에서 귀리 재배지 주변에 노려 있다						
15. 양이 죽은 채로 나무 밑에 있다						
16. 마에 생쥐의 몸이 생쥐 재배지						

[모자 색으로만] 중, 가노지 2-세에 한 귀리, 신척, 생쥐가 있다] 문47-10.
경향이 전혀 없다 **경향으로 있음**

문47-1. 그런 경향 때문에 생쥐(귀리) 및 내인(생쥐) 등에 어려움이 있나?

- 1. 전혀 아님지 않다
- 2. 조금 아님다
- 3. 많이 아님다
- 4. 매우 많이 아님다

문48. 귀리는 평소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

전혀 아님지 없다	<	1	2	3	4	5	6	7	8	9	10	매우 많다
0												

Ⅷ '연세 및 나이'

문53. 귀하는 필요에 의해서 얼마나 자주어나요?

1. 직장이나 학교를 가기 위해 평일에 매일 외출한다. → 문53
2. 직장이나 학교를 가기 위해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문53
3.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문53
4.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53
5.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6. 보통은 집에 있지만, 친구 편지받 등에 외출한다.
7.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8.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문53-1. 문제와 같은 상태가 얼마나 자주어나요?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 3년 미만
4. 3년 이상 ~ 5년 미만
5. 5년 이상 ~ 7년 미만
6. 7년 이상

문53-2. 문제와 같은 상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한글]

1. 희망중단이나 대외적의 실패로
2. 직업이 좋지 않아서
3.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4. 장래가 있거나 좋아 불만해서
5.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6. 돈이 없어서
7. 개인 등 인터넷을 사용하느라
8. 기타()

문5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귀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문 제	문 제			문 제 개 수
	없다	1	2	
1. 제1이나 제2에 관한 것이나 장비를 팔아줄 수 있는 사람				3
2. 내게 빌려주어 학교생활을 하면 장비를 팔아줄 수 있는 사람				
3. 우리 여러 집안일을 부탁하여 하는 경우, 집안일을 줄 수 있는 사람				
4. 우리 여러 집안일이 어렵고 할 도리없을 수 있는 사람				
5. 내게 돈이 빌려줄 때 같이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				
6. 내게거나 우물할 때 도움을 팔아줄 수 있는 사람				
7. 내게 같이 어떤 특장있을 때 나의 약점(장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				

문54.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문 제	전혀 그렇지 않다		도통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6	7	8
1. 나는 외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느낀다.								
2. 나는 외로운 사람이 느낀다.								
3. 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다 느낀다.								
4. 나는 나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5.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느낀다.								

[오답: 문지 5에서 2번이 아니라 3번이 옳다. 정답: 문지 5에서 3번이 옳다.]

그럼에 없는 정답(문지 1번)은 문56으로 이동

문55.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혀 있다는 감정을 느낄 지 얼마나 외로나요?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년 이상 ~ 3년 미만
5. 3년 이상

문59. 귀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란 것과 다른 일과 생활에서 다음 문항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문항	경험해 적이 있다		경험해 적이 없다	
	1	2	3	4
1. 내 수면패턴이 변했다				
2. 발목을 잡거나 구기 어려워다				
3. 샤워를 할 때 물이 뜨겁다				
4. 잠이 오지는 않지만 잠이 든다				
5. 오후에 졸음이 깨어나서만 잠이들거나 잠이들지 못한다				
6. 커피 등 탄산음료(에너지음료)를 마시게 되었다				
7. 술이나 담배의 사용 빈도가 늘었다				
8. 산책(운동)을 즐기게 되었다				
9.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복했다				
1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59-1. 다음과 같은 경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문항	매우 적었다		적었다		보통이었다		많았다		매우 많았다	
	1	2	3	4	5	6	7	8	9	10
1. 내 수면패턴이 변했다										
2. 발목을 잡거나 구기 어려워다										
3. 샤워를 할 때 물이 뜨겁다										
4. 잠이 오지는 않지만 잠이 든다										
5. 오후에 졸음이 깨어나서만 잠이들거나 잠이들지 못한다										
6. 커피 등 탄산음료(에너지음료)를 마시게 되었다										
7. 술이나 담배의 사용 빈도가 늘었다										
8. 산책(운동)을 즐기게 되었다										
9.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복했다										
1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5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원인 내용 지점이 필요한가요?

문항	필수 필요 없다		보통 필요 없다		매우 필요 없다	
	1	2	3	4	5	6
1. 내 개인적인 생활 패턴(수면 패턴, 식사 패턴 등)						
2. 복직을 위한 생활 패턴(수면 패턴, 식사 패턴 등)						
3. 개인적인 생활 패턴(수면 패턴, 식사 패턴 등)						
4. 개인적인 생활 패턴(수면 패턴, 식사 패턴 등)						
5. 개인적인 생활 패턴(수면 패턴, 식사 패턴 등)						
6. 개인적인 생활 패턴(수면 패턴, 식사 패턴 등)						
7. 개인적인 생활 패턴(수면 패턴, 식사 패턴 등)						
8. 개인적인 생활 패턴(수면 패턴, 식사 패턴 등)						
9. 개인적인 생활 패턴(수면 패턴, 식사 패턴 등)						
10. 개인적인 생활 패턴(수면 패턴, 식사 패턴 등)						
11. 기타 ()						

문59-1. 다음과 같이 하거나, 하려고 하거나, 하려는 경우를 설명

문59-1.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원하나요?

1. 내가 맡은 일에 대해 직접 찾아오는 방법
2.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방법(온라인 화상상담 등)
3. 담당자가 나에게 직접 찾아오는 방법
4. 담당자가 내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오는 방법(카페, 학교나 직장 근처 등)

문5. 귀하는 자립까지 다음과 같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적이 있나요?

문 형	참여 적이 없다		참여 적이 있다	
	1		2	
1. 영재교육(영재스, 사관학교, 장학생 등)				
2. 자부담교육(영재스, 사관학교, 장학생 등)				
3. 자부담 교육 비용				
4. E-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사관학교, 장학생 등				
5. 사관학교(영재스, 사관학교, 장학생 등)				
6. 사관학교 교육 비용				
7. 사관학교 교육 비용				
8. 사관학교 교육 비용				

문6-1. 다음과 같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인가요?

문 형	참여 적이 없다		참여 적이 있다	
	1		2	
1. 영재교육(영재스, 사관학교, 장학생 등)				
2. 자부담교육(영재스, 사관학교, 장학생 등)				
3. 자부담 교육 비용				
4. E-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사관학교, 장학생 등				
5. 사관학교(영재스, 사관학교, 장학생 등)				
6. 사관학교 교육 비용				
7. 사관학교 교육 비용				
8. 사관학교 교육 비용				

문63. 귀하는 자립을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현재 귀하의 자립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문 형	중요한 정도				현재 자립 수준			
	1	2	3	4	1	2	3	4
1.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능력								
2.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하는 능력								
3. 부모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는 능력								
4. 내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는 능력								
5. 생활비를 충당하는 능력								

문64. 귀하가 가장 최근에 생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 양육자(부모님) (가족/친척/친구/지인)
2. 청소년상담/청소년보호관/청소년상담소/청소년상담센터
3. 소년관/소년보호관/소년상담소/소년상담센터

문65-1. 귀하가 14살~20살에서 나온 때는 몇 년도 인가요?

14살~20살 현재 14살~20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2022년으로 응답해 주세요. 1
1. () 년도

문65. 현재 귀하는 14살~20살에서 다른 기관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나요?

14살~20살 다른 기관 자립생활(가족, 친척, 친구, 자립생활관 등)

1.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 65-1
2.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 받고 있지 않다 -> 65-1
3. 현재 받고 있다 -> 65-1
4. 잘 모르겠다(기타다지 않음 등) -> 65-1

문65-1. 14살~20살에서 다른 기관에서 자립생활을 받은 총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4살~20살 다른 기관 자립생활(가족, 친척, 친구, 자립생활관 등)

※ 자립 받은 기간이 6개월인 경우, 0년 6개월로 적어주세요.
※ 자립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0년 1개월로 응답해 주세요.

1. 총 () 년
2. () 개월

▶ 다음은 동계 축제들 위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자
 2. 여자

배경문항2.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사도도 ()
 2. 사글군 ()

배경문항3. 귀하의 **가족 수**중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합계 소수를 기준으로 밑줄에 주세요.

가족 수	1	2	3	4	5	6	7	8	9	10
구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and focus on out-of-reach youth, who are defined as marginalized and isolated youth, for example, those not falling within the scope of general youth in Korean society, those who are unable to access social protection offered by the current system, and those who are aggrieved by beliefs in meritocracy.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3-year cooperative study to observe and gain insights across various types of disadvantages and inequities observed in the youth generation, especially those in need of social support.

Analysis targets in the first year were young adults leaving welfare facilities and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youth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eenage par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developmentally-disabled youth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empirically confirming the status of marginalization and the gap in comparison to the life of the general youth. Based on these findings, we clarified our goals and put forward proposals to mitigate and prevent the inequalities which these disadvantaged youth have been facing in their lives.

However, this strategy of strengthening supports and protections

has limitations a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vulnerabilities in all types of out-of-reach youth and also challenging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Nevertheles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disenfranchised youth in order to discover effective interventions and rationale to allow them to regain their rights. It is hoped that these findings and insights may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policies covering all youth.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황여정·임희진·오승근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은희·송현주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연구Ⅲ -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정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김지연·백혜정·김미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지원정책 평가 / 홍성효·장수명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옥·오옥찬·조양진
-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위 크 쑈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 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협동연구총서 22-80-01

연구보고22-일반08

청년종합연구 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81-7 94330

979-11-5654-380-0 (세트)

연구보고 22-일반08

청년종합연구 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81-7
ISBN 979-11-5654-380-0(세트)